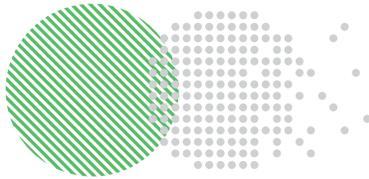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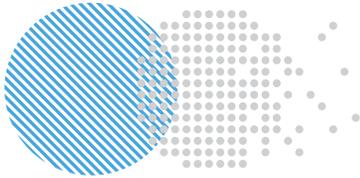


연구보고25-기본05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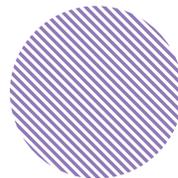
성윤숙 · 문호영 · 손병덕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nyp*i*



연구보고25-기본05

아동·청소년·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연구

저 자 성윤숙, 문호영, 손병덕

연구진 연구책임자_성윤숙(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문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원_손병덕(충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연구보조원_문세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보고서를 펴내며

AI를 넘어서는 AGI의 도래 가능성, 휴머노이드 시장의 비약적 성장 그리고 우주항공 시대에 대한 기대 등, 세계는 지금 4차 산업 혁명의 급속한 발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양면성으로 국제사회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는 저출생과 초고령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문제, 지방 대학 소멸 및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다문화 가정 증가 등 다양한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내외적인 변화의 흐름이 초래한 불확실성과 무한경쟁의 시대에 대한민국이 도태되지 않고 선도적 위치에 자리매김하기 위해선, 사회적 현실의 극복과 함께 고부가가치의 인재 양성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국가가 직면한 당면 과제는 국민 개개인의 자아실현 및 행복 추구 보장, 그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의적 인재 양성을 가능하게 해줄 선순환적 사회구조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 사회권의 3대 영역, 즉 교육, 복지, 고용의 안정적, 실효적, 미래지향적 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유기적이고 견고하며, 연속성 있는 생산적 설계가 요구됩니다. 다만 그러한 설계는 몇 가지 요건의 충족을 전제합니다. 먼저 합목적성과 실효성에 기초한 정책 전달체계의 패러다임 정립이 필요합니다. 다음, 정책 전달체계의 행정 체계와 실행 체계 각 부처의 역량 제고가 요구됩니다.

또한 정책 전달체계의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설계 및 각 부처 간 상호 유기적 연계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무엇보다 수요자 중심의 'No Wrong Door'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적절성, 개별성, 개방성, 지속성, 형평성 등 제한 원칙을 바탕으로, 생애주기별 연속성이 정착된 정책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합니

다. 하지만 현재 정책 수립 및 전달체계는 개별적인 연령대 지원에 머무르고 있어 안정적 연속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개별적 차원에서도 다양한 개선점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아동정책 전달체계의 경우, 상황이나 지역에 따른 서비스 및 서비스 접근성 격차,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부족, 지속적 관리 및 지원체계 부족, 불안정한 정보시스템 등이 보완되어야 하고,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중앙과 지방, 부처 간 협력 및 역할 구분 등의 효율적이지 못한 조직 구조 및 운영 방식, 전문 인력 부족, 불충분한 청소년 요구 반영과 민간 참여 확대 미비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아가 청년정책 전달체계도 정책 정보 제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취업과 주거, 결혼 등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서비스 등 개선점이 있습니다. 결국 현재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전달체계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각각의 전달체계도 부처별 분산이나 중앙과 지방 또는 부처간 유기적 연계성 부족으로 체계적 통일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법정 연령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연령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정책의 중복성 및 유사 기능의 별도 전달체계, 전달체계 간 사각지대 등이 존재합니다. 특히 각 주기의 연결 및 이행 고리가 효율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에서 언급한 제반 조건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 아동·청소년·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해 기존 전달체계를 분석, 진단함으로써, 정책 전달체계의 사각지대를 파악·보완하고, 전달체계 각각의 개별적 전문적 고유성이 보장됨은 물론, 생애주기적 전체로서의 유기적 연계성을 지닌 통합체계의 다양한 대안적 모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구체적으로 선행 연구와 외국 사례의 시사점,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토대로 최적의 행정·집행체계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공공 전달체계 조정 및 구축 방안의 다양한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가 향후 합목적성과 효율성,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갖춘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의 실질적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나아가 아동·청소년·청년 삶의 질 향상과 국가 성장 동력으로서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작은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연구요약

■ 연구목적

- 본 연구는 AI와 로봇의 4차 산업 혁명 등 급변하는 시대와 사회환경 속에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및 청년기본법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헌법 제10조의 이념, 즉 인간 존엄과 자원에 기초한 자아실현과 행복 추구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해, 전달체계의 조정 및 통합과 연계된 다양한 모델을 발굴 및 제안함으로써, 합목적성과 효율성,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갖춘 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실효적, 미래지향적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의 실질적 기초자료 제공이라는 핵심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 목적을 설정함. 첫째, 현재의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선행연구 등을 바탕으로 진단하며, 전환기를 포함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둘째, 해외 사례와 법령 분석 등을 통해 전달체계의 조정 및 통합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고자 함. 셋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영역과 전달체계의 실효적 구축을 위해 필요한 원칙을 확립하고,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토대로, 발굴된 다양한 모델을 장점과 단점의 차원에서 분석·제시함. 넷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 및 통합 전달체계의 실효적 구축을 위해 연계하여 고려되어야 할 정책을 발굴, 제안하고자 함.

■ 연구내용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및 정보공유체계 현황 파악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관련 선행연구 고찰
- 생애 주기적 측면에서, 전환기를 포함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분석 및 문제점 진단

- 국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분석과 시사점 도출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관련 법령 분석과 시사점 도출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통합 영역 확립과 정책 전달체계 조정 및 통합 모델 도출
-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통한 정책 전달체계 조정 및 통합 모델의 장점과 단점 파악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 및 통합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원칙 및 정책과제 도출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 및 통합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 제언

■ 연구방법

- 문헌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실태 및 문제점 등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중앙행정기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17개 지방자치단체 등 조직체계 분석 및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2차 자료를 분석
- 외국 사례조사: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전달체계를 조정 및 통합한 일본, 독일, 영국, 미국, OECD 및 EU 국가 등 다양한 국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
- 전문가 의견조사: 관련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며, 현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선결과제, 전달체계 개선안의 장단점 등 내용에 따라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하여 질적·양적 방법에 따라 분석
-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및 정책토론회 개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 및 재구조화 방안 도출을 위해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전달체계 분야의 10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워킹그룹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각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 도출 및 도출된 모델의 보완을 위한 국무조정실,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지자체 정책 담당자와 협의회 개최
- 전문가 자문: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전달체계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해 연구 방향과 내용 및 분석 기준 정립, 의견 조사지 검토,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전달체계 진단 및 제도 개선 보완 방안,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생애주기적 조정 및 통합 전달체계 구축 모델 발굴에 대한 자문회의 개최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및 정보공유체계 현황 분석
 - 정책 전달체계의 경우 아동·청소년 컨트론타워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청소년정책위원회의 활동이 실질적이지 못하고 생산적이지 않음.
 - 청소년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이 아닌 성평등가족부 소속이고 위원장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다른 두 위원회와의 정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주무 부처인 국무조정실은 보건복지부나 성평등가족부와 달리 실질적 정책 시행 주체로 보기 어려움. 청년정책조정실에서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지도감독하고 있으나 주거, 고용, 노동 등의 실질적 주무 부처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음.
 - 보건복지부는 정책 대상 연령 중복 등의 이유로 청소년(아동·청소년 정서 발달 및 심리지원 서비스 등)과 청년(자립준비청년, 청년미래센터 등)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명칭이 다르고 복잡하여, 정확한 정책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수요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음.
 -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우 아동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직접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 그리고 드림스타트를 지원함.
 - 청소년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있음. 전자의 서비스 전달체계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거쳐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센터로 연계되고, 후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이어져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음.
 - 청년은 중앙청년지원센터로부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230개소의 청년센터로 직접 서비스가 연계됨. 다만 아동서비스 전달체계의 아동권리보장센터 같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전달체계가 없음.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에 있어 '민관협업체'는 개별 지자체의 행정전달 체계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연결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교량 역할을 함.

주요 연구결과(계속)

● 선행연구 고찰

-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아동 및 청소년정책 부처 간 분산과 산발적인 추진으로 인한 정책의 분절성으로 서비스 중복 및 누락 발생
 - 지방행정조직 사업 수행 구조상 체계성, 전문성 부족, 총괄 중심축이 없는 분야 별 병렬적 구조로 서비스 효율성 저하, 민간 위탁 중심의 운영으로 공공성 미흡, 전달체계의 연속성 부재로 인한 정책 사각지대 발생과 서비스 형평성 문제 등이 있음.
 - 수요자 관점에서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분절적이고 일관성 없는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개편이 필요함. 중앙과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 전달체계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 조정 방안 모색 필요
- 청년정책 전달체계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정책과 관련, 다양한 위기 상황 또는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체계 구축이 쟁점임.
 - 취약 청년 대상 지원 정책이 보호 및 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에 비해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부족하고 제한적임.
 - 정책과 지원사업 등에 대한 정보 획득 경로인 온라인 경로 역시 오프라인 전달체계처럼 소관 부처별로 다원화되어 대상별·분야별 분절적 운영이 발생하고, 보호 대상 아동·청소년과 시설 퇴소 청년에 관한 정보와 이력 관리 정보시스템의 부처별 운영이 대상자 발굴 및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의 저해 요인임.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통합 개선 필요성
 - 서비스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한 단계적 통합, 대상 및 서비스 중심의 통합 그리고 대상자 정보 통합의 필요성과 함께, 효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기계적 아동·청소년정책 부처 일원화는 지양할 필요가 있음.
 - 서비스 중복만이 아니라 서비스 확대와 질적 제고를 지향해야 함.

주요 연구결과(계속)

- 대상 및 서비스 중심 통합의 세 가지 모델이 제시됨. 첫째, 일원화 전달체계, 둘째, 기능별 이원화 전달체계, 셋째, 기능별 부분 이원화 전달체계
 - 아동·청소년·청년의 보호 및 자립 정책 전담 기관과 전담 요원을 통한 지역단위 전달체계 일원화, 아동·청소년·청년 보호 및 자립 지원 중앙부처 일원화 및 보편적 서비스 제공 등이 필요
 - 전달체계 조정(부처 및 서비스 간 연계·협력)
 - 중앙 및 지방정부 행정·집행 체계, 공공·민간 체계의 협력 및 공조 체계 강화 등 능동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 필요
 - 현행 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부처 및 기관별 보유 정보의 연계 강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논의 필요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선결과제
 - 법적 연령의 중복과 유사 중복 서비스 문제에 대한 명확한 분석에 기초한 해결점 모색 필요
 - 다양한 통합정책에 따른 법령 정비 필요
 - 국가의 책무성 및 정책의 공공성 강화 등 다양한 이유로 예산 확보 필요
- 아동·청소년·청년 전환기 정책 전달체계 문제점
- 아동에서 청소년으로의 전환기
 - 이행기에 공동의 행정적 조정이나 협력적 정책 수행 메커니즘 마련 필요
 - 아동복지 서비스에서 청소년복지 사업으로의 연계 절차 개선 필요
 - 이행기 서비스 간 연계 또는 연속적 지원의 보완 필요
 -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 연속성 문제 해소를 위해 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 단일화나 정보 관리 체계 구축 등 심층적이고 연속적인 사례관리 방안 강구 필요
 - 아동 예산과 청소년 예산의 단순 통합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정책의 생애주기적 접근에 따른 통합적인 예산 체계와 성과 관리 시스템의 재편 필요
 - 부처 간 협력과 지역 내 서비스 통합을 위한 명확한 법적 제도적 근거와 통합된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 데이터 적절성과 품질, 예측의 정확성이 확보되고 개인정보 보호와 낙인 우려 등 법적·윤리적 문제 등의 문제에서 자유로운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필요

주요 연구결과(계속)

- 전문가 양성 체계에 있어 통합적 관점 고려 필요
- 복합적, 다중적 어려움을 지닌 서비스 대상을 위해 다양한 전문 분야(교육, 복지, 상담 등)를 아우르는 통합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
- 청소년에서 청년으로의 전환기
 - 청소년정책-청년정책 경계의 구조적 허점 개선 필요
 - 보호 종료 아동·자립 준비 청년의 전환 사각지대 문제 해소 필요
 - 지역청년센터 간 편차와 기능 과잉 분화
 - 고용·자립 서비스의 단절
 -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를 아우르는 연속적이면서도 각 발달단계 및 전환기 특성을 반영하는 포괄적 지원 설계와 연계·협력 및 통합의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재편 필요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해외 사례 분석

- 독일
 - 우리의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년기본법」이 하나로 통합된 「아동·청소년지원법」이 있으며, 법령에서의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구분이 명확함.
 - ‘연방교육·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 주무 부처임.
 - 지방정부의 전달체계는 청소년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정부의 실질적 공적 아동·청소년정책 업무를 수행함.
 - 청년정책은 연방 노동사회부와 연방 교육연구부가 주도함. 이원적 직업교육 시스템과 같은 청년고용 정책을 주도하고 있음. 청년정책의 이원성은 청년정책의 주무 부처 일원화가 쉽지 않음을 보여줌.
- 일본
 - 아동, 청소년 그리고 청년정책 공통의 정책목표가 저출산, 고령화 극복임.
 - 아동가정청이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주무 부처임. 구체적으로 아동복지, 모자보건, 교육 그리고 저출산 대책, 아동, 청소년, 청년 육성 등을 총괄함.

주요 연구결과(계속)

- 일본의 로드맵은 임신, 출산, 취학 전 단계, 초등학교 단계, 중·고등학교 단계, 대학 입학 별로 생애주기별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 청년정책 주무 부처는 내각부이고 종합적으로 청년정책을 관장함. 그 외 각 현장 부처인 후생노동성(고용·복지 중심), 문부과학성(교육), 소비자청, 농림수산성 등 여러 부처와 협력하며 정책을 추진함.

• 영국

- 교육부가 주무 부처로 관련 부처와 협업함. 영유아보육과 교육을 담당하고, 일반아동, 가정 외 보호아동, 일반청소년은 내각부에서 담당함. 특이점은 학교 밖청소년은 문화, 미디어 및 스포츠부에서 담당함.
- 일반청년의 경우는 고용 및 연금부(DWP),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취약 청년정책은 문화, 미디어 및 스포츠부(DCMS), 시민사회부에서 담당함. 내각부는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부처를 조정함.

• 미국

- 교육부가 담당하는 교육을 제외한 아동·청소년 전달체계의 통합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산하의 '아동가족관리청'이 실질적 주무 부처임.
- 청년정책 주무 부처는 분산되어 있음. 보건복지부가 청년 건강, 복지, 정신건강, 가족 등 정책을 총괄하고, 그 외 교육(교육부), 고용(노동부), 주거(주택도시개발부) 등이 있음.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

•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주요 결과

- '전달체계의 분절로 인한 정책의 효율성 저하(행정, 인력, 예산 등)'와 '부처 간 소통·협력 부족'이 일 순위, 그 외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단절 및 서비스 중단', '부처별 유사·중복 서비스로 인한 정책 수요자의 혼란 야기' 그리고 '법령상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의 중복으로 인한 정책 대상 중복' 등이 주요 문제로 선택됨.

주요 연구결과(계속)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안 평가

1안) 현행 유지 연계 보완

- 장점은 전달체계의 변화로 인한 부처 간 갈등 및 혼선 최소화, 부처 통폐합으로 소요되는 행정비용, 시간 절약, 전달체계 개편을 최소화함으로써 현 정책의 안정성, 지속성 확보 등
- 단점은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단절 및 서비스 중단, 부처별 규모 및 예산의 차이로 인한 정책 편향 및 소외 등

2-1안) 현 주무 부처 중 하나로 통합

- 장점은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확보,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상호 연계 강화,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 서비스 가능 등
- 단점은 청년정책의 부처별 분산된 현 체계와 규모를 고려할 때 실질적 통합 어려움,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의 범주와 특성이 달라 조직 내 칸막이 발생 우려

2-2안) 새 주무 부처 신설

- 장점은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위상 및 관심 제고, 정책의 통합된 방향 정립 그리고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확보
- 단점은 부처 신설에 대한 이해관계자(현장 실무자, 정책 수요자 등) 반발, 새 부처 조직 설계의 어려움(정책 범주 및 기능 조정) 등 그리고 새 부처의 소관 업무를 둘러싼 유관 부처와의 조정 등

3-1안) 청소년·청년 통합

- 장점은 청소년·청년 통합부처에서의 유관 부처의 관련 정책 통합·조정 용이, 아동보호, 복지정책 등 전문성은 유지하며, 청소년·청년의 진로, 자립 정책 등 연속성 강화
- 단점은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상이한 전달체계, 부처 간 이해관계와 우선순위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 청소년과 청년의 이질적인 법 제도로 인한 통합(종합)정책의 어려움 그리고 정책 편향 및 소외 가능성

3-2안) 아동·청소년 통합

- 장점은 아동, 청소년과 다른 청년의 발달적 특성 및 사회적 요구(주거, 일자리, 소득·자산 등)를 고려한 청년정책의 전문성 강화, 생애 전반기 아동,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종합)적·연속적 정책 지원
- 단점은 아동·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 확보 어려움.

주요 연구결과(계속)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통합 전달체계 구축 법률 정비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통합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고려 사항
 - 법정 연령의 중복 등 혼선.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 영유아보육법과 아동수당법은 7세 이하로 규정함.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 연령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 보호법은 19세 미만으로 규정함. 그리고 청년기본법은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함.
 - 정책 대상 설정과 정책 적용에서 중복 등 혼란, 혼선. 생애주기적 정책 연계성 확보 어려움. 연령의 명확한 경계 설정이나 정책 목적에 따른 연령 구분 기준의 확립이 요구됨.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영역을 포괄적 차원에서 교육, 복지, 고용의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중 복지를 보호 복지(보호, 경제, 의료)와 문화 복지(문화, 활동, 참여) 여섯 영역으로 체계화할 것을 제안함.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통합 전달체계 구축 법률 정비 방안
 - 제 ①안은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등 아동, 청소년, 청년 정책 각각의 핵심 법률에 상호 연계 협력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정책 연속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동시에 「사회보장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보완 수정을 통해 행정 차원의 협력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 ②-1안, 세 부처 중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의 경우, 어느 부처로 통합하든,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과 법령 정비가 요구되며, 그 과정에서 부처의 비대화나 권한 집중, 정책 소외 현상, 기존 조직의 저항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제 ②-2안, 신설 부처로 통합의 경우, 「정부조직법」에 신설 부처의 설치와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함.
 - 제 ③-1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청소년청년위원회’ 등의 통합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과, 성평등가족부 내에 ‘청소년청년통합본부’ 등을 만들어 기존 청소년국과 청년정책조정관실을 통합하는 방안에 따라 각기 「정부조직법」 개정이 요구됨.

주요 연구결과(계속)

- 제 ③-2안은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거나, 가칭 「아동·청소년통합지원법 또는 아동·청소년지원법」이라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요구됨.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 <장별 주요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청년 통합 전달체계 구축'의 연구 목적에 부합할 정책과제를 제시함. 그 결과 8개 정책 과제 분야 28개 정책과제(총괄조정위원회 관련 정책과제 2개, 주무 부처 관련 정책과제 2개, 주무 부처통합 관련 정책과제 1개, 법 관련 정책과제 4개, 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정책과제 13개, 정보 통합 관련 3개, 예산 관련 2개, 전문 인력 양성 관련 정책과제 1개)가 도출됨.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정책 과제분야	정책과제		
1) 총괄 조정 위원회	1.1)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청소년정책위원회 실질적 정책 조정 기능 주체로의 전환 1.2) 전달체계 세 위원회의 정합을 위한 구조조정		
2) 주무 부처	2.1) 주무 부처의 효율적 통합 및 일원화된 행정 시스템 구축 2.2)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범주 재정립		
3) 전달체계 조정 및 통합 모델	주무 부처 통합 및 개선	1안 현행 유지 연계 보완	- 보건복지부(아동), 성평등가족부(청소년), 국무조정실(청년) 각각의 전달체계 유지 및 유기적 연계 문제 해소
		2-1안 현 주무 부처 중 하나로 통합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중 하나로 통합을 위한 체제 개편
		2-2안 새 주무 부처 신설	- 새로운 주무 부처의 신설을 통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통합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가장 이상적인 안>
		3-1안 청소년·청년 통합	- 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고, 아동 분리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가장 실현 가능한 안>
		3-2안 아동·청소년 통합	- 아동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고, 청년정책 분리
4) 법	4.1) 아동, 청소년, 청년 법체계 정비를 통한 상호성 있는 법적 연령 구분 4.2) 주무 부처 통합 및 개선에 따른 법령 정비 4.3) 부처 간, 지역 내 서비스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4.4) 정보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		
5) 서비스 전달체계	5.1) 유사 중복·누락 정책에 대한 조정 5.2) 전체성에 입각한 상호적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5.3) 전달체계의 생애주기 연속성 확보 5.4) 정보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NWD 구현 5.5) 지방행정조직 사업 수행 구조의 체계성, 전문성 개선 5.6) 민간 위탁 중심 운영의 공공성 미흡 문제 해소 5.7) 취약(위기) 상황 아동, 청소년, 청년의 포괄적 파악 및 안정적 지속적 지원을 위한 통합체계 구축		
	중앙→광역→시군구	5.8) 전달체계 역할 재정비 및 연계 협력 강화(중앙-지방, 공공-민간 등) 5.9) 공공-민간 전달체계 협력 및 공조 네트워크 구축 5.10) '민관협의체'의 역할 정립	
	전환기	5.11) 아동에서 청소년 전환기 정책 수행 메커니즘 연계 개선 5.12) 청소년에서 청년 전환기 정책 수행 메커니즘 연계 개선 5.13) 자립 준비 청년 대상 지원 제도의 현실적 재설계	
6) 정보 통합	6.1) 정보 및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부처 및 기관별 보유 정보의 연계 강화 6.2) 아동·청소년·청년 보호·지원 대상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6.3) 전국 지자체 전달체계 성과지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7) 예산	7.1)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예산 확보 7.2) 예산 집행과 정책 평가를 위한 다부처 협의체의 법적 구성		
8) 전문 인력 양성	8) 상호적 통합적 전문가 양성 체계 구축		

핵심 정책제언(계속)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 및 통합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12원칙
 - 28개 정책과제로부터 최종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 및 통합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12원칙을 첫째, 서비스 제공자(2원칙), 둘째, 서비스 자체(7원칙) 그리고 셋째, 서비스 수요자(3원칙)의 관점에서 도출함.



그림.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 및 통합 전달체계 구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12가지 원칙

- 12원칙을 토대로, 28개 정책과제 중 선별하여 최종 4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4개의 통합 정책제언 및 5개의 세부 정책제언을 제시함.

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정책과제	정책 제언
1	3) 주무 부처 통합 및 개선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주무 부처 통합 및 개선
2	5.4) 정보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NWD 구현 6.1) 정보 및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부처 및 기관별 보유 정보의 연계 강화 6.2) 아동·청소년·청년 보호·지원 대상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6.3) 전국 지자체 전달체계 성과지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아동·청소년·청년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 AI 기반 생애주기 맞춤형 통합 정책 플랫폼 구축 - 전달체계 성과지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3	5.2) 전체성에 입각한 실효적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5.3) 전달체계의 생애주기 연속성 확보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서비스 및 정책 범주의 전체성 확보 - 수요자 참여형 정책 설계 시스템 도입 - 전환기 연계 매니저(Transition Manager) 제도 도입 - 민간 스타트업·사회적 기업과의 전달체계 협력 모델 도입
4	5.8) 취약(위기) 상황 아동, 청소년, 청년의 포괄적 파악 및 안정적 지속적 지원을 위한 통합체계 구축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정책 대상의 포괄성 확보

핵심 정책제언(계속)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주무 부처 통합 및 개선
 - 선행연구와 외국 사례 그리고 전문가 의견조사를 중심으로, 각각의 안을 장점과 단점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개선점을 제시함.
 - 목적은 최적 안의 '선택'이 아니라 각각 안의 정확한 '파악'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임.
 - 1안)의 경우,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의 실질적 확보를 위한 부처 간 역할 조정, 즉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정책 대상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 통합부처로 전환하고, 국무조정실은 기능 중심 조정부처로 유지할 것을 제언함.
 - 보건복지부는 아동·청소년·청년 생애주기의 보호 복지(경제, 보호, 의료)를, 성평등가족부는 -조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도 가능- 문화복지(가칭)(문화, 활동, 참여)를 담당할 것을 제언하고 그에 부합할 행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 모형을 제시함.
 - 세 부처 중 하나로의 통합방안인 2-1안)에 대하여, 통합 단일 부처가 광범위한 규모의 통합부처가 될 경우와 조정부처로의 전환일 경우에 대하여 - 국무조정실의 경우는 본래의 조정부처 유지- 분석함.
 - 보건복지부나 성평등가족부로 통합할 경우, 전면 조직 개편 불가피하고 조직 사이의 칸막이나 업무 조정상의 갈등 등 화학적 통합의 어려움 등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어느 부처로 통합되든 보호복지와 문화복지(가칭), 그리고 고용을 담당할 기능중심 부서의 설치를 제언함.
 - 새로운 통합 주무 부처 신설 방안인 2-2안)은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가장 '이상적인 방안(40%)'으로 나타남. 다만 해외 사례를 보면, OECD 주요국들 중 별도의 상위 주무 부처를 설치한 국가는 발견할 수 없음.
 - 실질적인 문제는 기존 조정부처인 국무조정실과의 관계 정립에 있을 것으로 보임
 - 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만 통합하는 3-1안)은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가장 실현가능한 방안(40%)으로 나타남.

핵심 정책제언(계속)

- 다만,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상이한 전달체계, 청소년과 청년의 이질적인 법제도 등으로 정책 편향이나 소외 등 다양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해외 사례를 보면, OECD 주요국들은 청소년·청년 통합을 선호하고 있지 않음.
- 아동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만 통합하는 3-2안의 경우, 보건복지부나 성평등가족부로 통합될 경우의 차이를 설명하고 각각의 경우 변화할 '행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도식화하여 제시함.
- 3-2안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로는 특별히 주목받지 못한 방안(13.3%)이나, 미국, 독일 등 주요 국가 대부분은 이 방안을 채택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청년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 포괄성, 전체성 등 12원칙에 입각한 정책 대상 중심 전달체계의 구현은 아동·청소년·청년 교육, 복지, 고용 NWD(No Wrong Door)의 실제적 실현임.
- 데이터 중심 근거 기반 정책 수립에 기초하여, 부처 칸막이로 인한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복잡한 행정절차 없는 원스톱 맞춤형 정보 제공과 신청 서비스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책 전달체계의 모델과 상관없이 빅데이터를 통한 정보 및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실효적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본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경로 피로(path fatigue)'와 '데이터 사일로(data silo)' 현상을 소개하고 해결점을 제시함.
- '행복이음'과 '복지로'로 연계되어 있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법정부)의 경우, 형식적 측면에선 NWD 시스템에 근접한 것처럼 보이고, 실효적 정책 전달체계를 위한 12가지 원칙에도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핵심 정책제언(계속)

- 생산적 정보 통합과 실효적 NWD 확립을 위하여 2개의 세부 정책을 추가로 제안함.
 - AI 기반 생애주기 맞춤형 통합정책 플랫폼 설계 및 구축
 - 정보시스템의 분산은 수요자 정보탐색의 어려움을 가중시킴. 따라서 AI 기반의 통합 정책 플랫폼을 구축, 아동기부터 청년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과 서비스의 자동 추천과 연계를 제안함. 일례로,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AI 기반 통합 정책 플랫폼 및 자동 안내 시스템 구축이 있음.
 - 전달체계 성과지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 12원칙에 입각, '아동·청소년·청년 통합 전달체계'의 안정적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증이 필요함. 지역별 전달체계의 편차와 기능 과잉 분화 문제 해소, 무엇보다 서비스의 실효성과 보완, 개선점 파악 및 중앙정부의 지원 방향 조정을 위한 전국 지자체의 전달체계 성과지표 공개 및 비교 시스템 마련을 제안함.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서비스 및 정책 범주의 전체성 확보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 및 통합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제시된 12원칙 중 '전체성의 원칙'은 아동·청소년·청년이 인간 존엄과 자율에 기초한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즉 어떤 서비스도 간과되거나 누락되어서는 안 된다는 서비스 비배제성의 원칙을 의미함.
 -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영역 전체가 비배제성의 원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되어야 함.
 - 아동복지법 및 청년기본법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제2조 사이의 이념적 차이 분석을 기초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영역의 제반 서비스가 수요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전체성의 원칙' 실현을 위해, '연속성의 원칙'에 입각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영역을 구체적이고, 상호 비교 가능하도록 체계화하여 제시함.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서비스 및 정책 범주의 전체성 확보'라는 통합 정책제언을 보완하기 위해, 3개의 세부 정책을 제안함.

핵심 정책제언(계속)

- 정책 수요자 참여형 정책 설계 시스템 도입
 -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은 공급자 중심으로 설계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실제 수요자의 요구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 전체성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 온라인 정책 제안, 지역별 공청회, 청년 패널 제도 등 서비스 수요자인 청소년·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정책 설계 플랫폼 운영이 필요함.
- 정책 간 “전환기 연계 매니저(Transition Manager)” 제도 도입
 - 아동에서 청소년, 청소년에서 청년으로의 전환기 정책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가칭 “전환기 연계 매니저(Transition Manager)” 제도 도입을 제언함. 이를 통해, 각 대상자의 생애주기 전환 시기에 필요한 정책과 서비스 안내 및 행정절차의 지원이 가능할 것임. 특히 보호 종료 아동이나 위기 청년에 대한 효과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됨.
- 민간 협력형 전달체계 실험 모델 도입
 - 민관협의회는 물론, 민간 스타트업·사회적 기업과 협력 모델의 시범적 도입도 고려 해 볼 필요가 있음. 일례로, 청년 자립 지원을 위해 지역의 공유주택 플랫폼, 멘토링 앱, 정신건강 상담 스타트업 등과 협력, 공공 서비스 사각지대를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보완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정책 대상의 포괄성 확보
 - 12원칙 중 포괄성의 원칙은 모든 정책 대상의 비배제성을 의미함. NWD(No Wrong Door)의 보편적 수혜성은 정책 전달체계의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임. 따라서 일반 아동·청소년·청년 외에, 취약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정책 대상으로서의 포괄적 파악을 수행함.

아동·청소년·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연구

연구보고25-기본05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 2. 연구 추진체계 9
- 3. 연구내용 10
- 4. 연구방법 13

II. 이론적 배경

- 1.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19
- 2. 아동·청소년·청년 정보공유체계 현황 30
- 3.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관련 선행연구 고찰 41

III. 아동·청소년·청년 전환기 정책·전달체계의 문제점

- 1. 서론 55
- 2. 아동에서 청소년 전환기 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58
- 3. 청소년에서 청년 전환기 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75
- 4. 소결 91

IV. 국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및 시사점	
1. 국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95
2. 소결	141
V.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 전문가 의견조사	
1. 조사 개요	147
2. 조사 결과	153
3. 소결	173
VI.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생애주기적 통합 전달체계 구축	
1.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통합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고려사항	183
2.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통합 전달체계 구축 법률 정비 방안	196
3. 소결	214
VII.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1. 연구결과	219
2. 정책 과제	232
3. 정책 제언	233
참고문헌	289
부록	
1. 1차 전문가 의견조사	311
2. 2차 전문가 의견조사	319
Abstract	335

표 목차

표 II-1. 주무 부처별 아동·청소년·청년 업무 담당 부서	20
표 II-2.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업무 담당 부서	22
표 II-3. 아동·청소년·청년정책 관련 정보공유 포털	30
표 II-4.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44
표 II-5.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목적 및 방향	48
표 II-6.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선결과제	51
표 III-1. 현행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연령 분리적, 분절적 거버넌스와 전달체계	55
표 IV-1. 아동청소년육성지원협의회 및 아동청소년종합센터센터 설치 현황	118
표 IV-2. 미국 청년정책 주무 부처 현황	130
표 IV-3. 영국의 아동·청소년·청년 연령 범위 및 근거법령	131
표 IV-4. 영국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내 아동·가족부서 (Children and Families) 조직도 주요 구성	133
표 IV-5. 영국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 내 청소년 담당 부서	134
표 IV-6. 영국 지역별 주요 담당기관 역할	135
표 IV-7. EU 회원국별 국가 차원의 조정 책임 및/또는 데이터 공유 (authorities with coordination responsibility and/or data sharing) 권한을 가진 기관(authorities)	138
표 IV-8. 국가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주무 부처 현황	141
표 V-1. 전문가 패널 구성	148
표 V-2. 1차 질문지 관련 전문가 자문 개요	148
표 V-3. 1차 조사 문항 구성	149
표 V-4. 2차 조사 문항 구성	151
표 V-5. 조사 개요	152
표 V-6.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선결과제	153

표 V-7.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달체계 개선안 1안의 긍정적인 점 및 문제점	155
표 V-8.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달체계 개선안 2안의 장점 및 문제점	156
표 V-9.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달체계 개선안 3안의 장점 및 문제점	158
표 V-10.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달체계 개선안 1안, 3안의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159
표 V-11.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이상적인·실현 가능한 전달체계 개선안	160
표 V-12.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No Wrong Door의 국내 실현 방안	161
표 V-13.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162
표 V-14.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	163
표 V-15.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달체계 개선안 1안의 장점과 문제점	164
표 V-16.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달체계 개선안 2-1안의 장점 및 문제점	166
표 V-17.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달체계 개선안 2-2안의 장점 및 문제점	167
표 V-18.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달체계 개선안 3-1안의 장점 및 문제점	168
표 V-19.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달체계 개선안 3-2안의 장점 및 문제점	169
표 V-20.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달체계 개선안 1안, 3안의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170
표 V-21.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No Wrong Door의 국내 실현 방안	171
표 V-22.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주요결과	173
표 V-23.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 주요결과	174
표 V-24.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안의 장점 및 문제점에 대한 주요결과	176

표 V-25. 1안, 3안의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주요결과	177
표 V-26. No Wrong Door의 국내 실현 방안에 대한 주요결과	179
표 VI-1. 아동·청소년·청년 연령 관련 법령	183
표 VI-2. 아동·청소년정책 영역 비교	189
표 VI-3. 청소년·청년정책 영역 비교	192
표 VI-4.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편안 5가지	196
표 VII-1.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근거(2장)	220
표 VII-2.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근거(3장)	224
표 VII-3.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근거(4장)	227
표 VII-4.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근거(5장)	229
표 VII-5.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통합 전달체계 구축 법률 정비(6장)	231
표 VII-6.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232
표 VII-7.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237
표 VII-8.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달체계 개선안 1안의 장점	241
표 VII-9.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달체계 개선안 1안의 단점	241
표 VII-10.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달체계 개선안 2-1안의 장점 및 단점	248
표 VII-11.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달체계 개선안 2-2안의 단점	253
표 VII-12.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실현 가능한 전달체계 개선안	255
표 VII-13.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달체계 개선안 3-1안의 장점	256
표 VII-14.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달체계 개선안 3-1안의 단점	256
표 VII-15.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No Wrong Door의 국내 실현 방안	264
표 VII-16. 아동·청소년·청년정책 관련 정보공유 포털	269
표 VII-17.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영역 체계화	278
표 VII-18. 발생영역별 아동·청(소)년 취약 상황 분류 세부 내용	287

그림 목차

그림 I-1. 연구 추진체계 조직도	9
그림 II-1. 아동·청소년·청년 행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	26
그림 II-2.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	27
그림 II-3. 아동 행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	28
그림 II-4. 청소년 행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	28
그림 II-5. 청년 행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	29
그림 II-6.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성도	32
그림 II-7. 행복이음 주요서비스	34
그림 II-8. 행복이음 주요효과	34
그림 II-9. 행복이음 시스템구성도	35
그림 II-10. 아이사랑 시스템구성도	36
그림 II-11. e청소년 소개	38
그림 II-12. 전국 청년 플랫폼	40
그림 IV-1. 연방교육·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전달체계	102
그림 IV-2. 아동·청소년 지원의 과제들과 업무 수행	104
그림 IV-3. 아동가정청 조직도	119
그림 IV-4. 아동미래전략지도(MAP)	123
그림 IV-5. 미국의 아동가족청(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조직도	128
그림 IV-6. 위탁보호 및 가출·노숙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129
그림 IV-7. 영국 교육부 조직도(아동·청소년정책 및 조정 주무 부처)	132
그림 V-1. 이상적인·실현 가능한 전달체계 개선안	178
그림 VI-1. 아동·청소년·청년 연령 관련 법령	186
그림 VI-2.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	187
그림 VI-3.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3~'27)	188
그림 VI-4. 통합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영역	194

그림 VI-5. 아동·청소년·청년 조정 및 통합 정책 영역	195
그림 VII-1.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 및 통합 전달체계 구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12가지 원칙	236
그림 VII-2.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237
그림 VII-3. 아동·청소년·청년 통합 정책 영역	244
그림 VII-4. 부처별 기능 중심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 및 통합 영역	245
그림 VII-5. 1안 기능 및 조정 통합 모델 - 아동·청소년·청년 행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	246
그림 VII-6. 2-1안 국무조정실 통합 모델 - 아동·청소년·청년 행정 전달체계	250
그림 VII-7. 3-2안(2+1) 중 보건복지부 통합 모델 - 아동·청소년· 청년정책 행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	259
그림 VII-8. 3-2안(2+1) 중 성평등가족부 통합 모델 - 아동·청소년· 청년 행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	260
그림 VII-9.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시스템 구성도	271
그림 VII-10. ODI의 변화 이론	274
그림 VII-11.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 및 통합 영역	277
그림 VII-1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목록 페이지	285
그림 VII-13. 발생영역별 아동·청(소)년 취약 상황 분류	286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 연구 추진체계
- 3. 연구내용
- 4. 연구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대한민국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현재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및 「청년기본법」 등은 표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이 아동·청소년·청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를 통해 자율성과 주체성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건전한 구성원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 개발과 정책실현을 통해 각 개인이 헌법 및 실정법이 보장하는 권리실현과 의무이행을 보장받고, 그것을 통해 국가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안정된 존속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효율적 합목적으로 지원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그러한 정책 주체로서 합목적적이고 최적화된 역할 수행을 위해 정책실현의 안정된 인프라로서의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구성·시행하고 있다. 정책 대상자로서의 아동·청소년·청년 연령 규정을 살펴보면, 「아동복지법」 제3조와 「민법」 제923조에서 규정하는 정책대상으로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정책대상으로서의 청소년은 초등 학령기에 해당하는 9세~24세에 해당한다. 「청년기본법」 제3조는 정책대상으로서의 청년을 19세~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며, 제2조는 청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으며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이 장은 성윤숙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AI 등 4차 산업 혁명과 COVID 19 이후 Ontact 시대로의 진입은 비대면 서비스 확대나 빅데이터 활용 등 미래 사회에 대한 기대와 우려 섞인 불확실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일례로 미국의 소프트뱅크(SoftBank), 오라클(Oracle), 오픈AI(OpenAI)가 합작한 최대 5천억 달러(약 718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계획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나 챗GPT를 위협하는 중국 딥시크의 AI 모델의 등장 등 급변하는 국제사회의 흐름은 바야흐로 세계가 제4 물결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이러한 무한 경쟁 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도태되지 않고 선도적 위치에 서기 위해선 고부가가치의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저출생과 초고령화,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및 균형발전, 지방 대학 소멸 및 청년층의 수도권 쏠림, 다문화 가정 증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대내외적인 변화의 흐름 앞에서 국가의 당면 과제가 된 아동·청소년·청년의 자아실현 및 행복 추구 보장과 고부가가치의 인재 양성을 위한 선순환적 사회구조의 구축을 위해, 기존의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점검과 진단 및 개선을 통한 안정적, 실효적, 미래지향적 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아동·청소년·청년은 생애주기적 발달 과정상의 연속성을 지닌다. 하지만 현재의 정책 수립 및 전달체계는 개별적인 연령대 지원에 머무르고 있어 안정적 연속성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욱이 개별적 차원에서 다양한 개선점을 내재하고 있다. 먼저, 아동 정책 전달체계의 경우, 상황이나 지역에 따른 서비스 및 서비스 접근성 격차,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자의 전문성 부족, 지속적 관리 및 지원체계 부족, 불안정한 정보시스템 등이 보완되어야 한다. 다음, 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경우, 중앙과 지방, 부처 간 협력 및 역할 구분 등의 효율적이지 못한 조직 구조 및 운영 방식, 전문 인력 부족, 불충분한 청소년 요구 반영과 민간 참여 확대 미비 등의 문제가 있다. 마지막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경우도 유사한 문제점과 함께,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 정책 정보 제공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취업과 주거, 결혼 등을 위한 맞춤형 정책과 서비스 등 개선점이 있다. 이처럼 현재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는 별도로 분리되어 있고, 각각의 전달 체계도 부처별 분산이나 중앙과 지방 또는 부처 간 유기적 연계성 부족으로 체계적, 통일적이지 못하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법정 연령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연령 기준의 모호성으로 인한 정책의 중복성 및 유사 기능의 별도 전달체계, 전달체계 간 사각지대 등이 존재한다. 특히 각 주기의 연결 및 이행 고리가 효율적이지 못하다. 일례로 9세~18세 미만은 아동임과 동시에 청소년

년이고, 19세~24세 정책 대상자는 청소년이며 동시에 청년에 속한다. 따라서 정책 전달체계상 혼선과 중복을 초래하는 등 비생산성, 비현실성 등의 문제를 보인다. 특히 「청년기본법」상 34세를 넘긴 경계성 대상자의 경우 적절한 지원을 받는 일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욱이 아동·청소년·청년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과 청년의 생산적, 효율적 역량 개발 여부가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한민국의 명운을 좌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청소년정책이 청소년활동의 강조에서 더 나아가 청소년과 청년기의 연계가 교육의 노동 수행 능력 향상으로의 연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생애주기적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는 첫째, 합목적성과 실효성에 기초한 정책 전달체계의 패러다임 정립, 둘째, 그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행정체계와 실행체계 구축 및 체계 내 각 부처의 역량 제고와 상호 유기적 연계성 확보, 셋째, 정책 전달체계의 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한 통합적 설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수요자 중심의 적절성, 개별성, 개방성, 지속성, 형평성, 접근 용이성, 연계성은 물론, 아동에서 청년까지 생애주기별 삶의 질 보장을 책임짐과 동시에 국가 인재 양성에 기여할 전체성 및 단속성이 아닌 연속성의 정책 전달체제로의 통합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시된 네 가지 조건을 안정적으로 충족함으로써 전달체계의 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통합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여기서 ‘통합’은 ‘기계적인 통합 내지 물리적인 병합’을 의미하지 않는다. 현재 보건복지부(아동), 성평등가족부(전 여성가족부/청소년), 국무조정실(청년) 각각의 전달체계를 하나의 부처 또는 제3의 부처로 물리적으로 통합할 경우, 조직이 지나치게 비대해지거나, 행정적 비효율성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주무 부처는 아동, 청소년, 청년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바, 인위적인 병합은 시너지효과는 차치하고라도, 그 전문성조차 살리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가 지향하는 통합 모델은 단순 물리적 결합이나, 불확실성의 화학적 결합이 아니라, 열린 상태에서 양자를 적절히 조합하는 것이다. 즉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융합의 형태가 될 것이다. 이러한 통합 모델은 구체적으로 다음의 네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되, 유기적 협업 강화를 통해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어야 한다. 즉 단일성과 다양성을 포함한 전체성을 지향한다. 둘째, 그 과정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전달체계(행정체계, 실행체계)의 톱다운 방식이 실제

구체적인 개별 수요자 중심의 증거 기반한 톱다운 전달체계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정부→시도→시군구→읍면동→개인으로의 생산적 설계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 전달체계가 실효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서구의 ‘No Wrong Door’ 시스템처럼¹⁾, 아동, 청소년, 청년 누구든 필요한 사안 및 문제가 있을 때, 공적 전달체계 안의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여야 한다. 셋째, 생애주기적 연속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 아동, 청소년, 청년의 각 발달 과정마다 필요한 고유한 니즈(needs)가 충족되어야 함은 물론, 아동에서 청소년으로의 이행기 및 청소년에서 청년으로의 이행기에 요구되는 정책 및 서비스 구현이 안정적, 생산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아동, 청소년, 청년 누구나 자아실현 및 행복추구권이 보장됨은 물론 국가 인재 양성에 최적의 실제적인 모델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행정체계 및 실행체계를 진단하고, 약점과 강점, 수정, 개선, 보완점을 도출한 후 가장 실효적인 조합을 설계함으로써, 실제적 통합 모델을 도출해야 한다.

이러한 모델 설계를 위해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은 현재 전달체계가 지니는 연령의 모호성이다. 「청년기본법」 제3조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19세 이상 34세 이하’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청년 각각의 시기를 구분하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첫째, 의무교육이나 선거권 연령 등 법·제도가 객관적으로 규정하는 연령별 관점, 둘째, 성인 준비(Mackie, 2013)를 위한 의존에서 독립으로의 ‘이행기’적 관점(Bendit, 2006), 셋째, 각각의 시기를 그 자체 고유한 생애 단계로 보는 관점(Arnett, 2000), 그리고 넷째, 빈곤, 실업, 우울 등 문제 중심적 관점(이정봉, 2021) 등이 있다. 현재의 전달체계는 이러한 관점들이 혼재되어 있는 형국이다. 일례로 현행 아동 지원 정책 중 자립 지원은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를 받는 아동에게 18세 보호 종료 후(최대 5년)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경우 정책 대상은 「아동복지법」 제38조에 근거하여 지원받는 것인

1) NWD(No Wrong Door)는 본래 ‘아동, 청소년, 장애인이나 노인,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지역사회의 어떤 기관(청소년기관, 노인기관 혹은 장애인관련 기관 등)을 통해서도 필요한 제반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황주희 외, 2014)’을 의미한다. 처음 영국 노스 요크셔의 ‘아동·청소년을 위한 주거형 돌봄 서비스’로 시작하여, 미국 메인주의 장애노인통합서비스 ADRC(Aging and Disability Resource Centers) 등 세계 각지에서 채택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전략 모델이다. 본 연구는 그러나 NWD를 복지 영역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 복지, 고용 등으로 확장하여, 포괄적으로 이해 및 적용하였다. 즉 NWD를 생애 전반기 아동부터, 청소년, 청년에 이르기까지의 정책 전달체계에 있어, Online과 Offline 상으로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교육, 복지, 고용 관련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포괄적, 이상적인 전략적 모델로 규정하고, 그 실현 가능성을 타진하였다.

데, 「청소년기본법」 상으로는 청소년이고, 또 1년만 지나면 「청년기본법」 상 청년이다. 따라서 19세 이상으로 자립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그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지원받는 법률적 청소년 또는 청년으로서, 의존에서 자립으로의 이행기이고, 성인 진입기 (emerging adulthood)라는 측면에선 고유한 생애 단계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실업, 우울 등의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따라서 특정의 관점만을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지니기는 힘들어 보인다. 결국 시기 구분에 관해서는 구분 자체보다 정책 대상인 수요자 중심의 가능한 관련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최적의 관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실제 아동·청소년·청년 각각의 시기는 각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생애주기적 측면에서 존엄한 인격으로의 자율적 가치 실현과 행복 추구의 삶을 위한 단계적 ‘예비기’이며, 동시에 각각이 고유한 생애 단계이기도 하다. 또 각 단계는 고유한 문제와 동시에 공통적인 문제도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아동·청소년·청년이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지속 가능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단계별 제반 정책을 ‘소극적 보호와 적극적 강화’의 차원, ‘일반 상황과 취약 상황’의 차원 등으로 분류한 후, 각 생애주기 간 안정적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 전달체계, 특히 공공전달체계를 개선한 통합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공공전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하고, 전달체계 통합 고려 사항은 연령별 특성 반영, 교육·복지·고용 등 정책 유형, 온·오프라인 접근성 확보 등 전달 방식 통합, 중앙 및 지자체 간 정보공유,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업무 절차 간소화 등 행정 시스템 연계, 주체별 역할 분담, 성평등 및 소외 계층 고려, 지속적 평가 및 개선 등이 있다.

국외의 경우 오래전부터 대상별 정책 통합, 정책 전달체계 구축, 프로그램 및 서비스 통합 등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전달체계 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사례가 존재한다. 일례로 2012년 뉴질랜드는 정책 총괄 컨트롤 타워인 ‘아동, 청소년 및 가족부’를 설립하였고, 캐나다는 2009년, 호주는 2015년 ‘청년 담당부’를 설립하여, 청소년 및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있다. 영국은 청소년 및 청년정책 관련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통합 웹사이트’를 구축하고 있고, 네덜란드는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교육, 취업, 건강 등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윈스톱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핀란드는 청소년 및 청년정책 참여를 위한 ‘청소년 의회’가, 미국은 청소년 및 청년정책 관련 다양한 기관과

단체 간 ‘청소년 및 청년정책 위원회’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외국 사례의 시사점,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토대로 최적의 행정·집행 체계 및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공공 전달체계 조정 및 구축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목적은 AI와 로봇의 4차 산업 혁명 등 급변하는 시대와 사회환경 속에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및 청년기본법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인간 존엄과 자율에 기초한 자아실현과 행복 추구의 이념에 실질적으로 부합할 다양한 통합 가능 모델을 발굴 및 제안함으로써 합목적성과 효율성, 안정성과 지속성 그리고 유연성과 개방성 등을 갖춘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사각지대를 파악하고 보완함으로써, 전달체계 각각의 개별적 전문적 고유성이 보장됨은 물론, 생애주기적 전체로서의 유기적 연계성을 지닌 통합체계의 대안적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가 수요자 중심의 NWD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즉 실효성, 안정성, 지속성을 확보한 전달체계로서 아동·청소년·청년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연구 추진체계

본 과제를 연구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청년 분야의 행정계, 학계, 현장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가 워킹그룹 및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 등 다양한 연구 형태로 추진하며, [그림 1-1]과 같다. 연구를 위해 선행연구 분석,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국내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비교 분석과 시사점 도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및 재구조화 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생애주기적 조정 및 통합 전달체계 구축 모델 발굴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 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아동·청소년·청년정책 행정 전달체계 개선 방안 의견 수렴(국무조정실, 성평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중앙행정기관)을 수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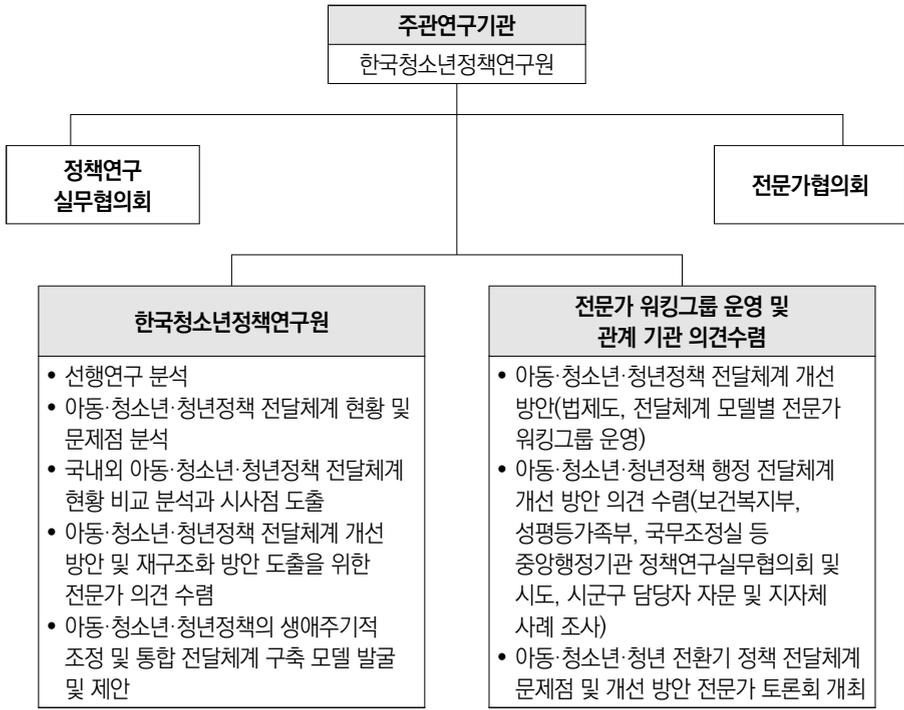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조직도

3. 연구내용

1) 선행연구 분석

-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 규정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에서 법률적인 정책 대상자로서 아동은 「아동복지법」상 17세까지, 청소년은 「청소년기본법」상 9세~24세까지, 그리고 청년은 「청년기본법」상 19세~34세까지이다. 개별적 법 규정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형식적 측면에서도 상호 정합, 병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한 정책 전달체계를 보면 정책 중복이나 격차 등 혼선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본 연구는 윤철경, 박영균, 성운숙과 문경숙(2010), 장민선 외(2017) 및 김기현(2020), 류정희, 이상정, 김지연, 정익중과 정소희(2022) 등 연구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청년 연령 규정이 지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연령 규정과 관련한 법체계 정비의 현실적 가능성과 대안 제시 여부를 진단한다.
-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과 관련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 및 통합 영역을 설정한다.
- 동일한 과정을 통해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정책 분석 틀을 확립한다.

2) 국내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사례 분석과 시사점 도출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각각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공공 전달체계의 범위 및 진단 기준을 설정한다.
-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을 기준으로²⁾ 현 아동정책 전달체계를 진단, 평가하고 개선 및 보완점을 도출한다.
-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의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기준으로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를 진단, 평가하고 개선 및 보완점을 도출한다.
-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기준으로 현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진단, 평가하고 개선 및 보완점을 도출한다.

2) 본래 제2차 기본계획은 2024년에 종료되었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은 2025년부터 시행될 제3차 계획이어야 타당하다. 다만 제3차 계획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부득이하게 2차 계획을 분석하였음을 밝힌다.

○ 일본, 독일, 영국, 미국, OECD 및 EU 국가 등 국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 국내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3)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 및 재구조화 방안 도출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 및 재구조화 방안 도출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시군구 담당자 등 관계 기관 의견 수렴, 학계 등 1, 2차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해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생애주기적 조정 및 통합 전달체계 구축 모델을 도출한다.

4)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생애주기적 통합 전달체계 구축 모델 발굴 및 제안

○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통합 전달체계가 어떤 모델로 설정, 구현되든, 정책 대상인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로 기능해야 한다는 기본 원칙을 바탕으로, '서비스 공급자' 측면에서 전문성, 책임성, '서비스 자체' 측면에서 접근성, 평등성, 적절성, 유연성, 지속성, 통합성, 전체성, '서비스 수요자' 측면에서 개별성, 완결성, 포괄성 등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 및 통합 전달체계 구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12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 현재 아동 담당 보건복지부, 청소년 담당 성평등가족부, 청년 담당 국무조정실의 조정 및 통합과 관련한 세 가지 가능한 방안을 현실성, 안정성, 전문성 그리고 지속성 등의 측면에서 장·단점을 분석, 제시한다.

첫째, 통합 없이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주무 부처의 통합 없이 가능한 경우, 기능별 통합을 지향하는 모델이다.

둘째,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하나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을 선택할 경우, 가능한 구체적인 통합 모델은 두 종류다. 1)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중 하나로 통합하는 모델, 2) 새로운 주무 부처를 신설하여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모델, 이 두 유형의 통합 모델 각각에 대해, 그 현실적 가능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장·단점을 분석 제시한다.

셋째,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통합하되,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주무 부처로 통합

하고,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2+1’의 방안이다. 이 방향의 구체적인 통합 모델 역시 둘이다. 1) 청소년과 청년 전달체계를 통합하고(청소년·청년정책), 아동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모델, 2) 아동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고(아동·청소년), 청년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모델, 이 두 유형의 통합 모델 각각에 대해서 장·단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 제시한다.

- ① (1안) 현행대로 보건복지부(아동), 성평등가족부(청소년), 국무조정실(청년)이 중심이 되어 각각의 전달체계는 유지하되,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 ② (2안)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하나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
 - (2-1안)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중 하나로 통합하는 모델
 - (2-2안)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새로운 주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하는 모델
- ③ (3안)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통합하되,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고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 (3-1안) 아동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되(청소년·청년정책),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모델
 - (3-2안) 아동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고(아동·청소년정책),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모델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기본 원칙인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가 되기 위한, 빅데이터 센터 및 통합 정보공유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4.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 규정에 관한 선행연구 분석,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0~2024) 및 제3차 아동정책 기본계획(안)(2025~2029),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과 관련한 다양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한 정책 영역을 설정한다.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실태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한다. 중앙행정기관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및 17개 지방자치단체 등 조직체계 분석 및 행정데이터를 활용하여 2차 자료를 분석한다.

2) 전문가 자문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전달체계 개선 방안 연구를 위해 연구 방향과 내용 및 분석 기준 정립, 의견 조사지 검토, 현재 시행 중인 정책 전달체계 진단 및 제도 개선 보완 방안,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생애주기적 조정 및 통합 전달체계 구축 모델 발굴에 대한 자문회의를 실시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청년의 당사자성 원칙을 기초로 분절적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생애주기적 연계성 사례를 자립준비청년 관련 정책의 문제점, 아동·청소년·청년 전환기 정책 전달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전달체계 개선점을 도출하였다.

횟수	자문영역(내용)	자문진	비고
1차	연구 방향 및 내용 구성	공무원 등 행정계 전문가 · 학계 및 현장 전문가	대면 및 서면 자문
2차	연구의 분석틀 설정		
3차	1차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 내용 검토		
4차	2차 전문가 의견조사 설문지 내용 검토		
5차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생애주기적 조정 및 통합 전달체계 구축 모델 발굴		
6차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 및 통합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개선 방안		
7차	정책 제언 검토		

3) 사례 연구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전달체계를 조정 및 통합한 다양한 일본, 독일, 영국, 미국, OECD 및 EU 국가 등 국외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국내 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한다. 국외 사례 선정 기준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다섯 가지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 및 통합 전달체계 모델에 해당하는 사례를 우선순위로 하여 대상국가를 선정하였다. 예를 들어 대상별 조정 및 통합 정책 전달체계 구축 사례, 프로그램 및 서비스 통합을 실시한 사례, 아동·청소년·청년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사례 등이다.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전달체계를 통합한 일본, 독일, 영국, 미국 등의 사례를 심층 분석하고, 그 외 OECD 및 EU 국가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 및 국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비교·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4) 전문가 의견조사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 및 재구조화 방안 도출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17개 시도, 시군구 담당자 등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아동권리보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중앙청년지원센터, 청년미래센터 등 관계 기관에 소속했던 전문가를 포함하여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로부터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생애주기적 조정 및 통합 전달체계 구축 모델을 도출하였다. 조사 내용은 법적·제도적 쟁점 및 영역 설정,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의 연속성 확보 및 통합 필요성, 기존 전달체계의 강점 유지 및 문제점 개선,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생애주기적 조정 및 통합 전달체계 구축 모델에 대한 장점 및 단점 등이다. 전문가 의견조사는 조사 내용에 따라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하여 질적·양적 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전문가 의견조사는 관련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메일을 통해 질문지를 발송 및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회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면제를 승인받은(202505-HR-고유-011) 후 실시하였다. 1차 전문가 의견조사는 2025년 6월 4일부터 6월 16일까지 이루어졌다. 조사 참여에 앞서 전문가 패널들은 연구의 목적·내용, 참여 절차·방법 등이 적힌 연구 참여 설명문을 읽은 뒤,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후 조사에 참여했다. 이후 2차 조사는 2025년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구분	1차 전문가 의견조사	2차 전문가 의견조사
조사 기간	2025.6.4.~6.16.	2025.7.29.~8.5.
조사 대상	전문가 15명	
조사 방법	이메일을 통한 질문지 발송 및 회신	
조사 내용	현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선결과제, 전달체계 개선안의 장단점 등	
비고	IRB 심의면제 승인(202505-HR-고유-011)	

5)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및 정책토론회 개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 및 재구조화 방안 도출을 위해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전달체계 분야의 10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워킹그룹을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각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주요 논의 주제는 법적·제도적 쟁점 및 영역 설정, 생애주기적 관점에서의 정책의 연속성 확보 및 통합 필요성, 기존 전달체계의 강점 유지 및 문제점 개선, 국내 정책 추진의 실현 가능성 제고 및 주요 국가들의 시대적 흐름의 적정성 검토, 정책의 형평성 및 보편성 강화 등이다.

6)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 도출을 위한 관련 부처 협의회 개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으로 도출된 모델의 보완을 위해 관계 부처는 물론 지자체 정책 담당자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회차	주요내용	관련 부처(과)	개최시기	비고
1차	연구의 방향 및 정책적 수요	성평등가족부		
2차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으로 도출된 모델에 대한 보완 방안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지방자치단체 등	6월~8월	

이상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전달체계 통합 관련 다양한 ‘국내외 사례 분석’과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한 전문가 자문, 전문가 워킹그룹 및 정책토론회, 정책실무협의회 등은, 본 연구의 목적인 미래지향적 아동·청소년·청년정책 공공 전달체계 구축 및 거버넌스 개선 방안을 위한 실질적 기초자료로서 다양한 통합 가능 모델을 발굴 및 제안하였다.

○ ————— 제2장 이론적 배경

- 1.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 2. 아동·청소년·청년
정보공유체계 현황
- 3.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관련 선행연구 고찰

1.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³⁾

현재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는 국무총리실 소속의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그리고 성평등가족부 소속의 청소년정책위원회가 컨트롤 타워로서 각각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아동)와 성평등가족부(전 여성가족부(청소년)) 그리고 국무조정실(청년)이 주무 부처로 기능하고 있다. 다만 청소년정책위원회의 경우는 위원장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이고 성평등가족부 소속으로 분리되어 있다.

일차적으로 행정체계의 컨트롤 타워를 보면 아동복지법 제10조①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이하 아정위)의 경우 2004년 위원회 설립부터 2025년 현재까지 실제적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설립 후 2023년까지 17번만 개최되었는데, 이는 1년에 1회도 개최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며, 게다가 2008년 이후 개최되지 않아 2011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우려를 표명하며 각 부처의 정책 분절에 대한 정책 조정 개선의 필요성을 권고한 후에야 운영이 재개되었다. 그나마 2023년 제17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개최가 마지막인 상황이다. 내용적으로도 단순히 아동정책 비전 또는 추진 방향 발표회 정도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정책조정 기능의 주체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음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청정책위) 역시 생산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일단 국무총리실이 아닌 성평등가족부에 속하고,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어, 다른 두 위원회와의 정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2022년 제4기 청소년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의 관련 정책을 논의·심의 및 자문하였으나, 불규칙한 위원회 개최와 여러 정치·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정책조정 기능 주체로서의 실제적 기능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애주기적 측면에서 아동에

3) 이 절은 성윤숙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서 청소년으로, 청소년에서 청년으로의 이행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두 위원회와의 유기적 연결망이 필수라는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청정위)는 비교적 최근인 2020년에 출범했고, 국무총리실 내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있다. 세 위원회 중 가장 활발하게 생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최근인 2025년 4월에도 제15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청년정책 339개 사업(28조 원)을 확정하는 바 있다.⁴⁾ 정리해보면, 아정위와 청정위의 실효적 활성화 및 청정위를 포함한 세 위원회의 수평적 연계성 확보가 요구된다. 또 생애주기적 측면에서 세 위원회의 상호 교류, 연계 및 기능적 융합이 가능한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에 있어 행정체계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아동)와 성평등가족부(청소년) 그리고 국무조정실(청년)의 업무 담당 부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 주무 부처별 아동·청소년·청년 업무 담당 부서

구분	부서명		
	아동	청소년	청년
보건 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 인구아동정책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 인구아동정책관
	-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자립과, 아동학대대응과		- 청년정책팀/ 아동보호자립과
성평등가 족부 (여성 가족부)	성평등정책실 - 안전인권정책관 -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청소년가족정책실 - 청소년정책관/권익증진국 -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안전과, 청소년자립지원과 - 학교밖청소년지원과, 청소년보호환경과/ 아동청소년성보호과	청소년가족정책실 - 가족정책관 - 가족친화서비스과
	국무 조정실	사회조정실 - 사회복지정책관	청년정책조정실 - 청년정책기획관, 청년정책협력관

* 출처: 1) 국무조정실 누리집. 조직도·직원검색. <https://www.opm.go.kr/opm/office/group01.do>에서 2025년 2월 12일 인출.
2) 보건복지부 누리집. 조직도. <https://www.mohw.go.kr/menu.es?mid=a1060401000000>에서 2025년 2월 12일 인출.
3) 보건복지부(2024). 2024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세종: 보건복지부.
4) 성평등가족부 누리집. 조직 및 기능. https://www.mogef.go.kr/mi/osg/mi_osg_s001.do에서 2025년 10월 10일 인출.

4)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2025.04.02.). '25년 청년정책 339개 사업(28조 원) 확정.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82179>에서 2025년 5월 22일 인출.

아동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아동정책과에서 중앙 실무를 담당하고, 산하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특이점은 아동보호자립과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는 것인데, 이는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자립준비청년) 관련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지원이 필요한 아동(자립준비청년) 관련 업무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자립준비청년 업무를 아동보호자립과에서 담당하였으나 2025년 1월부터 청년정책팀으로 부서가 조정되었다. 또한 최근 '가족돌봄 등 위기 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에서 의결되었으며(2208490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 가족돌봄 아동은 청년정책팀에서 업무 총괄할 예정이다. 청소년의 경우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활동진흥과에서 중앙 실무를 담당하며, 산하 기관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을 지도·감독하고 있고, 청소년자립지원과에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을 지도·감독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의 경우는 국무조정실 내 청년정책조정실이 중앙 실무 담당으로,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지도·감독하고 있다. 이상 행정체계의 중앙 실무 차원에서 보면 청년의 경우만 주무 부처 없이 국무조정실이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다만 복지 영역을 제외하고 청년의 고용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주택 관련해서는 국토교통부, 또 가족돌봄, 은둔·고립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주무 부처인 형국이다. 따라서 청년의 경우 주무 부처가 파편화된 상태로 분절되어 있다. 물론 이러한 상태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이 실효적으로 구현되고 있다면 굳이 하나의 통일된 주무 부처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어느 방향이 적절할지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다음으로 정책 전달체계에서 주무 부처 다음인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업무 담당을 부서별로 간략히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1-2. 17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업무 담당 부서

구분	부서명		
	아동	청소년	청년
서울 특별시	여성가족실	평생교육국	미래청년기획관
	- 아동담당관 - 아동정책팀, 아동학대대응팀, 아동보호팀, 아동지원팀, 아동시설팀	- 청소년정책과 - 청소년정책팀, 청소년시설팀, 청소년상담팀, 청소년시설평가팀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사업담당관 - 청년정책팀, 청년참여팀, 청년도약팀, 청년협력팀/ 청년활력팀, 청년공간팀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업무 총괄), 청년생활지원팀, 청년금융팀
부산 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	청년산학국
	- 아동청소년과 - 아동복지팀, 아동친화팀	- 아동청소년과 - 청소년정책팀, 청소년지원팀	- 청년정책과 - 청년정책팀, 청년일자리팀, 청년생활팀, 청년문화팀, 청년활동팀
대구 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청년여성교육국	청년여성교육국
	- 교육청소년과 - 아동복지팀, 아동친화팀	- 교육청소년과 - 청소년정책팀, 교육지원팀	- 청년정책과 - 청년정책팀, 청년활동팀, 청년진로팀, 청년생활팀
인천 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	청년정책담당관
	- 아동정책과 - 아동정책담당, 아동돌봄담당, 아동복지담당, 아동학대대응담당	- 청소년정책과 - 청소년정책담당, 청소년안전망담당, 청소년지원담당	- 청년정책담당, 청년지원담당, 청년일자리담당
광주 광역시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	교육청년국
	- 아동청소년과 - 아동친화팀, 아동보호팀	- 아동청소년과 - 청소년정책팀, 청소년복지팀	- 청년정책과 - 청년정책팀, 청년도전지원팀, 청년일자리팀
대전 광역시	복지국	교육정책전략국	교육정책전략국
	- 아동보육과 - 아동정책팀, 아동보호팀	- 여성가족청소년과 - 청소년지원팀	- 청년정책과 - 청년정책팀, 청년활동팀, 청년지원팀

구분	부서명		
	아동	청소년	청년
울산광역시	복지보훈여성국	복지보훈여성국	기업투자국
	- 복지정책과	- 여성가족청소년과	- 대학협력과
	- 아동복지팀, 아동보호팀	- 청소년팀	- 청년정책팀
세종특별자치시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	기획조정실
	- 아동청소년과	- 아동청소년과	- 청년정책담당관
	- 아동친화정책팀, 아동보호팀, 아동지원팀	- 청소년팀	- 청년정책팀, 청년지원팀
경기도	여성가족국	미래평생교육국	미래평생교육국
	- 아동돌봄과	- 청소년과	- 청년기획과
	- 아동정책팀, 언제나돌봄팀, 아동보호팀, 아동학대대응팀, 아동자립지원팀	- 청소년정책팀, 청소년활동팀, 청소년안전망팀, 청소년자립보호팀	- 청년정책팀, 청년지원팀, 청년일자리팀
강원특별자치도	복지보건국	복지보건국	경제국
	- 복지정책과	- 여성청소년가족과	- 일자리청년과
	- 육아지원팀, 아동보호팀	- 청소년팀	- 청년정책팀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양성평등가족정책관	기획조정실
	- 복지정책과	- 청소년팀	- 인구청년정책담당관
	- 아동복지팀		- 청년지원팀
충청남도	인구전략국	인구전략국	청년정책관
	- 인구정책과	- 여성가족정책과	- 청년정책팀, 청년일자리팀, 청년소통팀, 청년자립팀
	- 아동돌봄팀, 아동보호팀	- 청소년정책팀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	특별자치교육협력국	기획조정실
	- 여성가족과	- 교육협력과	- 인구청년정책과
	- 아동보호팀	- 청소년팀	- 청년정책팀, 청년활동지원팀
전라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인재육성교육국	인구청년이민국
	- 아동복지팀, 아동보호팀	- 희망인재육성과	- 청년희망과
		- 청소년지원팀	- 청년정책팀, 청년지원팀, 청년일자리팀
경상북도	저출생극복본부	저출생극복본부	지방시대정책국
	- 아이돌봄과/교육청소년과	- 교육청소년과	- 청년정책과

구분	부서명		
	아동	청소년	청년
	- 아이돌봄정책팀, 아이돌봄사업팀/아동정책팀	- 청소년팀	- 청년정책팀, 청년일자리팀, 청년복지권익팀, 청년문화소통팀
경상 남도	복지여성국	교육청년국	교육청년국
	- 보육정책과	- 청년정책과	- 청년정책과
	- 아동정책파트, 아동시설파트	- 청소년파트	- 청년정책담당, 청년성공파트, 청년참여파트
제주 특별 자치도	복지가족국	복지가족국	기획조정실
	- 아동보육청소년과	- 아동보육청소년과	- 청년정책담당관
	- 아동친화팀	- 청소년팀	- 청년활동지원팀, 청년정책팀, 청년주권팀

* 출처: 1) 서울특별시 누리집. 조직도. <https://org.seoul.go.kr/org/orgChart.do>에서 2025년 10월 10일 인출.
2) 부산광역시 누리집. 조직도. <https://www.busan.go.kr/bhorganization01>에서 2025년 10월 10일 인출.
3) 대구광역시 누리집. 행정조직도. https://www.daegu.go.kr/index.do?menu_id=00000248에서 2025년 10월 10일 인출.
4) 인천광역시 누리집. 시(市) 조직도. <https://www.incheon.go.kr/IC040221>에서 2025년 10월 10일 인출.
5) 광주광역시 누리집에서 2025년 10월 10일 인출.
6) 대전광역시 누리집. 대전시 조직도. <https://www.daejeon.go.kr/drh/drhOrganization.do?menuSeq=6376>에서 2025년 10월 10일 인출.
7) 울산광역시 누리집. 울산광역시 조직도. <https://www.ulsan.go.kr/u/rep/contents.ulsan?mId=001005007001010000>에서 2025년 10월 10일 인출.
8)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 분청 조직도. https://www.sejong.go.kr/kor/sub01_010101.do#sub01_010101에서 2025년 2월 11일 인출.
9)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조직도. <https://www.gg.go.kr/org/orgChart.do?menuId=1808>에서 2025년 10월 10일 인출.
10)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 조직도. <https://state.gwd.go.kr/portal/introduce/guidance/organization>에서 2025년 10월 10일 인출.
11) 충청북도 누리집. 조직도. <https://www.chungbuk.go.kr/www/contents.do?key=478>에서 2025년 10월 10일 인출.
12) 충청남도 누리집. 조직도. <https://www.chungnam.go.kr/cnportal/main/contents.do?menuNo=500984>에서 2025년 10월 10일 인출.
13) 전북특별자치도. 분청 조직도.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1003001000에서 2025년 10월 10일 인출.
14) 전라남도 누리집. 조직도. <https://www.jeonnam.go.kr/contentsView.do?menuId=jeonnam0601010000>에서 2025년 10월 10일 인출.
15) 경상북도 누리집. 분청 조직도. https://www.gb.go.kr/Main/page.do?mnu_uid=6851&LARGE_CODE=720&MEDIUM_CODE=60&SMALL_CODE=40&SMALL_CODE2=20에서 2025년 10월 10일 인출.
16) 경상남도 누리집. 조직도.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37001001000에서 2025년 10월 10일 인출.
17)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조직도. <https://www.jeju.go.kr/jeju/jeju/org/organization.htm>에서 2025년 10월 10일 인출.

표 II-2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17개 지방자치단체는 각기 명칭은 다르나 동일한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있다. 그리고 전달체계가 시군구로 내려가면, 지역마다 다양한 명칭의 아동보호팀이 있고, 가족정책과 등 청소년 보호, 복지 업무 담당 부서가 있으며, 또 청년정책과 등 다수의 청년 업무 담당 부서들이 이어받아 최종적으로 정책 대상에게 정책서비스를 전달하고 있다. 이상 행정전달체계를 전체적으로 보면 적절한 구조적 틀은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업무의 실효성 측면에서 보면 아쉬운 부분이 다수 보인다. 전달체계가 본질적으로 수요자 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의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기본적으로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이 다르고 복잡한 현실만으로도, 정확한 정책서비스 제공을 원하는 수요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수요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다음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에 있어 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면, 아동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 청소년은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그리고 청년을 위한 국무조정실 산하 중앙청년지원센터가 있다. 먼저 아동권리보장원은 직접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드림스타트를 지원한다.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지원본부 내 발달지원부가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사업을 총괄하고, 홍보하며 운영 실태를 평가하며 지원한다. 다만 지역아동센터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역아동센터 지원단의 지원도 받고 있다.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의 상단에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있으며 둘 다 성평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의 지도·감독을 받고 있다.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로 정책서비스를 전달하고, 이는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센터로 연계된다. 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서비스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이어지고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마지막 청년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대표하는 중앙청년지원센터의 정책서비스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여 전국 230개소의 청년센터로 직접 서비스가 연계된다. 다만 가족돌봄, 은둔·고립 청년을 위한 서비스는 현재 보건복지부 산하 전국 4개소(인천, 울산, 충북, 전북)의 청년미래센터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이상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행정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전체적으로 정리하면 [그림 II-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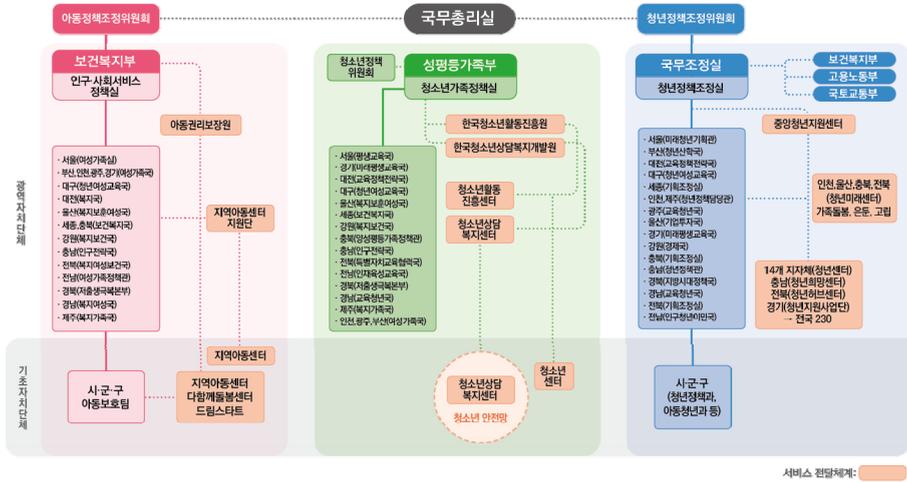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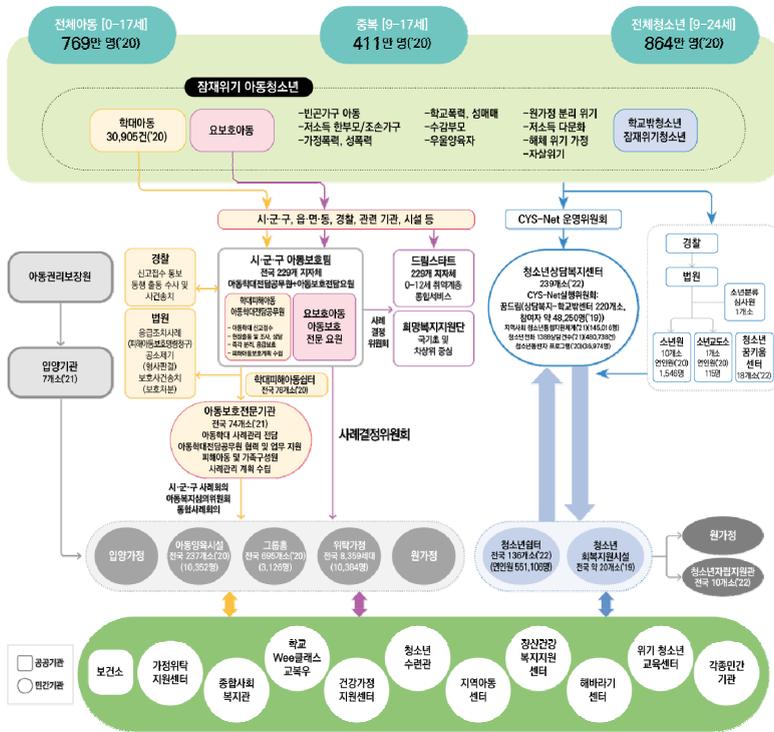


그림 II-1. 아동·청소년·청년 행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

아쉬운 점은, 아동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센터 같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전달체계가 결여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또 아동의 법률적 연령 규정과 연계되어, 보건복지부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의 아동보호자립과에서 자립아동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청년 복지 서비스를 일정 부분 담당하는 등, 청년 전달체계의 주무 부처가 분산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청년 전달체계는 복지 관련 주무 부처는 국무조정실이고, 보건복지부가 일부 담당하며, 주택과 고용은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로 분산되어 있다. 정책영역과 내용의 방대함을 고려할 때, 하나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는 것이 능사는 아닐 것이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둔 논의의 장이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를 보면, 형식적인 틀은 중앙-광역자치체-기초자치단체로의 전달체계가 비교적 선명하게 구성되어 있으나,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연령의 중복문제와 공급자 중심 정책 구성으로 인하여 서비스의 분절성이 발생할 수 있다(류정희 외, 2022). 일례로 아동·청소년의 보호 체계를 구체화한 경우만 보더라도, 실제적 전달체계 구축의 어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



* 출처: 류정희 외(2022).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p.57에서 발췌 및 재구성.

그림 11-2.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

따라서 실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다양한 방향에서 의 심도 있는 고민과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범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을 전인격적으로 잘 성장시켜 청소년으로 이행하고, 청소년이 빠르게 성장하여 청년으로 이행하도록, 즉 생애주기적 연계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전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재구조화 여부는 물론 각 전달체계의 실제적 연계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제시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에 서 간과할 수 없는 영역은 ‘민관협의체’이다. ‘민관협의체’는 개별 지자체의 행정전달체계에 서 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연결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교량과 같은 역할을 한다. 이 ‘민관협의체’를 포함한 행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아동과 청소년, 청년 각각으로 분류하여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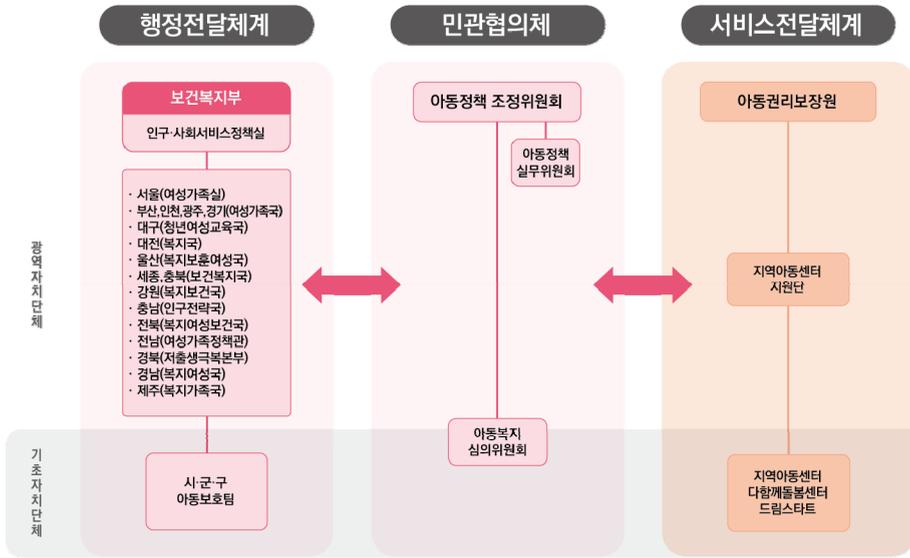


그림 II-3. 아동 행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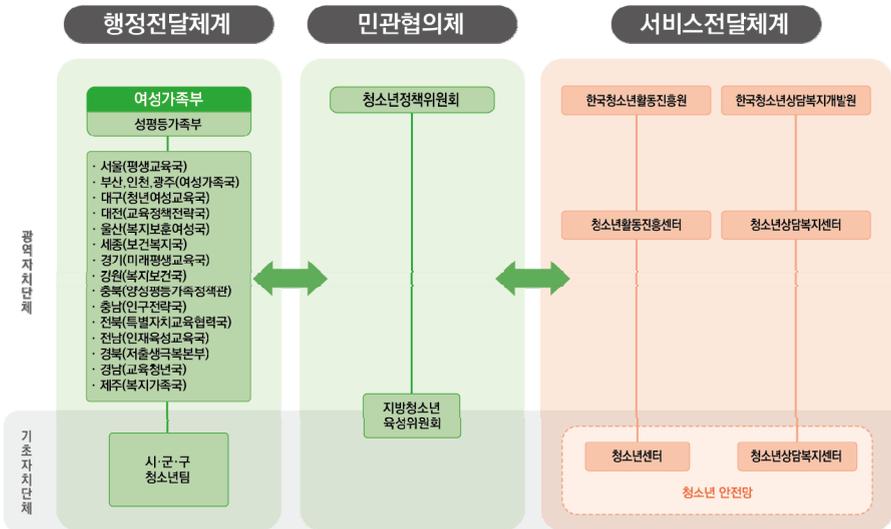


그림 II-4. 청소년 행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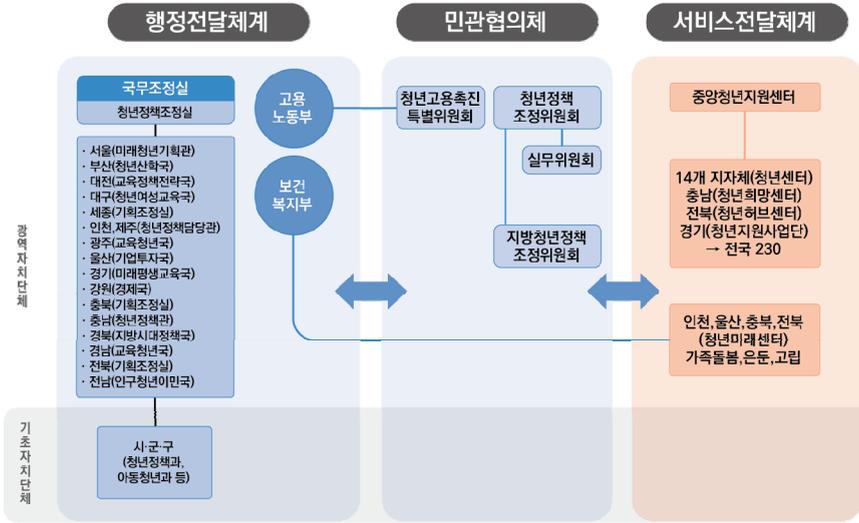


그림 11-5. 청년 행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

이상, 전달체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포괄적 자료 수집과 분석, 그에 따른 상시적 진단과 전달체계의 보완, 개선이 필요하다. 또 정책 대상자의 정보 접근 가능성 제고, 원하는 제반 정보의 통합 정리, 제공이 필요하며, 시스템 내에서의 정책 신청은 물론 진행 상황의 가시적 확인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정책 대상의 복잡한, 다층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여러 부처의 자원에 대한 연계 통합 관리는 물론 대상의 서비스 요청 및 활용 이력 등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각 부처에서 운용하는 정보공유체계 현황의 정리 및 진단이 필요하다.

2. 아동·청소년·청년 정보공유체계 현황⁵⁾

표 II-3. 아동·청소년·청년정책 관련 정보공유 포털

번호	포털명	설명	운영주체
1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법정부)	법정부 차원의 복지 관련 통합 포털로, '행복이음'으로 연계되어 복지 업무 담당자가 관리정보를 기반으로 복지 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복지로'로 연계되어, 복지 대상자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	복지로	각 부처의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검색에서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일반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행복 이음	서비스 지원 대상자 이력 및 자격 관련 정보의 통합 관리, 그리고 지자체 복지 업무 지원을 위해, 개인별 가구별 DB로 구축한 중앙 통합 정보시스템(공무원 등 전용)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4	아이 사랑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 및 전문가 상담, 시간제보육 예약, 입소대기신청, 보육료 결제, 어린이집이용불편신고 등 어린이집 이용 관련 어린이집 이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유아양육 부모를 위한 대표 포털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5	e청소년	대한민국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8조에 따른 활동, 복지, 보호의 통합 정보서비스 시스템	성평등가족부,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6	청소년 1388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의2에 따라 청소년의 고민상담, 상담·복지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지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청소년 지원 종합 포털	성평등가족부,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7	운동 청년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 일자리, 교육, 문화에 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한국고용정보원

* 출처: 1) 한국사회보장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법정부) 소개. <https://www.ssis.or.kr/lay1/S1T750C767/contents.do>에서 2025년 9월 8일 인출.
 2) 복지로. 복지로 소개. <https://www.bokjiro.go.kr/ssid-tbu/twatwa/wifareNw/selectWifareNwSubMain.do>에서 2025년 9월 8일 인출.
 3)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https://www.ssis.or.kr/lay1/S1T749C765/contents.do>에서 2025년 9월 20일 인출.
 4) 아이사랑. 소개. <https://www.ssis.or.kr/lay1/S1T1793C1794/contents.do>에서 2025년 9월 8일 인출.
 5) e청소년. e청소년 소개. <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eYouthIntroForm.yt?curMenuSn=395>에서 2025년 9월 8일 인출.
 6) 청소년 1388. 청소년 1388이란?. https://www.1388.go.kr/OCC/YTOSP_SC_OYY_01에서 2025년 9월 8일 인출.
 7) 운동청년. 운동청년 소개. <https://www.youthcenter.go.kr/youthIntro/introduce/introAbout>에서 2025년 9월 8일 인출.

5) 이 절은 성윤숙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⁶⁾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은 범정부 차원의 복지 관련 통합 포털이다. 홈페이지를 보면, '범정부 각 부처 및 정보 보유기관 등에서 제공하고 있는 7개 부처, 170개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정보와 지원 대상자의 제반 정보를 통합·운영 및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복지 업무 담당자의 효율적 복지 행정 업무 수행 및 복지 대상자에게로의 적절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행복이음'을 통해 각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이 서비스 대상 및 내용,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또 '복지로'에도 연계되어, 일반 국민이 직접 서비스를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1) 주요서비스

- 복지사업 정보 관리 - 행복이음[행정망]과 일반 국민(복지로)에게 제공
- 복지 지킴이 - 복지 대상자의 중복, 부적정한 복지서비스 수급 사전 방지
- 업무처리 지원 - 복지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제반 정보를 확인하여 명확한 복지 대상자 선정 및 효율적인 복지 업무처리 지원
- 서비스 의뢰 - 복지 수요자에게 복지서비스 안내, 서비스 의뢰 지원
- 자격 및 수급이력통합DB - 부처별로 분산된 복지서비스 정보의 연계, 통합 관리

(2) 운용 효과

- 수요자 중심 복지서비스 제공
- 복지 행정업무의 효율화
- 복지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및 복지재정의 효율적 관리

6) 한국사회보장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소개. <https://www.ssis.or.kr/lay1/S1T750C767/contents.do>에서 2025년 9월 8일 인출.

(3) 시스템 구성도



* 출처: 한국사회보장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법정부) 소개. <https://www.ssis.or.kr/lay1/S1T750C767/contents.do>에서 2025년 9월 8일 인출.

그림 II-6.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성도

2) 복지로7)

복지로는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운영한다. 각 부처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검색에서 신청까지 실질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민국 복지 포털이다.

(1) 주요서비스

- 맞춤형급여안내(복지멤버십)
- 복지 지급을 통해, 개인의 복지 자격, 신청 및 수급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 확인

7) 복지로. 복지로 소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wa/welfareNw/selectWelfareNwSubMain.do>에서 2025년 9월 20일 인출.

- 개인 상황 맞춤형 다양한 복지서비스 검색 및 서비스 정보 확인
- 증명서 발급, 민원 서비스 등의 편리한 온라인 신청
- 복지 지도로 위치 또는 지역 기반 복지시설 및 기관 정보 제공
- 복지위기알림을 통한 복지 위기 상황에서의 지원
- 개인, 기관의 복지 부정수급에 대한 익명 또는 실명 신고

(2) 운용 효과

- 복지 접근성 및 효율성 제고
- 소득 보장 및 빈곤 완화
-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활성화

3) 행복이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⁸⁾

행복이음은 사회복지 관련 급여, 서비스 대상자 자격 및 이력에 관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시군구별 새울행정시스템의 지원시스템 중 복지 분야만 분리하여 가구별, 개인별 DB를 중앙에 통합 구축하였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복지업무 처리를 지원하고 있다.

(1) 주요서비스

- 복지대상자 자격 및 이력 관리
- 복지급여 지급 관리
- 부정수급 예방, 차단, 점검, 환수 및 중복지원 차단, 누락 서비스 안내 등 복지업무 지원
- 수급 대상자 발굴

8)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https://www.ssis.or.kr/lay1/S1T749C765/contents.do>에서 2025년 9월 20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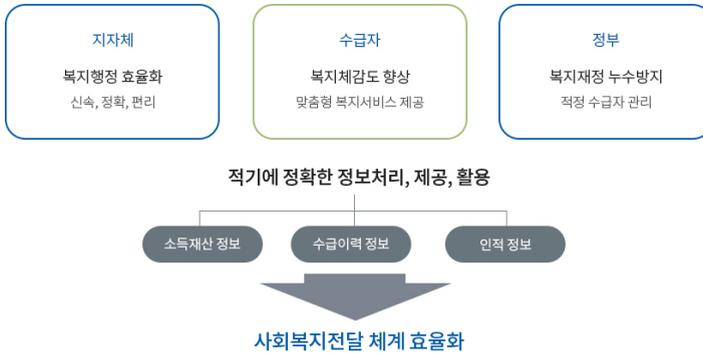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https://www.ssis.or.kr/lay1/S1T749C765/contents.do>에서 2025년 9월 20일 인출.

그림 II-7. 행복이음 주요서비스

(2) 운용효과

복지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관련 자료 및 서비스 이력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함으로써 수급자 선정의 정확성 및 담당 공무원의 업무 수행 편의성을 제고한다.

- 일회외의 방문 신청으로 신청자 개인과 가족 요구의 종합적 파악을 통해 가능한 제반 서비스를 안내할 수 있다.
- 사업별로 분리된 소득·재산 조사 방법의 통일 및 공적 자료의 전산 연계로 민원 처리 기간이 단축된다.
- 복지 수급자의 개인별·가구별 통합 관리로 복지서비스의 필요 대상을 정확히 선정할 수 있다.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https://www.ssis.or.kr/lay1/S1T749C765/contents.do>에서 2025년 9월 20일 인출.

그림 II-8. 행복이음 주요효과

(3) 시스템구성도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https://www.ssis.or.kr/lay1/S1T749C765/contents.do>에서 2025년 9월 20일 인출.

그림 11-9. 행복이음 시스템구성도

4) 아이사랑⁹⁾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 및 전문가 상담, 시간제 보육 예약, 입소대기신청, 보육료 결제, 어린이집 이용 불편 신고 등 어린이집 이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대표 포털이다.

(1) 주요서비스

-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 및 전문가 상담
 -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 제공 및 전문가 상담서비스
- 어린이집 이용 관련 서비스
 - 어린이집 찾기(지도서비스 및 정보공시), 입소대기, 보육료 결제,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이용 불편 신고

9)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아이사랑 소개, <https://www.ssis.or.kr/lay1/bbs/S1T1793C1795/G/523/list.do>에서 2025년 9월 20일 인출.

(2) 운용효과

-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 및 전문가 상담 등 예비부모 및 보호자의 양육서비스 채널 제공
- 어린이집 관련 정보(위치, 어린이집특성, 서비스인증정보 등) 제공으로 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권 지원
- 입소대기 신청, 보육료 결제, 시간제 보육 이용 서비스 제공으로 어린이집 이용 편의성 제공

(3) 시스템구성도



* 출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아이사랑 소개. <https://www.ssis.or.kr/lay1/bbs/S1T1793C1795/G/523/list.do>에서 2025년 9월 20일 인출.

그림 II-10. 아이사랑 시스템구성도

5) e청소년¹⁰⁾

청소년활동정보서비스 ‘e청소년’은 대한민국 청소년을 위하여 청소년활동진흥법 제8조(청소년활동 정보의 제공 등)에 따라 활동, 복지, 보호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대표서비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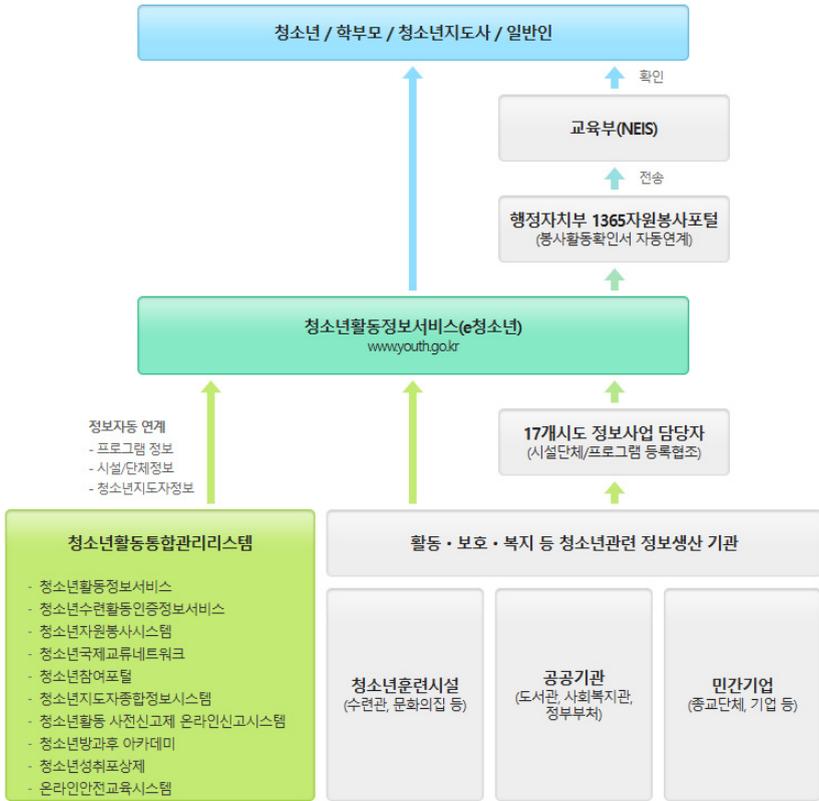
(1) 주요서비스

- 청소년수련시설 및 공공과 민간 시설의 활동 프로그램 확인
- 수련활동인증제나 사전신고제를 안전함이 인증된 활동 프로그램 확인
- 봉사활동을 검색 및 신청
- 성취포상제에 참여
- 청소년수련시설 종합 평가 및 안전 점검 결과 확인
- 활동, 복지, 보호 지원 정보의 통합적 확인

(2) 운용효과

- 다양한 활동 정보 제공 및 접근성 향상
- 자기 주도적 활동 참여 유도
- 청소년 정책의 효율적 운영 지원

10) e청소년. e청소년 소개. <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eYouthIntroForm.yt?curMenuSn=394>에서 9월 20일 인출.



* 출처: e청소년. e청소년 소개. <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eYouthIntroForm.yt?curMenuSn=394> 에서 9월 20일 인출.

그림 II-11. e청소년 소개

6) 청소년 1388¹¹⁾

청소년 1388은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청소년 지원 종합 포털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2조의2에 따라 성평등가족부 산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1388은 주변의 다양한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또 신청할 수 있으며, 365일 24시간 온라인 전문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11) 청소년 1388. 청소년 1388 소개. https://www.1388.go.kr/OCC/YTOSP_SC_OYY_01에서 2025년 9월 20일 인출.

(1) 주요 서비스

○ 청소년 고민상담

- 365일 24시간 편리하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비대면 상담 서비스 제공
- 우울, 불안 등 심리·정서적 문제나 폭력·학대 등 위기 상황의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요구와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업복귀나 사회진입을 도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지원

- 학습·정서·행동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상담과 치료, 보호와 교육 등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거주형 시설에서 인터넷·스마트폰 사용에 어려움을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치유, 활동, 보호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 가정 밖 청소년 지원

- 일정 기간 동안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며, 개인별 사례관리를 통해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응과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 진로교육, 필수교육, 한국 사회에 대한 기본 정보, 사회적 관계 향상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7) 온통청년¹²⁾

중앙부처와 광역·기초지자체에서 시행하는 3,000여 개의 모든 청년정책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로, 국무조정실에서 시범운영한 후 2025년 2월 21일 정식 개통했다. 온통청년은 청년정책에 대한 체계적·통합적 정보망 구축과 전문성 있는 정책 안내 및 상담(온오프라인) 및 지원으로의 연계를 통해 청년의 미래를 응원한다.

12) 온통청년. 온통청년 소개. <https://www.youthcenter.go.kr/youthIntro/introduce/introAbout>에서 2025년 9월 20일 인출.

(1) 주요서비스

- 청년정책 안내
- 청년센터 소개
- 청년상담실 소개
 - 실시간 청년정책, 전국 청년공간, 개인별 맞춤정보, 진로와 취업까지 다양한 유형의 상담을 통해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청년소식 안내

(2) 운용효과

- 정보접근성과 인식도 제고
- 생산적 효율적 청년 취업 정보 제공
- 청년 취업을 제고

(3) 전국 청년 플랫폼



* 출처: 온통청년. 전국 청년 플랫폼. <https://www.youthcenter.go.kr/youthApply/ythPortal/ythPortalMain>에서 9월 20일 인출.

그림 11-12. 전국 청년 플랫폼

3.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관련 선행연구 고찰¹³⁾

본 절에서는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각각의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보다는 이들 전달체계 간의 개선을 다룬 연구를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에 관한 연구는 2008년 중앙 단위의 아동·청소년정책 주무 부처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일원화하고, 통합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시기를 기점으로 활발하게 수행되었다. 이에 비해 청년정책의 전달체계까지 확대·포함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주로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를 다루는 연구에서 일부 청년정책이 함께 논의되고 있다. 따라서 연구 시점과 당시의 정책 기조를 고려하여 선행연구에서 논의하고 있는 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 개선 목적과 방향, 개선의 선결과제 등에 대해 살펴보고,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1)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성

다수의 연구에서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부처 간 분산과 산발적인 추진은 정책의 분절성으로 인해 서비스 중복 및 누락을 야기한다는 점이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다.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출생부터 자립까지의 세대를 포괄하는 연속성 있는 정책 추진이 정책의 상생 효과와 후속세대에 이익을 주는 누적효과를 가져온다는 견해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이혜원, 김성천, 오승환, 이태수, 정익중, 2009; 정익중, 2009). 실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중복 인프라에 의한 자원 낭비와 기관 간 협력 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부처가 각각 다르고, 정책 간 중복되거나 비슷한 거버넌스와 전달체계 상의 제도적 장치와 프로그램이 많아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어렵고, 각 부처의 예산이 중복 사용되거나, 동일한 대상에게 유사한 지원이 제공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총괄·조정 기구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지방위원회를 비롯하여 공공 전문 인력으로서 아동복지 전담공무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청년정책 책임관, 민간 지역위원으로서 아동위원과 청소년지도위원 등이 존재한다. 또한 연구와 조사 일환으로 매 3년 주기로 아동,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매 2년 주기의 청년의 삶 실태

13) 이 절은 문호영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조사가 각각 실시되고 있다. 아울러 중앙 수준은 물론 지방 수준에서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년지원센터 등 전달체계 상의 기구들과 아동친용시설, 청소년시설 및 청년시설 등이 각각 분산 설치 내지 운영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경우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가 각각 유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비스 내용, 대상, 전달체계, 예산 등 모든 부분에서 중복되고 있다. 이처럼 부처별 칸막이 행정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이 여러 부처에서 따로 추진되다 보니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과 정책 혼선이 빚어지고 그 결과 정책 대상인 아동·청소년 입장에서는 어떤 부처에서 어떤 지원을 받는지 알기 어렵고, 부처 간 협업 부재로 인한 빈틈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가 분산 운영되다 보니, 공공부문의 역할이 미약하고 민간기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아동복지법」에 의하면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보호조치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 아동복지센터의 소관이지만, 실제로는 시군구의 아동복지담당 공무원 수가 매우 적고 다른 업무와 중복 수행되고 있다. 청소년정책 전달체계에서도 시도 수준의 청소년활동과 청소년상담복지의 주요 센터들이 민간에 의해 위탁 운영되는 등의 실정이다. 이러한 공공 영역에서의 체계적 접근이 부족하고 부실한 공공 행정 상황은 아동, 청소년 및 청년정책과 지원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에 실질적으로 2008년에는 아동·청소년정책의 주무 부처를 일원화하는 등 행정조직과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하지만, 주무 부처의 물리적 통합이 곧 정책 수요자에 대한 실질적 통합서비스의 제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었다(길은배, 2009; 정익중, 2009). 예컨대, 아동·청소년의 돌봄 정책은 부처가 통합된 이후에도 기존의 각 부처에서 추진되었던 사업이 그대로 유지·운영되면서 오히려 전달체계의 혼선을 일으켰고, 서비스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문성호, 임영식, 2009).

또한 아동·청소년 복지 서비스와 관련된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지방행정조직에 의한 사업 수행 구조상 체계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총괄 중심축이 없는 분야별 병렬적 구조로 인해 서비스 효율성이 떨어지며, 민간 위탁 중심의 운영으로 공공성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김미숙 외, 2009; 보건복지가족부, 2008; 이혜원 외, 2009:91에서 재인용).

중앙정부와 달리 지방정부 수준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정책 사업이 주무 부처와 상관없이 여성가족, 미래 혹은 평생교육 등의 업무에 나뉘어 혼재되어 있다.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과 사업은 크게 중앙정부와 같이 아동, 청소년, 청년이 제각각 다른 본부나 과 수준에서 시행되는 체제, 아동과 청소년정책과 사업이 함께 시행되고 청년정책과 사업이 별도로 시행되는 체제 그리고 아동정책과 사업이 별도로 청소년과 청년정책과 사업이 통합 시행되는 체제 등으로 혼재하며 혼란을 겪고 있다. 나아가 이런 혼란은 결국 정책 수요자들에게 일관성 있는 정책 집행과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할 수 있다. 또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전달체계 문제는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아동복지 종합조정체계가 없다는 점에서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다시 말해 시도나 시군구에 아동·청소년정책을 통합적으로 총괄 조정하고 관련 기관들을 연계하는 상시적인 협의체나 전담조직이 부족하다. 그 결과 중앙에서 수립한 계획이 지방에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거나, 지자체별로 정책 이행 역량에 큰 차이가 나고 있다. 실제로 많은 기초 지자체에서는 청소년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조차 없거나 1~2명 내의 소수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아동·청소년 복지의 최일선 집행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의 재정지원이나 인력 확충이 따라주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이다. 결국 중앙-지방 간 조율 미흡으로 정책 전달의 공백과 중복이 방지되고, 정책의 전국적 균형성과 통일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정한 기준과 계획이 있어도 지방에서는 재원이나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실행을 못하거나, 반대로 일부 지방은 독자사업을 추진하며 중앙과 엇박자를 내는 경우도 있다.

이에 수요자 관점에서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 시점에 수행된 관련 연구들은 분절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통합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과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 전달체계의 전반적인 체질 변화가 요구되는 가운데, 새로운 역할과 기능의 변화 및 조정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길은배, 2009; 김미숙 외, 2009; 문성호, 임영식, 2009; 이혜원 외, 2009; 정익중, 2009). 이후 최근까지도 아동과 청소년,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분절성 및 연속성 부재, 이로 인한 정책 사각지대 발생과 서비스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류정희 외, 2022; 이상정, 김지민,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2020; 이상정, 김지민, 류정희, 조정우, 홍문기, 안은미, 2021).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정책과 함께 거론되는 청년정책은 주로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정책과 관련되며, 다양한 위기 상황 또는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체계 구축이 쟁점이 되고 있다(류정희

외, 2022; 이상정 외, 2021). 지자체 단위에서도 아동·청소년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청년정책이 고려되고 있는데, 특히 성인으로의 전환기 취약 청년 대상 지원 정책은 아동·청소년·청년정책으로 이어지는 전달체계 구축의 핵심 사항으로 꼽힌다. 취약 청년 대상 지원 정책은 보호 및 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에 비해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부족하고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정책 추진 방안 모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변금선, 이영주, 김기현, 장익현, 2023). 또한 관련 정책이나 지원 사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공식적인 온라인 경로 역시 오프라인 전달체계와 마찬가지로 소관 부처별로 다원화되어 대상별·분야별 분절적 운영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김승경, 김지연, 백혜정, 전현정, 김성아, 2024b). 아울러 보호 대상 아동·청소년과 시설 퇴소 청년에 관한 정보와 이력이 개별법에 따라 관련 부처에서 각각 관리·운영되는 정보시스템은 대상자 발굴 및 생애주기 관점을 견지한 지원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목되었다(김승경, 김지연, 백혜정, 전현정, 2024a; 김승경 외, 2024b). 이처럼 독립적이고 분절적인 정보체계는 결국, 공급자 중심의 개별 보호 체계 내 문제점과 경계를 넘어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한 통합 정책에서 정보공유의 필요성이 중요하게 거론되는 배경이 되었다. 그 밖에도 다른 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아동, 청소년, 청년 등 생애 전반기 정책을 관장하는 행정부처가 설치된 것에 반해, 우리나라 청년정책은 각 중앙행정기관에 별도의 행정조직을 두고 운영되고 있어, 이러한 개별적인 하위 전담 부서를 두는 현 체계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김기현, 2024; 김승경 외, 2024b).

표 II-4.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구분	주요 내용	선행연구
부처 간 분산 및 산발적 정책 추진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정책의 분절성으로 인해 서비스 중복 및 누락 야기 •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연속성 있는 아동·청소년정책 추진 필요 	이혜원 외(2009), 정익중(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연속성 부재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서비스 형평성 문제 	변금선 외(2023), 류정희 외(2022), 이상정 외(2020), 이상정 외(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의 통합이 곧 통합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음 	길은배(2009), 문성호, 임영식(2009), 정익중(2009)

구분	주요 내용	선행연구
중앙-지방행정조직 전달체계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지방행정조직의 체계성 및 전문성 결여, 서비스 효율성 하락, 공공성 미흡 	김미숙 외(2009), 보건복지가족부(2008)(이혜원 외, 2009:91에서 재인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시도-시군구-읍면동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새로운 역할, 기능 변화 및 조정 방안 모색 필요 	길은배(2009), 김미숙 외(2009), 문성호, 임영식(2009), 이혜원 외(2009), 정익중(2009)
정책 및 지원사업 정보의 분절적 운영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별 온라인 경로 다원화로 아동·청소년·청년 대상별·분야별 분절적 정보 제공 문제 	김승경 외(2024b)
대상자 정보 및 이력 관리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법 및 부처별로 아동·청소년·청년 보호 대상자 정보 및 이력을 독립적·분절적으로 관리·운영하여 대상자 발굴 및 생애주기적 지원 저해 	김승경 외(2024a), 김승경 외(2024b)
생애전반기 정책 관장 행정체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전반기 정책 관장 행정부처 설치 검토 필요 • 중앙부처별 청년정책 추진에 대한 적절성 검토 필요 	김기현(2024), 김승경 외(2024b)

2)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목적 및 방향

전달체계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어 온 개선 방안을 살펴보면, 크게 통합(integration)과 조정(coordination)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통합은 각각의 조직들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던 것에서 기존 조직들의 물리적인 통합으로 새로운 단일 서비스 조직을 만들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조정은 각 조직의 자원과 구조 등은 독립적으로 유지하면서 기관 간의 관계를 더 밀접하게 개선하는 것을 의미한다 (Morris & Lescohier, 1978; 김영중, 2007:387에서 재인용).

먼저,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부처 일원화는 물리적인 통합의 대표적인 방식이라 할 수 있는데, 각기 다른 정책 이념과 추진 체계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발전해 온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은 2008년 주무 부처를 보건복지가족부로 일원화하여 일관성 있고 단일화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2010년 청소년정책이 다시 당시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바 있다. 이에 지금까지 통합 정책에 관한 다양한 견해와 비판적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었는데, 이 가운데 전달체계 통합의 목적은 정책 대상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되었다. 즉, 예산을 효율화하거나 구조조정을 위해 예산 및 조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통합되어서는 안 되며(이혜원 외, 2009; 정익중, 2009), 서비스 중복 문제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서비스 누락 및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길은배, 2009; 김미숙 외, 2009). 또한 전달체계 통합을 위한 단계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되었다. 단번에 외부적인 압력에 의해 진행되는 통합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단계적인 발전 과정을 밟아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정익중, 2009). 같은 논지에서 다년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체계화시키는 방안 등도 제안되었다(문성호, 임영식, 2009).

중앙단위에서 아동·청소년정책의 주무 부처가 일원화된 당시 대상과 서비스 기능을 중심으로 다양한 전달체계 통합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대표적으로 윤철경 등(2010)은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과 학회, 전문가들과 협업하여 4가지 대안을 도출하였다. 이 가운데 3가지 모형은 통합 개념이 적용된 전달체계 개편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즉, 중앙과 시도, 시군구 단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과 활동·복지서비스 기능을 완전히 통합하는 ‘일원화 전달체계’, 아동·청소년 대상은 일원화하고 활동과 복지서비스를 이원화하는 ‘기능별 이원화 전달체계’, 중앙 및 시도 단위는 아동·청소년의 활동과 복지서비스를 이원화하고, 시군구 단위는 일원화하는 ‘기능별 부분 이원화 전달체계’ 모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였다. 이 외에 ‘대상별 이원화 전달체계’ 모형은 조정 위주의 통합에 가까운 개념으로 판단하여 후술하였다.

최근에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보호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청년 자립정책으로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별도의 전담기관 및 전담요원을 통해 시도 및 시군구 단위의 전달체계를 일원화하고 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통합·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이상정 외, 2020; 이상정 외, 2021). 보다 장기적으로는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청년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는 주무 부처를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류정희 외, 2022; 이상정 외, 2020). 계속해서 지자체 단위에서도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대상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이 요구되고 있다. 일례로, 서울시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보호체계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아동정책부서에서, 성평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청소년정책부서에서, 그리고 지역사회 취약청년 지원은 청년정책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

이다. 이에 대해 변금선 등(2023)은 분절되어 있는 지자체 청년정책을 청년정책부서에서 총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행정체계를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편, 부처 및 서비스 간 연계·협력에 초점을 맞춘 조정방식을 통한 전달체계 개선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고려되었다. 예컨대, 아동·청소년의 교육, 복지, 문화, 근로 등을 담당하는 중앙 및 지방정부 단위의 행정체계와 집행 체계, 공공체계와 민간체계의 상보적이고 우호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무엇보다 교육정책과 학교 교육이 아동·청소년정책과 별개일 수 없다는 점에서 주무 부처의 문제점을 넘어서는 교육부, 교육(지원)청 등의 부처 간 협력이 요구되었다(이혜원 외, 2009; 정익중, 2009).

그리고 이러한 네트워크를 지원·조정·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플랫폼 또는 거점기관을 설치하여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 및 공조 체계를 갖추는 등 능동적인 네트워크 구축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즉, 플랫폼 또는 거점기관은 서비스 공급기관 간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통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뿐 아니라(길은배, 2009; 정익중, 2009), 공공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고(이혜원 외, 2009), 정책수요자의 욕구를 수렴하여 수요자 관점에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서비스 개발과 중개 역할 등으로 기능을 확장할 수 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김미숙 외, 2009).

다만, 많은 선행연구에서는 전달체계의 통합과 조정을 별개로 다루기보다는 통합 위주의 조정 방안이나 조정 위주의 통합 방안을 단계적 혹은 병치하는 방식으로 논의하였다. 정익중(2009)은 아동·청소년정책의 주무 부처 일원화와 더불어 교육부 등의 관계부처와 기존 사회복지전달체계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다기관 간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전달체계의 개선을 언급하였다. 길은배(2009)는 중앙-시도-시군구 아동·청소년정책 주무 부처 및 부서는 일원화하되, 지역단위의 아동·청소년서비스 전달체계는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방식을 제안하였다. 문성호와 임영식(2009)은 중앙단위 아동·청소년정책 주무 부처의 일원화에 따른 유사 사업에 대한 통합 방안을 모색하면서 시군구 단위 전달체계는 각 사업의 기존 기능을 유지 및 전환하여 재조정하는 한편, 중앙 및 시도 단위 전달체계는 통합·확대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여 맞춤형 지원체계를 갖추고자 하였다. 앞서 언급한 윤철경 등(2010)의 4가지 통합 방안 중 하나인 '대상별 이원화 전달체계' 모형 역시 아동·청소년정책 주무 부처는 통합되었으나, 기존의 아동복지 전달체계와 청소년활동 전달체계 구조를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 관계를 이루는 것을 골간으로 하므로 조정 위주의 통합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일부 선행연구에서는 보호·지원 대상자들의 정보와 이력 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다루었다. 즉, 개별법에 따라 부처별·제도별로 독립적이고 분절적으로 각각 관리·운영되는 현행 정보시스템으로 인해 서비스 중복과 편중, 누락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통합과 조정의 관점에서 정보체계의 개선을 통해 공적 보호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었다. 요컨대, 통합의 관점에서 분산된 정보를 총괄·관리하는 새로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하거나, 조정의 관점에서 현행 정보체계를 유지하면서 부처 및 기관별 보유 정보의 연계 강화를 통한 고도화 방안 등이 검토되었다(김승경 외, 2024a; 김승경 외, 2024b).

표 II-5.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목적 및 방향

구분	주요 내용	선행연구	
전달체계 통합 (부처 일원화)	서비스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한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및 조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아동·청소년정책 부처 일원화 지양 아동·청소년 서비스 중복에 집중하기보다는 서비스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통합 	이혜원 외(2009), 정익중(2009) 길은배(2009), 김미숙 외(2009)
	단계적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 압력이 아닌, 단계적인 발전과정을 거쳐 통합 다년간 시범사업을 통해 체계화 	정익중(2009), 문성호, 임영식(2009)
	대상 및 서비스 중심의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정책대상과 서비스 기능 중심의 전달체계 통합(일원화 전달체계, 기능별 이원화 전달체계, 기능별 부분 이원화 전달체계) 	윤철경 외(20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청년의 보호 및 자립정책 전담기관과 전담요원을 통한 지역단위 전달체계 일원화 아동·청소년·청년 보호 및 자립지원 중앙부처 일원화 및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이상정 외(2020), 이상정 외(2021) 류정희 외(2022), 이상정 외(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자체 청년정책부서의 조직과 권한 확대로 자립준비청년의 총괄 지원 	변금선 외(2023)
	대상자 정보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새로운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아동·청소년·청년 보호·지원 대상자의 분산된 정보 관리 	김승경 외(2024a), 김승경 외(2024b)
전달체계 조정 (부처 및 서비스 간 연계·협력)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의 교육, 복지, 문화, 근로 등 중앙 및 지방정부 행정·집행 체계, 공공·민간체계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플랫폼, 거점기관 설치를 통한 협력 및 공조 체계 강화 등 능동적 네트워크 구축 	이혜원 외(2009), 정익중(2009) 길은배(2009), 김미숙 외(2009), 이혜원 외(2009), 정익중(2009)

구분	주요 내용	선행연구
대상자 정보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청년 보호·지원 대상자들의 정보를 독립적으로 관리·운영하는 현행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부처 및 기관별 보유 정보의 연계 강화 	김승경 외(2024a), 김승경 외(2024b)
전달체계 통합·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정책 부처 일원화와 더불어 관계부처,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협력, 다기관 간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전달체계 개선 	정익중(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시도-시군구 아동·청소년정책은 일원화하되, 지역단위 전달체계는 연계·협력 강화 	길은배(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시도 아동·청소년정책은 일원화하되, 시군구 단위 전달체계는 유지 및 전환하여 재조정 	문성호, 임영식(20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정책 부처는 통합하되, 기존 전달체계를 유지하면서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윤철경 외(2010)

3)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의 선결과제

동일 연령대의 정책 대상에 대한 유사 사업과 중복 기능의 문제는 전달체계 개선 논의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배경이다.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논의에서도 결국 이들을 정의하는 법적 연령의 중복 문제 해결을 전제로 한다. 길은배(2009)는 법에서 아동과 청소년 연령을 중복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한 유사·중복 서비스를 지적하는 것 자체가 모순되며, 관련 서비스 전달체계와 전문인력 또한 연령 규정에 따라 연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이해원 등(2009)은 2009년 아동·청소년기본법 입법예고안을 토대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중첩 없는 용어를 개발해 연령을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즉, 더 이상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하지 않고 ‘아동·청소년’을 25세 미만으로 하되, 정책적으로 연령을 세분화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만 ‘영유아(0~6세 미만), 아동·청소년 전기(6~12세 미만), 아동·청소년 후기(12~18세 미만), 청년(18~25세 미만)’으로 분리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법적 연령의 중복 문제에 대한 이슈는 최근까지도 미해결된 논제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류정희 등(2022)은 법적 연령 범위가 중첩되는 정책 대상의 주무 부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중복될 뿐 아니라, 사회적 보호 욕구가 동일한 위기아동과 위기·청소년일지라도 주무 부처에 따라 보호 대상이 달리 정의 및 관리·지원되는 문제점에 주목하여 정책 대상의

법적 연령과 개념의 일원화를 통한 재정립을 토대로 위기아동·청소년·청년의 통합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즉,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을 연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법상의 미성년 연령을 조정하고, 생애전반기는 아동기로, 이후를 성인기로 구분하며, 아동기는 다시 영유아(0~6세), 아동(7~12세), 청소년(13~17세)으로, 성인기는 청년(18~34세), 장년, 노년으로 구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관련 통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문성호, 임영식, 2009). 또한 아동보호체계와 청소년보호체계 간 서비스 격차의 문제는 사실상 각각의 근거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 및 내용의 범위와 수준의 차이로 인한 문제로 평가된다.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보호체계 모두 개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자립지원 서비스가 제공되다 보니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청소년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지자체의 책무를 강화하기 위한 해법 또한 법률 개정으로 귀결된다. 이에 따라 기존에 분절적으로 마련된 각각의 근거 법을 통합 혹은 일원화하는 방안(류정희 외, 2022), 각 근거 법에 보호아동·청소년이 자립지원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거나 두 보호체계를 포괄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었다(이상정 외, 2020). 이와 같은 법적 근거의 명확화는 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해서도 강조된다. 새로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은 물론, 기관 간 보유 정보의 연계를 위해서도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계 법률 및 하위법령의 연쇄적인 정비가 전제조건으로 제시되었다. 여기에는 정보의 활용 주체, 제공 서비스 및 지원 관련 정보, 이관 및 연계 관련 정보 제공·활용 등의, 정보의 수집·보유·이용·제공 연계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었다(김승경 외, 2024b).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언급된 또 다른 선결과제는 정책 대상에 대한 예산규모의 증대이다. 전달체계 개선은 주로 정책 대상의 비효율적인 중복 서비스와 예산 집행이 강조되는데, 그보다 국가의 책무성과 정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 증액으로 적정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는 관점이 보다 설득력을 갖는다(정익중, 2009). 관련하여 문성호와 임영식(2009)은 동일한 욕구를 가진 아동·청소년을 지원하는 유사 사업의 예산 편차가 클 뿐 아니라 상이한 예산 편성 기준을 문제로 지적하면서 보다 질 높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적절한 표준운영비 산출이 선행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재정 확대가 필요하다고 전제하였다. 길은배(2009) 역시 예산

증액과 상향평준화 식의 전달체계 통합 방식으로 제반 환경과 서비스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예산 증액은 아동·청소년의 보편적 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선결조건으로도 거론된다. 즉, 아동·청소년 복지서비스가 공공부조형 체계에서 보편적 서비스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으며, 보편적 서비스 체계 구축과 서비스 대상의 확대를 통해 차별을 없애고 최상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김미숙 외, 2009). 나아가 보편적 서비스는 아동·청소년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지원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할 때 효과적임을 부각하였다(이혜원 외, 2009).

표 II-6.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선결과제

구분	주요 내용	선행연구
법적 연령의 중복 문제 해결	• 관련법에서 아동·청소년 연령을 중복 정의하고 있는 한 유사·중복 서비스 지적은 모순	길은배(2009)
	• 아동·청소년 연령을 분리하지 않되, 세분화 필요시 중첩되지 않도록 연령 분리	이혜원 외(2009)
	• 정책 대상의 주무 부처가 불명확하거나 중복되고, 주무 부처에 따라 동일 욕구 대상의 정의·관리·지원이 상이한 문제 발생 •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민법상 미성년 연령 조정, 법적 연령과 개념의 일원화	류정희 외(2022)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통합 정책 추진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문성호, 임영식 (2009)
	• 보호체계 간 근거 법의 차이로 서비스 격차, 사각지대 발생 • 각 근거 법 통합 혹은 일원화	류정희 외(2022)
	• 각 근거 법에 보호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 권리를 명시하거나 각 보호체계를 포괄하는 특별법 제정	이상정 외(2020)
	• 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해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관계 법률 및 하위법령 정비 필요	김승경 외(2024b)
예산규모 증대	• 국가의 책무성 및 정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예산 증액으로 적정예산 확보 필요	정익중(2009)
	• 질 높은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위한 재정 확대 필요	문성호, 임영식 (2009)
	• 예산 증액과 상향평준화 식의 전달체계 통합 방식으로 서비스 질 제고 필요	길은배(2009)
	• 보편적 서비스 체계 구축, 서비스 대상 확대를 위해 예산 증액 필요	김미숙 외(2009), 이혜원 외(2009)

○———— 제3장 아동·청소년·청년 전환기 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 1. 서론
- 2. 아동에서 청소년 전환기
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 3. 청소년에서 청년 전환기
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 4. 소결

1. 서론¹⁴⁾

현재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은 각각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을 핵심 근거 법령으로 하고 있다. 이중 아동복지법 등 아동 관련 개별 법률이 “교육·복지 등 특정 ‘정책 목적’에 따라 아동을 정의하는 데 그치고 있어” 아동은 대리자인 성인의 “보호와 양육의 대상”으로만 반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대안으로 아동 중심의 아동권리 실현을 위한 아동 중심 관점의 입안을 고려하는 ‘아동기본법’ 제정 노력이 계속되어 왔다. 22대 국회에도 강훈식 의원이 대표 발의(2024.7.3.)한 아동기본법안과 백선희 의원 대표 발의(2025.5.2.)의 아동기본법안이 각각 발의되어 있다. 만약 아동기본법이 제정된다면, 우리나라는 아동기본법(아동, 18세 미만)에 의한 아동정책, 청소년기본법(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에 의한 청소년정책, 청년기본법(청년, 19세 이상 34세 이하)에 의한 청년정책이 각각 시행되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권리 실현과 지원을 위한 분절적 체계를 완성하게 하게 된다.

표 III-1. 현행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연령 분리적, 분절적 거버넌스와 전달체계

	아동정책	청소년정책	청년정책
주무 부처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전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청년정책조정실)
핵심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 - 아동기본법(안, 강훈식 의원 대표 발의 2024.7.3. 및 백선희 의원 대표 발의 2025.5.2.) 22대 국회 계류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14) 이 절은 성윤숙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아동정책	청소년정책	청년정책
법령의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강훈식 의원 대표 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의 목적은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지닌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의 책임을 정하는 것이다. - 백선희 의원 대표 발의한 아동기본법안은 아동이 온전한 권리 주체로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생하여 성장·발달하여 자립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지방자치단체·보호자·사회·기업의 아동에 대한 보호와 존중의 책임 규정이 목적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법은 청년의 권리 및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에 대한 책무를 정하고 청년정책의 수립·조정 및 청년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상 연령 범위	18세 미만	9세 이상 24세 이하	19세 이상 34세 이하
정책 주요 내용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정책 별도 정의 없음 -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정책 별도 없음 -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책”이란 청년발전을 주된 목표로 하는 것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 “청년발전”이란 청년의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과정 참여확대, 고용촉진, 능력개발, 복지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기본 계획	아동정책기본계획 (매 5년)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매 5년)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	청년정책기본계획 (매 5년)
총괄·조정 기구	-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 청소년정책위원회(위원장, 성평등가족부 장관)	-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

	아동정책	청소년정책	청년정책
	- 아동정책실무위원회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시도, 시군구)	- 청소년정책실무위원회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시도, 시군구)	- 청년정책실무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시도, 시군구)
전문 인력 지정	아동복지전담공무원	청소년육성 전담 공무원	청년정책책임관
지역 위원	아동위원(시군구)	청소년지도위원(시도, 시군구)	
연구, 조사	아동종합실태조사(매 3년) 아동정책영향평가	청소년(종합)실태조사(매 3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매 2년)/ 청년정책 연구사업
시설, 단체 등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 시설(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 아동전용시설 - 학대피해 아동쉼터	- 청소년육성전담기구(시도, 시군구) - 청소년시설(활동, 보호, 복지) - 청소년단체	- 청년지원센터 지정 - 청년시설
정책 수립 결정 참여 확대	아동의 정책 참여 확대(아동대표위원 선임, 아동총회 등)	청소년의 정책 참여 확대(청소년특별회의)	정책결정 과정에 청년의 참여 확대
정보 시스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하지만 이와 같은 정책 연령의 분절적 거버넌스와 전달체계에는 생애 전기의 발달 과업들이 연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지원되지 못하는 문제가 내재한다. 이는 UN이 제안한 연령 통합적 접근(Age Integrated Approach)¹⁵⁾ 즉, 출생(의존)에서부터 청년기(자립)까지를 포괄하여 지원하는 방식과 세계은행(World Bank)이 강조하는 생애 주기적 접근(Life Cycle Approach)의 핵심 원칙¹⁶⁾ 등 권고 사항들과도 상충 된다. 현재의 정책 전달체계가 지니는 다양한 문제에 관하여는 이미 <선행연구>를 비롯한 앞 장에서 기술된 바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아동에서 청소년, 청소년에서 청년의 전환기 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5) 세계 청년 보고서 『World Youth Report 2003: Young People in a Globalizing World』, 제15장 “세대 간 관계”.
16) 세계은행. 『사회 보호 및 노동 전략 2012-2022』.

2. 아동에서 청소년 전환기 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¹⁷⁾

아동기(0세~18세)와 청소년기(9세~24세)는 법-제도상 구획된 별개의 정책 대상이지만, 실제 삶의 궤적에서는 학업 완결, 사회적 자아 형성, 초기 진로 탐색 등 발달 과제가 단계적으로 중첩된다(강지원, 이세미, 2015). 현행 전달체계는 연령 경계(특히 17세~19세)에 집중되는 복합적 욕구를 수평적으로 포착하지 못해 권리의 연속성(rights continuity)과 서비스의 연속성(service continuity)을 동시에 훼손하고 있어(류정희 외, 2022), 다음에서 그 구조적 문제들을 심층적으로 진단하고자 한다.

1) 부처별 서비스 분절

(1) 법정 연령기준의 중복과 제도적 분리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그 출발점부터 연령 구분에 의한 법적·제도적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강지원, 이세미, 2015).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규정하여 보호·양육·돌봄 중심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기본법」은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에게 상담·자립지원·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김훈, 2025). 두 법령이 규정하는 대상 연령은 약 10년에 걸쳐 크게 중첩되어 있지만, 정책 집행을 위한 예산 지출 항목이나 운영 조직 체계, 그리고 성과 관리 방식 등 행정 인프라가 전혀 다른 기준으로 설정·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류정희 외, 2018).

첫째, 두 법령의 대상 연령이 중첩됨에도 불구하고,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이행기(transitional period)에 대한 공동의 행정적 조정이나 협력적 정책 수행 메커니즘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김훈, 2025). 현재의 전달체계에서는 아동 대상 정책이 주로 보건복지부와 기초자치단체 아동복지 담당부서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정책은 성평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담당 부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김훈, 2025). 이렇듯 완전히 별도의 예산 항목과 조직 구조 아래에서 사업이 진행되므로, 동일 연령대를 포함하는 아동과 청소년정책 간에는 사업 계획과 예산 집행에서 이중적 관리와 중복 혹은 공백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류정희 외, 2022).

17) 이 절은 손병덕 교수(충신대학교)가 집필하였음.

둘째, 행정적·제도적 분리는 특히 아동기와 청소년기 사이의 경계선에 놓인 17세에서 18세로 넘어가는 대상자에게 심각한 지원 단절 현상을 초래한다(이지연, 2021). 아동복지 서비스는 18세 도달과 동시에 법적 지원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고 청소년복지 사업으로 연계되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두 제도 사이에서 공식적인 행정절차가 미비하고 예산 편성 주거나 사업 승인 과정에서 시차가 발생하여 약 6개월에서 1년의 '정책 공백(zone of no policy)'이 상존하게 된다(이지연, 2021). 특히 아동보호시설 퇴소 후 청소년 시설로의 연계는 자동 이관 방식이 아니라, 본인의 신규 신청이나 개별 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어 지원의 연속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이상정, 2024).

셋째, 이러한 지원 공백은 17세~18세 청소년들이 처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과 맞물려 더 큰 사회적 문제로 이어진다(전미진, 2025). 일반적으로 17~18세는 고등학교 졸업 전후 시기로 학업 중단 위험, 가정 내 갈등 증가,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위기 경험 급격히 증가하는 시기이다(김예린, 2018). 따라서 이 시기, 17세 이전까지 제공되던 보호와 돌봄이 이어지지 않고 갑자기 끊길 경우, 아동과 청소년의 삶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정소연 외, 2024).

넷째,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이 지향하는 서비스의 성격과 접근 방식의 차이로 인해, 서비스 간 연계 또는 연속적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우경연, 2013). 아동복지는 아동에 대한 기본적 보호와 돌봄, 양육 중심의 접근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데 초점을 두는 반면, 청소년복지는 청소년의 역량 강화, 자립과 사회참여 등에 초점을 둔다(류정희 외, 2022). 이러한 두 정책 간 관점과 지향의 차이로, 두 제도 사이의 이행 과정에 놓인, 즉 17세~18세 청소년들은 지원 중단 또는 기존 지원과 새로운 지원 간 차이로 혼란을 겪기 쉽고, 실제로 필요한 도움을, 필요한 때 받지 못할 수 있다(우경연, 2013). 이러한 행정상의 단절은 정책의 실질적 성과를 평가함에 있어 중요한 장애 요인이 된다(이지연, 2021). 아동복지 성과지표는 주로 보호와 양육의 지속성, 시설 퇴소 후 안정적인 거주 등 돌봄의 연속성에 중점을 두고(유정원, 이혁수, 2020), 청소년복지 성과지표는 청소년 자살률, 학업성취도, 청소년 여가활동, 청소년 인터넷 이용시간, 청소년 봉사활동 참여시간 등 개인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김현철, 오승근, 김태중, 하형석, 2020) 두 시스템 간 성과를 연속적·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은 정책 개입의 효과를 정확히 분석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 본질적 문제점으로 작용한다(이지연, 2021).

이상과 같이,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의 법정 연령 증첩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적·정책적 단절 문제는 단순한 법적 불일치나 예산 지출의 중복 수준을 넘어, 대상자인 아동과 청소년의 삶의 질과 권리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심화되고 있다(류정희 외, 2022).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증첩 연령대에 대한 명확한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연속적이고 유기적인 정책 이행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류정희 외, 2018). 나아가 두 정책 체계 간 예산 통합 운용 및 성과 평가 지표의 조정 등 행정적 통합을 전제로 하는 포괄적인 법·제도 개선 전략이 시급히 요구된다(우경연, 2013).

(2) 시설 운영 주체의 이원화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넘어가는 연령 경계에 놓인 청소년들은 특히 보호와 지원의 지속적 연속성이 중요한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주해란, 길건혁, 안태구, 이예진, 2022). 그러나 우리나라의 아동 및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 주체가 법령과 소관 부처에 따라 완전히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은 연속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남기철, 유조안, 유재운, 최창용, 허청아, 2016).

우선, 시설 운영의 이원화 구조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 담당부서가 관할하며, 시설의 인가·운영·관리감독 등 모든 행정적 프로세스를 책임진다(보건복지부, 2021. 8.19.). 이에 반해, 청소년 연령대에 속한 ‘청소년쉼터’는 성평등가족부 산하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를 통해 학교 및 교육청(위기 청소년 의뢰), 경찰관서(위기청소년 발견 긴급지원), 보건소정신보건센터(치료지원), 공공의료기관(진료 치료지원), 청소년쉼터청소년지원시설(보호지원), 노동관서(직업훈련 취업 지원) 등 청소년 관련 기관들이 관할하고 있어 프로그램 운영 승인, 평가 및 모니터링 기준과 방식 등이 근본적으로 다르게 설정·운영되고 있다.¹⁸⁾

아동에서 청소년 연령대로의 전환기에서 시설 간 이용자의 정보 이관 및 관리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다(이지연, 2021). 17세 아동이 시설 이용 도중 18세로 전환될 때 전원하거나 중간 퇴소가 이루어질 때 기존의 생활·상담·교육 이력 등 누적된 사례관리 정보가

18) 스크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안내. http://schoolaw.lawinfo.or.kr/sub.asp?maincode=464&sub_sequence=528&sub_sub_sequence=538에서 2025년 5월 20일 인출.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는다(이상정 외, 2020; 이상정 외, 2024). 이는 각 시설이 소속된 행정 주체가 서로 다르고 데이터 관리 방식 및 정보 체계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이지연, 2021). 현재의 정보 전달 방식은 비정형적이고 수동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어, 이관 과정에서의 데이터 누락과 손실 가능성이 매우 높다(김지연, 좌동훈, 박세경, 한미경, 2015). 이는 실무 현장에서도 자주 제기되는 문제로, 해당 청소년에 대한 심층적이고 연속적인 사례관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김용득, 2015).

나아가 데이터의 비정형적 관리와 이관 체계의 부재는 단지 정보의 기술적 문제를 넘어 대상자인 청소년의 삶의 질과 보호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로 확대된다(김지연 외, 2015). 청소년이 시설을 변경할 때마다 초기 상담과 평가를 재 실시해야 하고, 청소년 자신이 기존에 받던 심리·정서적 지지 체계를 다시 처음부터 구축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김지연 외, 2015). 이는 청소년 개인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더 나아가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켜 시설 이용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지원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게 한다(김예린, 2018). 결국 시설 운영 주체의 이원화는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과 질적 수준의 하락으로 이어지며, 대상자의 보호와 지원이라는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김지연 외, 2015).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를 단일화하거나 최소한 연속적 이관을 위한 공통 프로토콜과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류정희 외, 2022). 특히 시설 간 정보 이관을 위한 통합 데이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례관리 데이터의 형식과 내용을 표준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안윤숙, 2012). 이 과정에서 각 시설 종사자의 업무 부담 완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별도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필수적이다(이강이, 성미영, 이순형, 2002).

전술한 바와 같이, 시설 운영의 이원화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조직적 중복의 문제를 넘어 아동과 청소년 보호서비스의 핵심 목표인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보호 제공에 실질적인 장애를 초래한다(김지연 외, 2015). 따라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령과 부처 차원에서 아동 및 청소년 보호 정책의 연속성을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 관리의 통합적 운영과 실효성 있는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홍문기, 2024).

(3) 예산·성과평가의 분절성

현재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정책은 법적 규정과 정책 대상 연령이 중첩되는 부분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기준과 성과 관리 체계가 완전히 분리 운영되고 있다(백선희, 임정기, 유재운, 임유경, 손가현, 2017).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아동수당,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모자보건사업 등 주로 보호와 양육 중심의 사업에 집중되고 있으며(김아래미, 2024.11.01.; 김선숙, 조소연, 이태인, 최세나, 황혜신, 2022; 이정희, 2020), 반면 청소년정책 관련 예산은 자립과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 프로그램 위주로 설정·집행되고 있다(김남호, 202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09.11.; 박성준, 강형민, 2024). 이와 같은 명확한 예산의 목적성과 방향성 차이는 이론적으로는 아동과 청소년 각 시기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연령 경계에서의 중복지대를 야기하고, 보다 심각하게는 사각지대를 초래하는 등 정책적 문제점을 만들어 내고 있다(김선숙 외, 2022).

먼저, 예산 집행의 분절성 문제는 사업의 이중집행과 비효율적 자원 활용을 야기한다(류정희 외, 2022). 동일한 아동 혹은 청소년 대상의 유사한 기능이나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이라 하더라도 아동 예산과 청소년 예산이 별도의 회계 단위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 목적의 중복 및 집행 과정의 비효율성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류정희 외, 2022). 17세의 보호종료 아동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자립과 생활 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예산을 증액할 경우에도, 그 효과는 18세 이후의 실제적 자립 성공률로 이어져야 하지만, 18세 이후의 자립 성과는 청소년예산으로 별도 관리되므로 연속적 사업으로의 효과 추적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나원희, 2025). 결국 유사한 목적의 예산이 각각의 시스템에서 독립적으로 집행되면서 정책 효과의 종합적 평가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나원희, 2025).

둘째, 이와 같은 예산 집행의 분절성은 특히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초래한다(우충충, 박지영, 이재원, 2024). 아동복지 예산의 성과지표는 아동자립 지원, 가정입양 및 위탁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지원, 방과후 돌봄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 및 재활지원사업,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등 보호 중심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복지 예산의 성과지표는 상담 서비스 참여율, 진로탐색 프로그램 만족도, 활동지원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우충충, 박지영, 이재원, 2024). 성과지표의 명확한 방향성과 측정 목적의 차이는 각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는 하나, 문제는 17세에서 18세

사이에 위치한 경계 연령층의 성과가 아동 정책의 성과지표와 청소년정책의 성과지표 간 상호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이다(김기현, 유민상, 김창환, 정지운, 2019). 즉, 보호종료와 자립성공률을 연결한 연속 지표(longitudinal indicators)가 부재하여 특정 정책 개입의 장기적 성과를 측정하거나 평가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김기현 외 2019).

셋째, 성과 평가의 분절성 문제는 결국 장기적인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권지성 외, 2021). 현재는 17세 아동의 보호 종료 이후 자립 성과가 개별 청소년의 개인적 능력이나 책임으로 귀결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호 서비스의 품질이나 정책적 지원 수준에 대한 평가가 성과지표 상에서 객관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이상정 외, 2020). 지표의 단절은 결과적으로 정책 개입이 개별 아동·청소년의 삶에 미친 장기적 효과(long-term impacts)를 제대로 분석하거나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권지성 외, 2021).

넷째, 예산과 성과 평가의 분절성으로 인해 연령 경계에 놓인 대상자에게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한다(강현아, 2025). 17세에서 18세로 넘어가는 경계 연령층은 학업 중단, 주거 불안정, 정신건강 악화 등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문제를 동시다발적으로 경험하는 시기이다(김예린, 2018). 그러나 현행 예산 편성과 성과 평가의 구조에서는 보호 종료 이후의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겪는 복합적 문제를 정책적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지원하거나 관리할 수 없고, 단지 일회성의 행정 처리로 대상자를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강현아, 2025). 이는 결과적으로 지원을 가장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정책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정책의 신뢰성까지 저하시키는 원인이 된다(김지연, 윤철경, 2021).

예산 성과 평가의 분절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아동 예산과 청소년 예산의 통합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정책의 생애주기적 접근에 따른 통합적인 예산 체계와 성과 관리 시스템의 재편이 요구된다(김교성 외, 2017). 구체적으로는 아동보호 및 양육에서 청소년 자립 지원까지의 전 과정을 포괄할 수 있는 통합적 예산 항목을 신설하고, 보호 종료 이후 청소년의 자립 성과를 연속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종합 성과지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이상정 외, 2020). 또한, 이를 위해 중장기 성과 평가 체계를 도입하고, 정책 효과의 종단적(longitudinal) 평가 연구를 통해 정책 개입의 효과성을 정기적,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오민지, 탁현우, 2022).

아동과 청소년정책에 대한 예산 편성과 성과 평가가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현재의 구조적 문제는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떨어뜨린다(김교성 외, 2017). 따라서 예산 운용의 통합성과 성과 평가 지표의 연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여, 아동에서 청소년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정책 재구조화가 시급하다(이상정 외, 2020).

2) 지역별·주체별 역할 중복 및 사각지대

(1) 기관별·사업별 파편화

지역의 아동 및 청소년 복지 전달체계는 다양한 기관과 사업이 개별적이고 병렬적인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도 지역아동센터¹⁹⁾(보건복지부 소관), 학교교육복지(교육지원청 소관), 청소년안전망팀(성평등가족부 소관)과 같이 부처 및 기관별로 구획된 다양한 서비스 체계가 각자의 독립된 기준과 운영체계를 통해 병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류정희 외, 2018). 전달체계의 구조적 파편화(fragmentation)는 단지 행정적으로만 분절되는 것을 넘어, 현장에서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과 실효성 자체를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한다.

첫째, 전달체계의 파편화로 인해 행정구역 내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복수의 기관들이 실질적인 협력이나 정보공유 없이 개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역아동센터는 주로 방과후 돌봄과 기초적 양육 지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교육복지는 학교 내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위기 지원 및 상담 활동을 수행하고, 청소년안전망은 학업 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정 및 사회로의 복귀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²⁰⁾ 이 기관들은 각각의 독립된 예산 항목과 업무 계획을 바탕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사업 목적이나 활동 대상이 일부 중복됨에도 불구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력이나 사례공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구조적 파편화는 기관 간 소통과 연계가 행정적인 공문 교환 수준에 머물게 한다(류정희 외, 2020). 현재 많은 지역에서는 기관 간에 정례적이고 공식적인 사례 회의나 통합 회의체를 운영하기보다는, 사업이나 행사 등의 필요에 따라 일회성 공문을 교환하거나 전화, 이메일과 같이 비정기적이고 비공식적인 소통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김

19)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 제공.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학교밖 청소년으로서 18세 미만의 아동의 경우를 포함함)

20)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안전망 운영사업 안내. https://www.kyci.or.kr/userSite/sub02_1.asp에서 2025년 5월 20일 인출.

용득, 2015). 그 결과, 각 기관이 보유한 대상자 관련 정보와 서비스 이력이 공유되지 않고 단절되면서, 중복지원이나 지원 누락 현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류정희 외, 2020). 특히, 지역 내 복합적 욕구를 가진 위기아동 및 위기청소년의 경우, 보다 종합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기관 간 비효율적 소통 방식으로 인해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서비스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때가 빈번하다(박혜연, 이수정, 2023).

셋째, 기관별·사업별 파편화는 결과적으로 대상자 관리 과정에서 심각한 행정적 비효율과 혼란을 초래한다(이상정, 2024). 위기아동이나 위기청소년이 각 기관의 서비스에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지원을 요청할 경우, 동일 대상자를 복수의 기관에 중복 등록(duplication)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박선영, 2025). 반면, 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 체계가 부재하여 기관의 서비스에 접근하지 못하거나 정확히 등록되지 않은 무등록(omission)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다(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김지민, 2019). 이러한 중복 등록과 무등록의 문제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실효적이고 연속적인 사례관리를 방해하며, 중복 지원에 따른 자원 낭비, 아동·청소년 지원의 실질적 효과성과 효율성 감소로 이어진다(이상정, 2024).

넷째, 파편화된 전달체계가 가져오는 실무적 문제점은 사례관리 현장의 인력 운용과 업무 부담 측면에서도 두드러진다(정선미, 오영림, 2018). 동일 지역에서 유사한 문제를 다루는 각 기관의 실무자는 서로 간의 협력이나 역할 분담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중복적인 업무 수행이나 불필요한 행정 업무 증가와 같은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김재연, 김혜원, 조혜영, 2024). 예를 들어 각 기관의 실무자가 같은 대상자를 개별적으로 상담하고 관리하며, 서비스 계획을 중복으로 수립하는 등 행정적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김용득, 2015). 이뿐 아니라, 기관별로 다른 업무 기준과 평가 방식은 현장 인력의 업무 과중과 소진(burnout)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 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악순환을 야기하기도 한다(김세원, 강현아, 정익중, 2022).

기관 및 사업의 파편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처 간 협력과 지역 내 서비스 통합을 위한 명확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우명순, 김현실, 2025). 구체적으로 행정구역 단위에서 복지부, 교육부, 성평등가족부가 공동 참여하는 '통합 사례관리 협력체계'와 같은 공식적인 회의체를 법적·제도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시급하다(김세원 외, 2022). 또한 사례관리를 위한 통합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별도 편성해야 한다(양경은, 박송이, 고윤정, 2020). 한편, 기관 실무자들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위해 명확한 운영지침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대상자 중심의 통합적인 사례 관리 체계도 구축해야 할 것이다(김채연 외, 2024).

현행 우리나라의 아동·청소년 전달체계가 안고 있는 기관별·사업별 파편화 문제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 궁극적으로 서비스 대상자인 아동과 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에 중대한 어려움을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이다(우경연, 2013). 따라서 기관 간 공식적이고 정례적인 통합 사례회의 및 정보 연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에게 통합적인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류정희 외, 2018).

(2) 사례관리의 비효율성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와 지원 서비스의 핵심은 지속적이고 일관된 사례 관리(case management)이다(정정호, 2025).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사례관리 시스템은 기관 간 연계가 미흡하고 표준화된 사례정보 관리체계가 구축되지 않아, 사례관리자가 변경될 때마다 필수적인 평가와 기초정보 조사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비효율적인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류정희 외, 2022). 구체적으로 사례관리자는 새로운 기관으로 아동·청소년의 사례가 이관될 때마다 심리검사, 생활기록부 작성, 가족환경 조사 등 초기평가를 매번 처음부터 다시 수행해야 하며, 이는 행정적 자원 낭비를 초래하는 동시에 서비스 제공의 연속성과 질을 현저히 저하시킨다(정정호, 2025).

아동·청소년 대상 사례관리의 비효율성 문제는 첫째, 기관 간 정보공유와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각 기관에서 개별적, 독립적으로 정보를 관리하는 현실적 구조에서 기인한다(선미정, 2024). 각 기관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례 정보를 표준화된 양식이나 시스템 없이 독자적인 방식으로 보관하고 관리하기 때문에, 사례가 이관될 때 정보의 연속성과 완결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류정희 외, 2022). 실제로 새로운 사례관리자는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해 이전 기관에서 수행한 상담이나 평가 등의 기록을 확인할 수 없어, 처음부터 다시 모든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현실이다(정정호, 2025).

둘째, 정보의 비효율적 관리와 사례관리 프로세스의 반복 수행은 결과적으로 행정적 비용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진다(우명순, 김현실, 2025). 기관 변경 시마다 신규로 실시해야 하는 심리검사, 가족환경 조사 및 상담 기록 작성 등의 업무는 불필요한 예산 소요와

인력 투입을 요구하고, 이는 행정적 자원의 중복 사용과 낭비로 인해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과 경제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는다(김용득, 2015).

셋째, 사례관리자의 빈번한 변경과 신규 조사 수행의 반복은 대상 아동·청소년의 서비스 참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정정호, 2025). 사례관리의 효과성은 대상자와 사례관리자 간 형성된 신뢰 관계에 크게 의존하는데,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초기 조사 및 상담은 대상자-사례관리자 간 신뢰 관계 형성을 어렵게 한다(김채연, 김혜원, 조혜영, 2024). 특히 심리·정서적 취약성을 가진 위기 청소년의 경우, 이러한 어려움이 더욱 클 수 있다(우명순, 김현실, 2025).

넷째, 실제 현장 조사에서도 사례관리의 비효율성 문제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다. 위기청소년 사례를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위기청소년에 대한 신뢰성 있는 사례관리와 개인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이 고위기 상황에 놓여진 청소년을 위한 효과적인 개입 방안인 것으로 나타났다(김동일, 현은정, 우예영, 박준영, 2020). 즉, 청소년의 고위기 해결을 위한 사례관리 방안은 전문적인 역량을 가진 사례관리자의 신뢰성 있는 개인맞춤형 지원이 장기적인 서비스 제공과 효과적인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사례관리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례관리 데이터의 통합적 관리와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이 절실히 필요하다(김지연 외, 2015). 아동·청소년 사례관리 정보를 통합적으로 저장하고 기관 간 원활히 공유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정보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사례 이관 시 반복적 조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우명순, 김현실, 2025). 또한 사례관리자의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자 중심의 지속적인 슈퍼비전 체계를 마련하고, 사례관리 업무의 인센티브 제공과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례관리자의 잦은 이동과 소진을 예방하는 방안도 병행되어야 한다(이태인, 박경현, 최세나, 2020).

사례관리 비효율성의 구조적 문제 해결(유은주, 2024)을 위한 정책적 접근으로는 사례관리 기관 간 협력과 연계를 법적·제도적으로 명문화하여 의무화하고, 사례관리자 교체 시 정보 이관 및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마련하여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기관 간 협력 체계를 법적·제도적으로 구축하여 사례관리에 대한 공동 책임성을 높이고, 사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과 인력의 효율적 배치를 통해 행정적 낭비와 중복을 최소화해야 한다(정정호, 2025).

사례관리의 비효율성 문제는 단지 행정적 비용과 자원의 낭비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

라, 대상자인 아동·청소년의 서비스 접근성과 참여 지속성, 서비스 효과성 등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심각한 문제다(우명순, 김현실, 2025).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 간 사례 정보의 통합적 공유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사례관리자의 역량과 전문성 지속 강화(정정호, 2025), 사례관리의 연속성을 담보하는 법적·제도적 개선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한다.

3) 정보시스템과 통계관리의 불일치

(1) 부처별 통합 DB 부재

오늘날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아동·청소년의 실태와 문제를 파악하고 이들의 보호와 복지, 교육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다양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는 영유아 보육, 아동학대, 보호조치(입양, 가정위탁보호, 아동공동생활가정과 아동양육시설 입소 등)와 자립지원, 취약 아동 지원 등을 위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아동학대정보시스템, 입양정보통합관리시스템, 가정위탁전산시스템,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현재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통합),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시스템(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통합), 드림스타트 복지정보통계시스템 등을 운영하고, 이들 시스템을 연계·활용한 아동통합정보시스템 또한 운영 중이다(보건복지부, 2025).

이와 함께 교육부²¹⁾는 매년 유·초·중등학교와 학생, 교직원 전반과 특수교육대상자, 학업중단학생, 다문화학생 등을 모두 포함하는 유·초·중등 통계를 매년 생성, 관리하는 동시에 초·중·고등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의 교무, 학사, 행정 등의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운영하고, 성평등가족부는 청소년활동통합관리시스템(e-청소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통계 데이터 등을, 법무부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소년보호 관련 통계 데이터 등을 운영한다. 그런데 이들 각 부처에서 생산, 수집, 관리하는 정보가 부처 간 연계 또는 통합되지 못하고 부처별, 사업별로 분산 관리되는 경우가 많아 보다 통합적, 연속적인 아동복지 정책과 실천에 중대한 문제를 야기한다(오미애, 2020; 한은희, 2022).

첫째, 아동·청소년에 관한 통합 DB의 부재는 국가 차원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통계

21) 교육통계서비스. 유·초·중등 교육통계.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5년 9월 1일 인출.

생산을 어렵게 한다. 대표적 예로 이주배경청소년 통계의 경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교육부 등에서 각각 부처별 목적에 따라 조사한 통계를 발표할 뿐 국가 차원의 정확하고 일관된 통계는 부재하다(김성미, 2025).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현황」은 19세 미만 외국인 주민 자녀를 2023년 기준 308,402명으로 보고하였고, 법무부의 「등록외국인 현황」은 5세 단위로 등록외국인 현황을 제시하면서, 0~19세 등록외국인 수를 2024년 기준 139,675명으로 보고하여 2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다(법무부, 2025; 행정안전부, 2025). 교육부는 2025년 기준 초·중·고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국제결혼가정, 외국인가정)을 202,208명으로 보고하였다.²²⁾ 이처럼 각 부처에서 부처별 목적에 따라 분절적으로 조사, 생산하다 보니 통계 간 차이가 크고, 법무부 통계에서는 귀화한 이주배경 아동이 제외되고, 교육부 통계에서는 학교에 다니지 않은 이주배경청소년이 제외되는 등 누락의 문제가 커, 국가 차원의 총체적, 연속적 정책 고안에 큰 장애가 되고 있다(김성미, 2025).

둘째, 아동·청소년에 관한 통합 DB의 부재는 아동 개인 중심의 종합적, 연속적 실태 파악을 어렵게 하여, 보다 통합적인 정책과 서비스 설계 또한 어렵게 한다(배유진, 김지선, 최기정, 문성운, 김진실, 2021; 오미애, 2020). 아동 개인의 어려움과 문제, 그에 따른 지원 욕구는 다양하고 복합적이어서 하나의 부처, 하나의 사업에 국한되지 않을 때가 많다(예: 경제적 어려움, 방임과 학대 문제, 신체적·정신적 건강 문제, 학교생활과 학업, 또래 관계의 어려움 등). 그러나 아동에 관한 정보가 부처별, 사업별로 분산 관리되다 보니, 아동 개인의 어려움과 문제를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파악하기보다는 부처, 사업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파악하기 쉽고, 이는 곧 관련 정책과 서비스가 유관 부처를 모두 포괄하는 종합적 차원에서 설계되기보다는 각 부처의 소관 범위 안에서 제한적으로 설계되거나 부처 간 정책이 상호 충돌 또는 중복되는 문제,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정책 공백 등으로 이어지기 쉽다(배유진 외, 2021; 오미애, 2020).

셋째, 아동·청소년에 관한 통합 DB 부재로 인한, 보다 심각한 문제는 사각지대 발생에 있다. 아동이 직면하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연속적이고 복합적임에도 불구하고, 연령대, 정책 및 서비스 영역과 내용, 소관 부처 등의 경계에 따라 아동이 특정 사업·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이거나 연속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겪기 쉽다(정영철, 2015). 실제로 정현주(2018)는 주민등록 연앙인구와 보육통계, 교육통계 등의 자료를 비교 분석

22) 교육통계서비스. 유·초·중등 교육통계.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5년 9월 1일 인출.

하여 0~6세 영유아 67,794명, 7-18세 아동 359,240명의 정보 누락과 통합적 정보관리 미비에 따른 사각지대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최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상호 대조하여 미취학 여부를 파악하거나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상호 대조하여 출생 미신고 아동의 현황을 파악해 유기, 학대 등 고위험 아동을 발굴한 사례 또한 사각지대 발굴과 예방 차원에서 부처 간 정보 연계와 통합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보건복지부, 2023.07.18.; 정현주, 2018).

(2) 예방적 개입 타이밍 상실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이어지는 통합적, 연속적 정보 및 통계 관리의 미비가 야기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위기 아동·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해 선제적·예방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시기, 즉 아동보호 및 복지 차원에서의 ‘골든 타임’을 놓치는 데 있다(배유진 외, 2021; 오미애, 2020; 정영철, 2015). (잠재적) 위기 아동·청소년은 빈곤, 가정 해체, 학대, 심리·정신건강 문제 등 다양한 사유로 위기 상황에 처해 있거나 처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들의 안전과 건강, 복지를 위해서는 위기 요소에 대한 조기 발견과 개입이 결정적이다(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2024; 홍현정, 2024). 그러나 관련 부처를 모두 포괄하는 통합적 정보와 통계의 부재는 이러한 위기 요소의 조기 발견을 어렵게 한다. 예를 들어 부처 간 분절된 정보 체계는 학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드림스타트, 사회복지기관(시설) 등에서 다양한 정보(예: 학교 출결, 상담, 복지 급여와 서비스 이력, 단수·단전 등 경제적 위기 징후, 건강검진 등의 정보)를 개별 집계·관리하기 때문에, 그 가운데 나타나는 위험 신호를 빠르게 발견하기 어렵고, 이러한 어려움은 특히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되는 시기에 더욱 심각할 수 있다(홍현정, 2024).

이 때문에 (잠재적)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조기 발견 및 선제적, 예방적 개입을 위해서는 정보와 통계의 통합 관리가 필수적이다(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2024; 홍현정, 2024). 이를 위해 먼저는 현재 운영 중인 e아동복지지원시스템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을 확대 및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류정희 외, 202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08.19.).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예방접종 미접종, 건강검진 미검진, 장기 결석, 건강보험료 체납 등 사회보장 정보를 활용해 (잠재적) 위기 아동을 찾아내는 시스템이고, ‘아동통합정보시스템’은 아동복지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통합관리를 위한 시스템인데(보건복지부, 2025), 여전히 잔존하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스템 확대, 나아가 이들 시스템을 활용한

선제적 개입과 예방을 위한 고도화가 필요하다(류정희 외, 2022;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08.19.).

실제로 미국, 영국 등 해외에서는 아동학대 위험을 조기에 발견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위험예측모형(Predictive Risk Modeling: PRM)'을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한은희, 최윤희, 2020). 즉, 아동 관련 다양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동시에 위험예측변수(예: 학교 출결 정보, 가정폭력 신고 기록, 사회복지급여 이력, 부 또는 모의 가정위탁/아동학대 등의 경험 등)를 설정하여 이로부터 아동학대를 경험할 확률을 계층화하여 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해 신속한 개입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의 엘러게니 카운티(Allegheny County)는 2014년 다양한 행정 데이터 110여 개를 위험예측변수로 활용하는 '엘러게니 가족 스크린 도구(Allegheny Family Screen Tool: AFST)'를 개발하여 2016년 8월부터 아동학대 접수 판정의 보조적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한은희, 최윤희, 2020). 플로리다 주는 민간 아동보호 기관인 에커드 커넥츠(Eckerd Connects)가 개발한 위험예측모형 및 고위험군으로 예측된 아동에게 조기 개입하는 긴급안전조치(Rapid Safety Feedback: RSF) 프로그램을 2014년 주 전체에 도입하였고, 이후 긴급안전조치(RSF) 프로그램은 코네티컷, 알래스카, 오클라호마, 인디애나, 루이지애나, 메인, 뉴햄프셔, 오하이오 등 다른 주로 확대되었다(한은희, 최윤희, 2020).

영국 또한 일부 지방정부에서 고위험 아동을 조기 발견하고자 위험예측모형을 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2011년부터 다양한 어려움과 문제를 겪는 고위험 가족에게 집중적이고도 통합적인 개입과 지원을 제공하는 '위기가족 프로그램(Troubled Families Programme)'²³⁾을 시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해크니(Hackney), 써록(Thurrock) 등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협력해 위험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고위험 가족, 특히 고위험 아동을 조기 발견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한은희, 최윤희, 2020).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관련 통합적 정보시스템과 통계 관리가 미비하다 보니, 고위험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측하기 어렵고, 그 결과 선제적, 예방적 개입의 타이밍을 놓칠 수밖에 없다. 아동 관련 다양한 현장들에서 통합 정보관리에 관한 목소리가 높은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2024; 홍현정, 2024). 다만, 미국과 영국 등에서 활용 중인 위험예측모형에 관해서는 데이터 적절성과 품질, 예측의 정확성, 개인정보 보호와 낙인 우려 등 법적·윤리적 문제 등의 쟁점이 있어, 향후 우리나라에서

23) 2021년부터 '가족지원 프로그램(Supporting Families Programme)'으로 명칭 변경

아동·청소년에 관한 통합 정보관리 및 그를 활용한 위험 예측과 예방적 개입 방안을 연구 개발함에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4) 전문인력 양성과 거버넌스 부재

(1) 분리된 자격·교육 체계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할 때 지원 정책과 전달체계의 연속성 부족의 또 다른 문제는 바로 전문인력 양성 부문에서 찾을 수 있다. 현재 교육, 사회복지, 상담 등의 분야에서는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모두 아우르는 전문가 체계도 있지만, 아동기와 청소년기 각각의 발달적 특성과 과업을 고려해 전문가를 구분, 양성하는 체계 또한 갖추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육교사와 유치원 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사, 아동복지 전문가, 아동 발달 및 상담 전문가(아동발달상담사, 아동심리상담사, 아동심리치료사 등),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을 분리 양성한다.

아동기 전문가와 청소년기 전문가를 분리 양성하는 체계는 아동기, 청소년기 각각의 특성과 욕구, 위험 요소와 이슈 등에 특화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장점과 유익이 크다. 구체적으로 아동기 전문가는 아동, 주로 영유아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기에 주로 아동의 신체·인지·정서·사회성 발달에 관한 전문성, 놀이 중심의 보육과 교육, 상담, 치료 등에 관한 전문성, 이 시기의 주요 위험 요소(예: 발달 지연과 장애, 방임·학대 등)에 관한 전문성에 초점을 두는 한편 청소년 전문가는 중·고등학생 시기의 발달적 특성, 즉 사춘기와 심리적 변화, 자아정체성, 학업 스트레스와 입시 경쟁, 진로 불안, 또래 관계와 학교생활 적응, 정신건강 문제(우울, 불안, 자해 등), 스마트폰 과의존과 중독, 비행 등에 관한 전문성에 초점을 두므로써, 각 발달단계에 특화된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다(김지현, 조숙인, 김영민, 2023; 손병덕 외, 2022). 실제로 오늘날 분리된 교육 및 자격 체계 아래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전문가가 각각 양성되고 있다. 유아교육과, 아동학과, 청소년학과 등 관련 학과들이 별도로 개설·운영되고,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초등학교 교사, 아동발달상담사, 아동심리상담사, 아동심리치료사, 중·고등학교 교사,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등의 자격 체계 또한 분리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각각에 특화된 전문인력이 증가하고, 각 발달단계에 대한 교육, 복지, 상담 등의 서비스 또한 전문화, 맞춤형화된 점은 큰 유익이다.

그러나 이러한 분리 양성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전환기에 통합적·연속적으로 대응하는 데 문제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아동 개인이 청소년기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 즉 신체적 변화, 심리·정서적 또는 사회적 경험과 어려움 등 전반적 발달은 분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전문가 및 서비스 제공기관 등은 분리되어 있고 교육, 자격, 현장 경험 모두 별개로 축적되어,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전환기에 통합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이다(이상정 외, 2020).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전문성의 부족과 문제점이 전환기 아동·청소년을 위한 통합적·연속적 서비스의 부재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심리·정서 또는 정신건강 상 어려움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전환 과정 속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 전달체계가 연속되지 않고 전달체계 간 정보공유·사례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서비스 연계가 단절되어 심리·정서·정신건강의 어려움이 심화되거나,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보호 및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가 연속되지 못하여 자립을 이루어 가는 가운데 더 큰 어려움을 겪기 쉽다(이상정 외, 2020; 이상정 외, 2024). 이는 전 생애적 발달에 있어 전환기 아동·청소년의 어려움과 취약성을 고려할 때,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관련 연구들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의 전환기에 불안·우울 등 심리·정서적 어려움(Murray et al., 2022; Robson et al., 2025), 학업성취, 또래 관계, 학교생활 적응 등에서의 어려움과 스트레스(Mundy et al., 2023; Robson et al., 2025)가 모두 증가함을 보고했는데, 이는 전환기를 포함해 아동기 및 청소년기 전반에 대한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바다.

(2) 거버넌스 메커니즘 미비

아동기에서 청소년기로 전환할 때 지원 정책과 전달체계의 연속성 부족 문제는 전문인력 관련 거버넌스 메커니즘의 미비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즉, 아동기와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전문인력의 양성·교육·실천·점검·관리 등이 체계적으로 교류, 연계되고 협력·협업할 수 있는 구조적,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 먼저, 현재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육, 복지, 보호, 상담 등 각 분야의 전문인력은 관련 부처 또는 기관, 협회 등에서 별도로 자격 및 교육, 관리 등의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서비스 연계와 통합, 위기 개입과 예방, 사례관리 등 다양한 실천 분야에서 현장 전문가 간 또는 다양한 기관(주체) 간 협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강지원 외, 2023).

이러한 문제는 아동·청소년이 어려움과 문제, 위험 요소를 복합적, 다중적으로 갖고

있을 때, 더욱 심각하다. 사실, 위기·취약 아동·청소년들은 경제적 어려움, 심리·정서적 어려움, 학업 및 학교생활의 어려움, 또래관계 문제 등 여러 어려움과 문제를 복합적으로 경험할 때가 많고, 장애와 이주배경, 가정외 보호와 정신건강 문제 등 둘 이상의 위기 요소를 갖고 있는 복합 또는 다중 위기 아동·청소년 또한 증가하는 추세여서(김혜미, 정은희, 허선영, 2025; 임성은, 이은주, 박현숙, 이주민, 민구홍, 2025; 임은진, 최한, 최윤영, 이명주, 이호정, 2024), 오늘날 아동·청소년 현장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 간 소통과 교류, 연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하다. 현장 전문가 상호 소통이 활발할 때, 다중·복합 위기 아동·청소년에게 보다 효과적이고 연속성 있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강지원 외, 2023). 또한, 전문인력 거버넌스가 강화됨에 따라 사례관리, 위기 개입, 예방적 지원체계의 통합적 운영이 보다 강화되어 위기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책 효과성도 크게 향상될 수 있다(강지원 외, 2023; 이상정 외, 2020; 임성은 외, 2025).

3. 청소년에서 청년 전환기 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²⁴⁾

청소년기(9~24세)에서 청년기(19~34세)의 시기는 학업과 직업 선택을 거쳐 사회적 관계로의 진입 및 자립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무엇보다 법·제도적 측면에서 권리와 서비스 전달체계의 연속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 지원정책과 전달체계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진단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정책-청년정책 경계의 구조적 허점

(1) 다중 연령 소속은 있으나 통합 프로토콜 부재

현행 우리나라의 청소년 및 청년정책은 법적으로 연령대를 명확히 정의하고 있지만, 두 법령 간의 연령 중첩 문제로 인해 실질적인 정책 현장에서는 혼란과 비효율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조소연, 손선옥, 2024). 구체적으로, 「청소년기본법」은 9세부터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정의하여 보호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년기본법」은 19세부터 34세까지를 청년으로 정의하여 취업·창업지원 및 주거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b). 연령 정의의 구조상 19세부터 24세까지의 초기 청년층은 이론적으로 두 정책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두 체계 간 정책 연계나 통합 운영 프로토콜이 부재하여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나타난다(조소연, 손선옥, 2024).

첫째,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 간 연령 중첩은 각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간의 역할과 책임을 모호하게 한다(김지경, 정연순, 2015). 청소년정책은 주로 성평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담당 부서에서, 청년정책은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과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관련 부서에서 각각 담당한다(최용환, 성운숙, 박상현, 2018). 그러나 19~24세의 초기 청년층은 공식적으로 두 부처의 관할 대상에 동시에 속하는 구조(관계부처 합동, 2023b)이므로, 이 시기 대상의 실제 정책을 수행하거나 개별 사안을 처리할 때 어느 부처가 우선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그 결과 긴급한 지원이 요구될 때도 담당 부처 간 책임 회피나 대응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부처 간 경계의 모호성은 초기 청년층이 경험하는 중요한 생애 전환 이벤트,

24) 이 절은 손병덕 교수(충신대학교)가 집필하였음.

예를 들어 대학 입학, 휴학과 졸업, 취업 준비 등에서 실질적인 지원을 어렵게 만든다(최용환 외, 2018). 대학 신입생의 경우, 대학 등록 이전까지는 청소년정책 범위 내에서 진로상담이나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다가 대학 등록 이후에는 청년정책의 관할 부서로 이관되어야 한다(김형주, 임지연, 유설희, 2018). 그러나 실제로 청소년정책에서 청년정책으로의 이관에 관한 표준화된 프로토콜이나 명확한 절차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연령대의 청년들은 개별적인 지원 서비스를 받을 때마다 정책적 공백(zone of no policy)에 빠지기 쉽고, 그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행정적 혼선을 겪기도 쉽다(김형주, 연보라, 배정희, 2020).

셋째, 두 정책 체계 간 연계 부족은 예산 집행 측면에서도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은 각각 독립적인 예산 항목과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유사 또는 중복 사업에 이중으로 예산이 집행되거나 특정 연령대(19~24세)에 대한 지원이 중복 또는 누락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오선정 외, 2022). 이처럼 예산 집행 구조의 비효율성은 한편으로는 자원의 중복 투입을 야기하며 비효율성을 심화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해당 연령대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제때 이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정책적 공백을 배가시키는 결과를 낳는다(김문정, 2018).

넷째, 두 체계 간 성과 평가 기준의 불일치로 정책 효과성 평가를 어렵게 만든다. 청소년정책은 주로 상담 및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참여율이나 만족도, 보호 종료 후 자립률 등을 중심으로 성과 평가(관계부처 합동, 2023b)가 이루어지는 반면, 청년정책은 취업률, 창업 성공률, 주거지원 만족도 등 자립 및 경제적 성과 중심으로 평가(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24.06.28.)한다. 이와 같은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 간 상이한 성과 평가 체계 때문에, 19~24세 대상 정책의 경우, 정책 개입 효과를 연속적으로, 중장기적으로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렵게 된다(이승윤, 이정아, 백승호, 2016).

다섯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정책 간의 연계성을 높이고 통합된 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명확한 연령 전환 프로토콜 구축이 필수적이다(김지경, 정연순, 2015). 현재의 이중적 정책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초기 청년층(19~24세)을 위한 통합적 정책 지원을 위한 전담 조직이 설치되거나 현재 두 정책을 관할하는 부처 간 상시 협력체계가 법적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최용환 외, 2018). 또한 정책 이관 및 연계에 관한 명확한 행정 지침과 표준화된 절차를 마련하여, 초기 청년층에 대한 연속적이고 일관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김세현, 김기현, 2025).

여섯째,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 담당 부처 간 정보공유 및 그에 기반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유민상, 최정원, 이수정, 장혜림, 2020). 이를 통해 두 부처가 초기 청년층의 주요 생애 이벤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이에 기반해 중단 없는 정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윤진, 김윤희, 2019). 또한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을 활용해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성과 평가 체계를 마련하여 정책 효과성을 보다 명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오선정 외, 2022).

연령대 중첩 문제의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법적·제도적 개선도 필요하다(선미정, 2024). 초기 청년층(19~24세)에 대해 기존 두 법령의 연령 정의를 넘어서는 독립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거나, 연령별 정책 지원 프로토콜을 법적·제도적으로 명문화하여 부처 간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김지경, 이윤주, 2018).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연령 경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허점은 두 법령의 중첩된 연령 정의 및 부처 간 협력 미흡에서 기인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 프로토콜 마련, 부처 간 협력 체계 강화, 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 및 제도적 개선 등(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 2022)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다.

(2) 책임 주체 모호로 인한 정책 회피·중복

청소년과 청년정책 간의 연령 중복 구간에서 발생하는 핵심 문제점 중 하나는, 책임 주체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정책 현장에서의 혼란과 비효율성이 증가한다는 점이다(이유진, 김영한, 윤옥경, 2018). 특히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관계부처 합동, 2023b)은 후기청소년(19세~24세)을 대상으로 진로교육, 창업 지원,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면서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가 협업할 것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각 부처 간 협력과 책임 분담 체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실제 정책 수행 과정에서는 많은 혼선과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박은하, 2018).

첫째, 후기청소년(19~24세)의 안정적 삶 지원을 위해 각 부처에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김형주 외, 2020). 성평등가족부는 비진학 미취업 후기청소년 대상의 진로의식 고취, 진로설계 코칭 및 관련 직업교육 연계 지원, 청소년문화의집 등 지역 내 청소년활동 공간을 활용한 후기청소년 진로프로그램 지원(김지혜, 정익중, 윤은영, 2022)을 추진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청소년의 창업에 대한 관심 제고 및 기업가 정신 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으로 비즈쿨 페스티벌, 후기청소년(청년) 대상 창업지원을 위한 청년창업사관학교 등을 추진(관계부처 합동, 2023b), 고용노동부는 청년일경험 사업 등을 통한 후기청소년의 다양한 분야 일자리 경험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한 경제적 기반 지원(관계부처 합동, 2023b),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기청소년(청년)의 취업 촉진을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등을 추진,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는 후기청소년(청년) 대상 청년마음건강바우처 연계 강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한 마음건강 상담 지원 강화를 추진(관계부처 합동, 2023b), 국방부는 군상담관 제도 등을 활용한 군 복무 후기청소년의 정서·심리적 상담 및 적응 지원을 추진, 국토교통부는 건설형 공공임대 및 청년유형 전세임대 등을 통한 주거 지원을 담당, 추진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b).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처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력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실질적인 업무 이관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로써 특정 지원 프로그램은 어느 부처의 예산에서도 반영되지 못하거나 부처 간 서로 책임을 미루는 현상이 발생한다.

둘째, 책임 주체와 협력 주체의 모호성은 행정적 혼란을 초래할 뿐 아니라, 정책 지원 대상자의 실질적인 혜택 접근성을 크게 저하시킨다(김희진, 서고운, 조혜영, 2022). 대학 진학을 앞둔 후기청소년은 진로 탐색이나 멘토링 등의 지원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 부처 간 책임 분담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조순오, 김혜원, 조혜영, 2022). 특히 대학 진학 초기의 멘토링 및 진로지원 프로그램은 개인의 대학 생활 적응과 이후 진로 선택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행정적 혼란으로 인한 지원 공백은 대상자의 진로 결정과 이후의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류정희 외, 2022).

셋째, 부처 간 명확한 책임 주체가 설정되지 않아서, 예산 책정과 집행 단계에서의 혼선과 비효율성 또한 발생한다(장근영 외, 2015). 정부의 예산 집행은 엄격한 행정 절차와 명확한 주체가 요구되는데, 후기청소년정책의 경우 부처 간 역할과 책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명확히 책정하거나 집행하는 것이 어렵다(오선정 외, 2022). 그 결과, 상황에 따라 정책 예산이 중복되거나, 반대로 어느 부처에서도 책임을 지지 않아 실제 정책 수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된다(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넷째,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책임 및 협력 모호성은 결국 현장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과 혼란을 가중시킨다(김기현, 오병돈, 이경숙, 2013). 현장 실무자는 실제 정책을 집행하는

가운데 중앙부처에서 발생한 책임 주체 모호성의 문제를 직접 경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대학 입학을 전후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때 어느 부처의 예산과 절차를 따라야 할지 혼란스럽고, 이 과정에서 업무 부담과 스트레스를 겪을 수 있다(류정희 외, 2022). 이러한 실무자의 업무 부담과 혼란은 결국 정책의 실효성과 질을 떨어뜨려, 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과 효과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로 이어진다(장근영 외, 2015).

다섯째, 책임 주체 모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명확한 부처 간 협력 체계의 제도화가 필요하다(조영숙, 정호윤, 2024). 단순히 관련 부처의 협업을 선언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할 분담과 예산 집행, 서비스 전달체계를 세부적으로 규정한 협력 프로토콜을 마련해야 한다(조혜정, 박진부, 손민정, 박재성, 이정환, 2022). 또한 후기청소년정책의 경우, 예산 집행과 정책 평가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다부처 협의체를 법적으로 구성하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실질적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김지경, 정연순, 2015).

여섯째, 후기청소년 관련 정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행정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김지경, 정연순, 2015). 현재처럼 각 부처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후기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 단위의 행정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정책 대상자들이 하나의 창구를 통해 모든 서비스를 일관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양계민, 권오영, 이영신, 장윤선, 장인숙, 2023). 이렇게 통합된 전달 체계가 구축되면 후기청소년들은 일관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행정적 혼란과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다(임희진, 황여정, 2021).

정책적 책임 모호성 문제는 궁극적으로 법적·제도적 개선이 필수적이다. 「청소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의 경계선상에 있는 후기청소년 연령층(19세~24세)에 대해서는 두 법령의 중첩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법령 사이를 잇는 특별법 또는 세부 시행령을 마련하여 명확한 정책 지원 절차와 기준을 법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이유진, 김영한, 윤옥경, 2018). 이를 통해 정책 대상자와 실무자가 부처 간 책임 모호성으로 인한 불필요한 혼란과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김희진 외, 2022). 책임 주체의 모호성과 그로 인한 정책 회피 및 중복 문제는 후기청소년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이다(류정희 외, 2022).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부처 간 협력 프로토콜 구축, 통합적 행정지원 시스템 마련, 법적·제도적 개선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조소연, 손선옥, 2024).

2)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의 전환 사각지대

(1) 보호종료아동에서 청년으로의 전환기 지원 미연계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후 '자립준비청년'으로 통일)이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자립과 정착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전환 과정에서의 지속적이고 통합적인 지원 체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은 24세 또는 보호 종료 후 5년 이내라는 제한적인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해당 연령 이후의 지원은 급격히 단절되게 된다(류정희 외, 2022). 그 결과, 자립준비청년들은 청년층으로 넘어가는 중요한 전환기에서 지원의 공백을 경험하고, 지속 가능한 자립과 사회적응이 어려워진다.

첫째, 가장 큰 문제는 현재 자립준비청년 대상의 주요 지원 제도인 자립정착금 지급 및 임대주택 지원이 24세 또는 보호 종료 후 5년이라는 제한적인 연령 및 기간 기준을 가지고 있어 자립준비청년이 막상 25세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어떠한 사회적 보호나 지원도 제공받지 못 하게 되는, 즉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의 급격한 단절 문제에 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은 일반 청년에 비해 자립 준비 기간이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도는 이러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채 일률적이고 경직된 연령 제한 기준만을 적용하고 있다(이상정 외, 2024).

둘째, 보호아동이 보호종료 후 성인기 청년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급격한 지원 중단은 해당 연령층의 취약성과 빈곤 위험을 크게 증가시킨다(이성남, 2021). 실제로 자립준비청년은 충분한 경제적·정서적 자원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지원이 단절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빈곤, 주거 불안정, 실업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류정희 외, 2022). 이는 결과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거나, 다시 사회적 지원 체계에 의존하는 악순환을 초래할 위험성을 높인다(김규리, 김용희, 한창근, 2021).

셋째, 자립준비청년 지원 정책과 일반적인 청년 지원 정책 간의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도 큰 문제이다(박성희, 2023).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지원 정책은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연령층을 대상으로 설계되어 있지만, 이들이 일정 연령을 초과한 후 일반적인 청년정책의 혜택을 받기 위한 명확한 연결고리나 연계 체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관계부처 합동, 2023b, 류정희 외 2022). 결과적으로 자립준비청년은 25세 이후, 청년정

책의 지원대상 조건(소득, 학력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책적 사각지대에 방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김형모, 2022).

넷째, 지원 연계 부재의 문제는 자립준비청년 대상 정책과 청년 대상 정책 간의 분절된 운영 및 관리 체계에서 기인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아동복지법과 청년기본법은 별도의 법률과 부처 체계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두 정책 체계 간의 연계나 통합적 접근이 제도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오선정 외, 2022). 이로 인해 자립준비청년에 대하여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가 가능하도록 연령 전환 프로토콜이나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어렵다.

다섯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 제도의 연령 제한과 기간 조건을 현실적으로 재설정하고, 이후 청년 대상 지원 체계와의 명확한 연결고리를 구축하는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김형모, 2022).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준비 및 정착 기간이 실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연령 상한을 높이거나 지원 기간을 더욱 유연하게 조정하고, 25세 이후에도 청년 지원 정책과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법적 근거와 연령 전환 프로토콜을 제도화해야 한다(류정희 외, 2022).

여섯째, 자립준비청년이 일반적인 청년 지원 정책에서 요구하는 지원 자격(소득, 학력 등)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들을 위한 특별한 지원 기준과 우선 배정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안태구, 길건혁, 김충현, 조한나, 주해란, 2022). 예를 들어 자립준비청년에게는 일반 청년 지원 정책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일부 완화하거나 특별히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류정희 외, 2022;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 2024).

자립준비청년에서 청년 지원으로의 원활한 전환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통합 정보 플랫폼과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정현주, 송사리, 2019).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준비와 사회 진입 과정에서 축적된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정책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정정호, 2025). 이러한 시스템은 자립준비청년이 보호아동에서 청년기로 넘어가는 과정에서의 지원 단절과 정책 사각지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류정희 외, 2018; 오선정 외, 2022).

자립준비청년에서 청년 지원으로의 전환 미연계 문제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과 사회 진입을 심각하게 저해(안태구 외, 2022)하는 중대한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령

제한의 유연화, 정책 간 연계 프로토콜 구축, 특별 지원 기준 마련, 통합 정보 관리 체계 구축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가정박청소년 지원 공백

가정박청소년의 자립 지원 또한 주거, 소득, 정서적 안정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 접근이 필요한데, 우리나라의 현행 가정박청소년 지원체계는 이러한 다차원적 지원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특히 청소년쉼터 퇴소 이후 자립 과정에서 주거 지원의 심각한 부족과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김지연, 김승경, 임세희, 최은영, 2020). 이는 결과적으로 가정박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하기 어렵게 만들며, 이들을 다시 사회적 위기 상황으로 내모는 주요한 구조적 원인이 되고 있다(김희진, 2024).

첫째, 가장 직접적이고 심각한 문제는 가정박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이후 제공되는 임대주택의 지원 규모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유은주, 2024). 청소년쉼터에서 퇴소한 이후 5년 이내에 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물량은 공급물량의 5%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는 수준이다(류정희 외, 2022).²⁵⁾ 이러한 제한적 물량은 대부분의 가정박청소년들이 청소년쉼터를 나간 이후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주거 불안정 상태에 놓이게 하는 주요한 이유가 된다(노혜진, 2024).

둘째, 가정박청소년들이 주거 불안정 상황에 처하게 되면, 이들의 소득 및 정서적 안정성 또한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된다(김지연, 김승경, 임세희, 최은영, 2020). 안정적인 주거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취업과 지속적인 소득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며,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문성호, 박지원, 2018). 하지만 현재의 극도로 부족한 주거 지원 시스템은 가정박청소년들이 경제적 활동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크게 제한한다(류정희 외, 2022; 관계부처 합동, 2023b).

셋째, 주거·소득·정서적 지원의 부족으로 인해 가정박청소년들은 공식적인 사회적 지원망에서 벗어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남미자 외, 2024). 주거 지원이나 소득 지원을 공식적 경로를 통해 받기 어려운 경우, 민간의 비공식 네트워크나 지역의 자선단체, 종교기관 등의 지원에 의존하게 되는데, 이러한 비공식적 지원은

25) 서울주거포털. 보호종료아동 및 쉼터퇴소 청소년 대상 임대주택 지원.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1027에서 5월 20일 인출.

품질과 안정성이 체계적으로 담보되지 않는다(류정희 외, 2022). 결국 가정밖청소년들은 불안정한 환경에서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지원에 의존하면서 장기적인 자립 및 안정적 정착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반복된다(남미자 외, 2024).

넷째, 가정밖청소년 지원의 부족은 결국 정책 대상자들이 다시 사회적 위기에 빠지게 만드는 악순환으로 연결된다(남미자 외, 2024). 특히 주거 불안정은 가정밖청소년들이 범죄, 폭력, 착취 등 다양한 사회적 위협에 노출될 가능성을 크게 증가시킨다(남미자, 2025). 또한 불안정한 주거 환경과 지속적 소득 부족 상태에서 정신적·정서적 건강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우울증, 불안장애 등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까지 겪을 위험이 크다(류정희 외, 2022; 오선정 외, 2022).

다섯째,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밖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정책을 보다 실효성 있게 확대하고, 이를 청소년쉼터 퇴소 이후의 통합적 자립 지원 정책과 긴밀히 연계할 필요가 있다(서보람, 김윤나, 2018). 청소년쉼터 퇴소자 중 특히 주거 안정성이 필수적인 청년들에 대한 임대주택 물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바우처 지원 등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확대·적용해야 한다(문성호, 박지원, 2018).

여섯째, 주거 지원 정책과 함께 소득(김영덕, 2022) 및 정서적 지원(이은영, 2025)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형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여야 한다. 가정밖청소년들이 주거 지원과 함께 취업 및 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속적인 정신건강 및 심리 상담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정서적 안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이은영, 2025).

가정밖청소년의 자립 및 정착 과정에 대한 지속적 사례관리가 가능한 통합 정보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신민호, 변상해, 오수생, 2012). 쉼터 퇴소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와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공식적인 사회복지 네트워크와 민간 지원기관 간 협력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김희진, 백혜정, 김은정, 2018). 이러한 협력 체계는 공식적인 자원과 민간 자원이 연계하여 보다 안정적이고 품질 높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오선정 외, 2022; 관계부처 합동, 2023b).

가정밖청소년 지원 공백 문제는 주거(문성호, 박지원, 2018), 소득(김영덕, 2022), 정서적 지원의 복합적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현재의 정책적 문제점에서 기인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 지원의 양적·질적 확대(유은주, 2024), 통합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구축, 지속적인 사례관리(이은영, 2025) 체계 마련 등 다층적이고 종합적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

3) 지역·청년센터 간 편차와 기능 과잉분화

(1) 재정·인력 격차에 따른 프로그램 불균형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옮겨 가는 기간은 학업과 직업 선택, 주거 독립, 사회적 관계 재구조화 등이 집중되는 중요한 시기지만, 정작 지원 정책 및 전달체계는 연속적이지 않아 청소년에서 청년으로의 전환기, 즉 19세~24세의 후기청소년 또는 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이 축소·단절되는 문제가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청소년 대상 전달체계와 청년 대상 전달체계 간 예산과 인력 격차, 그에 따른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단절과 축소에서 발견된다.

청소년 대상 주요 전달체계로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에서 정한 청소년활동시설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등의 청소년수련시설과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한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의 청소년복지시설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보호법」에서 정한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이 있고, 청년 대상 전달체계는 주로 지자체별로 설치·운영 중인데,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행정체계로서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과 집행 체계로서 「청년기본법」과 「서울시 청년기본조례」에 근거한 서울광역청년센터와 서울청년센터 등이 대표적이다(변금선, 이영주, 김기현, 장익현, 2023).

그런데 이들 청소년과 청년 전달체계 간 예산과 인력 격차가 작지 않다. 대표적 체계인 청소년센터와 청년센터를 서울시 자치구 중 한 곳을 예로 들면, 먼저 서울시 서초구에 소재한 청소년수련시설인 ‘서초유스센터’와 ‘방배유스센터’의 2025년 예산액은 각각 약 25억 원, 22억 원, 종사자는 각각 29명, 18명인 반면²⁶⁾, 같은 서초구 소재 청년시설인 ‘서울청년센터 서초(서초청년센터)’의 2025년 예산액은 약 9억 5천여만 원²⁷⁾(조직도 및 종사자 수는 홈페이지 등에서 공개하지 않음)이었다. 「2024년 청년센터 운영 실태 및

26) 방배ART유스센터. 방배유스센터 2025년도 예산 및 사용료 고시, 방배유스센터 2024년도 결산고시, 조직현황. <https://bbhilllyouth.or.kr/>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서초유스센터. 2025년도 서초유스센터 예산 및 사용료 고시, 조직도. <https://www.scy.or.kr/>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27) 서초청년센터. 서초청년센터 2024년도 결산 및 2025년도 예산 공시. <https://www.seochoyc.org/>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종사자 직무 현황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센터 1개소 2024년 평균 예산은 6억 5천여 만 원, 종사자 수는 6.5명이었다(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 2024).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아도, 동일 자치구 내 청소년 전달체계 예산액(서초유스센터, 방배유스센터 2개소 총예산 약 47억 원)이 청년 전달체계 예산액의 약 5배, 청소년 전달체계 종사자 수(2개소 합계 47명)가 청년 전달체계 종사자 수(서초청년센터의 정확한 종사자 수 파악이 어려워 청년센터 평균 종사자 수로 같음)의 7배 이상이다.

전달체계 간 예산과 인력의 격차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단절과 축소를 야기한다. 청소년센터는 지역과 운영법인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청소년공간과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운영하는 것을 비롯해 청소년위원회 등 참여활동, 학교연계활동, 지역연계활동, 진로체험활동, 문화예술활동, 미래융합활동, 국제교육활동, 수련활동, 봉사활동, 위기청소년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앞서 예로 제시한 서초유스센터와 방배유스센터 역시 청소년전용공간을 운영하면서 스마트 아카데미,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미래기술, 문화예술, 진로탐구, 자기개발, 환경보존, 봉사협력, 학교연계, 참여활동 등 다양한 영역의 프로그램과 상담/치료 정서지원사업을 제공한다.²⁸⁾ 반면, 청년센터의 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청년정책정보 제공 및 참여사업, 구직활동과 사회활동 지원, 상담 및 자원 연계 등에 집중되어 있어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종류와 수, 지원 영역의 다양성 등에서 청소년센터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다.²⁹⁾

이는 곧, 청소년에서 청년으로의 전환기, 19세~24세의 후기청소년 또는 청년들이 청소년 대상 전달체계로부터 제공받던 많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청년 대상 전달체계에서는 더 이상 제공받지 못하거나 축소 제공받게 됨을, 다시 말해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이어지는, 연속적이면서도 발달단계 전환을 반영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부재함을 의미한다.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를 모두 아우르는 연속적이면서도 각 발달단계 및 전환기의 특성을 반영하는 포괄적 지원 설계가 필요하다.

(2) 중앙·지방 플랫폼의 중복 경쟁

청소년기에서 청년기로 전환되는 시기 즉, 19세~24세의 후기청소년 또는 청년 대상

28) 방배ART유스센터. 청소년활동. <https://bbhillyouth.or.kr>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서초유스센터. 프로그램 안내. <https://www.scy.or.kr>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29) 서초청년센터. 운영 프로그램. <https://www.seochoyc.org>에서 2025년 9월 20일 인출.

지원 정책·전달체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중앙과 지방 간 플랫폼의 중복 경쟁으로, 이는 특히 청년정책 부문에서 더욱 심각하다(변금선 외, 2023).

19세~24세의 후기청소년을 포함한 청년 대상 지원 정책은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정부에서 먼저 추진되었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2015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시행, 경기도 역시 2015년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시행하여 각각 서울시와 경기도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등 청년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여러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³⁰⁾ 청년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청년 사회보장에 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중앙정부는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축,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발 빠르게 청년정책 확대 및 다변화를 추진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서 청년정책 추진이 활발한데,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및 플랫폼의 중복 경쟁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다(김기현, 2022; 변금선 외, 2023). 예를 들어 중앙정부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의 5대 정책영역(정책방향)에서 다양한 정책사업을 설계하였고(관계부처 합동, 2023a), 이에 관한 통합적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해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인 ‘온통청년’을 운영하고 있다.³¹⁾

지방정부 또한 지역 청년에게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소통과 참여를 촉진하고자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 중으로, 현재 ‘온통청년’ 플랫폼에서 서울특별시(청년몽땅정보통)³²⁾ 부산광역시(부산청년플랫폼 청년G대),³³⁾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청년정책),³⁴⁾ 인천광역시(인천유스톡톡),³⁵⁾ 경기도(경기청년포털),³⁶⁾ 충청남도(충남청년포털)³⁷⁾ 등 17개 시도 플랫폼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각에서 청년정책이 활발히 추진됨은 한편으로 지원사업

30) 경기청년포털. 경기도 청년정책. <https://youth.gg.go.kr/gg/intro/youth-policy-job-test.do>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정책개요. <https://youth.seoul.go.kr/content.do?key=2310100006>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31) 온통청년. 온통청년 소개. <https://www.youthcenter.go.kr/youthIntro/introduce/introAbout>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32) 서울청년플랫폼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33) 부산청년플랫폼 청년G대. <https://young.busan.go.kr/>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34)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https://www.daegu.go.kr/YouthPolicy>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35)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 <https://youth.incheon.go.kr/>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36) 경기청년포털. <https://youth.gg.go.kr/>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37) 충남청년포털. <https://youth.chungnam.go.kr/>에서 2025년 10월 20일 인출.

과 서비스 다각화,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quality) 제고, 정책 대상자의 선택권 확대 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원정책과 서비스 중첩, 행정 자원의 분산과 효율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어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재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김기현, 2022; 이재경, 원석현, 박배민, 2024;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 2024; 황정운, 이병현, 2024). 실제로 오수연, 김성엽, 박성민(2021)의 연구에서 청년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중복 경쟁으로 말미암은 ‘정보의 중복과 혼란’, ‘프로그램 비교·신청 과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전달체계의 연계·협력 및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중앙과 지방 간 중복 경쟁 문제는 행·재정의 비효율에 그치지 않고, 정책 대상자인 청년에게 ‘경로 피로(path fatigue)’를 일으킬 수 있어 그 심각성이 더욱 크다. ‘경로 피로’는 ‘정책 대상 집단이 여러 정책서비스 창구와 플랫폼에서 유사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접할 때 나타나는 정보 과부하, 동일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 여러 방식, 여러 채널에서 접근해야 할 때 느끼는 행정적 피로, 정책 참여 동기 저하와 이용 포기 등의 현상’(오수연 외, 2021; 이재경 외, 2024)을 의미한다. 오수연과 동료들(2021), 이재경과 동료들(2024) 등은 오늘날 청년정책이 이러한 경로 피로를 청년들에게 가져오는 것과 그 결과 정책의 효과성과 실효성, 체감도가 낮아짐을 보고하며 전달체계 개선을 시사하였다.

4) 고용·자립 서비스의 단절

(1) 플랫폼별 데이터 사일로 현상

‘데이터 사일로(data silo)’ 현상은 ‘조직 또는 부서가 데이터와 정보자원을 독립적으로 저장·관리함으로써 타 부서·기관과의 정보공유와 통합이 제한되고 상호 연계성이 저해되는 구조적 현상’을 의미한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25). 본래 ‘사일로(silo) 현상’은 경영학에서 ‘타 조직 또는 부서와 소통, 공유하지 않아 업무 효율성과 구성원 간 시너지를 떨어뜨리는, 부서 간 장벽이나 부서 이기주의 등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의미하는데, ‘사일로(silo)’가 ‘곡식이나 작물 등을 모아놓는 굴뚝 모양의 저장고’를 뜻하는 데서 유래했다(매일경제용어사전, 2025).

이러한 데이터 사일로 현상은 청소년에서 청년으로의 전환기에 관한 정책 영역에서도 발견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등이 ‘지방정부

의 청년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해 협동 연구한 바에 따르면, 청년정책 관련 데이터와 정보 또한 '기관과 부처, 정책별로 분산 관리되어 다른 기관 또는 부처에 공유되거나 연계 되지 못해 통합적 정책 추진과 서비스 연계를 어렵게 하는데'(장근영 외, 2023), 이는 고용(일자리)과 자립 지원 부문에서 확연하다.

먼저 청소년 대상 자립 지원 전달체계와 서비스부터 살펴보면, '아동양육시설'은 '보호 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 등에게 보호, 치료 등을 제공, '아동공동생활가정'은 '보호 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제4호).

다음으로 후기청소년 또는 청년 대상의 자립 및 고용 지원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자립 지원시설(자립생활관)'은 이들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공동 생활가정 등)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취업준비 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5호). 위기청소년 대상의 또 다른 자립지원 전달체계인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성평등가족부 산하 시설로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해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이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제2호). 이들 시설은 각각 위기청소년, 보호·퇴소 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 등에게 주거 환경과 함께 진로·진학 지원, 취업교육과 직업체험, 금융·경제교육, 자립역량 훈련,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청년정책의 핵심 전달체계인 '청년센터'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2에 의거, '청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로, 주로 진로·취업 상담, 취업역량 훈련 및 일자리 연계 등 구직활동과 사회활동 지원, 심리상담 지원, 청년정책 정보 제공 및 참여 지원 등에 초점을 두고³⁸⁾,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의 실무기관으로서 구직 희망 청년에게 '직업·진로지도, 직업교육과 직업능력개발, 취업지원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그런데 이들 전달체계 간 데이터와 정보, 서비스 이력 등이 분리되어 상호 교류, 이관

38) 온통청년. 온통청년 소개. <https://www.youthcenter.go.kr/youthIntro/introduce/introAbout>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등 연계되지 않아 자립준비청년을 비롯한 취약·위기 청년에 대하여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고용지원과 자립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백혜정, 김지연, 김승경, 노혜진, 2023). 예를 들어 전술한 연구(백혜정 외, 2023)는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시설 퇴소 전, 즉 청소년기의 상담, 진로, 자립 지원 정보가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또는 청년센터, 고용센터 등 청년 대상 전달체계로 연계되지 못해 서비스 이용을 위해 동일 정보를 재입력하거나 이러한 과정 속 정책 이용을 포기하기 쉽다”며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데이터 사일로 현상의 심각성을 지적하였다. 또 다른 연구(장근영 외, 2023) 또한 청소년 대상 전달체계와 청년 대상 전달체계 간의 데이터 사일로 현상, 자립 지원 전달체계와 고용 지원 전달체계 간 또는 주관 부처(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간 데이터 사일로 현상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데이터 사일로 현상은 단순히 행정적, 관리적 차원에서의 데이터 불연속, 비효율적 행정 등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책 대상자에게 연속적, 통합적인 서비스,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 그 결과 정책 대상자에게 반복해 정보를 입력하고 서비스를 신청해야 하는 등 ‘경로 피로’를 가중시켜 서비스 이용을 오히려 포기, 중단하게 하는 문제로 이어지기에(백혜정 외, 2023)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의 비호환성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고용안정망 제도로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³⁹⁾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데, 크게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분된다. I유형은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한 지원제도로써 취업경험 유무에 따라 요건심사형, 선발형(청년), 선발형(비경험)로 구분되는데 이중 특히 선발형(청년) 유형은 가구단위 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원 재산이 5억 원 이하인 15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II유형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과 상관없이 특정계층(위기청소년, 미혼모(부), 청소년부모,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등의 청(소)년 포함), 청년층,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하여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한다.⁴⁰⁾ 이와 함께 2025년에는 ‘청년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데,

39)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Id=SI00000316&systCId=SC00000206>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역량강화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후 빈일자리 업종(제조업, 물류·운송업, 보건·복지서비스업, 농업, 건설업, 해운업 등 범정부 일자리TF 지정 10대 업종)에 취업한 II유형 청년에 대하여 5개월 근속하는 경우 훈련참여수당과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한다.⁴¹⁾ 다시 말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이 없는 구직자 또는 소득이 일정액 이하거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라 할 수 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2.21.).

한편, 고용보험제도는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 등의 직업능력 개발·향상, 실직근로자 등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로, 1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고용된 근로자, 일부 자영업자를 주 대상으로 하며, 고용보험 적용 혜택에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의 실업급여와 국민내일배움카드, 국가기간전략 학습 직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⁴²⁾

그런데 이들 두 제도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있어, 이용자의 정보와 데이터, 급여와 서비스, 교육·훈련 등의 이력이 상호 연동되거나 호환되지 않아 고용·자립을 위한 연속적, 통합적 서비스로서 문제점을 가지며(최기성, 안준기, 이혁무, 2024), 이는 곧 정책 대상자의 생애주기 및 다양한 욕구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의 통합적, 연속적 설계와 시행이 제한됨을 시사한다. 향후 두 제도 간 데이터 호환, 서비스 연계와 통합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40)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Id=SI00000316&systCId=SC00000206>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41) 상동

42) 고용24. 고용보험제도.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Id=SI00000419&systCId=SC00000285>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4. 소결

아동기-청소년기-청년기로 이어지는 생애주기의 발달단계별 지원정책과 정책 전달체계의 단절은 행정구조상 분절의 문제를 넘어, 아동, 청소년, 청년의 생애주기별 권리가 정책의 연속성과 복지지원 분절과 단절에 따른 실질적 효과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확인된다.

현행 정책 전달체계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관련 법령·부처·시설·예산·정보시스템·전문인력 양성 등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모든 영역에서 분절과 단절이 이어지고 있고, 이러한 구조적인 불연속적 전달체계의 한계에 따라 아동, 청소년, 청년의 고유 욕구에 대하여 적절하게 지원하지 못하는 정책 전달체계의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아동, 청소년, 청년 관련 법령·행정체계의 중복과 단절의 구조적 문제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자체에서 연령 중복과 주무 부처 분절화로 인해 아동과 청소년 동일 연령층(17~19세), 청소년과 청년(19~24세)에서 중복 지원을 발생시키고 사각지대를 동시에 유발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 보호종료아동, 쉼터 퇴소 자립준비청년, 후기청소년 등은 때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며, 이로 인한 유효적절한 지원 누락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감과 실제 빈곤의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아동, 청소년, 청년 관련 예산과 정책성과관리 체계 간 분절성은 아동, 청소년, 청년발달 단계별 정책에 대한 효과를 연속적으로 측정하기에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 아동, 청소년, 청년 관련 예산이 각기 다른 예산으로 운용되면서 때로는 동일 목적 사업 간 이중 집행의 가능성이 있고, 일목요연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 비효율인 예산 집행 현상이 발생하고, 아동정책의 경우 보호·양육에 초점이 맞추어진 지표와 청년의 자립, 청소년의 활동 중심 지표가 각기 분리되어 발달단계별로 연속적인 장기 정책성과를 분석하기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 청년에 이르는 생애주기 발달단계별로 연속적인 통합예산 지원정책과 연속적인 중단 정책평가지표의 설계 필요성이 대두된다.

셋째, 아동, 청소년, 청년을 지원하는 기관별 파편화와 관련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관리의 비효율성이 문제로 대두된다.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나 아동, 청소년을 중복지원하고, 교육복지지원센터 또한 아동, 청소년을 사례관리하며, CYS-Net 에서도 청소년과 학교 밖 청년이 지원대상으로 운영되며, 이에 따라 사례정보가 기관과 시설에서 서로 분산되어 있고, 기관이 필요할 경우 정보 누락이나 재사례관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잔존하여 행정 비용이 낭비될 수 있고, 관련 전문가의 소진에 기여하고 대상자는 반복되는 조사에 피로도를 가질 수 있다. 기관 및 시설 간 서로 소통하기에 유용한 사례관리 표준화와 통합 DB 마련이 요청된다.

넷째, 아동, 청소년, 청년 관련 정보시스템 간 데이터 분절은 효율적인 통합분석을 차단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에 대한 조기개입 및 지원을 제한한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교육부의 NEIS, 성평등가족부의 e-청소년, 온통청년이 서로 연계가 되어 있지 않아 학대, 폭력, 소외, 자살 등 즉각적인 개입을 요하는 위기상황을 대처할 가능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다.

다섯째, 아동, 청소년, 청년의 생애 전반에 걸친 관련 지식과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과 이들을 통한 지원체계의 단절은 생애주기별로 연속적인 지원을 요하는 서비스를 제한한다. 아동 대상 보육교사·사회복지사, 청소년 대상 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 청년 대상 청년지원 매니저 영역별로 분리된 자격체계를 갖추고 철저하게 영역별 지원만 수행하는 구조여서 아동에서 청소년,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이어지는 전환기 대상이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연계 대응이 어렵다. 따라서 이를 가능하게 하는 영역 간 융합형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 간 정책 전달체계의 분절성, 파편화를 고려하고,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할 생애주기별 정책 전달체계의 연계 필요성을 고려할 때 현행 아동·청소년·청년 각각의 단절적 분절적 전달체계는 기능 연계형 협력구조를 구축하고, 행정혁신을 통해 통합정보 전달체계로의 전환을 요한다.

○———— 제4장 국외 아동·청소년· 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및 시사점

- 1. 국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 2. 소결

1. 국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1) 독일⁴³⁾

독일의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통합적 전달체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정책 대상들에 대한 관계법과 이를 근간으로 하는 정책에 대한 고찰이 중요하다. 관계법 중에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법으로는 「아동·청소년지원법⁴⁴⁾」이 있다. 다음으로 독일의 아동·청소년·청년에 관한 정책은 독일 연방정부 중 담당 부처⁴⁵⁾가 매번 새 정부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연방의회와 상원에 보고하게 되어 있는 ‘아동·청소년보고서’에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 발표된 독일의 개정된 「아동·청소년지원법」과 17번째 ‘아동·청소년보고서’,⁴⁶⁾ 그리고 독일 청소년정책의 핵심적인 전달체계라 할 수 있는 ‘청소년청(Jugendamt)’을 중심으로 독일의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통합적 전달체계와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43) 이 절은 이민희 교수(前평택대학교)가 집필하였음.

44) Kinder- und Jugendhilfegesetz, 이 법은 독일의 「사회법(Sozialgesetzbuch)」권에 수록되어 있다.

45) Bundesministerium für Bildung,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BmBFSFJ). 독일은 2025. 02. 23 일 총선에서 보수 정당 CDU/CSU 연합이 제1당이 되어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였다. 새로운 정부는 변화가 있어 기존의 가족·노인·여성 및 아동·청소년·청년을 담당하던 정책 대상에 교육정책이 추가되어 현재의 연방교육·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되었다.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bundesregierung/bundesministerien> (2025년 5월 7일) 인출.

46) BMFSFJ (2024). 17. Kinder- und Jugendbericht. Berlin: BMFSFJ.

(1) 「아동·청소년지원법」

① 「아동·청소년지원법」의 역사와 구조

가. 「아동·청소년지원법」의 역사

독일의 청소년 관계법의 역사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업혁명이 한창 가속화되는 시점에 아동과 청소년의 노동착취는 당시 큰 사회 이슈로 등장했다. 이에 독일은 1839년 프로이센 조례를 통해 공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 노동자에 대한 보호 조치 조항을 최초로 신설하였다. 이후 독일은 제1차세계대전에서 패한 후 1922년에 「제국청소년복지법」⁴⁷⁾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독일 최초로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제정된 법으로 현재 「아동·청소년지원법」의 모법이라 할 수 있다. 당시에 제정된 이 법의 가장 큰 유산은 청소년 행정과 정책의 기본 전달체계로서 독일 전국의 모든 시와 주 정부 및 기초자치단체에 싹틔울처럼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전담기관 청소년청(Jugendamt)을 마련한 데 있다.⁴⁸⁾ 이 법은 이후 1960년에 「청소년복지법」(Jugendwohlfahrtsgesetz)으로 개정되었고, 1990년 독일이 통일되면서 제정된 독일의 「사회법(SGB)」 VIII권에서 지정하여 1991년부터 지금까지 효력을 발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지원법」으로 새롭게 제정되었다. 주목할 것은 그동안 청소년 관계법에 ‘아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던 독일이 1990년 통일 후 새롭게 마련된 청소년 대상 법률에 ‘아동’을 함께 사용하여 법령을 수정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동안 독일이 전통적으로 아동보다는 청소년에 더 정부 정책의 중요성과 가치를 부여하면서 ‘청소년’이라는 개념 아래에 아동을 포함시켜 수행하던 정책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아동’이 청소년과 동등한 정책 대상으로 전면에 등장하여 법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확정된 것은 1989년 UN에서 마련된 ‘아동권리협약’에 독일이 비준국이 되면서부터라 할 수 있다.

나. 「아동·청소년지원법」의 구조

독일 통일 후 새롭게 제정된 「아동·청소년지원법」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간략히 그 구조를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 법령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1장은 개념 규정 등 15개 조항으로 일반규정을 다루고 있다. 2장은 청소년지원의 수행들에 관한 것으

47) Reichsjugendwohlfahrtsgesetz(RJWG).

48) DTV (1994). Jugendrecht. München: C.H. Beck Verlag. pp. XXXXII 참고.

로 총 4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절은 청소년사업, 청소년사회사업, 교육적 아동·청소년보호, 2절은 가정에서의 교육지원, 3절은 일일양육시설과 탁아소에서의 아동 지원, 4절은 교육에의 지원, 정신장애 아동·청소년 적응지원, 청년⁴⁹⁾을 위한 지원으로 구분되어 있다. 3장은 청소년지원의 기타 과제들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총5절로 구성되어 1절은 아동·청소년보호를 위한 임시 조치들, 2절은 가정 내 돌봄과 시설에서의 아동·청소년보호, 3절은 사법절차에의 참여, 4절은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률적 보호, 재산관리, 후견과 양육권 설명에 대한 비(非)교부 고지, 5절은 공증, 집행가능한 증서들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5장은 총 4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은 공적 청소년지원 담당기관, 2절은 민간 청소년지원과의 협업, 자원봉사 활동, 3절은 수행 서비스들, 급여, 질적 개발에 관한 협약, 4절은 공동책임, 청소년지원계획 등 청소년지원의 담당기관, 협업, 공동책임에 관한 법 조항들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6장은 중심과제들의 제목으로 주(州) 정부 과제들(제82조), 연방 과제들, 전문가의 자문(제83조), 청소년보고서(제84조)의 3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7장은 관할권, 비용의 상환에 관한 장으로 총 3개의 절로 구성되어 1절은 해당 관할권, 2절은 지방 관할권, 3절은 비용 상환과 관련된 법 조항들이 설치되어 있다. 8장은 비용 분담의 장으로 4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절은 일괄적 비용 분담, 2절은 입원과 일시 체류 수행 비용 부담 및 임시 대책들, 3절은 청구권의 인도, 4절은 보충적 규정들로 내용이 설치되어 있다. 9장은 아동·청소년지원 통계, 10장은 벌칙과 과태료 규정, 11장은 과도기 규정과 총결 규정을 다루고 있다.

위에서 서술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2024년 독일 연방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독일 의회와 상원에 보고한 17번째 ‘아동·청소년보고서’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⁵⁰⁾ 독일의 「아동·청소년지원법」은 과거의 「청소년복지법」과 비교하여 크게 보면 복지적, 구체적 차원에서 권리적, 서비스적 차원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 지원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아동보호와 감독기관의 영역에 대한 법률적 입법과 해명들이 확대된 것에 주목할 수 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이 법에는 아동, 청소년, 청년에 각기 해당되는 법 조항과 복수 대상에게 해당되는 조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다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지원법」은 이후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오다가 최근에는

49) 원래 법령에서의 원어는 ‘junger Volljähriger’로 직역하면 ‘젊은 성인’으로 번역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대한민국과 비교하기 위해서 ‘청년’으로 의역했으며, 동법 제7조 3항 연령 규정에 있어서 18세~26세에 해당하는 자를 지칭한다.
50) BMFSFJ(2024). 17. Kinder- und Jugendbericht, p.298.

2021년에 “아동과 청소년의 강화”를 핵심 표어로 아래와 같은 5개 중요 목표를 가지고 개정되었는데, 마지막으로 2025년 4월 3일 최종 수정되었다.

② 개정 「아동·청소년지원법」의 5개 중요 목표⁵¹⁾

가. 아동과 청소년 보호의 개선

- 아동·청소년 전달체계 상의 기관들은 적합한 방법으로 전문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아동 및 청소년의 위기 상황에서는 의사, 변호사 등과 협력체계를 형성해야 한다(KJHG⁵²⁾ 제8a조).
- 아동의 안녕을 위협하는 중대한 논거들의 공개는 아동기관의 돌봄 인력과 협의가 있어야 한다(동법 제8a조 5항).
- 가정법원의 재판절차에 있어서 지원계획의 제출 의무는 가정법원과 협력해야 한다(동법 제50조 2항).
-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청소년 지원 참여 시 공동의 사건 회합(동법 52조)과 형사소송 당국과 법정을 통한 지체 없는 청소년청(Jugendamt)의 정보(KKG⁵³⁾ 제5항)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협업이 있어야 한다.
- 시설들과 돌봄 가족들에 있어서도 개선된 보호가 수행되어야 한다.
- 외국과 관련된 대책에 있어서도 개선된 보호가 있어야 한다.

나. 돌봄 가정이나 수용시설에서 성장하는 젊은이⁵⁴⁾의 강화

- 이해가능하고, 체험가능하며, 인지가능한 형태의 상담과 계몽(KJHG 제36조 1항)과 형제자매 관계의 보호(동법 제36조 2항), 지원계획에 미자격 부모의 개입(동법 제36조 5항)에 대한 지원계획의 개선이 있어야 한다.
- 가정 밖에서의 거주에 있어서 지원계획의 핵심 부분은 부모의 자녀에 대한 상담과

51) BMFSFJ(2024). 17. Kinder- und Jugendbericht, pp.299~300.

52) Sozialgesetzbuch (SGB) Achtes Buch (VIII) – Kinder- und Jugendhilfe(사회법 8권 아동·청소년지원: 아동·청소년지원법)의 약칭(이후의 글에서 이 법을 KJHG로 약칭한다.), BMJ. Kinder- und Jugendhilfe. https://www.gesetze-im-internet.de/sgb_8/BJNR111630990.html에서 2025년 5월 20일 인출.

53) Gesetz zur Kooperation und Information im Kinderschutz, 「아동보호협력·정보법」의 약칭

54) 여기서 ‘젊은이’라는 용어는 독일 「아동·청소년지원법」 제7조 4항에 따른 연령 규정에 있어서 0~26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아동, 청소년, 청년을 다 포괄하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재정 및 자녀와의 관계 지원에 포괄적인 권리가 보장되고, 이와 함께 성공적인 전환의 경우 귀가도 보장되도록 정하고 있다(동법 제37조).

- 양부모와 자녀의 돌봄 관계에 있어서 보호 개념의 발전과 전환이 구속력 있게 특정되고 있다(동법 제37조 1항).
- 젊은 성인과 돌봄을 떠난 자들을 위하여 귀가 조건(동법 41조 1항), 구속력 있는 경과 계획(동법 제41조 3항), 사후 돌봄(동법 제41a조), 비용 상승들에 대한 개선 조치가 특정되고 있다.

다. 현장에서의 예방

- 최소한의 지원들과 지원의 네트워크가 실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상담에 있어서 사회 공간에 있는 상담제공자들에 대한 정보(동법 제10a조), 일반적인 가족지원에 있어서의 연계적이고, 협동적이며, 사회공간 지원적인 서비스구조들의 발전에 대한 지원(동법 제16조), 청소년지원 계획에 있어서 현장의 필요에 부응하는 서비스들의 협력 확보가 여기에 해당된다.
- 젊은이와 돌봄대상자들을 위한 상담 요청의 확대(동법 제8조 3항)와 권리요구로서의 위기상황에 있어서 돌봄과 관리를 위한 준비에 대하여 직접적 지원의 요구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 법 이행 내용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서비스들과 지원들에 대한 필요의 정당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지원에 있어서의 다양한 지원 종류들의 중복 가능성에 대한 해명(동법 제27조), 학교사회사업의 독립조항 신설(동법 제13a조), 교육에 있어서 경쟁이 심한 영역들에 대한 특별지원이 보충되었다.

라. 젊은이와 그들의 부모, 돌봄 자격자들의 참여 강화

- 수정된 법조문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동법 제1조 1항) 젊은이의 특성 표현, 새로운 상담요구(동법 제10a조)와 부모로부터 독립된 상담(동법 제8조), 소송절차 안내의 도입과 같은 젊은이의 주체성이 새롭게 강조되었다.
- 이해가능하고, 체험가능하며, 인지가능한 형태의 상담이 다양한 기관에서 있도록 구체적으로 법에서 정하고 있다.(동법 제8조 4항, 제10a조, 제36조, 제41a조, 제42조)

- 법 개정을 통해 가정 밖에서 거주하는 경우의 불만 신고 가능성(동법 제37b조, 제45조)과 주 정부의 의무과제인 독립적 ombuds기관 설립(동법 제9a조) 및 긴급보호조치에 관한 아동·청소년과 돌봄인력 및 교육자에 대한 계몽(동법 제4a조)이 신설되었다.

마. 근본적인 아동·청소년 지원의 포괄적 설계

- 교육지원과 사회복귀 지원의 동반 도입(SGB IX⁵⁵)을 통해 아동·청소년 지원이 장애, 비장애 젊은이 모두를 위한 권한으로 있게 되었다.

③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 구별 규정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은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독일은 대한민국과 달리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지원법」 제7조에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명확하게 법으로 규정해 놓아 연령의 중복에 따른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정책의 중복에 따른 예산 낭비를 줄이고 있다. 말하자면 비록 법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만 법 내용과 해당 대상들은 명확하게 법으로 각기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즉, 이 법에는 대한민국의 아동, 청소년, 청년에 각기 해당되고 있는 법 조항과 경우에 따라 복수 대상에게 적용되는 조항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어 연령의 차이에 따른 정책적 차별성과 공동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충분히 보장된다는 것이다. 독일의 「아동·청소년지원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 구분은 다음과 같다.⁵⁶⁾

§ 7조 개념 정의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미는

1. 아동은 2항에서 4항까지 따로 정하지 않는 한 14세 미만을 뜻한다.
2. 청소년은 14세에서 18세 미만을 뜻한다.
3. 청년은 18세에서 27세 미만을 뜻한다.
4. 젊은이는 27세 미만을 뜻한다.

(...)

(3) 제1조 2항⁵⁷⁾의 의미에서 아동은 18세 미만을 뜻한다.

55) Sozialgesetzbuch Neuntes Buch(사회법 9권)의 약칭으로 「장애인 재활·참여법」

56)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Kinder- und Jugendhilfe. https://www.gesetze-im-internet.de/sgb_8/_BJNR111630990.html?utm_source=chatgpt.com에서 2025년 5월 20일 인출.

대한민국은 2009년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을 통합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당시 아동은 「아동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이 18세 미만으로 규정되었고, 청소년의 연령은 「청소년기본법」에서 9세~24세로 정의되었다. 당시 정부는 통합법안에 연령을 독일처럼 규정하지 않고 모든 청소년 관계 법령 명칭과 법 조항 내용들에서 ‘청소년’ 단어 앞에 단순히 아동을 붙여 ‘아동·청소년’으로 표기하였다. 이 모두가 졸속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나온 결과였다. 이후 2020년 「청년기본법」까지 제정되면서 청년의 연령이 19세~34세로 정해지면서 아동, 청소년, 청년의 나이가 서로 간 중복되어 통합적인 정책을 펼치기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가 아동, 청소년, 청년의 정책들을 통합해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려면 독일과 같이 정책의 내용과 대상에 따른 명확한 연령의 규정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④ 「아동·청소년지원법」 상의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아래의 그림 III-1에서 보는 그림은 독일의 총선 이후 새롭게 보수 정당이 들어선 이후 최근의 연방교육·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전달체계를 보여준다.

57) 「아동·청소년지원법」 제1조 2항 “아동들의 돌봄과 교육은 부모의 자연적 권리이자 최우선으로 부여된 의무이다. 국가 공동체는 그들의 실행을 감독한다.”, 출처는 각주 13)과 같음.



* 출처: BMBFSFJ. Ministerin und Hausleitung, BMBFSFJ. Ausführliches Organigramm에서 2025년 5월 20일 인출 및 재구성.

그림 IV-1. 연방교육·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전달체계

먼저 아동·청소년정책실은 3국 14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다. 업무는 전 정부의 업무와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대체로 1국은 교육을 비롯한 청소년 관련 업무들로 구성되고, 2국은 아동 관련, 특히 탁아소, 돌봄 업무가 중점적이며, 3국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 건강, 「청소년보호법」과 아동과 청소년의 미디어 환경 관련 보호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정책 업무들은 주로 「아동·청소년지원법」의 내용들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독일의 지방정부의 전달체계 사례로 전체 16개 주(州) 중에서 베를린 주의 아동·청소년 전달체계를 소개하자면, 먼저 독일이 2025년 총선 이후 현재의 새로운 연방교육·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로 재편되면서 이에 영향을 받아 베를린 지방정부도 교육·청소년·가정 정책을 한 상원(上院)⁵⁸⁾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⁵⁹⁾ 따라서 이 교육·청소년·가정 담당 부서에서도 교육이 주된 정책업무로 조직이 구성되어 있고,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 업무는 4개 실(室) 중 청소년·가족실에 속하여 총 8개 국(局) 중에서 1개 국에서만 ‘청소년·아동 보호국(Jugend und Kinderschutz)’의 명칭으로 국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이 국에는 다시 6개 과(科)가 배치되어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 업무가 다양하게 수행되고 있는데 간략하게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⁶⁰⁾ A과에서는 청소년과 가정의 권리, B과는 SGB VIII⁶¹⁾와 JGG⁶²⁾에 따른 실무, 미성년 난민 보호 조치, 보호관찰 지원, 총괄 청소년지원, C과는 청소년사업, 청소년사회사업, 아동·청소년 범죄, D과는 아동보호와 초기 지원, 통합 지원과 참여 수행 원칙, BRV/Jug⁶³⁾ 포괄협정과 공급자 서비스 원칙, 아동보호 Berlin 긴급서비스, E과는 교육지원 원칙, 보고 체계, 데이터 기반, 전문성과 재정 감독, 협력적·개별적·유연적 지원, F과는 Wuhlheide 아동·청소년여가센터, 주 음악아카데미, 공공 경영단체 업무가 수행되고 있다.

(2) 아동·청소년보고서(Kinder- und Jugendbericht)

「아동·청소년지원법」 6장에는 독일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핵심 과제들이 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제82조(주정부 과제들), 제83조(연방의 과제들, 전문가 자문) 그리고 제84조

58) 지방정부 중 상원 제도를 운영하는 주는 베를린(Berlin), 함부르크(Hamburg), 브레멘(Bremen) 3개 주다.

59)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Jugend und Familie. Organigramm d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Jugend & Familie. <https://www.berlin.de/sen/bjf/ueber-uns/leitung/organigramm/>에서 2025년 8월 13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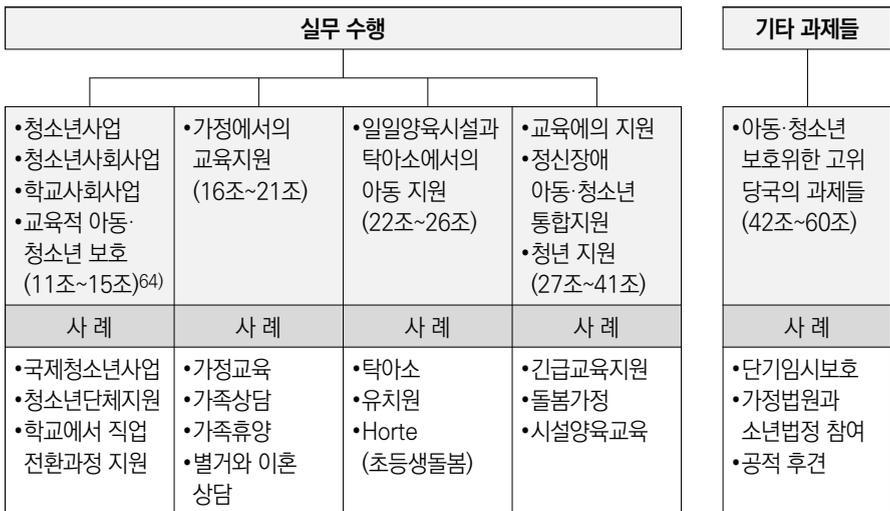
60)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Jugend und Familie. Organigramm d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Jugend & Familie. <https://www.berlin.de/sen/bjf/ueber-uns/leitung/organigramm/>에서 2025년 8월 13일 인출한 조직표 참조.

61) Sozialgesetzbuch (SGB) Aches Buch (VIII)의 약칭으로 독일 사회법 8권에 수록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지원법」을 지칭한다.

62) Jugendgerichtsgesetz(소년법)의 약칭.

63) Berliner Rahmenvertrag für Hilfen in Einrichtungen und durch Dienst der Kinder- und Jugendhilfe의 줄임말로 시설에서의 지원과 아동·청소년지원 서비스를 통한 Berlin 포괄협정을 뜻한다.

(청소년보고서)로 구성되어 있다. 제84조 법 조항 명칭은 1990년 제정 당시의 ‘청소년보고서’로 되어 있지만 현재 발행되는 보고서 명칭은 ‘아동·청소년보고서’로 바뀌었다. 여기에는 매년 새 정부가 임기 중에 아동과 청소년들의 현황 및 지원 노력과 「아동·청소년지원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의 시행들에 관한 내용들이 연방의회와 상원(上院)에 보고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독일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전체적인 현황과 시설 및 기관들을 통한 업무 수행 전달체계가 체계적으로 잘 설명되어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아동·청소년정책 과제들과 이에 대한 업무 수행의 전달체계를 아래의 그림 III-2에서 잘 보여주고 있다.



* 출처: BMFSFJ (2024). 17. Kinder- und Jugendbericht, p. 292에서 2025년 5월 20일 인출.
 IJAB (2023). Infosystem Kinder- und Jugendhilfe in Deutschland. p. 40에서 2025년 8월 14일 인출.

그림 IV-2. 아동·청소년 지원의 과제들과 업무 수행

(3) 통합적 전달체계 청소년청(Jugendamt)

독일의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모든 정책적 지원은 「아동·청소년지원법」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업무 수행은 주(州) 아래의 행정단위인 시(市)들과 지방 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아동·청소년지원법」 제69조와 70조를

64) 독일 「사회법(SGB)」 Ⅷ권에 수록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지원법」의 법 조항들을 나타낸다.

근거로 주 정부 자치단체 장의 권한에 의해 이러한 업무들을 총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통합적 전달체계가 청소년청(Jugendamt)이다. 독일의 청소년청은 2025년 현재 전국에 약 560개 정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독일의 청소년청에 대하여 간략히 소개하자면 아래와 같다.⁶⁵⁾

① 역사

독일의 청소년청의 역사는 1900년부터 시작되지만 청소년청이 공적으로 설치된 것은 1922년 제정된 「제국청소년복지법」에 의해서다. 1차 세계대전 후 독일은 경제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독일을 생각하면서 청소년에의 복지와 돌봄을 법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히틀러(Hitler)의 출현으로 국가사회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소년청의 상황은 변화되어 히틀러에게 맹종하는 교조적인 ‘히틀러청소년(Hitlerjugend)’을 양성하는 조직으로 퇴보하게 되었다. 1945년 종전 후 청소년청은 자유진영인 서독지역에서 다시 옛 설립 목적을 찾아 본연의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1961년 「제국청소년복지법」이 「청소년복지법」으로 수정되어 새롭게 제정되었고, 동서독 통일 후 1991년 지금의 「아동·청소년지원법」이 새롭게 제정되면서 시대의 많은 변화에 따라 청소년청도 새로운 다양한 과제들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② 과제와 업무

독일의 청소년청 과제와 업무는 실질적으로 위에서 이미 서술된 「아동·청소년지원법」의 내용과 독일의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모든 공적 과제들을 업무로 수행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외의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는 정부의 전국적인 공적 조직체인 청소년청을 보조적으로 돕고, 지원하며, 협력하는 모든 민간 영역의 기관과 단체들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의 청소년청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들은 대한민국의 청소년 기관 및 시설들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 대한민국은 청소년정책이 일찍부터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의 3대 영역으로 영역화되어⁶⁶⁾ 각기 설치된 관계 법령들을 근거로 기관 및 시설들과 함께 영역별 과제와 업무를 각기 수행하고 있지만, 독일은 청소년청에서 이

65) Wikipedia. Jugendamt 내용을 중점적으로 참조. <https://de.wikipedia.org/wiki/Jugendamt>에서 2025년 8월 14일 인출.

66) 지금은 ‘청소년인권’이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모든 업무를 통합하여 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지원법」을 근거로 아래에서 열거한 독일 청소년청의 중요 과제들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차이점을 확연히 알 수 있다.

- 청소년사업⁶⁷⁾의 지원(제11조, 제12조)
- 청소년사회사업(제13조)
- 교육적 아동·청소년 보호(제14조)
- 가정에서의 일반적 교육지원(제16조)
- 특수상황의 부모들을 위한 상담과 지원 서비스(제17조, 제18조)
- 보육시설들과 시간제 보육에서의 아동 지원(제22조~제25조)
- 교육상담, 사회교육적 가정지원, 종일 돌봄, 가정 밖 돌봄과 같은 교육 지원(제27조 이하)

이 밖에도 청소년청은 「아동·청소년지원법」 제80조에서 정하고 있는 ‘청소년지원계획’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제도 수행하고 있다.

- 지역에서 충분한 청소년시설들과 청소년여가시간 서비스와 청소년문화서비스 제공
- 학교에서 직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지원서비스 제공
- 청소년보호 영역에서의 예방서비스 수행
- 영유아 가정을 위한 조기 지원과 가정교육 서비스 지원
- 양육권과 면접교섭권 문제로 갈등과 위기 상황에 있는 가정의 상담 지원
- 아동 양육시설들에서의 돌봄자리 마련을 위한 조직과 시설 운영
- 교육 문제 가정에 대한 교육상담, 사회교육적 지원, 돌봄가정이나 가정밖 돌봄시설에의 위탁 등 필요하고 적합한 지원 대책 마련

위에서 열거한 업무 이외에도 독일의 청소년청은 「아동·청소년지원법」의 제42조~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어 실로 청소년청은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거의 모든 과제와 업무들을 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③ 비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일 청소년청의 과제와 업무는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며, 통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기관이 「아동·청소년지원법」에 있는 법 내용을 모두

67) ‘청소년사업’으로 번역된 독일어 원어는 ‘Jugendarbeit’로 주로 다양한 청소년활동 관련 과제들을 의미한다.

수행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기관이 비판을 받는 주된 내용은 무엇보다 인력 부족과 일반 사회서비스 인력으로서의 질적 담보의 문제이다. 이러한 비판은 위에서 열거된 다양하고 많은 청소년청의 과제와 업무들을 볼 때에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동시에 이러한 비판은 아동, 청소년, 청년의 통합된 전달체계를 기획하고 바라는 대한민국의 관련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여야 할 것이다.

(4) 시사점

독일은 연방(Bund)과 지방자치단체 16개 주(Land)로 구성된 국가이다. 연방이 관여하고 있는 주요한 아동·청소년정책에는 「아동·청소년지원법」, 「아동·청소년보고서」, 그리고 전문가로 구성되어 중요한 아동·청소년정책을 조정하고 결정하는 청소년자문위원회(Jugendkuratorium)가 있다. 실질적인 공적 아동·청소년정책 업무의 수행은 모두 지방정부인 주 소재 핵심 전달체계인 청소년청을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에서 이러한 통합적 전달체계인 청소년청이 작동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앞에서 서술된 것처럼 「아동·청소년지원법」이 아동, 청소년, 청년, 젊은이라는 개념으로 연령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구분해 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의 청소년청은 아동, 청소년, 청년, 혹은 이들 모두를 포함하는 젊은이 등 각 연령 대상에 해당되는 조항들이 명시한 과제들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의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년기본법」이 하나의 법으로 통합되어 있는 것이 독일의 「아동·청소년지원법」이라고 할 수 있다.⁶⁸⁾

한국이 독일과 같은 통합적 전달체계인 청소년청을 가지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독일과 한국은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독일은 이미 100여 년 전에 하나의 통합된 법으로 출발하여 아동과 청소년 관련 정책들을 청소년청을 통하여 수행하여 왔는데 비해, 한국의 아동정책은 1961년 제정된 「아동복지법」⁶⁹⁾을 통해, 청소년정책은 1987년 「청소년육성법」⁷⁰⁾의 제정을 통해 각기 정책의 역사를 달리하여 지금까지

68) 독일에는 「아동·청소년지원법」 외에 일찍부터 「청소년보호법」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령인 「청소년 보호법」도 존재하지만 이 역시 청소년청이 관여하고 있다. 조아미, 강영배, 이민희(2007). 선진 각국의 청소년 조직 및 정책에 관한 연구, p.151 참조

69) 1981년 전체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었다.

70) 1991년 12월 31일 「청소년기본법」으로 새롭게 제정되어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지 서로 다른 정부 부처에서 각각의 정책이 오랜 기간 동안 따로 수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각각의 정책에 따른 전달체계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서 굳이 통합하여 전문성을 떨어뜨리고 예산과 과제, 전문인력들을 축소시켜 각 정책이 퇴보되게 할 필요가 없다. 인위적인 통합을 시도한다면 실질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불이익을 가져다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예산과 인력을 절감하고 행정적 편의를 가져다줄 수 있겠지만, 국가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정책 대상에게 효율적이거나 효과적이지 않은 선택일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현실점에서 한국에 필요하고 가능한 통합적 전달체계를 굳이 생각해야 한다면 다음과 같이 모색될 수는 있을 것이다. 첫째, 법령에서 중복되어 있는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이 독일과 같이 중복되지 않게 먼저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경우는 사회 통념에 따른 초등생까지를 아동, 중·고등학생을 청소년 아직 교육 대상의 연령에 있는 대학생까지를 후기청소년, 청년은 대학 졸업 이후의 사회 진입 개체로 구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할 것이다.⁷¹⁾ 둘째, 중복된 연령 조정을 전제로 아동, 청소년, 청년의 각 정책영역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전달체계에서 과제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서로 다른 연령 대상이 수용되어 효율성과 효과성이 지속적으로 담보될 수 있다면 선별하여⁷²⁾ 통합적 운영을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시도해 본 후 확대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난한 과정이 되겠지만 먼저 기존의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3법을 독일과 같이 「아동·청소년·청년지원법(가칭)」으로 통합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이후 이 통합법 안에서 법의 내용을 크게 일반 원칙, 아동, 청소년, 청년, 연계·통합, 기타 과제들의 여섯 개의 장으로 나누고 기본 원칙 장에서 독일과 같이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정의한다. 다음의 아동, 청소년, 청년 각 장에서는 각기 생애주기 발달 상 연령의 특성에 적합한 고유의 과제들로 구성된 법 조항들을 기존의 법령들에서 선별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연계·통합 장에서는 아동, 청소년, 청년 모두에 연계하거

71) 대학생은 사회 통념상 청년의 범주에 속할 수 있으나, 「청소년기본법」의 제정 취지를 따르면 청년은 대학 졸업 후 경제적, 사회적으로 독립된 개체로서 사회에 진입하는 연령 대상으로 간주되었기에 청소년이 9세~24세로 정해진 것이다. 최근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민법상의 미성년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조정이 필요하고, 청소년 연령을 13세~17세로 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는데 이는 OECD 국가와 한국의 학제가 다른 것을 고려하지 않은 발상이다. 한국에서 18세는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되는 연령으로 18세만 따로 떼어서 성년으로 정한다는 것은 중·고등학생을 아동으로 정하고 있는 현행 「아동복지법」처럼 우스꽝스러운 일이 될 것이다(류정희 외, 2022; pp.283~285 참조).

72) 예를 들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인권 및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시설 등의 전달체계들이 전문인력과 예산, 공간이 확대된다는 전제 아래에서 아동과 청년을 수용하여 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나 통합하여 적용될 수 있는 업무 과제들을 내용으로 하는 조항들이 구성된다. 이와 함께 현존하는 시설, 기관, 단체들은 독립적으로 변화 없이 운영하되, 연계·통합 장에서 지정하는 연계와 통합이 가능한 전달체계들은 연계·통합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이러한 통합법의 운영 주체는 아동·청소년·청년청(가칭)과 같은 새로운 독립된 행정 부서의 설치가 전제되어야 한다. 만일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건실한 법체계를 지닌 청소년정책의 주무 부처이고, 가족 정책도 전담하고 있는 성평등가족부가 통합법 체계를 수행할 것을 제안한다.

2) 일본⁷³⁾

(1) 일본 아동정책의 현황

일본의 출생아 수는 1975년 200만 명 이래로 하락한 이후 꾸준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989년에는 합계출산율이 1.57까지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최경덕 외, 2024). 이 시기 이후 저출산, 고령화, 육아 부담, 가정폭력 등 다양한 사회 문제가 심화하면서,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한 사회적 책임과 더불어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 일본의 아동정책은 내각부, 후생노동성 그리고 문부과학성 등 관련 부서가 저출산, 모자보건, 유아교육 등의 정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였으나, 2023년 4월에 시행된 「아동기본법(こども基本法)」 및 아동가정청(こども家庭庁)의 설치로 인해 아동정책의 전달체계가 통합되었다.

일본에서 아동정책의 토대가 되는 법적 기반으로는 1947년에 제정된 「아동복지법(児童福祉法)」, 2013년에 제정된 「아동 빈곤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子どもの貧困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22년에 제정된 「아동기본법」(2023년 시행)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아동기본법은 1989년에 제정된 UN의 아동권리협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점, 아동의 참여와 개성을 존중하고 아동의 빈곤 예방을 위해 힘쓰는 것이 국가의 책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⁷⁴⁾

일본에서는 저출산의 진행, 맞벌이 가정의 증가, 아동의 빈곤과 학대의 심각성 등을 배경으로 아동 관련 정책의 체계적 추진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에 근거하여 2023년에는 ‘아동가정청’이 신설되어 내각부(内閣府), 후생노동성(厚生

73) 이 절은 강영배 교수(대구한의대학교)가 집필하였음.

74) 内閣官房. こども政策の推進. https://www.cas.go.jp/jp/seisaku/kodomo_seisaku_suishin/index.html 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勞働省), 문부과학성(文部科学省) 등에 분산되어 있던 아동 관련 정책이 통합되었다.⁷⁵⁾ 일본의 아동정책은 육아지원정책, 경제지원정책, 교육지원정책, 방과후학습지원사업, 아동빈곤대책,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정책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을 위한 육아 지원 정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육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2012년 「아동·육아 지원법(子ども・子育て支援法)」에 따라 인증아동원, 보육소, 지역형 보육 등 다양한 형태의 보육 서비스 정비가 이루어졌다. 특히 2024년부터는 부모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 누구나 통원 제도(子ども誰でも通園制度)」 모델 사업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⁷⁶⁾

둘째, 경제적 지원 측면에서는 1972년부터 시행된 아동수당(児童手当)제도를 들 수 있다. 아동수당제도는 도입 이래 매년 지속적으로 대상 및 지급 금액이 확대되었으며, 최근에는 소득 제한 폐지와 지급 기간 연장도 논의되고 있다. 또한 남성의 육아 휴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육아 휴직 급여 제도의 활용 확대도 이루어지고 있다.⁷⁷⁾

셋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에 대한 교육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 정책도 강화되고 있다. 공립 초·중등학교의 무상교육은 기본으로 제공되며, 급식비 및 학용품비 등을 지원하는 취학 지원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전국 평균 취학 지원 수급률은 14.3%에 이른다.⁷⁸⁾

넷째, 방과후 학습 지원도 확대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문부과학성과 보건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미래학원(地域未来学院)’ 및 ‘어린아동학습지원사업(子ども学習支援事業)’을 꼽을 수 있다. 이들 사업은 지역 비영리 단체, 대학, 퇴직 교사 등과 연계하여 교육 자원이 부족한 가정의 아동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⁷⁹⁾

다섯째, 빈곤 가정 아동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되어 있다.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빈곤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子どもの貧困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2013년 제정)에 따라 빈곤 가정의 아동에 대한 실태조사, 지원을 위한 계획수립,

75) 平和政策研究所. 「こども家庭庁」を将来的に「こども家庭省」へと格上げする. https://ippjapan.org/seisaku_bank/archives/875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76) こども家庭庁. 幼児教育・保育の無償化. <https://www.cfa.go.jp/policies/kokoseido/mushouka>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77) 厚生労働省. 厚生労働省. <https://www.mhlw.go.jp/index.html>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78) 文部科学省. 文部科学省. <https://www.mext.go.jp/>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79) 厚生労働省. 地域と学校の連携・協働について. <https://www.mhlw.go.jp/content/11907000/000907015.pdf>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정책 시행 및 평가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14년과 2019년에 아동 빈곤 대책의 기본 방침인 ‘대강(大綱)’이 수립되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습 지원, 식사제공(예, 어린이식당), 거주 공간 마련, 보호자 취업 지원이 결합된 종합적인 지원 모델이 실행되고 있으며, 특히 한부모 가정과 고등학교 진학 또는 중퇴 방지에 대한 지원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⁸⁰⁾

마지막으로, 부모를 비롯한 성인으로부터 학대 경험이 있는 아동에 대한 예방 및 사후 지원 제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아동의 학대 예방 및 대책 마련 차원에서 제정된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児童虐待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1990년 제정)에는 아동 학대 신고 의무 강화, 일시 보호 절차의 신속화, 체벌 금지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2021년 개정된 법률에서는 아동상담소와 경찰 간 협력 체계를 의무화하였다. 또한, 시설 보호 중심에서 가정 중심 보호로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으며, 2017년 발표된 「새로운 사회적 양육 비전(新しい社会的養育のビジョン)」에서는 3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가정 보호를 우선하는 방침이 제시되었다.⁸¹⁾

앞에서 언급한 아동 대상 정책들은 아동을 위한 복지, 교육, 가정 영역이 분절되지 않고 통합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포괄적 지원 체제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아동의 권리와 최선의 이익’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아동정책의 기본 기초를 견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향후 일본의 아동정책은 지역 간 격차 해소, 아동 당사자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그리고 증거기반정책평가(EBPM, Evidence-Based Policy Making)의 본격적인 도입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⁸²⁾

80) とも家庭庁. 子どもの貧困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の改正について.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752df913-0c4c-48b1-8b40-62a7cb4b5e67/c9d1e6da/20240705_policies_kodomonohinkon_02.pdf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81) 厚生労働省. 令和2年度家庭福祉対策関係予算概算要求の概要. <https://www.mhlw.go.jp/content/11907000/000546710.pdf>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82) とも家庭庁. EBPM関係資料.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2b375f6a-6455-477f-ba89-7f920a70f47d/a5cb138c/20250206_policies_budget_r7ebpmsiryu_02.pdf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2) 아동정책의 전달체계

① 중앙정부 차원의 추진체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의 아동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아동가정청이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자체는 지역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등의 진행 상태, 그리고 지역적 요구 등 여건이 상이한 점 등을 지역적 현실과 특성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아동가정청의 설립과정과 역할에 대해 살펴보면, 아동가정청은 「아동기본법」(2022년 제정) 및 「아동가정청 설치법」(2022년)에 따라 2023년 내각의 직속 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⁸³⁾

첫째, 정책의 기획 수립 및 종합 조정 기능이다. 아동가정청은 아동의 권리, 건전육성 그리고 가정에 대한 지원 강화와 관련된 정책을 입안함과 동시에 아동정책과 관련하여 관계부서 간의 예산 조정, 법률 및 제도의 조정 그리고 정보의 취합 및 공유 등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아동 데이터 분야의 분야 간 협력을 촉진하고 있다. 교육, 보건, 복지 등 다수 분야에 걸친 아동 관련 행정 데이터를 연계·활용하여 지원이 필요한 가정이나 아동을 조기에 파악하고, 푸시형·아웃리치형 지원으로 연결하는 '아동 데이터 연계'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 상담 지원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한부모가정 등 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대한 맞춤형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상담 체제 구축이 추진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을 활용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넷째, 정책수립 과정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아동가정청은 설문조사나 토론회 등과 같은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포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섯째, 아동가정청은 장애 아동,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 등 사회적 약자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장애나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 그리고 의료적 돌봄이

83) とも家庭庁. 政策. <https://www.cfa.go.jp/policies>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필요한 아동을 돕기 위해 보건, 의료 복지 등 여러 분야에서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가족과 가족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여섯째, 아동가정청은 지자체의 지역 내 아동을 위한 안전한 휴식 공간 조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외에도, 중앙정부 차원의 아동정책 총괄, 조정 과정에서 아동가정청은 문부과학성(교육), 법무성(소년 사법), 후생노동성(보육·복지) 등 관련 부처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추진체제⁸⁴⁾

가. 도도부현(都道府県) 및 시구정촌(市区町村)의 역할

지자체는 「아동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방아동계획(自治体こども計画)’을 수립하고, 수립된 계획을 수행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광역자치단체는 아동상담소 설치, 운영 등 포괄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지원한다.

나. 지역아동지원네트워크의 형성⁸⁵⁾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내 교육·복지·보건·의료·사법·경찰 등 다기관 협력을 통해 ‘지역아동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 등 다양한 취약 상황 대응 시스템이다.

(3) 일본 청소년정책의 이해

먼저, 일본 청소년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정된 법제도적 근거에 대해 살펴보면, 일본의 청소년정책은 200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子供若者育成支援推進法)과 동법에 명시되어 있는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대강(子供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 아동·청소년육성지원추진법(2009년 시행)은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에 직면한 청소년에 대한 다기관 협력을 통한 포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84) こども家庭庁. 自治体こども計画策定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5f358887-4ab1-4c56-85ae-5f417e903dbb/356fb35b/2024_0524_policies_kodomo-keikaku_02.pdf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85) 大阪市社会福祉協議会. トップページ. <https://www.osaka-sishakyo.jp/project/child-network/>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지역협의회의 설치가 규정되어 있다.⁸⁶⁾ 그리고 청소년육성정책대강(2020년 개정)은 내각부가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정한 것으로, 청소년의 자립과 사회 참여, 생활 어려움 예방, 양육 환경 정비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⁸⁷⁾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청소년정책의 주요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⁸⁸⁾

첫째, 모든 청소년대상 육성지원 정책은 자기형성을 위한 지원,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의 확보, 청소년의 직업적 자립 및 취업지원, 사회참여지원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기형성을 위한 지원에는 일상생활능력(기본적인 생활습관의 형성, 체력향상, 규범의식 등의 육성, 체형 및 독서활동의 추진, 평생교육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습득, 학력 향상(맞춤형 지도의 충실, 특색 및 매력적인 고등학교교육의 실현, 학교교육의 정보화 추진 등), 대학교육 및 전문학교(専修学校)교육의 충실 등과 같은 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건강 및 안전확보를 위한 사업에는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건강교육의 추진 및 건강 확보 및 증진 사업(건강교육의 추진, 사춘기 문제에 대한 대응, 임신·출산·육아 등에 관한 교육,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 안심하고 안전한 임신 및 출산, 산후의 확보, 소아의료의 충실 등), 청소년상담체계의 충실(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의 육성, 청소년상담센터의 충실, 학교상담체계의 충실, 지역사회상담체계의 충실, 이지메방지대책, 폭력대책, 인권옹호 등), 피해방지 등을 위한 교육(안전교육, 생명안전교육,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정보윤리교육, 노동자권리보호, 소비자교육), 청소년의 직업적 자립 및 취업지원에는 취업능력 및 취업의욕의 고취, 신규졸업자에 대한 취업지원 등과 같은 사업이 포함된다. 사회참여 지원사업에는 주권자교육, 법교육, 조세교육, 금융경제교육, 노동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교육, 소비자교육, 사회보장에 관한 교육 등이 포함된다.

둘째, 위기청소년 및 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은 청소년지원협의회를 통한 지원네트워크 구축, 상황별 위기청소년 지원(무업자, 히키코모리, 등교거부 청소년, 장애청소년, 비행 및 범죄 청소년 등), 빈곤 청소년 지원, 그밖에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청소년들(자살대책, 영케어러, 이혼가정 청소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86) e-gov.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https://laws.e-gov.go.jp/law/421AC0000000071>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87) とも家庭庁. 子供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09b95185-2d55-4783-a955-983b5283ccd2/3c0b681e/20231228_policies_kodomo-taikou_junbishitsu_06.pdf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88) 厚生労働省. 若者雇用促進法.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927443/www8.cao.go.jp/youth/whitepaper/r04honpen/pdf_index.html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셋째, 역량강화지원정책에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활약할 수 있는 인재 양성(전통문화 계승 및 이해, 외국어 교육, 유학 지원 및 유학생 교류 촉진,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교육(ESD), 국제교류활동), 과학기술인재 양성(STEAM 교육, 청소년연구자 지원, 기업가 정신교육, 창업지원), 지역사회에서 활약하는 청소년 지원(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운동선수 및 예술인 육성 등)과 같은 사업이 포함된다.

넷째, 청소년 성장을 위한 사회환경정비정책에는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의 관계 재구축(학부모교육, 학교와 지역사회간 네트워크 구축, 지역사회 차원의 청소년 성장 환경 조성, 청소년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지역환경 조성), 육아지원,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청소년들에게 안전하며,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환경 정비, 약물중독 예방 및 치료, 성폭속산업 단속) 등과 같은 사업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성장을 위해 역할을 수행할 민간협력자의 확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교사역량 강화, 의료 및 보건 분야 전문인력, 아동복지 관련 전문인력 등) 등과 같은 사업이 포함된다.

① 정책추진을 위한 전달체제⁸⁹⁾

일본의 청소년정책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아동가정청이 설립되기 이전까지 내각부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였다. 2025년 현재, 국제청소년교류활동 등을 제외한 청소년 관련 사업은 아동가정청으로 이관되었다. 아동가정청 설립 이전까지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한 내각부는 주로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내각부에서는 어린이·청소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어린이·청소년육성 지원 추진을 위한 전문가 회의 구성원에 청소년 세대를 포함시키는 동시에, 중학생 이상 30세 미만의 어린이·청소년을 ‘청소년정책모니터(ユース政策モニター)’로 전국에서 공개 모집하여, 특정 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에 대해 인터넷을 통한 의견 모집이나, 해당 모니터 중 희망자와 관련 부처의 정책 담당자 간의 직접 참여형 의견 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2021년도에는 1,000명의 청소년정책모니터를 대상으로 관련 부처의 협력을 통해 ①식품 폐기물 감소를 위한 정보 제공, ②청소년 세대에 대한 법 교육 확대를 위한 노력, ③청소년 성폭력 피해 대책, ④고립 대책의 4가지 항목에 대해 인터넷을 통해 의견을

89) 内閣府. 令和4年版 子供 若者白書 (全体版) .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927443/www8.cao.go.jp/youth/whitepaper/r04honpen/pdf/s7_4.pdf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모집했으며, 어린이·청소년으로부터 총 1,833건의 의견을 수집하여 정책 추진 등에 참고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②~④의 주제에 대해서는 온라인을 통해 각 부처 및 내각부 직원과 어린이·청소년이 의견을 교환하는 청소년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어린이·청소년 총 63명이 참여해 그룹별로 정리한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4) 일본 청년정책의 이해

최근 일본 사회에서는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 비혼·늦은 결혼, 미래에 대한 불안의 증가 등이 두드러지고 있으며, 청년을 둘러싼 사회환경은 복잡해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청년정책은 기존의 청소년육성정책과 달리, 취업 지원, 경력 형성, 사회 참여, 정신 건강 지원 등 다양한 관점을 포함하는 포괄적 정책으로 변화해 왔다. 일본은 한국과 같이 청년의 법적 연령을 규정한 별도의 법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일본의 청년정책과 관련된 법제도로는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아동청년육성추진지원법(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과 청년의 고용촉진과 불안정한 고용환경 개선 등을 목적으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년고용촉진법(若者雇用促進法)」을 들 수 있다. 아동청년육성지원촉진법은 청년을 ‘대략 10세부터 약 30세까지’로 정의하고,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며, 청년 지원을 위한 지역협의회 설치하는 등 기본 틀을 규정한 법률이다.⁹⁰⁾

다음으로 청년고용촉진법(2015년 시행)⁹¹⁾은 청년 스스로가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아울러 직업능력 향상 및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의 특징으로는 개인 맞춤형 직업정보의 제공(모집, 채용에 관한 상황,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상황, 기업의 고용관리에 관한 상황), 위법한 행위를 한 사업장에 대한 직업 소개 및 알선 금지 그리고 청년응원(ユースエール)인증제도를 들 수 있다.

일본의 청년정책을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책 분야에는 일본학생지원기구(日本学生支援機構, JASSO)를 통한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산학 연계를 통한 직업 체험 기회 제공, 재교육 지원 등이 있다.

둘째, 취업지원을 위해서는 지자체별 청년층 진로상담 및 직업 체험 기회 제공을 위한 잡카페(ジョブカフェ) 설치, 운영, 공공직업안정소(公共職業安定所)(ハローワーク)를 통한

90) e-gov.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https://laws.e-gov.go.jp/law/421AC0000000071>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91) 厚生労働省. 若者雇用促進法.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600000-Shokugyouuanteikyoku/0000134614.pdf>에서 2025년 8월 18일 인출.

취업 지원,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비정규직 및 프리랜서 지원, 최저임금 인상 및 노동시간 적정화 등 노동환경 개선, 원격근무 등 다양한 근로 형태 도입, 창업지원 등이 실시되고 있다.

셋째, 복지정책 분야에서는 경제적 지원과 정신건강대책을 들 수 있다. 경제적 지원 정책으로는 생활보호제도의 적용 기준 완화, 셰어하우스형 공영주택의 정비, 임대료(월세) 지원 등과 같은 사업이 있다. 정신건강대책으로는 학교상담사 배치, 24시간 대응 가능한 정신건강상담서비스 제공, SNS를 활용한 상담체계 강화 등과 같은 사업을 들 수 있다.

넷째, 지역창생(創生)과 청년분야로, 지방이주촉진과 지역활성화사업을 들 수 있다. 지방이주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는 지역부흥협력대地域おこし協力隊⁹²⁾의 확충(청년들이 지방에서 일하면서 지역활성화에 공헌하는 프로그램), UIJ턴지원(도시부에서 지방으로 이주를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및 취업 지원), 지역벤처기업지원(지방에서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조금, 네트워킹 강화) 등이 있다. 지역활성화사업으로는 대학과 지역사회 간 연계 강화, 청년 대상 다양한 이벤트 개최, 고향납세(ふるさと納税)를 활용한 프로젝트 등을 들 수 있다.

다섯째, 청년층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 청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언할 수 있는 ‘청년회의(ユース議会)’를 설치하고, 보조금 제도 등을 통해 비영리단체 및 시민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전달체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의 청년정책은 법령상 통일된 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정책영역에 따라 담당관청이 상이하다. 예를 들어, 고용 및 건강증진 정책은 후생노동성,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정책은 문부과학성, 주택 및 주거 관련 정책은 국토교통성이 주무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아동·청년육성지원지역협의회(子ども・若者支援地域協議会)’(아동청년육성추진지원법 제19조)와 아동청년종합상담센터(子ども・若者総合相談センター)(아동청년육성추진지원법 제13조)가 설치되어 있으며⁹³⁾, 각 지자체별로 청년 지

92) 公益社団法人 ふるさと回帰・移住交流推進機構. About 地域おこし協力隊とは. <https://www.iju-join.jp/chiiokiokoshi/about.html>에서 2025년 3월 8일 인출.

93) とも家庭庁. 子ども・若者支援地域協議会、子ども・若者総合相談センター. <https://www.cfa.go.jp/policies/youth/kyougikai-soudancenter>에서 2025년 5월 21일 인출.

원 계획과 상담 지원 체제가 마련되어 있다. 대학과의 협력, 비영리 단체(NPO)와의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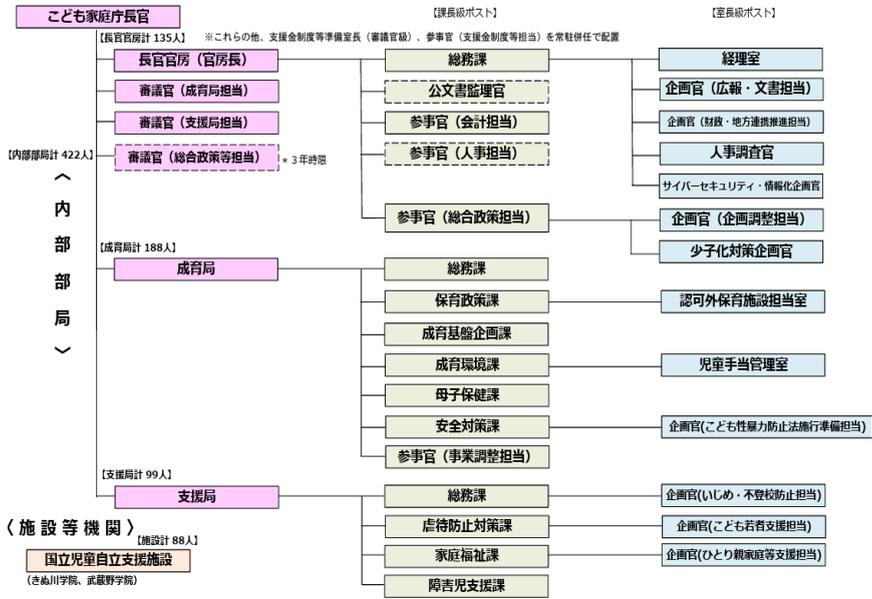
표 IV-1. 아동청소년육성지원협의회 및 아동청소년종합센터센터 설치 현황

설치현황	종별	2022	2024	2025
아동청소년육성 지원협의회	도도부현	42	42	42
	정부령도시	14	14	15
	시정촌	78	85	85
	합계	134	141	142
아동청소년종합 상담센터	도도부현	21	20	21
	정부령도시	9	10	11
	시정촌	79	86	90
	합계	109	116	122
두 곳 모두 설치	도도부현	21	20	21
	정부령도시	8	9	10
	시정촌	58	61	61
	합계	87	90	92

* 출처: こども家庭庁・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に基づく子ども若者支援地域協議会設置状況及び子ども若者総合相談センター機能確保状況에서 2025년 5월 21일 인출.

일본의 청년정책은 법적 제도와 행정 체제의 정비 통해 포괄적 지원과 사회 참여를 촉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적 분절화, 지역 간 격차, 청년의 정책 참여 문제점 등 과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다. 향후에는 청년들이 정책 수립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개별적 수요에 맞는 유연한 지원이 요구된다.

(5) 아동가정청(こども家庭庁)의 조직 및 기능



* 출처: こども家庭庁. こども家庭庁組織図概要에서 2025년 8월 8일 인출.

그림 IV-3. 아동가정청 조직도

아동가정청의 자료⁹⁴⁾에 따르면, 아동가정청은 내각부(内閣府)의 외국(外局)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장관을 중심으로 장관관방(長官官房), 성육국(成育局), 지원국(支援局)의 1관방 2국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조직의 정원은 총 510명(내부부국 422명, 시설 등 기관 88명)이다. 각 부서별 주요 업무 및 역할을 소개하며 다음과 같다.

먼저, 장관관방은 아동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부서이다. 장관관방이 수행하는 역할로는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양육자의 관점을 반영한 정책의 기획 및 조정, 정책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 그리고 데이터와 통계에 기반한 증거 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 평가, 개선 등이 있다. 아울러, 법령 심사, 예산 편성, 인사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부처 전체를 대표하는 창구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94) こども家庭庁. こども家庭庁 2025 採用パンフレット.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71340708-c07c-4efa-9e9e-ef803a523db7/5c5ff97e/20250403_recruitment_sougou_04.pdf에서 2025년 8월 8일 인출.

성육국은 모든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보육, 모자보건, 아동 안전 등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보육의 질 제고와 더불어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이다. 이를 위하여 보육원과 인정 어린이집(認定こども園)과 관련된 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며,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어 온 대기 아동(待機児童) 문제 해소와 농산어촌을 비롯한 인구 감소 지역의 보육 기능 강화를 지원한다. 보육사 등 관련 인력의 처우 개선과 적절한 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육시설을 단순히 아이를 맡기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의 사회성 발달과 보호자의 안정적인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여기고 그 역할을 강화한다. 특히, 2025년 제도화된 '모든 어린이보육원이용제도(こども誰でも通園制度)'의 도입에 발맞춰 모든 어린이가 보육 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모든 어린이의 균등한 성장을 보장하기 위해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보육 시설 보육 지침(保育所保育指針)」 등 관련 지침을 수립하여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첫 100개월의 성장 비전(健やか親子100か月応援プラン)」을 통해 어린이가 처한 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 전체의 가치관을 공유하고 실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모자 보건 및 성장 환경 확보 정책으로, 임신 초기부터 육아기까지 끊임 없는 지원을 통해 모든 임신부와 가정이 안심하고 출산 및 육아에 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임신 전부터 성과 임신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돕는 '사전 예방 케어(プレコンセプションケア)'를 추진하며, 불임 관련 상담과 정보 제공도 지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임신부와 산모에게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동반형 상담 지원(伴走型相談支援)과 지원금을 결합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또한, 지역 육아 지원 거점 사업(地域子育て支援拠点事業)을 통해 부모와 자녀가 교류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건강한 부모와 자녀 21(健やか親子21)」과 같은 국민 운동을 기반으로 임신 부 건강 검진, 영유아 건강 검진, 산후 케어 사업(産後ケア事業)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더불어, 아동이 방과후시간을 보다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인 방과후어린이클럽(放課後児童クラブ)을 정비하고,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휴식공간(居場所)을 늘려가고 있다.

그리고 아동을 둔 보호자에게 아동수당(児童手当)을 지급함으로써 가정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한다.

셋째,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정책이다. 아동이 최대한 사고나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안전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관련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부처 및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보육시설에서 발생하는 중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배포 및 홍보하고 있다. 또한 중대사고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원국은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한 아동과 가정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아동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나 가정환경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도록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학교폭력, 등교거부, 아동자살, 아동학대, 아동빈곤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아동가정청 지원국은 학교폭력, 등교거부, 아동자살, 아동학대, 아동빈곤 등 아동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 학교폭력, 등교거부 문제가 이전에 비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문제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지원국은 지자체 및 복지·의료·민간 기관 등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아동을 지원할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한다. 특히, ‘아동자살 긴급대체강화계획(こども自殺対策緊急強化プラン)’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자살 위험의 조기 발견, 자살 시도자에 대한 적절한 대응, 원인 분석 연구, 전화·SNS 상담체계 구축 등을 추진한다.

둘째, 아동가족청 지원국은 아동학대,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및 한부모 가정, 그리고 장애아동 등 사회적 약자 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한다. 지원국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통하여 모든 아동이 적절한 양육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적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상담체계의 구축 및 정비, 육아지원서비스의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아동상담소의 기능 강화 및 학대 피해 아동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모의 정상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운 한부모가정 아동을 위해 사회적 보호와 경제적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위탁부모 및 시설에 재직 중인 지원에 대한 교육, 자립을 위한 상담 지원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및 사회적 자립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생활 및 학습 지도, 취업 지원, 양육비 지원, 아동양육수당 지급 등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장애 아동과 그 가족에게 영유아기부터 성인기까지 연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발달 지원 서비스 강화, 의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체계 구축에 힘쓰는 한편,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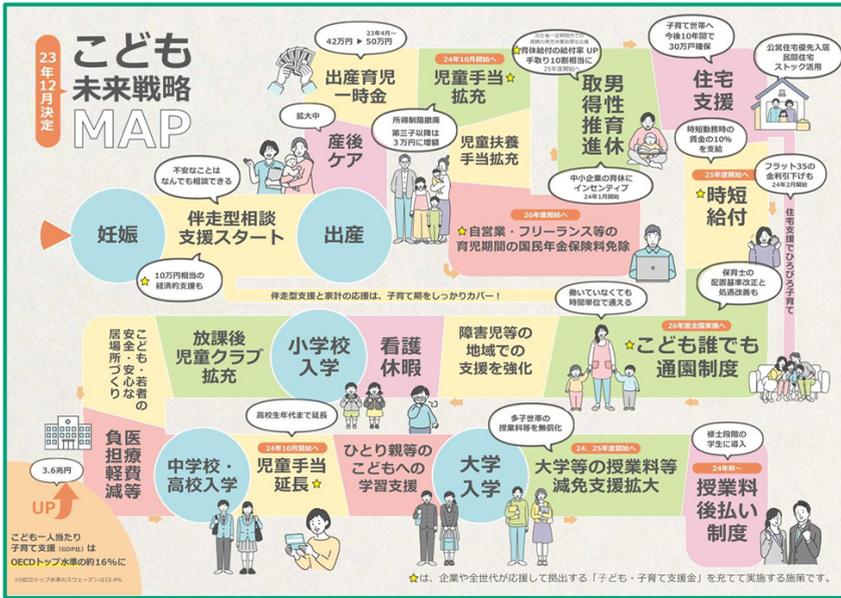
(6) 아동미래전략 및 「가속화플랜(「加速化プラン」)⁹⁵⁾

① 아동미래전략⁹⁶⁾

아동미래전략이란 2023년 12월 22일, 정부에서 ‘어린이 미래 전략’이 내각에서 결정되었다. 아동미래전략은 아동 및 육아 정책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고 차원 다른 저출산 대책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이다. 미래의 아동 및 육아 정책의 큰 틀과 함께 집중 추진 기간(2024년도부터 3년간)에 실시해야 할 ‘가속화 계획’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일본 정부가 아동미래전략을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급속한 저출산·인구 감소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일본의 출생수(2022년)는 80만 명을 밑돌며,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재의 속도로 저출산이 진행된다면 2060년경에는 5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출산은 인구 감소도 가속화되고 있으며, 감소폭은 11년 연속으로 확대되고 있다. 인구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2060년에는 9,000만 명을 밑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구 감소세를 막지 못할 때 경제 규모의 확대는 어려워지며, 일본의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있다.

95) 内閣官房. こども未来戦略「加速化プラン」施策のポイント. https://www.cas.go.jp/jp/seisaku/zensedai_hosyo/dai17/sankou1.pdf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96) freee. バックオフィスのトレンド情報をまとめて解説!. <https://www.freee.co.jp/kb/kb-trend/children-future-strategy/>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 출처: 大阪府庁. こども未来戦略에서 2025년 8월 7일 인출.

그림 IV-4. 아동미래전략지도(MAP)

이에 정부는 청년 인구증이 급격히 감소하는 2030년대까지가 현재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막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아동미래전략'을 통해 근본적인 정책 강화가 발표되었다.

아동미래전략이 제시하고 있는 세 가지 이념으로, 청년 및 육아 세대의 소득 증대, 사회 전체의 구조와 인식 변화 그리고 모든 아동 및 육아 가정을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지원을 들고 있다. 세 가지 이념의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년세대와 육아세대의 소득 증대이다. 저출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청년세대의 미혼화-늦은 결혼의 진행이다. 청년세대(18~34세) 중 '결혼할 계획이 있다'고 생각하는 미혼자의 비율은 남녀 모두 80%를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청년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하지만 소득이나 고용의 불안으로 인해 미래 전망을 그릴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청년세대가 현재의 소득과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청년세대의 소득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임금 인상, 남녀 모두에게 일하기 쉬운 환경 조성,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사회 보험 적용 확대 등에 힘을 기울일 방침이다.

둘째, 사회 전체의 구조나 의식의 변화이다. 일본 정부는 사회 전체의 의식이나 분위기가 출산이나 육아를 주저하게 만드는 상황도 저출산을 가속하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아동과 육아 가정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아동의 관점에서 사회를 실현하는 ‘아동 중심 도시 만들기(こどもまんなかまちづくり)’를 가속할 방침을 밝혔다. 또한 육아가 여성에게 집중되고, 남성이 육아 휴직을 취득하기 어려운 분위기 등 뿌리 깊은 성별 역할 분담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에도 언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녀 모두 부담 없이 육아 휴직을 취득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고,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등 노력할 방침이다.

셋째, 모든 아동과 육아 가정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이다. 일본 정부는 육아의 경제적·정신적 부담감이나 육아 가정이 가지는 불공정한 인식을 해소하려면, 부모의 취업 형태나 가정 상황과 관계없이 생애 단계에 맞춰 끊김이 없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모든 육아 가정을 평등하게 지원할 방침을 제시하고 있으며, 임신·출산 시기부터 0~2세 지원 강화, 다양한 지원 수요에 대한 세심한 대응 등에 나설 방침을 밝혔다.

② 가속화 플랜⁹⁷⁾

일본 정부는 저출산 대책이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2024년도부터 3년간 집중적으로 실시할 정책을 ‘가속화 계획’으로 발표했다. 주요 정책을 크게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아동수당제도의 확대이다. 2024년 10월, 아동수당제도가 개정되어 육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강화되었다. 확대된 아동수당제도에는 소득 제한 폐지, 고등학생까지 지급 기간 연장, 셋째 자녀 이후의 지급액 증액(월 3만 엔), 2개월에 1회 지급으로 변경(개정 전에는 4개월에 1회) 등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번 개정으로 3명의 자녀를 둔 가정은 기존보다 총 400만 엔이 늘어난 최대 1,100만 엔까지 받게 된다.

둘째, 출산·육아 지원금이 제도화되었다. 청년세대의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출산·육아 지원금’(10만 엔 상당의 비용을 지원) 제도가 도입되었다. 출산·육아 지원금은 임신과 출산 초기(2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임신 신고 시와 출산 신고 시에 각각 지원금이 지급된다. 또한 ‘동반형상담지원(伴走型相談支援)’ 등과 같은 서비스도 추가로 제공된다. 임신 및 출산에 대한 고민 해결을 위한 부모교육

97) freee. バックオフィスのトレンド情報をまとめて解説! . <https://www.freee.co.jp/kb/kb-trend/children-future-strategy/>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프로그램, 산전 및 산후 관리 그리고 일시 보육 등과 같은 서비스도 제공하며, 아울러 2023년 4월부터 출산육아일시금(出産育児一時金)을 42만 엔에서 50만 엔으로 인상하여, 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셋째, 대학 등 교육비 부담 경감이다.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내용으로는 대학 수업료 등,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급형 장학금 확대, 대출형 장학금 감액 상환 제도 이용 시 연소득 요건 등 완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수업료 후납 제도(재학 중에는 수업료를 납부하지 않고, 졸업 후 연소득에 따라 납부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2025년도부터는 자녀를 3명 이상 부양하는 경우, 대학 등 수업료 및 입학금을 무상화하여 소득 제한 없이 수업료 및 입학금이 2명분 이하로 적용된다.

넷째, '어린이 누구나 통원 제도'의 신설이다. '어린이 누구나 통원 제도(가칭)'는 월 일정 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취업 요건과 관계없이 유연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통원 지원 제도이다. 「어린이 누구나 통원 제도」가 제도화되면,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시간 단위 등으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어린이가 가족 외의 사람과 교류할 기회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고립감이나 불안감을 느끼는 보호자의 부담 완화도 기대된다.

다섯째, 보육사(保育士) 배치 기준을 조정하였다. 보육사 배치 기준의 개편을 통하여 부모가 자녀를 보육시설 등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법 개정을 통해 2024년도부터 4세·5세 아동에 대한 보육사 배치 기준이 '30:1'에서 '25:1'로 변경되었으며, 2025년부터는 1세 아동에 대해서도 보육사 배치 기준을 '6:1'에서 '5:1'로 변경하였다.

여섯째,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을 장려하고 있다. 일본의 남성이 여러 선진국의 남성에 비해 가사 및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이 짧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남성의 가사 및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을 늘려 공동 육아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남성의 육아휴직 취득을 장려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기존의 남성 육아휴직 취득률 목표치였던 30%(2025년까지)를 2030년까지 85%로 크게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임금수준을 높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조치를 강화하는 등 급여 측면의 지원책을 마련하였다. 특히, 3세부터 취학 전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해 '부모와 자녀를 위한 선택형 근무 제도(親と子のための選べる働き方制度)(가칭)'를 신설하였다. 이 제도는 자녀를 둔 부모가 유연 근무제나 단시간 근무 등 다양한 근무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이 제도를 통해 부모는

유연 근무나 단시간 근무 등 다양한 근무 방식을 선택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추진으로, 사회보험 가입자는 출산 수당과 강화된 노령 연금을 받을 수 있다.

(7) 시사점

이상 일본의 아동·청소년 그리고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토대로 한국 사회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 청소년 그리고 청년정책이 추구해야 할 공통의 정책목표 설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일본은 인구정책의 관점에서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저출산 대책 차원에서 아동, 청소년 그리고 청년정책의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은 1989년 '1.57 쇼크'를 경험한 이래 지속적으로 합계출산율은 감소하여 2024년 합계출산율이 1.15명까지 떨어졌고, 출생아 수는 사상 처음으로 70만 명 선이 붕괴되었다.⁹⁸⁾ 일본 사회는 저출산과 더불어 고령화도 급속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고령화는 사회 전체의 활력 저하, 경제성장의 둔화 그리고 기존의 사회시스템 유지의 곤란 등과 같은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아동, 청소년 그리고 청년기 단계에서부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정책 전달체계의 조정이 필요하다. 아동가정청과 같이 아동, 청소년 그리고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의 설립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일본은 2023년 아동가정청을 설립하면서 내각부를 비롯한 각 중앙관청에서 담당하던 아동, 청소년 그리고 청년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인 아동가정청을 설립하였다. 일본은 갈수록 복잡해지고 다양화되고 있는 아동 및 가정 관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정책추진 방식인 관련부서 간의 연계만으로는 충분한 대응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내각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등이 소관하던 업무, 즉 아동복지, 모자보건, 교육 그리고 저출산대책, 청소년육성 등을 총괄하는 부서인 아동가정청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내각관방의 자료⁹⁹⁾에 따르면 아동가정청의 소관 업무로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 확보 및 초등학교 입학

98) TRT GLOBAL. 2024년 인구 기록적인 감소세, 일본의 저출산 현상 지속. <https://trt.global/korean/article/c379636f2b86>에서 2025년 8월 19일 인출.

99) 内閣官房. ことも家庭庁設置法(令和4年法律第75号)の概要. <https://www.cas.go.jp/jp/houan/220622/75gaiyou.pdf>에서 2025년 8월 19일 인출.

전 아동이 있는 가정의 육아 지원에 관한 기본 정책, 아동 및 육아 지원 급여를 포함한 아동 및 아동을 양육하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 아동의 보육 및 보호, 아동이 있는 가정의 육아 지원 체계 정비, 지역 내 아동의 적절한 놀이 및 생활 공간 확보, 아동 및 아동이 있는 가정 및 임신부, 산모 등 모성 복지 증진, 아동의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 환경 정비, 아동 학대 방지, 학교 폭력 방지 등 관련 상담 체제 등 지역 내 체제 정비, 아동이 독립된 개인으로 평등하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위한 기본 정책, 결혼, 출산 또는 육아를 희망할 수 있는 사회환경의 정비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본 정책, 아동·청년 육성 지원 관련 사항 등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각 정책 대상의 발달적 특성의 연속성을 반영한 정책 수행 로드맵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동가정청이 작성한 「아동미래전략로드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부는 아동미래전략에서 경제성장과 저출산대책을 통해 청년 및 육아세대의 소득증대라고 하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 로드맵은 임신, 출산, 취학 전 단계, 초등학교 단계, 중·고등학교단계, 대학 입학별로 생애주기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임신, 출산을 포함한 취학 전단계에는 동반형상담지원 및 아동수당의 확충, 청소년단계(초·중·고등학교)에는 방과후아동클럽의 확충, 학습지원 및 휴식공간의 제공 그리고 청년 단계에는 고등교육 취학지원제도의 확충, 육아시 단기취업수당제도, 남성의 육아휴직취득 장려 등과 같은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3) 미국¹⁰⁰⁾

미국의 아동·청소년정책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이다. 산하의 아동가족청(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ACF)이, 더 구체적으로는, ACF의 하위조직인 아동청소년가족국(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 Families,ACYF)이 아동 및 청소년정책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ACYF의 주 업무는 아동복지법, 입양 및 가족보조금 관련 연방 법률 집행을 위한 정책 지침 및 자금 지원, 아동의 안전한 양육을 위한 지역사회 예방 서비스, 증거 기반 연구 활용, 혁신적 복지서비스 개발 및 평가 등을 위한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그리고 정책서비스 관련 기술 지원과 교육 훈련이 있다. ACYF가 속한 ACF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100) 이 절은 성윤숙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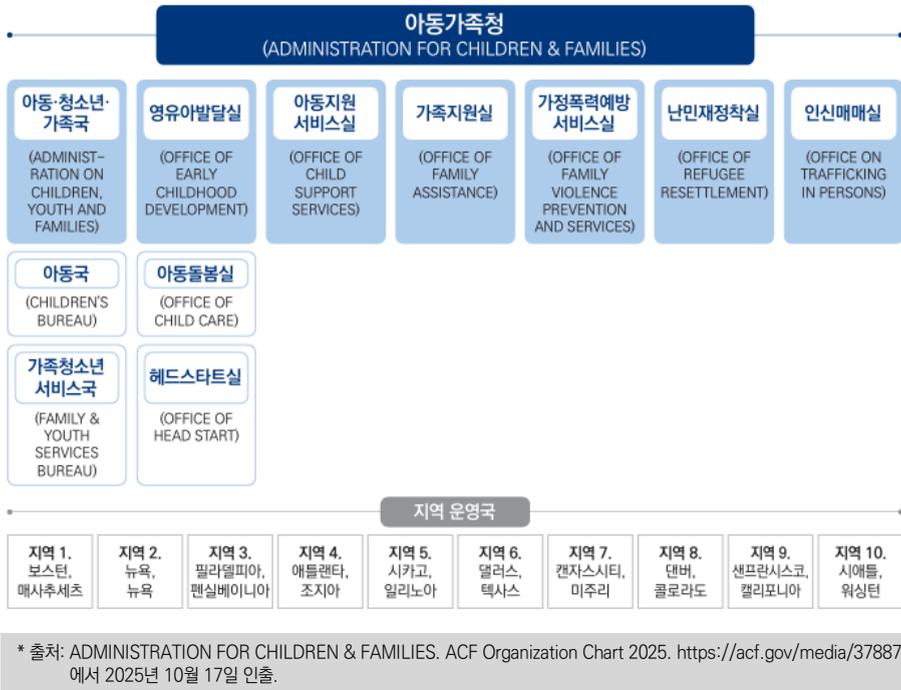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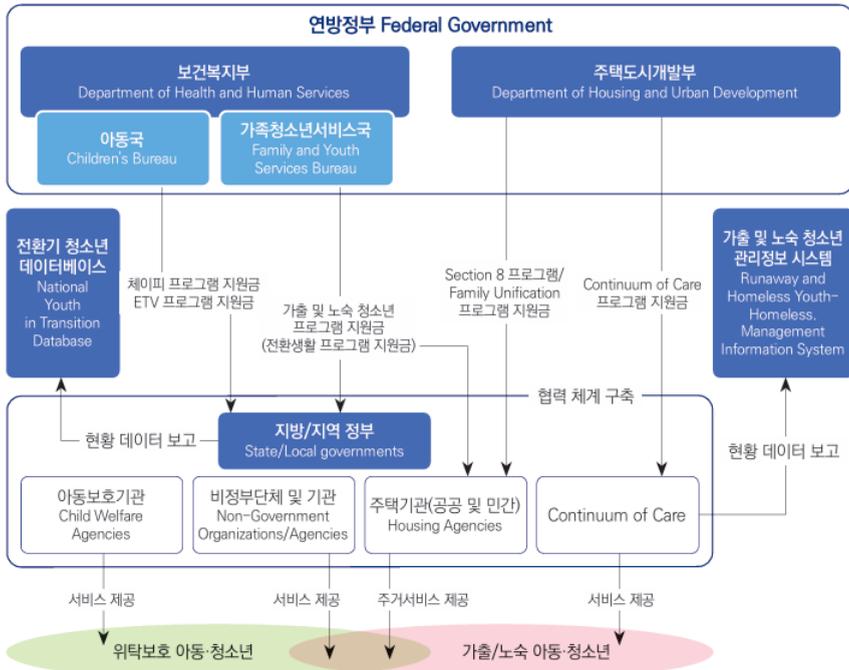


그림 IV-5. 미국의 아동가족청(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조직도

ACF의 정책 영역은 기본적으로는 취약 상황에 있는 정책 대상을 돌보는 보호 복지의 영역이 중심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ACYF 산하에는 두 개의 핵심국이 있다. 아동국(Children's Bureau, CB)은 아동복지 및 보호, 입양과 가정위탁, 아동 학대 예방 등 가족 지원 서비스를 총괄한다. 그리고 가족청소년서비스국(Family & Youth Services Bureau, FYSB)은 주로 청소년 보호·복지 업무, 즉 청소년 가정폭력 예방, 노숙 청소년보호, 청소년 임신 예방 프로그램(Adolescent Pregnancy Prevention Program, APP) 및 가정 강화 프로그램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ACYF는 또 저소득층 영유아에서 청소년 대상의 헤드스타트(Head Start)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교육, 건강, 심리상담 치료 등 가정생활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위탁보호, 가출 및 노숙 등 위기 아동, 청소년에게 주거, 급식, 의료 등의 긴급 프로그램과 함께, 심리상담, 심리치료, 관계 회복 및 적응력 강화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음은 위탁보호, 가출 및 노숙 등 위기 아동,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이다.



* 출처: 이상정 외(2020).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 정책 연구. p.78에서 발췌.

그림 IV-6. 위탁보호 및 가출·노숙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서비스 전달체계

그런데, ACF가 소극적 복지라 할 수 있는 보호 복지 정책서비스만을 아동·청소년에게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적극적 복지 영역인 문화와 활동 그리고 사회참여 등의 정책서비스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문화, 여가, 예술 체험, 여행, 스포츠, 예체능 등의 분야에 속한 다양한 활동 교육은 물론, 더 나아가 기술 교육이나 각종 직업 체험 및 훈련 기회도 부여한다. 그와 더불어 사회적 함양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봉사를 지원하고, 인권, 자유, 평등 등 다양성과 차이를 지닌 사회의 공존과 상생 지향적 이념을 옹호하는 캠페인 등 사회참여 기회도 주어진다. 특히 적극적 청소년 개발 이니셔티브(Positive Youth Development Initiatives)는 청소년의 자기주도적 성장과 사회참여 촉진, 리더십과 진로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미래지향적 자아실현을 지원한다.

미국은 정책의 효율적 구현을 위한 정보관리시스템도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소년용 노숙인 데이터베이스인 가출 및 노숙 청소년 관리정보시스템(Runaway and

Homeless Youth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이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노숙인 관리정보시스템(Homeless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을 확장한 것으로, 가출 및 노숙 청소년 관련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다. 각 지역사회가 데이터 수집 입력을 하고, 주택도시개발부가 데이터의 통합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또 전환기 청소년 데이터베이스(National Youth in Transition Database)가 있는데, 이는 위탁보호 혹은 보호 종료 아동·청소년의 현황 및 자립 지원 서비스 관련 데이터 수집을 위한 통합 데이터관리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보호 혹은 보호 종료 아동·청소년들에 대한 자료를 17세부터 2년 주기로 21세까지 추적, 자료 수집을 진행한다. 자료 수집의 주체는 주정부로서, 각 주정부는 데이터의 주기적 보고의무를 지니며, 보고된 데이터는 사회복지부 산하 아동정책국이 취합한다.

반면, 청년정책의 경우 연방 차원에서 청년정책 전반을 기획·통합·운영하는 단일 주무 부처는 없고,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등 분산형 체계를 이루고 있다. 2022년까지 대통령실 산하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이 우리의 국무조정실처럼 연방 차원 조정과 통합을 맡아왔으나, 2019년부터 한시적으로 운영되었고, 2022년 조직 운영이 종료되었다. 따라서 현재 미국의 청년정책은 각 부처가 분야별로 분담 운영하는 다원적 체계이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HHS)는 청년 취약계층 대상 건강 등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청년 일자리 창출, 고용 촉진, 직업 교육 및 훈련 강화를 책임지며,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는 교육 기회 확대 및 장학금 지원, 직업 교육 및 대학 진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청(SBA)은 청년 창업 지원을, 국토교통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는 청년 주거 관련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이를 간략히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표 IV-2. 미국 청년정책 주무 부처 현황

기관	역할	주요 담당 분야
보건복지부 (HHS)	청년 취약계층 복지지원	건강·복지 프로그램 운영
노동부 (DOL)	고용 및 일자리 정책	청년 일자리·직업훈련
교육부 (DOE)	교육 지원 및 연계	장학금·교육 기회 확대
중소기업청 (SBA)	창업 지원 금융	청년 창업 활성화
국토교통부 (HUD)	주거 정책 지원	청년 주거 환경 개선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추진단	정책 통합·조정	부처 간 협력 및 평가

결론적으로, 미국 아동·청소년정책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HHS)이고 청년은 다부처 간 유기적 연결망을 이루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 연방제 국가인 미국만의 특이점이 있다. 정책 수립과 정책 실행 등 사회 전반에 적용되는 제반 정책 영역에서,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 간 간극이 크다는 점이다. 비록 연방정부의 정책 가이드라인이 제정되긴 하지만, 실질적 정책 설계와 서비스 집행 등 운영은 각 주정부에 위임되어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다른 국가들과 달리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법률, 교육 및 각종 복지 정책이 주별로 상이한 것이 현실이다.

4) 영국¹⁰¹⁾

(1) 영국의 아동·청소년·청년 법적 연령 구분표와 근거법령

2025년 기준 아동·청소년·청년의 법적 연령 구분과 주요 근거 법령은 다음과 같다. 아동(Child)은 「아동·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2008)」에 근거하여 12세 미만으로 규정한다. 청소년(Young Person)은 12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아동·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2008)」 등 일반적으로 18세 미만을 청소년으로 규정한다. 청년>Youth/Young Adults)은 정책 영역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된다. 혼인과 투표 가능 연령 등을 고려하면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으로 볼 수 있으며, 25세까지를 전환기 청년(former relevant children)으로 보고 사회적·정신적 자립 전환 정책 지원을 제공하며, 이 시기까지 지방정부는 자립 지원 의무를 부담한다.

표 IV-3. 영국의 아동·청소년·청년 연령 범위 및 근거법령

구분	연령 범위	근거 법령 및 설명
아동 (Child)	13세 미만	『성범죄법(Sexual Offences Act 2003)』에서 아동을 13세 미만으로 정의
청소년 (Young Person)	12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청소년법(Children and Young Persons Act 2008)』과 여러 보호법에서 법적·사회적 보호 대상임
청년 (Youth/Young Adults)	대체로 18~24세, 15~24세 범위도 사용	국제기구(UN, WHO) 기준은 15~24세를 청년으로 보며, 영국 내 정책에서는 18~24세를 청년기로 분류, 취업·교육·주거 등 자립 지원 대상 포함
전환기 청년 (former relevant children)	18~25세	개별 전환계획(Pathway Plan)과 개인 상담사(Personal Advisor) 배치를 통한 체계적 지원 강화

101) 이 절은 성윤숙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2)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중앙부처

영국의 아동·청소년정책 및 조정 주무 부처는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다. 교육부는 직접 아동·청소년 복지 일반 및 보호 복지서비스 업무를 담당하며, 보건부 등 여러 부처와의 협업 관계를 유지하며 총괄조정 업무도 맡고 있다. 먼저 교육부 조직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부					
가족그룹	운영 및 인프라 그룹	학교그룹	기술그룹	전략그룹	지역그룹
취약 아동·청소년 지원 전담 부서	자본 사업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	상업사업 실행	커뮤니케이션	중동부
CSC 입양·가족 사법 및 대체 보호	고객 경험 및 디지털국	학생 복지 및 안전	상업사업 운영	실행단	잉글랜드 동부
CSC 보호아동 배치	교육시설	학교 전략 및 체계 개혁	평생교육 감독	비서실	런던
CSC 성과·보호 종료 및 자본	시설·보안 및 인사	SEND 및 대안적 교육	고등교육 감독	위기대응	국가
CSC 사업관리 및 재정지원	재정지원 및 재무 감독	기준 및 시험	지역·교육기관 협력	전략분석, 연구, 데이터, 정보 및 과학	북동부
CSC 지역 협력 및 위탁보호	인사관리	교원 인력: 지원자 연수생·전략사업 및 분석	학교 생산성 향상	전략정책국	북서부
CSC 전략 및 돌봄 체계	운영 재무	교원 인력: 교사 및 튜터	Skills England CEO	전략그룹	학교재정 지원 및 감독
영유아, 보육, 가족	전략 재무		생애 역량		남동부
영유아, 보육, 가족 및 분석	기술국		역량 전략 및 협력		남서부
가족지원 (Family Support)			기술 자격 및 핵심 역량		요크셔 및 험버
아동사회돌봄			현장 기반 역량		
아동 및 가족 사회서비스 지도부			Skills England		

* 출처: Find open data. Organogram of Staff Roles & Salaries. <https://www.data.gov.uk/dataset/5a1f3831-86d6-4979-9164-99e982361ca4/organogram-department-for-education>에서 2025년 10월 17일 발췌 및 재구성.

그림 IV-7. 영국 교육부 조직도(아동·청소년정책 및 조정 주무 부처)

① 아동

보건부와의 연계를 토대로 교육부는 영국 아동정책의 '중앙 컨트롤 타워'로 기능하며, 아동·청소년의 복지, 보호, 교육, 자립지원 정책을 수립·조정하며, 관련 법 규정 및 재정 배분 등의 중앙관리 기능을 수행한다.

교육부 산하 '교육기준청(Ofsted)'은 지방정부나 기관이 제공하는 교육, 복지, 보육 등의 서비스를 관리, 감독한다. 주로 가정 외 보호아동, 빈곤아동 등 취약 아동을 위하여 복지, 보호, 보육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부는 또 150여 개 지방정부 및 기관들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다. 나아가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을 통한 증거 기반(Evidence-Informed) 정책 설계와 집행을 지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영국은 'DfE(교육부)'가 아동·청소년정책을 담당하고, 산하 기구와 다기관 협업 모델을 통해 실질적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내 아동·가족부서(Children and Families)의 조직도와 세부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IV-4. 영국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내 아동·가족부서(Children and Families) 조직도 주요 구성

부서명	역할
부서장(Director of Children and Families)	- 부서 전체 책임자이며, 아동복지와 가족지원 정책 총괄
아동복지 정책팀 (Child Welfare Policy Team)	- 학대 방지, 아동보호 정책 개발 및 법적 집행 지원 - 아동 복지 서비스 관리: 학대 및 방임 아동보호, 위기 아동 개입, 가정외 보호(위탁가정) 정책 관리, 장애 아동 지원 등 포괄적 아동복지 업무 수행 - 아동보호, 학대 및 방임 예방과 대처
가족 지원 서비스팀 (Family Support Services Team)	- 가정 환경 개선, 가족 상담, 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가족 지원 및 상담: 빈곤 가정 지원, 가족 기능 강화 프로그램, 아동 양육 지원 정책 수립 및 운영 - 가족 기능 강화와 경제·정서적 지원
조기 개입 및 예방팀 (Early Intervention and Prevention Team)	- 아동 위험요인 조기 발견, 지원 프로그램 기획 및 실행 - 조기 개입 및 교육 지원: 조기 아동 발달 지원을 위한 헤드스타트 프로그램 운영과 교육 및 건강 통합서비스 제공 - 조기 개입을 통한 위험 아동 지원 및 문제 예방

부서명	역할
위탁가정 및 입양 서비스팀 (Foster Care and Adoption Services Team)	- 위탁가정 관리, 입양 절차 감독 및 지원 - 위탁가정과 입양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서비스 관리
데이터 및 연구팀 (Data and Research Team)	- 정책 개발 및 법적 집행: 아동복지 법률의 이행을 총괄하고, 지방정부 및 사회복지기관과 협력하여 정책의 효과적 실행을 지원 - 아동·가족 정책 관련 데이터 수집, 효과성 평가, 정책 연구 지원 - 데이터 관리 및 성과 평가: 아동복지 서비스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과 성과 평가를 수행하여 정책 개선에 활용 - 정책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 - 아동과 가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과 실행 담당
협력 및 지역사회 연계팀 (Partnership and Community Integration Team)	- 지방정부 및 사회복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서비스 연계 강화 - 지방정부 및 다기관 협력체계 구축과 정책 집행 지원, 관련 부처 및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

② 청소년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 내 청소년 담당 부서는 여러 조직과 함께 청소년복지, 보호, 자립, 진로 지원, 교육 등 통합지원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주요 세부 역할은 다음과 같다.

표 IV-5. 영국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 DfE) 내 청소년 담당 부서

담당 부서	역할
아동·청소년 자립지원 부서	- 보호 종료 청소년(케어리버)을 위한 자립지원 정책 수립 및 실행 - 개별 전환 계획(Pathway Plan) 수립과 개인상담사(Personal Advisor) 배치·지원 - 주거, 교육, 고용, 건강 및 사회통합 지원 프로그램 관리
아동 및 가족 서비스 부서	- 아동보호 정책과 법률 집행, 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 청소년 범죄 예방, 비행 청소년 지원 및 학교 왕따(bullying) 방지 정책 추진 - 교육 접근성 강화 및 취약계층 아동보호 대책 수립
교육 평가지원 부서	- 지방정부와 학교 운영 평가 및 감독(Ofsted 포함) - 교육 정책의 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제시
정책 연구 및 개발 부서	- 청소년 대상 정책 연구 및 데이터 분석 -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 트렌드 및 성과 모니터링

③ 청년

청년정책은 언급하였듯 교육부를 중심으로 노동연금부(Department for Work and Pensions, DWP) 등과 연계하여 고용, 복지 등의 정책 영역에서 청년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먼저 교육부는 교육, 진로, 주거, 사회복지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한다. 지방정부와 연계하여 전환 계획(Pathway Plan)을 수립하고, 청년 사회 진입을 지원하며 청년 복지서비스 예산을 배분한다. 노동연금부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 및 자립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대규모 고용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청년 보장(Youth Guarantee) 이니셔티브를 통해 대학 교육, 견습, 일자리 등을 제공한다. 그 외에 문화부(Department for Culture, Media and Sport)는 청년들의 사회참여 및 문화·체육 활동을 지원하며, 지역균형발전부(Department for Levelling Up, Housing and Communities)는 주거 지원 및 지역사회 기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영국 정부는 한국의 국무조정실처럼 청년층의 교육·고용·복지 통합지원을 위해 다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조정하고 있다. 다만 직접 정책 주무 부처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3) 지방정부

지방정부(Local Authorities)와 지역마다 통합보건위원회(Integrated Care Boards, ICBs), 경찰국(Police Forces)이 핵심 파트너로 다기관 협력체계(Multi-Agency Safeguarding Arrangements, MASA)를 구성하고 있다. 지역별 아동복지 거버넌스는 “법적 공동책임 체제와 데이터 연계형 협력모델”이며, 각 기관의 분담된 책임하에 아동복지·보호·교육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요 담당 기관과 역할은 다음과 같다.

표 IV-6. 영국 지역별 주요 담당기관 역할

구분	주요기관	핵심 역할	법적 근거
지방정부 (Local Authority)	아동보호·사회복지 총괄, 사례관리 (Social Care)	위험 아동 조사·개입(Children Act 1989, Section 47), 서비스 조정, 시설위탁 관리	Children Act 1989, Section 17-47
보건위원회 (Integrated Care Board, ICB)	정신건강·신체건강 보건서비스 연계	학대 및 방임 아동 치료, 부모 건강문제 (약물·정신질환) 중재	Children Act 2004, Section 16E

구분	주요기관	핵심 역할	법적 근거
경찰 (Police Service)	범죄수사 및 아동보호 공동 대응	학대·착취 사례 긴급보호, 범죄예방, 실종아동 대응	Working Together to Safeguard Children 2023
교육기관 및 복지단체	교육복지·가정연계 서비스 제공	위험 아동 사전 식별, 학교결석 대응, 부모지원	Children's Wellbeing and Schools Bill 2025

최근 2023~2025년 교육부(Department for Education)의 아동·가족부서(Children and Families)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정책 효율성 증대와 다기관 협업, 그리고 아동·청소년 복지 서비스의 통합 강화를 위함이었다. 주 개편 내용은 첫째, 기존 아동보호, 가족 지원, 조기 개입 부서 통합으로 업무 중복 제거 및 정책 집행 연계성 강화, 둘째, 각 분야의 전문팀을 재편성한 전문성 강화, 셋째, 정책 효과성 평가 및 증거 기반(Evidence-Based) 정책 수립을 위한 독립 데이터, 연구팀 신설, 넷째, 지방정부와 협력 강화, 그리고 마지막 다섯째,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강화가 있다.

5) EU 회원국¹⁰²⁾

유엔 아동권리협약(CRC,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따라 회원국은 ‘아동보호의 기본적 의무 주체이다. 다만 아동보호에 대한 책임은 정부, 지역(regional), 지방(local) 당국 등으로 분산되어 있다. 정부는 국가의 구조와 무관하게 아동의 권리에 대한 증진(promote), 보장(ensure), 보호(protect)의 의무를 지는데, 이는 국제법(international law), 유럽법(European law), 국내법(national law)에 근거한다. 또 지역 기관은 국가정책의 신속한 이행, 기존 법률과 정책(existing laws and policies)의 준수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지방 당국은 아동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특정 법률이나 정책의 모니터링, 조정, 개발 등 다양한 역할을 이행한다. 민간 및 지역 공동체의 경우, 시민단체는 국가정책 실행을 지원, 분석하며 전문 지식을 제공한다. 무엇보다 효과적인 통합 아동보호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 간 유기적 연계성 및 책임의 조정과 협력 보장이 필수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국가 단위의 조정 기구(national unit)가 필요하다.

102) 이 절은 성윤숙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27개 EU 회원국의 아동보호 시스템 분산화(decentralization)의 방식은 다양하다.¹⁰³⁾ 일부는 아동보호 책임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있고, 반면 국가 차원에서 조정과 기준 설정의 권리와 책임을 유지하는 회원국도 있으며, 시군 등이 아동보호의 책임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아일랜드(Ireland), 룩셈부르크(Luxembourg), 몰타(Malta)는 중앙 집중형이다. 아일랜드는 아동·평등·장애·통합·청년부 장관(Minister for Children, Equality, Disability, Integration and Youth) 하에 아동 및 가족청(Child and Family Agency)을 두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국가 아동청(National Office for Children, Office National de l'Enfance)을 운영하고 있다. 또 몰타는 아동보호국(Child Protection Directorate)과 대체 보호국(Directorate for Alternative Care, Children and Youth)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대부분 회원국은 다양한 차원에서 아동보호 책임을 분산하고 있다. 스웨덴(Sweden)은 아동보호 시스템 운영을 분산화하고 있지만, 국가가 법률을 통해 이를 감독, 규제한다. 벨기에(Belgium), 키프로스(Cyprus)는 책임을 지자체에 배정하고 있다. 그 외 불가리아(Bulgaria), 독일(Germany), 에스토니아(Estonia), 포르투갈(Portugal), 루마니아(Romania)는 지방 또는 시에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벨기에, 스페인(Spain), 오스트리아(Austria)는 아동보호 책임을 지자체에 두나, 시가 주요 책임을 진다.

또한 16개 회원국은 지자체와 시군이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형태다. 체코(Czechia), 덴마크(Denmark), 그리스(Greece), 스페인(Spain), 프랑스(France), 크로아티아(Croatia), 이탈리아(Italy), 라트비아(Latvia), 리투아니아(Lithuania), 헝가리(Hungary), 네덜란드(Netherlands), 오스트리아(Austria), 폴란드(Poland), 슬로베니아(Slovenia), 슬로바키아(Slovakia), 핀란드(Finland)가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일부 회원국에는 루마니아의 일반 사회복지 및 아동보호국(General Directorate of Social Assistance and Child Protection)과 같은 아동보호 전담국(특별 국)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아동보호 분야의 사회 정책 이행과 동시에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개인, 집단, 공동체에 대한 정책 수행과 사회복지 급여 및 복지서비스의 관리와 제공도 책임지고 있다.

이 밖에도 헝가리(Hungary)의 국가 아동보호 서비스(National Child Protection Service)는 통합 기관으로, 부다페스트 아동보호 서비스(Budapest Child Protection

103) 참고자료: EU Fundamental Rights Agency(FRA). Mapping child protection systems in the EU – Update 2023, Mapping of child protection systems in the EU 27 – an update; Eurochild 2025. Child protection systems in Europe; UNICEF and Eurochild 2021. Better data for better child protection systems in Europe: Mapping how data on children in alternative care are collected, analysed and published across 28 European countries.

Service)와 19개 주의 지역 아동보호 서비스를 관할하며, 아동의 이익과 기회의 평등을 대변한다. 즉 모든 지역에서 아동의 동일한 원칙과 지침에 따른 보호 서비스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아동보호 전문 위원회 운영 및 후견인 고용을 통해 위탁 배치 활동을 조정한다. 한편 스페인(Spain)의 아동보호 정책은 사회권리 및 아젠다 2030부(Ministry of Social Rights and Agenda 2030), 아동·청소년 권리 총국(Directorate General for Child and Adolescent Rights), 검찰(Public Ministry), 옴부즈맨(Spanish Ombudsman), 아동관측소(Childhood Observatory)가 아동보호정책을 공동으로 담당하고 있다. 중심 역할은 아동관측소(Childhood Observatory)가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의 삶의 질 연구 및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공공 정책을 권고한다. EU의 아동보호 정책에는 민간 및 지역 시민사회단체나 비국가 주체도 참여한다. 헝가리 등 일부 국가처럼 시민사회단체들이 법원에 등록 한 경우도 있고, 슬로베니아(Slovenia)처럼 아동보호 시스템을 국가 사회보호 시스템과 긴밀히 연계한 곳도 있다. 다음은 EU 회원국별 아동보호 조정 책임 및 데이터 공유 권한을 가진 기관 목록이다.¹⁰⁴⁾

표 IV-7. EU 회원국별 국가 차원의 조정 책임 및/또는 데이터 공유(authorities with coordination responsibility and/or data sharing) 권한을 가진 기관(authorities)

유럽연합 회원국	국가 차원의 조정 책임 및/또는 데이터 공유 권한을 가진 기관
오스트리아	연방 가족청소년부(Federal Chancellery of Families and Youth)
벨기에	아동 권리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 연방 차원
불가리아	아동보호국(State Agency for Child Protection) 소속 기관 내 아동보호국가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Child Protection)
크로아티아	노동·연금제도·가족 및 사회정책부(Ministry of Labour, Pension System, Family and Social Policy)
키프로스	사법공공질서부 산하 사회복지서비스(Social Welfare Service of the Ministry of Justice and Public Order)
체코	노동사회부 아동·가족권리 보호국(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Affairs - Department of Family and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보건부(Ministry of Health), 교육·청소년·체육부(Ministry of Education, Youth and Sport)

104) FRA. Mapping Child Protection Systems in the EU. <https://fra.europa.eu/en/publication/2024/mapping-child-protection-systems-eu-update-2023?page=3&pid=06de90c1-c9fb-408b-a576-84188dec2244#read-online>에서 2025년 5월 20일 인출.

유럽연합 회원국	국가 차원의 조정 책임 및/또는 데이터 공유 권한을 가진 기관
덴마크	사회·주택·노인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Housing and Senior Citizens, Social-, Bolig- og Ældreministeriet)
에스토니아	에스토니아 공화국 정부(Government of the Republic), 사회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사회보험청 (Social Insurance Board)
핀란드	공동체·기능능력부(Department for Communities and Functional Capacity), 사회보건부(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프랑스	아동국(Secretariat of State for Children), 아동보호국가위원회(National Council for Child Protection), 프랑스 보호아동 공익기구(France Protected Children Public Interest Group)
독일	주 아동·청소년복지청(State Child and Youth Welfare Authorities), 연방 육·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Federal Ministry for Education,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 연방 법무부(Federal Ministry of Justice)
그리스	사회연대국가센터(National Centre for Social Solidarity), 복지총국(General Secretariat of Welfare), 노동사회보장부 소속(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Security)
헝가리	내무부(Ministry of Interior)
호주	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뉴질랜드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산하 'Youth Service' 및 'Oranga Tamariki(아이들의부)'가 협력~청년까지 통합 관리
아일랜드	아동 및 가족청(Child and Family Agency)
이탈리아	국가 아동·청소년 관측소(National Observatory on Childhood and Adolescence), 스포츠청년부(Ministry for Sport and Young People), 가족정책국(Family Policies Department), 교육공로부(Ministry of Education and Merit), 장애부(Ministry of Disabilities),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노동사회정책부(Ministry of Labour and Social Policies), 내무부(Ministry of the Interior), 보건부(Ministry of Health), 외교국제협력부(Ministry of Foreign Affair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라트비아	복지부(Ministry of Welfare)
리투아니아	사회보장노동부(Ministry of Social Security and Labour), 가족 및 아동권리 보호과 (Family and Child Rights Protection Group), 국가 아동권리 보호 및 입양청(State Child Rights Protection and Adoption Service)
룩셈부르크	국가 교육·아동·청소년부(Ministry of National Education, Childhood and Youth)
몰타	아동보호국(Child Protection Directorate), 대체보호국(Directorate for Alternative Care)
네덜란드	청소년청(Youth Authority), 법무안전부(Ministry of Justice and Security) 소속 아동보호위원회(Child Care and Protection Board)

유럽연합 회원국	국가 차원의 조정 책임 및/또는 데이터 공유 권한을 가진 기관
폴란드	아동권리옹호관(Children's Rights Ombudsman)
포르투갈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 및 보호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motion of the Rights and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ng People)
루마니아	노동·가족·사회보호·노인부(Ministry of Labour, Family, Social Protection and Elderly Persons) 산하 아동권리보호 및 입양청(National Authority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s Rights and Adoption)
슬로바키아	노동·사회·가족부 산하 중앙노동사회가족청, 아동·청소년위원회(Central Office of Labour, Social Affairs and Family, Committee for Children and Youth)
슬로베니아	노동·가족·사회문제·기회평등부(Ministry of Labour, Family, Social Affairs and Equal Opportunities)
스페인	아동관측소(Childhood Observatory), 사회권리·아젠다 2030부(Ministry of Social Rights and Agenda 2030)
스웨덴	아동 옴부즈맨(Ombudsman for Children, Barnombudsmannen) - 정부 직속

* 출처: FRA. Mapping Child Protection Systems in the EU에서 2025년 5월 20일 인출 및 재구성.

2. 소결¹⁰⁵⁾

표 IV-8. 국가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주무 부처 현황

국가	부처명	영유아 보육	교육	일반 아동	가정 외 보호 아동	일반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일반 청년	취약 청년	특징
한국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X 교육부	X 교육부	○	○	X 성평등 가족부	X 성평등 가족부	X 국무 조정실 (고용 노동부/ 국토부)	○	아동·청소년·청년 개별 독립 주무 부처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가족청)	○	X 교육부	○	○	○	○	○ 노동부 주택 도시 개발부	○ 노동부 주택 도시 개발부	아동·청소년은 단일 통합부처 청년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등 분산형 체계
영국	교육부	○	○	○	○	○	○	○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단일 주무 부처인 교육부를 중심으로 다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
독일	교육·가족· 노인·여성· 청소년부	○	○	○	○	○	○	X 고용부 교육부 국토부 문화 체육부	X 고용부 교육부 국토부 문화 체육부	- 아동·청소년정책 단일 주무 부처 - 청년정책은 다부처 협력
일본	총리 직속기관 (아동가정청)	○	X 문부과 학성	○	○	○	○	X 내각부 (후생 노동성/ 문부 과학성/ 국토 교통성/ 농림 수산성)	X 내각부 (후생 노동성/ 문부 과학성/ 국토 교통성/ 농림 수산성)	- 아동·청소년정책은 단일 주무 부처 - 청년은 내각부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관련 해외사례를 살펴본 결과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주무 부처를 보면 통합형(One Ministry

105) 이 절은 성윤숙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Model)과 분리형(Detachable model)으로 구분된다. 대표적인 통합형은 영국 교육부와 호주의 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뉴질랜드의 사회개발부(Ministry of Social Development) 등이다. 반면 분리형은 다시 두 종류로 나뉘는데,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청년정책 주무 부처가 각각의 '1+1+1' 형태 그리고 셋 중 둘은 결합되어 있고 하나는 분리된 '2+1'의 형태다. 전자는 한국이 대표적이고, 후자는 미국(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가족청), 일본(아동가정청), 독일(연방교육·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등 다수의 UN 회원국이 그렇다. 그리고 '2+1'의 경우 아동과 청소년이 결합한 형태가 지배적이었으며, 청소년과 청년정책 주무 부처가 하나이고 아동을 분리한 '1+2' 형태의 국가는 발견할 수 없었다. 이는 청년정책 영역 자체가 고용, 주거, 결혼, 출산 등 확장되어, 아동·청소년기 정책 영역과 근본적 차이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해외사례의 두 번째 특징은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연령 구분이다. 이는 사실 첫째와 내적으로 연결된 것이다. UN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제1조는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부분 회원국은 그 규정을 따르고 있다. 또 '청소년'은 국제노동기구(ILO)등 UN의 다양한 기관 및 프로그램 기준 '15~24세'로 정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청소년'과 '청년' 연령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다. 실제 유엔경제사회국(UNDESA), 유엔인구기금(UNFPA)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 등 UN 관련 국제기구들이 그렇다. 청소년과 청년의 나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그 결과, 회원국 다수는 아동과 청소년 주무 부처를 하나로 통합한 형태다. 즉, '나이 구분'에서는 '청소년과 청년이 하나'인데, '정책 영역'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이 하나'인 독특한 현상이 발생한다. 더욱이 아동과 청소년정책 주무 부처가 하나로 통합된 경우, 부서 명칭에 '청소년'이 들어간 경우는 많지 않고 대부분 '아동'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특이성은 청소년기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이라기보다는, 청소년기를 아동기와 청년기 사이의 과도기, 성인기 이전의 후기 아동기, 하지만 동시에 생애주기적 차원에서 아동과 청년의 각 시기적 특성을 동시에 지닌 독특한 시기로 보는 복잡한 관점의 결과로 보인다.

이러한 해외사례의 시사점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도 법률상 아동과 청소년, 청년의 연령 중복 문제가 있다. 이에 대해 합리적인 차원에서의 명확한 구분을 원한다면 독일의 사례를 고려해 볼 수 있다. 앞에서 본 것처럼 독일은 「아동·청소년지원법」 § 7조 개념 정의에 따라 아동은 14세 미만, 청소년은 14세~18세 미만, 청년은 18세~27세 미만으로 규정한다. 이 구분은 통상적으로 수용 가능한 대안으로 보인다. 하지만 독일 역시 법에

따라 연령 구분에 유연성을 두고 있다. 정책 영역별, 아동·청소년·청년이 처한 사안별 차이를 인정하고 있다. 통일성과 함께 다양성을 지향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청소년 시기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고, 일률적인 나이 구분에 몰입하기보다는, 사안별로 아동·청소년·청년의 생애주기적 연속성을 인정하고 나이가 아닌 기능별 또는 정책 영역별 접근을 진지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 제5장 아동·청소년·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
전문가 의견조사

- 1. 조사 개요
- 2. 조사 결과
- 3. 소결

1.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및 대상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개선 및 재구조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한 전문가 패널 구성은 패널 수 확정, 전문가 풀(Pool) 구성, 연구진 검토 및 논의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전문가 패널의 적정 수는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10~15명의 소집단 구성으로도 유용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Anderson, 1997; 임윤진, 2022:74에서 재인용), 이질적인 집단을 대상으로 할 경우 15~30명이 추천된다는 의견도 있다(Martino, 1972; 조은별, 이선영, 신중호, 홍윤정, 2023:42에서 재인용). 본 연구에서는 아동정책, 청소년정책, 청년정책 등의 다양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된다는 점과 한정된 예산 등을 고려하여 조사에 참여할 패널 수를 15명으로 정하고 대상자를 선정 및 섭외하였다.

전문가 패널의 선정은 먼저, 연구진이 관련 연구 검토 및 전문가 추천, 그리고 소속 기관 홈페이지 내 해당 대상자의 정보 검색(관심 및 전공 분야, 연구 실적 등) 등을 종합하여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 간 상호 논의를 거쳐 최종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어느 특정 분야에만 편중되지 않고, 아동정책, 청소년정책, 청년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높은 전문가 패널을 균형 있게 선정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향된 시각에 따른 왜곡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이후 패널의 조사 중 이탈을 막고자, 해당 전문가와 사전 연락을 통해 연구 목적 및 내용 등을 설명한 뒤 참여 의사가 있는 전문가 15명을 최종 패널로 선정하였다.

* 이 장은 문호영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표 V-1. 전문가 패널 구성

구분	패널 수
관련 대학 교수	11명
관련 연구소(기관) 연구위원	4명
총 15명	

2) 조사 내용

(1) 1차 조사 문항

1차 질문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구성하였다. 먼저, 관련 문헌을 수집 및 검토한 후 이를 바탕으로 수차례 연구진 회의를 거쳐 질문지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을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개선안을 구체화하였다. 부연하면 총 3차례에 걸친 자문을 통해 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뒤, 이를 토대로 연구진 회의를 거쳐 전달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이를 질문지(안)에 포함하였다. 1차 자문에는 관련 연구소 연구위원 1명, 2차 자문에는 관련 대학 교수 3명, 3차 자문에는 관련 대학교 교수 1명이 참여했다.

이렇게 마련된 질문지 초안은 두 차례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수정·보완하였다. 각 자문에는 대학 교수 1명씩 참여했으며, 질문의 적절성 특히, 전달체계 개선안에 대한 적절성, 추가 질문 등 다양한 의견 수렴 후, 자문 의견을 토대로 최종 수정·보완하여 1차 질문지를 확정하였다.

표 V-2. 1차 질문지 관련 전문가 자문 개요

구분	자문진	개최 시기	방식	주요 자문내용
1차	연구소 연구위원 1명	2025년 1월	대면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 등
2차	대학 교수 3명	2025년 1월	대면	
3차	대학 교수 1명	2025년 1월	서면	
4차	대학 교수 1명	2025년 5월	대면	질문의 적절성, 추가 질문 등
5차	대학 교수 1명	2025년 5월	대면	

표 V-3. 1차 조사 문항 구성

영역	조사 내용	비고
전달체계 진단	•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개방형
	•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고려해야 할 사항) 및 이유	개방형
전달체계 개선안 평가	• 전달체계 개선안의 ‘긍정적인 점(장점)’, ‘문제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style="text-align: center;">[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안]</p> <p>① (1안) 현행대로 보건복지부(아동), 성평등가족부(청소년), 국무조정실(청년)이 중심이 되어 각각의 전달체계는 유지하되,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p> <p>② (2안)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하나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안)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중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 (2-2안)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새로운 주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하는 방안 <p>③ (3안)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통합하되,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고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1안) 아동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되(청소년·청년정책),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 (3-2안) 아동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고(아동·청소년정책),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div>	개방형
	• 전달체계 개선안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전달체계 개선안 및 이유, 실현 가능한 전달체계 개선안 및 이유	선택형/ 개방형
	• ‘No Wrong Door’의 국내 실현 방안	개방형
	•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안 이외에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	개방형

1차 질문지는 <표 V-3>과 같이 크게 전달체계 진단, 전달체계 개선안 평가로 구성했으며, 본 연구의 <부록>에 수록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달체계 진단’ 영역에는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고려해야 할 사항) 및 이유’가 포함되었다. ‘전달체계 개선안 평가’ 영역에는 ‘전달체계 개선안의 긍정적인 점(장점), 문제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전달체계 개선안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전달체계 개선안 및 이유, 실현

가능한 전달체계 개선안 및 이유’, ‘No Wrong Door(NWD)의 국내 실현 방안’,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안 이외에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이 포함되었다.

이 가운데 ‘전달체계 개선안 평가’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안을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로 제시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1안은 ‘현행대로 보건복지부(아동), 성평등가족부(청소년),¹⁰⁶⁾ 국무조정실(청년)이 중심이 되어 각각의 전달체계는 유지하되,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2안은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하나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으로,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중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2-1안)과 ‘새로운 주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하는 방안’(2-2안)으로 구분된다. 마지막으로 3안은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통합하되,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고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아동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는 방안’(3-1안)과 ‘아동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고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3-2안)으로 구분된다.

이상의 1차 조사 문항의 질문(답변) 방식은 대부분 개방형이며, ‘전달체계 개선안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전달체계 개선안’과 ‘실현 가능한 전달체계 개선안’ 두 개의 질문만 선택형으로 구성하였다.

(2) 2차 조사 문항

2차 질문지는 1차 조사를 통해 수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연구진이 여러 차례 검토·분석하여 유사 내용별로 범주화하고,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질문(답변)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동의 정도는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매우 동의한다’의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만약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나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에 응답한 경우는 그 이유를 기술하게 하였다. 그리고 다른 의견이나 추가적인 의견이 있을 시 이를 자유롭게 기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의견란을 포함하였다.

조사 영역은 1차 질문지와 같이 전달체계 진단과 전달체계 개선안 평가로 구성했으며,

106) 청소년정책 주무 부처가 전문가 의견조사 당시(1차: 2025.6.4.~6.16., 2차: 2025.7.29.~8.5.)에는 ‘여성가족부’였으나,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10.1., 일부개정)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로 명칭이 변경되어, 본 장에서는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하여 작성함.

구체적인 문항 구성은 <표 V-4>와 같다. 먼저 '전달체계 진단' 영역에는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 (고려해야 할 사항)'가 포함되었다. '전달체계 개선안 평가' 영역에는 '전달체계 개선안의 긍정적인 점(장점) 및 문제점, 전달체계 개선안 가운데 1안과 3안에서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NWD의 국내 실현 방안' 등이 포함되었다. 이 가운데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의 경우, 1차 조사 시 개선안별(1안, 3-1안, 3-2안)로 각각 질문했는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답변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이를 통합해 1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차 질문지는 1차 질문지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의 <부록>에 수록하였다.

표 V-4. 2차 조사 문항 구성

영역	조사 내용	문항	비고
전달체계 진단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1(1~14)	5점 척도 /개방형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 (고려해야 할 사항)	2(1~11)	
전달체계 개선안 평가	(1안) 긍정적인 점(장점)	3-1(1~6)	
	문제점	3-2(1~7)	
	(2-1안) 긍정적인 점(장점)	4-1(1~4)	
	문제점	4-2(1~6)	
	(2-2안) 긍정적인 점(장점)	5-1(1~9)	
	문제점	5-2(1~7)	
	(3-1안) 긍정적인 점(장점)	6-1(1~4)	
	문제점	6-2(1~6)	
	(3-2안) 긍정적인 점(장점)	7-1(1~4)	
	문제점	7-2(1~5)	
(1안), (3안)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8(1~11)	
	'No Wrong Door'의 국내 실현 방안	9(1~11)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추가 의견	10	개방형

* 주: 1) (1안) 현행대로 보건복지부(아동), 성평등가족부(청소년), 국무조정실(청년)이 중심이 되어 각각의 전달체계는 유지하되,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2) (2안)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하나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
 (2-1안)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중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2-2안)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새로운 주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하는 방안
 3) (3안)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통합하되,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고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3-1안) 아동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되(청소년·청년정책),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3-2안) 아동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고(아동·청소년정책),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3) 자료 수집

전문가 의견조사는 관련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총 두 차례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메일을 통해 질문지를 발송 및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면제를 승인받은(202505-HR-고유-011) 후 실시하였다. 1차 전문가 의견조사는 2025년 6월 4일부터 6월 16일까지 이루어졌다. 조사 참여에 앞서 전문가 패널들은 연구의 목적·내용, 참여 절차·방법 등이 적힌 연구 참여 설명문을 읽은 뒤, 연구 참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한 후 조사에 참여했다. 이후 2차 조사는 2025년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표 V-5. 조사 개요

구분	1차 전문가 의견조사	2차 전문가 의견조사
조사 기간	2025.6.4.~6.16.	2025.7.29.~8.5.
조사 대상	전문가 15명	
조사 방법	이메일을 통한 질문지 발송 및 회신	
조사 내용	현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선결과제, 전달체계 개선안의 장단점 등	
비고	IRB 심의면제 승인(202505-HR-고유-011)	

2. 조사 결과

1)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진단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진단하기 위해 전문가들에게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선결과제(고려해야 할 사항)에 관한 의견을 각각 개방형으로 질문하였으며, 이후 응답 결과를 연구진이 유사한 내용으로 묶어 범주화하였다. 그 결과,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14개,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는 11개로 정리되었다. 이 가운데 공통적으로 지적된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선결과제를 살펴보면, 정책 대상(법령상 연령) 및 정책의 중복, 전달체계 간 연계·협력 부족, 중앙 및 지방정부 간 역할 모호, 지자체별 상이한 전달체계 등이 확인되었다. 이 외에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총괄·조정 기능(컨트롤 타워) 부재, 전달체계의 분절로 인한 정책의 효율성 저하 등이,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로는 생애주기를 고려한 정책의 통합된 방향 정립, 관련 법체계 정비 및 정책 범주 재정립 등이 언급되었다.

표 V-6.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선결과제

구분	내용
전달체계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달체계의 분절로 인한 정책의 효율성 저하(행정, 인력, 예산 등) •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단절 및 서비스 중단 • 부처 간 소통·협력 부족 • 정책의 유사·중복 및 누락(사각지대) • 부처별 유사·중복 서비스로 인한 정책수요자의 혼란 야기 • 중앙정부의 총괄·조정 기능(컨트롤 타워) 부재 • 지방정부의 총괄·조정 기능(컨트롤 타워) 부재 • 정보 및 데이터 공유·연계 부족 • 지자체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혼재·혼란 • 중앙 및 지방정부 간 연계 부족 • 중앙 및 지방정부 간 역할 모호 • 민간 전달체계에 대한 높은 의존도 • 공공 및 민간 전달체계 간 협력 부족 • 법령상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의 중복으로 인한 정책대상 중복

구분	내용
전달체계 선결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상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 • 유사·중복 정책에 대한 조정 • 아동, 청소년, 청년 법체계 정비 및 정책 범주 재정립 • 부처, 지자체 등에 분산된 정보 및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생애주기를 고려한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통합된 방향 정립 • 전달체계 주체별(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역할 재정비 • 지자체별로 상이한 아동·청소년·청년 주무부서 통일 • 관련 전달체계 간 연계·협력 강화(중앙-지방, 공공-민간 등) • 이해관계자(현장 실무자, 정책 수요자 등) 의견수렴을 통한 현장의 요구 반영 •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예산 확보 • 청년정책 주무 부처의 총괄 조정 기능 강화

(2)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안 평가

다음으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개선 방안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3가지 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각 개선안에 대한 긍정적인 점(장점)과 문제점을 질문하였다. 이와 더불어 3가지 전달체계 개선안 중 가장 이상적인 개선안과 실현 가능한 개선안 등에 대한 의견도 살펴보았다.

① 전달체계 개선안 1안의 장점 및 문제점

먼저 전달체계 개선안 1안, 즉, '현행대로 보건복지부(아동), 성평등가족부(청소년), 국무조정실(청년)이 중심이 되어 각각의 전달체계는 유지하되,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의 긍정적인 점(장점) 및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범주화한 결과, 6개의 긍정적인 점과 7개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부연하면, 1안의 긍정적인 점으로는 전달체계 변화를 최소화함으로써 현 정책의 안정성·지속성 확보, 대상별(아동, 청소년, 청년) 정책의 전문성 및 특성화 유지, 부처 간 갈등 및 혼선 최소화 등이 제시되었다. 반면, 1안의 문제점으로는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단절 및 서비스 중단, 정책의 유사·중복 및 누락(사각지대)과 이로 인한 정책의 효율성 저하(인프라, 예산 등), 전달체계의 분산으로 위기사례 등에 대한 통합(종합) 대응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었다.

표 V-7.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달체계 개선안 1안의 긍정적인 점 및 문제점

구분	긍정적인 점(장점)	문제점
전달체계 개선안 (1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달체계 개편을 최소화함으로써 현 정책의 안정성, 지속성 확보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정책 추진 전달체계의 변화로 인한 부처 간 갈등 및 혼선 최소화 대상별(아동, 청소년, 청년) 정책의 전문성 및 특성화 유지 정책의 책임 소재 명확화 부처 통폐합으로 소요되는 행정비용·시간 절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단절 및 서비스 중단 정책의 유사·중복 및 누락(사각지대)과 이로 인한 정책의 효율성 저하(인프라, 예산 등) 부처별 규모 및 예산의 차이로 인한 정책 편향 및 소외 전달체계의 분산으로 위기사례 등에 대한 통합(종합) 대응의 어려움 전달체계가 통합되지 않아 정책수요자의 혼란 야기 부처별 분산된 청년정책의 현 체계로는 아동·청소년·청년정책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지방정부, 관련 공공기관 등은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기 어려움

* 주: (1안) 현행대로 보건복지부(아동), 성평등가족부(청소년), 국무조정실(청년)이 중심이 되어 각각의 전달체계는 유지하되,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② 전달체계 개선안 2안의 장점 및 문제점

전달체계 개선안 2안, 즉,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하나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중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2-1안)과 '새로운 주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하는 방안'(2-2안)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긍정적인 점(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하나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되,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중 하나로 통합하는 2-1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범주화한 결과, 4개의 긍정적인 점과 6개의 문제점으로 종합되었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상호 연계 강화,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 유사·중복 정책 조정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 증가(행정, 인력, 예산 등) 등이 긍정적인 점으로, 청년정책의 부처별 분산된 현 체계와 규모로 인한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실질적 통합의 어려움, 부처 간 권한 및 업무 조정이나 통폐합 부처에 대한 합의 등 부처 간 갈등 및 혼선 야기, 특정 부처로 통합 시 일부 대상 또는 분야의 전문성 저하 등이 문제점으로 확인되었다.

표 V-8.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달체계 개선안 2안의 장점 및 문제점

구분	장점	문제점
전달체계 개선안 (2-1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상호 연계 강화 •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 • 유사·중복 정책 조정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 증가(행정, 인력, 예산 등) •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서비스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부처의 유관 정책을 통합하지 않는 한 여전히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이 분산되어 있어 통합의 실효성 저해 • 청년정책의 부처별 분산된 현 체계와 규모를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실질적 통합이 어려움 • 부처 간 권한 및 업무 조정, 통폐합 부처에 대한 합의 등 부처 간 갈등 및 혼선 야기 •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의 범주와 특성이 달라서 어느 부처로 통합하든지 조직 내 칸막이 우려 • 특정 부처로 통합 시 일부 대상이나 분야의 전문성 저하 • 기존 부처별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차이로 인한 통합·조정 어려움
전달체계 개선안 (2-2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혁신 가능 •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위상 및 관심 제고 •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통합된 방향 정립 •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 • 위기사례 등에 대한 통합(중합) 대응 가능 • 아동·청소년·청년정책에만 집중하여 정책의 전문성·명료성 향상 • 정책의 효율성 증가(행정, 인력, 예산 등) • 중앙정부 전달체계 통합으로 인한 지방정부 전달체계도 통합 용이 •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서비스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 부처의 조직 설계에 대한 어려움(정책 범주 및 기능 조정 등) • 부처 신설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 부처 신설 및 안정화까지 긴 시간 소요, 업무 지장 초래 • 새 부처의 소관 업무를 둘러싼 유관 부처와의 조정 어려움 • 부처 신설에 대한 이해관계자(현장 실무자, 정책 수요자 등)의 반발 • 기존 부처의 정책에 대한 전문성 및 연속성 저하 • 중앙정부 전달체계가 통합되더라도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의 특성과 집행 체계가 상이하여 지역의 관련 공공기관, 전문인력 등의 통합 어려움

* 주: (2안)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하나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 (2-1안)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중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2-2안)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새로운 주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하는 방안

그리고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하나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되, 새로운 주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하는 2-2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9개의 긍정적인 점과 7개의 문제점으로 범주화되었다. 긍정적인 점에 대한 주요 의견으로는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혁신 가능,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위상 및 관심 제고,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문제점으로는 새 부처의 조직 설계에 대한 어려움(정책 범주 및 기능 조정 등), 부처 신설 및 안정화까지 긴 시간 소요, 업무 지장 초래, 부처 신설에 대한 이해관계자(현장 실무자, 정책 수요자 등)의 반발 등이 언급되었다.

③ 전달체계 개선안 3안의 장점 및 문제점

3안은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통합하되,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고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아동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는 방안’(3-1안)과 ‘아동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고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3-2안)으로 구분된다.

먼저, 아동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되,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3-1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한 결과, 4개의 장점과 6개의 단점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장점은, 정책 전문성 유지 및 정책 연속성 강화, 정책 비효율성 감소 그리고 갈등과 행정비용 감소로 나타났다. 반면 단점으로는, 정책의 유사·중복 및 단절, 정책의 부처별 분산 및 통합·조정 어려움, 정책 대상별 상이한 전달체계, 부처 간 이해관계와 우선순위 차이로 인한 갈등 등이 언급되었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고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3-2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4개의 긍정적인 점과 5개의 문제점으로 범주화되었다. 부연하면, 긍정적인 점으로는 생애 전반기 아동,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종합)적·연속적인 정책 지원, 아동, 청소년과 다른 청년의 발달적 특성 및 사회적 요구(주거, 일자리, 소득·자산 등)를 고려한 청년정책의 전문성 및 특성화 유지 등이 제시되었다. 반면, 문제점으로는 아동,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 개편으로 인한 부처 간 갈등 및 지자체 혼란,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정체성 혼란과 이로 인한 정책의 전문성 및 특수성 저하, 부처별 분산된 청년정책의 현재체계로는 아동·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 지적되었다.

표 V-9.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달체계 개선안 3안의 장점 및 문제점

구분	장점	문제점
전달체계 개선안 (3-1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청년정책의 경우, 연령 중복에 따른 정책의 비효율성 감소 • 아동의 보호, 복지정책 등의 전문성은 유지하되, 청소년·청년의 진로, 자립정책 등의 연속성 강화 • 청소년·청년 통합부처에서 유관 부처의 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용이 • 세 개의 부처 통합에 비해 부처 간 갈등과 행정비용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상이한 전달체계, 부처 간 이해관계와 우선순위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 • 청소년과 청년의 이질적인 법제도로 인한 통합(종합) 정책의 어려움 •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관점 및 영역의 차이로 인한 정책 편향 및 소외 • 지자체에서도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상이한 전달체계로 인해 실질적 통합이 어려움 • 부처별로 분산된 현 청년정책으로 인한 통합·조정 어려움 • 아동정책과 청소년·청년정책의 유사·중복 및 단절
전달체계 개선안 (3-2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전반기 아동,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종합)적·연속적인 정책 지원 • 아동, 청소년과 다른 청년의 발달적 특성 및 사회적 요구(주거, 일자리, 소득·자산 등)를 고려한 청년정책의 전문성 및 특성화 유지 • 아동·청소년정책의 일원화된 통합장구를 통해 정책수요자의 혼란 감소 • 아동·청소년정책의 유사·중복 및 누락(사각지대) 해소를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 개편으로 인한 부처 간 갈등 및 지자체 혼란 •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정체성 혼란과 이로 인한 정책의 전문성 및 특수성 저하 • 부처별(아동, 청소년) 규모 및 예산의 차이로 인한 정책 편향 및 소외 • 아동과 청소년의 관련 법령 차이로 인한 법제도 정비의 어려움 • 부처별 분산된 청년정책의 현 체계로는 아동·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 주: (3안)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통합하되,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고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3-1안) 아동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되(청소년·청년정책),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3-2안) 아동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고(아동·청소년정책),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④ 전달체계 개선안 1안, 3안의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현행대로 각각의 전달체계는 유지하되,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1안과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고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3안에서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11개 항목으로 범주화되었다. 즉, 아동·

청소년·청년정책의 총괄·조정 기구(컨트럴 타워) 설치,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차원의 정기적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협의체 구성·운영, 정보 및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구축, 관련 법령에 연계·협력 의무 조항 신설 등 법제도 개선, 부처별 분산된 청년정책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청년정책 주무 부처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등이 제시되었다.

표 V-10.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달체계 개선안 1안, 3안의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구분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전달체계 개선안 (1안), (3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계 부처 합동의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총괄·조정 기구(컨트럴 타워) 설치 ·중앙부처 차원의 정기적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협의체 구성·운영 ·지자체 차원의 정기적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협의체 구성·운영 ·위기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전달체계 일원화 ·수요자 중심의 온오프라인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정보 및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구축 ·관련 법령에 연계·협력 의무 조항 신설 등 법제도 개선 ·부처별 분산된 청년정책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청년정책 주무 부처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상호 영향평가 도입 ·생애주기별 정책 대상과 목표의 명확화

* 주: 1) (1안) 현행대로 보건복지부(아동), 성평등가족부(청소년), 국무조정실(청년)이 중심이 되어 각각의 전달체계는 유지하되,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2) (3안) 생애주기적 함목작성 측면에서 통합하되,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고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3-1안) 아동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되(청소년·청년정책),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3-2안) 아동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고(아동·청소년정책),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⑤ 전달체계 개선안 중 이상적인 개선안 및 실현 가능한 개선안

전달체계 개선안 가운데 현재의 전달체계를 가장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이상적인 개선안’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개선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와 그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질문하였다. 우선, 이상적인 개선안을 확인한 결과, 새로운 주무 부처를 신설하여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2-2안에 대한 응답이 6명(40.0%)으로 가장 많았다. 크게 3가지 차원에서 이상적인 개선안으로 선택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담보될 수 있다는 측면,

통합정책의 큰 규모와 생애주기를 고려한 조직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측면, 그리고 통합정책의 위상과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조되었다. 이어서 현 주무 부처 중 하나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2-1안과 아동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고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3-2안에 대해 각각 3명(20.0%), 현 주무 부처를 유지하되,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1안은 2명(13.3%), 아동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되,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3-1안은 1명(6.7%)의 전문가가 이상적인 개선안으로 응답했다.

표 V-11.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이상적인·실현 가능한 전달체계 개선안

구분	전달체계 개선안					전체
	1안	2-1안	2-2안	3-1안	3-2안	
이상적인 전달체계 개선안	2명 (13.3%)	3명 (20.0%)	6명 (40.0%)	1명 (6.7%)	3명 (20.0%)	15명 (100.0)
실현 가능한 전달체계 개선안	5명 (33.3%)	1명 (6.7%)	1명 (6.7%)	6명 (40.0%)	2명(13.3%)	15명 (100.0)

* 주: 1) (1안) 현행대로 보건복지부(아동), 성평등가족부(청소년), 국무조정실(청년)이 중심이 되어 각각의 전달체계는 유지하되,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2) (2안) 생애주기적 함목적성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하나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
 (2-1안)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중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2-2안)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새로운 주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하는 방안
 3) (3안) 생애주기적 함목적성 측면에서 통합하되,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고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3-1안) 아동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되(청소년·청년정책),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3-2안) 아동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고(아동·청소년정책),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반면, 실현 가능한 개선안은 이상적인 개선안과 다소 다르게 평가되었다. 즉, 아동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되,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3-1안에 대한 응답이 6명(40.0%)으로 가장 많았다. 복지 기반의 아동정책에 대한 고유성을 유지하면서 청소년·청년정책의 유사한 영역을 통합함으로써 효율적인 전달체계 개편을 기대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였다. 이와 더불어 현 주무 부처를 유지하되,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1안에 대한 응답도 5명(33.3%)으로 많았다. 전달체계 변화로 인한 부처 간 갈등과 혼선을 최소화하면서 현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상호 연결성을 보완하여 정책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들었다. 그다음으로 아동과 청소년 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고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3-2안이 2명(13.3%), 현 주무 부처 중 하나로 아동·청소년·청년 정책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2-1안과 새로운 주무 부처를 신설하여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2-2안이 각각 1명(6.7%)으로 확인되었다.

(3) No Wrong Door의 국내 실현 방안

아동, 청소년, 청년 누구든 필요한 사안 및 문제가 있을 때, 공적 전달체계 안의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의미하는 No Wrong Door의 국내 실현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문가들의 의견은 11개 항목으로 범주화되었다. 부연하면,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정책수요자의 서비스 접근성 확대(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AI 서비스 등), 지역 내 관련 기관 간 협의체 구성·운영,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강화 등이 언급되었다.

표 V-12.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No Wrong Door의 국내 실현 방안

No Wrong Door의 국내 실현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에 연계·협력 의무 및 정보공유 조항 신설 등 법제도 개선 • 부처, 지자체 등의 정보 및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구축 •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 정책수요자의 서비스 접근성 확대(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AI 서비스 등) • 상담, 정책 지원 등을 위한 표준 매뉴얼 개발 •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상호 영향 및 연계성 평가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총괄·조정 기구(컨트론타워) 설치 • 지역 내 관련 기관 간 협의체 구성·운영 • 전담부서 및 인력 운영 • 부처 간 공동 예산 사업 확대 •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강화

2)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1)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진단

1차 전문가 의견조사에서 제안된 내용을 토대로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선결과제를 각각 14개 항목, 11개 항목으로 범주화한 후, 전문가들에게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5점)의 5점 척도로 확인하였다.

①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표 V-13.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순위
전달체계의 분절로 인한 정책의 효율성 저하(행정, 인력, 예산 등)	4.20	1.15	1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단절 및 서비스 중단	4.13	1.13	3
부처 간 소통·협력 부족	4.20	0.86	1
정책의 유사·중복 및 누락(사각지대)	4.13	0.83	3
부처별 유사·중복 서비스로 인한 정책수요자의 혼란 야기	3.53	1.06	11
중앙정부의 총괄·조정 기능(컨트롤 타워) 부재	3.93	1.03	6
지방정부의 총괄·조정 기능(컨트롤 타워) 부재	3.93	1.16	6
정보 및 데이터 공유·연계 부족	3.93	1.10	6
지자체별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혼재·혼란	3.93	1.16	6
중앙 및 지방정부 간 연계 부족	3.73	0.88	10
중앙 및 지방정부 간 역할 모호	3.53	0.92	11
민간 전달체계에 대한 높은 의존도	3.13	0.99	14
공공 및 민간 전달체계 간 협력 부족	3.47	0.92	13
법령상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의 중복으로 인한 정책대상 중복	4.13	1.06	3

* 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매우 동의한다(5점)

먼저,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으로 전문가들은 ‘전달체계의 분절로 인한 정책의 효율성 저하(행정, 인력, 예산 등)’(M=4.20)와 ‘부처 간 소통·협력 부족’(M=4.20),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단절 및 서비스 중단’(M=4.13)과 ‘정책의 유사·중복 및 누락(사각지대)’(M=4.13), 그리고 ‘법령상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의 중복으로 인한

정책대상 중복'(M=4.13)에 대해 높은 수준으로 동의하였다. 즉, 현재의 분절화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와 부처 간 소통 부족을 지적하며, 이로 인한 정책의 단절·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과 효율성 저하 등을 문제점으로 평가하였다. 이어서 '중앙정부(M=3.93) 및 지방정부(M=3.93)의 총괄·조정 기능(컨트롤 타워) 부재'와 '정보 및 데이터 공유·연계 부족'(M=3.93), '지자체별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혼재·혼란'(M=3.93) 등의 순으로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다.

②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

표 V-14.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순위
법령상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	3.60	1.40	10
유사·중복 정책에 대한 조정	4.40	0.74	4
아동, 청소년, 청년 법체계 정비 및 정책 범주 재정립	4.20	1.26	7
부처, 지자체 등에 분산된 정보 및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구축	4.47	0.64	2
생애주기를 고려한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의 통합된 방향 정립	4.40	1.12	4
전달체계 주체별(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역할 재정비	4.53	0.52	1
지자체별로 상이한 아동·청소년·청년 주무부서 통일	3.53	1.13	11
관련 전달체계 간 연계·협력 강화(중앙-지방, 공공-민간 등)	4.47	0.64	2
이해관계자(현장 실무자, 정책 수요자 등) 의견수렴을 통한 현장의 요구 반영	4.13	0.92	8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예산 확보	4.33	0.72	6
청년정책 주무 부처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4.07	1.03	9

* 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매우 동의한다(5점)

다음으로,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고려해야 할 사항)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전달체계 주체별(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역할 재정비'(M=4.53), '관련 전달체계 간 연계·협력 강화(중앙-지방, 공공-민간 등)'(M=4.47)와 '부처, 지자체 등에 분산된 정보 및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구축'(M=4.47)을 현 전달체계의 선결과제로 높게 평가하였다. 이어서 '생애주기를 고려한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의 통합된 방향 정립'(M=4.40)과 '유사·중복 정책에 대한 조정'(M=4.40),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예산 확보'(M=4.33), '아동, 청소년, 청년 법체계 정비 및 정책 범주 재정립'(M=4.20),

‘이해관계자(현장 실무자, 정책 수요자 등) 의견수렴을 통한 현장의 요구 반영’(M=4.13), ‘청년정책 주무 부처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M=4.07) 등을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로 높게 인식했다.

(2)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안 평가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안 평가 영역에서는 1차 전문가 의견조사를 토대로 전달체계 개선안의 장단점 등을 정리·제시하고, 전문가들에게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매우 동의한다)로 확인하였다.

① 전달체계 개선안 1안의 장점과 문제점

표 V-15.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달체계 개선안 1안의 장점과 문제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순위
긍정적인 점 (장점)	전달체계 개편을 최소화함으로써 현 정책의 안정성, 지속성 확보	3.93	1.03	2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정책 추진	3.47	1.06	6
	전달체계의 변화로 인한 부처 간 갈등 및 혼선 최소화	4.13	0.74	1
	대상별(아동, 청소년, 청년) 정책의 전문성 및 특성화 유지	3.80	1.37	5
	정책의 책임 소재 명확화	3.87	1.06	4
	부처 통폐합으로 소요되는 행정비용·시간 절약	3.93	0.96	2
문제점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단절 및 서비스 중단	3.87	1.25	1
	정책의 유사·중복 및 누락(사각지대)과 이로 인한 정책의 효율성 저하(인프라, 예산 등)	3.80	0.94	3
	부처별 규모 및 예산의 차이로 인한 정책 편향 및 소외	3.87	0.92	1
	전달체계의 분산으로 위기사례 등에 대한 통합(종합) 대응의 어려움	3.60	1.12	4
	전달체계가 통합되지 않아 정책수요자의 혼란 야기	3.33	0.98	7
	부처별 분산된 청년정책의 현 체계로는 아동·청소년·청년정책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3.60	1.24	4
	지방정부, 관련 공공기관 등은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기 어려움	3.53	0.92	6

* 주: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매우 동의한다(5점)

2) (1안) 현행대로 보건복지부(아동), 성평등가족부(청소년), 국무조정실(청년)이 중심이 되어 각각의 전달체계는 유지하되,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먼저,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안 가운데 1안 즉, ‘현행대로 보건복지부(아동), 성평등가족부(청소년), 국무조정실(청년)이 중심이 되어 각각의 전달체계는 유지하되,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의 긍정적인 점(장점)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1안의 긍정적인 점으로 ‘전달체계의 변화로 인한 부처간 갈등 및 혼선 최소화’(M=4.13)를 가장 높게 평가했다. 이어서 ‘전달체계 개편을 최소화함으로써 현 정책의 안정성, 지속성 확보’(M=3.93)와 ‘부처 통폐합으로 소요되는 행정비용·시간 절약’(M=3.93) 등의 순으로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다. 문제점으로는 ‘부처별 규모 및 예산의 차이로 인한 정책 편향 및 소외’(M=3.87)와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단절 및 서비스 중단’(M=3.87)을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다음으로 ‘정책의 유사·중복 및 누락(사각지대)과 이로 인한 정책의 효율성 저하(인프라, 예산 등)’(M=3.80) 등의 순으로 인식했다.

② 전달체계 개선안 2안의 장점 및 문제점

전달체계 개선안 2안, 즉,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하나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중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2-1안)과 ‘새로운 주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하는 방안’(2-2안)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긍정적인 점(장점) 및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하나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되,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중 하나로 통합하는 2-1안의 긍정적인 점과 문제점에 대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점으로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M=4.20)를 가장 높게 평가했고, 이어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상호 연계 강화’(M=4.00)와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서비스 가능’(M=4.00) 등의 순으로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다. 문제점으로는 ‘청년정책의 부처별 분산된 현 체제와 규모를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실질적 통합이 어려움’(M=4.07)을 가장 높게 평가했고, 이어서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의 범주와 특성이 달라서 어느 부처로 통합하든지 조직 내 칸막이 우려’(M=3.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6.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달체계 개선안 2-1안의 장점 및 문제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순위
긍정적인 점 (장점)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상호 연계 강화	4.00	1.07	2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	4.20	1.15	1
	유사·중복 정책 조정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 증가 (행정, 인력, 예산 등)	3.73	1.10	4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서비스 가능	4.00	1.13	2
문제점	타 부처의 유관 정책을 통합하지 않는 한 여전히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이 분산되어 있어 통합의 실효성 저해	3.73	0.96	3
	청년정책의 부처별 분산된 현 체계와 규모를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실질적 통합이 어려움	4.07	1.03	1
	부처 간 권한 및 업무 조정, 통폐합 부처에 대한 합의 등 부처 간 갈등 및 혼선 야기	3.73	1.10	3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의 범주와 특성이 달라서 어느 부처로 통합하든지 조직 내 칸막이 우려	3.80	1.15	2
	특정 부처로 통합 시 일부 대상이나 분야의 전문성 저하	3.13	1.19	6
	기존 부처별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차이로 인한 통합 조정의 어려움	3.27	1.03	5

* 주: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매우 동의한다(5점)

2) (2인)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하나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
(2-1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중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그리고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하나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되, 새로운 주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하는 2-2안의 장점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긍정적인 점으로는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위상 및 관심 제고’(M=4.00)에 대한 동의 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통합된 방향 정립’(M=3.93)과 ‘생애주기 별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M=3.93) 등의 순으로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다. 문제점에 대해서는 ‘부처 신설에 대한 이해관계자(현장 실무자, 정책 수요자 등)의 반발’(M=3.67), ‘새 부처의 조직 설계에 대한 어려움(정책 범주 및 기능 조정 등)’(M=3.53)과 ‘새 부처의 소관 업무를 둘러싼 유관 부처와의 조정 어려움’(M=3.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V-17.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달체계 개선안 2-2안의 장점 및 문제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순위
긍정적인 점 (장점)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혁신 가능	3.53	1.30	7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위상 및 관심 제고	4.00	1.51	1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통합된 방향 정립	3.93	1.33	2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	3.93	1.10	2
	위기사례 등에 대한 통합(종합) 대응 가능	3.67	1.05	4
	아동·청소년·청년정책에만 집중하여 정책의 전문성·명료성 향상	3.67	1.29	4
	정책의 효율성 증가(행정, 인력, 예산 등)	3.33	1.45	9
	중앙정부 전달체계 통합으로 인한 지방정부 전달체계도 통합 용이	3.53	1.30	7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서비스 가능	3.67	1.29	4
문제점	새 부처의 조직 설계에 대한 어려움 (정책 범주 및 기능 조정 등)	3.53	1.13	2
	부처 신설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3.40	1.06	6
	부처 신설 및 안정화까지 긴 시간 소요, 업무 지장 초래	3.47	1.06	4
	새 부처의 소관 업무를 둘러싼 유관 부처와의 조정 어려움	3.53	1.19	2
	부처 신설에 대한 이해관계자(현장 실무자, 정책 수요자 등)의 반발	3.67	1.11	1
	기존 부처의 정책에 대한 전문성 및 연속성 저하	2.93	1.16	7
	중앙정부 전달체계가 통합되더라도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의 특성과 집행 체계가 상이하여 지역의 관련 공공기관, 전문인력 등의 통합 어려움	3.47	1.25	4

* 주: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매우 동의한다(5점)

- 2) (2안)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하나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 (2-2안)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새로운 주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하는 방안

③ 전달체계 개선안 3안의 장점 및 문제점

다음으로, 전달체계 개선안 3안의 긍정적인 점(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3안은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통합하되,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고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으로, ‘아동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는 방안’(3-1안)과 ‘아동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고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3-2안)으로 구분된다.

표 V-18.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달체계 개선안 3-1안의 장점 및 문제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순위
긍정적인 점 (장점)	청소년, 청년정책의 경우, 연령 중복에 따른 정책의 비효율성 감소	3.07	1.33	4
	아동의 보호, 복지정책 등의 전문성은 유지하되, 청소년·청년의 진로, 자립정책 등의 연속성 강화	3.53	1.30	2
	청소년·청년 통합부처에서 유관 부처의 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용이	3.60	1.24	1
	세 개의 부처 통합에 비해 부처 간 갈등과 행정비용 감소	3.20	1.15	3
문제점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상이한 전달체계, 부처 간 이해관계와 우선순위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	3.60	1.12	1
	청소년과 청년의 이질적인 법제도로 인한 통합(종합) 정책의 어려움	3.60	1.24	1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관점 및 영역의 차이로 인한 정책 편향 및 소외	3.60	1.30	1
	지자체에서도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상이한 전달체계로 인해 실질적 통합이 어려움	3.33	1.11	5
	부처별로 분산된 현 청년정책으로 인한 통합·조정 어려움	3.40	1.24	4
	아동정책과 청소년·청년정책의 유사·중복 및 단절	3.33	0.72	5

* 주: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매우 동의한다(5점)
 2) (3안)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통합하되,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고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3-1안) 아동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되(청소년·청년정책),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우선, 아동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되,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3-1안에 대한 긍정적인 점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긍정적인 점으로는 ‘청소년·청년 통합부처에서 유관 부처의 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용이’(M=3.60)하다는 점을, 문제점으로는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상이한 전달체계, 부처 간 이해관계와 우선순위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M=3.60)과 ‘청소년과 청년의 이질적인 법제도로 인한 통합(종합) 정책의 어려움’(M=3.60), 그리고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관점 및 영역의 차이로 인한 정책 편향 및 소외’(M=3.60)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고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

되,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3-2안에 대한 긍정적인 점과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전문가들은 긍정적인 점으로 '아동, 청소년과 다른 청년의 발달적 특성 및 사회적 요구(주거, 일자리, 소득·자산 등)를 고려한 청년정책의 전문성 및 특성화 유지'(M=3.73)를 가장 높게 평가했고, 문제점으로는 '부처별 분산된 청년정책의 현 체계로는 아동·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확보하기 어려움'(M=3.47)을 가장 높게 인식했다.

표 V-19.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달체계 개선안 3-2안의 장점 및 문제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순위
긍정적인 점(장점)	생애전반기 아동,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종합)적·연속적인 정책 지원	3.53	1.41	2
	아동, 청소년과 다른 청년의 발달적 특성 및 사회적 요구(주거, 일자리, 소득·자산 등)를 고려한 청년정책의 전문성 및 특성화 유지	3.73	1.22	1
	아동·청소년정책의 일원화된 통합창구를 통해 정책수요자의 혼란 감소	3.20	1.42	4
	아동·청소년정책의 유사 중복 및 누락(사각지대) 해소로 효율성 제고	3.33	1.50	3
문제점	아동, 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 개편으로 인한 부처 간 갈등 및 지자체 혼란	3.40	0.91	2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정체성 혼란과 이로 인한 정책의 전문성 및 특수성 저하	3.07	1.10	5
	부처별(아동, 청소년) 규모 및 예산의 차이로 인한 정책 편향 및 소외	3.40	1.12	2
	아동과 청소년의 관련 법령 차이로 인한 법제도 정비의 어려움	3.40	1.06	2
	부처별 분산된 청년정책의 현 체계로는 아동·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3.47	1.06	1

* 주: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매우 동의한다(5점)
 2) (3안)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통합하되,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고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3-2안) 아동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고(아동·청소년정책),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④ 전달체계 개선안 1안, 3안의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현행대로 각각의 전달체계는 유지하되,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1안과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통합하되,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고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3안에서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을 11가지 항목으로 정리·제시하고, 전문가들에게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확인하였다.

표 V-20.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달체계 개선안 1안, 3안의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순위
관계 부처 합동의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4.13	1.19	6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총괄·조정 기구(컨트롤 타워) 설치	4.07	1.22	7
중앙부처 차원의 정기적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협의체 구성·운영	4.00	1.00	8
지자체 차원의 정기적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협의체 구성·운영	3.80	0.94	10
위기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전달체계 일원화	4.27	0.80	3
수요자 중심의 온오프라인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4.00	1.07	8
정보 및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구축	4.73	0.59	1
관련 법령에 연계·협력 의무 조항 신설 등 법제도 개선	4.20	1.01	4
부처별 분산된 청년정책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청년정책 주무 부처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4.20	0.94	4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상호 영향평가 도입	3.47	1.13	11
생애주기별 정책 대상과 목표의 명확화	4.40	0.83	2

* 주: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매우 동의한다(5점)
 2) (1안) 현행대로 보건복지부(아동), 성평등가족부(청소년), 국무조정실(청년)이 중심이 되어 각각의 전달체계는 유지하되,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3) (3안)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통합하되,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고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3-1안) 아동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되(청소년·청년정책),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3-2안) 아동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고(아동·청소년정책),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의견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정보 및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구축'(M=4.73)을 가장 높게 평가하며, 기관 간 관련 정보·데이터의 공유·활용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생애주기별

정책 대상과 목표의 명확화'(M=4.40), '위기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전달체계 일원화'(M=4.27), '관련 법령에 연계·협력 의무 조항 신설 등 법제도 개선'(M=4.20) 및 '부처별 분산된 청년정책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청년정책 주무 부처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M=4.20)의 순으로 높은 동의 정도를 보였다. 다음으로 '관계 부처 합동의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M=4.13),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총괄·조정 기구(컨트롤 타워) 설치'(M=4.07), '중앙부처 차원의 정기적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협의체 구성·운영'(M=4.00)과 '수요자 중심의 온오프라인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M=4.00) 등의 순으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3) No Wrong Door의 국내 실현 방안

아동, 청소년, 청년 누구든 필요한 사안 및 문제가 있을 때, 공적 전달체계 안의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의미하는 No Wrong Door의 국내 실현 방안을 11개 항목으로 정리·제시한 후, 전문가들에게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에서 '매우 동의한다'(5점)의 5점 척도로 확인하였다.

표 V-21. 2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No Wrong Door의 국내 실현 방안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순위
관련 법령에 연계·협력 의무 및 정보공유 조항 신설 등 법제도 개선	4.33	1.23	4
부처, 지자체 등의 정보 및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구축	4.80	0.41	1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4.47	0.83	3
정책수요자의 서비스 접근성 확대(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AI 서비스 등)	4.67	0.49	2
상담, 정책 지원 등을 위한 표준 매뉴얼 개발	3.80	1.01	10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상호 영향 및 연계성 평가	3.80	0.94	10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총괄·조정 기구(컨트롤 타워) 설치	4.27	1.03	5
지역 내 관련 기관 간 협의체 구성·운영	3.93	1.03	7
전담부서 및 인력 운영	3.87	0.92	9
부처 간 공동 예산 사업 확대	3.93	0.88	7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강화	4.27	0.80	5

* 주: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매우 동의한다(5점)

그 결과, 전문가들은 ‘부처, 지자체 등의 정보 및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구축’(M=4.80)을 가장 높게 평가했으며, 다음으로 ‘정책수요자의 서비스 접근성 확대(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AI 서비스 등)’(M=4.67),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M=4.47), ‘관련 법령에 연계·협력 의무 및 정보공유 조항 신설 등 법제도 개선’(M=4.33)의 순으로 높은 동의 정보를 보였다. 이어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총괄·조정 기구(컨트롤 타워) 설치’(M=4.27)와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강화’(M=4.27), ‘지역 내 관련 기관 간 협의체 구성·운영’(M=3.93) 및 ‘부처 간 공동 예산 사업 확대’(M=3.93) 등의 순으로 동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3. 소결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개선 및 재구조화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15명을 대상으로 총 2차례에 걸쳐 전문가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1차 조사에서는 개방형 질문을 통해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및 선결과제, 전달체계 개선안의 장단점 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집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를 통해 수집한 의견을 유사 내용별로 묶어 범주화하고, 각 항목에 대한 전문가들의 동의 정도를 5점 척도로 확인하였다. 문항별로 동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을 중심으로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진단

표 V-22.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주요결과

구분	문제점
분절화된 전달체계와 소통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정부(M=3.93) 및 지방정부(M=3.93)의 총괄·조정 기능(컨트론타워) 부재 • 부처 간 소통·협력 부족(M=4.20) • 지자체별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혼재·혼란(M=3.93) • 전달체계의 분절로 인한 정책의 효율성 저하(행정, 인력, 예산 등)(M=4.20) • 정보 및 데이터 공유·연계 부족(M=3.93)
정책(대상) 중복 및 단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상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의 중복으로 인한 정책대상 중복(M=4.13) • 정책의 유사·중복 및 누락(사각지대)(M=4.13) •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단절 및 서비스 중단(M=4.13)

* 주: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매우 동의한다(5점)

2) 위 표의 '구분'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진이 요약·제시한 것이다.

먼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현행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주요 문제점은 <표 V-22>와 같이 크게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분절화된 전달체계와 소통 부족이며, 다른 하나는 정책(대상)의 중복 및 단절이다. 예컨대, 분절화된 전달체계 및 소통 부족과 관련된 의견으로는 중앙 및 지방정부의 총괄·조정 기능(컨트론타워) 부재, 부처 간 소통·협력 부족, 지자체별 전달체계의 혼재·혼란, 전달체계의 분절로 인한 정책의 효율성 저하(행정, 인력, 예산 등), 정보 및 데이터 공유·연계 부족 등이 언급되었다. 그리고 정책(대상)의 중복 및 단절 관련 내용으로는 법령상 연령의 중복으로 인한 정책대상 중복, 정책의 유사·중복 및 누락(사각지대),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단절 및 서비스 중단 등이 지적되었다.

다음으로,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주요 선결과제는 <표 V-23>과 같다. 즉, 전달체계 통합 혹은 조정을 위한 기반 마련, 정책의 유사·중복 및 단절 등 조정, 전달체계 주체별 역할 재정비 및 연계·협력 강화, 정책의 예산 확보와 이해관계자 요구 반영 등에 관한 의견이 제안되었다. 이 가운데 특히, 전달체계 주체별 역할을 재정비하고, 관련 전달체계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며, 분산된 정보 및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 등이 주요한 선결과제로 강조되었다.

표 V-23.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 주요결과

구분	선결과제
전달체계 통합 혹은 조정을 위한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를 고려한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의 통합된 방향 정립(M=4.40) • 아동, 청소년, 청년 법체계 정비 및 정책 범주 재정립(M=4.20)
정책의 유사·중복 및 단절 등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중복 정책에 대한 조정(M=4.40) • 부처, 지자체 등에 분산된 정보 및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구축(M=4.47)
전달체계 주체별 역할 재정비 및 연계·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달체계 주체별(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역할 재정비'(M=4.53) • 관련 전달체계 간 연계·협력 강화(중앙-지방, 공공-민간 등)(M=4.47) • 청년정책 주무 부처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M=4.07)
정책 예산 확보, 이해관계자 요구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예산 확보(M=4.33) • 이해관계자(현장 실무자, 정책 수요자 등) 의견수렴을 통한 현장의 요구 반영 (M=4.13)

* 주: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매우 동의한다(5점)
 2) 위 표의 '구분'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진이 요약·제시한 것임.

2)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안 평가

<표 V-24>에 제시한 전문가 의견을 정리하면, 우선, 1안의 경우, 부처 간 갈등 및 혼선의 최소화가 가장 큰 장점으로 평가되었다. 아울러 부처 통폐합으로 발생할 행정비용과 시간 절약 그리고 전달체계 개편의 최소화로 인한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정책 단절과 서비스 중단, 부처별 규모 및 예산의 차이로 인한 정책 편향 및 소외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다음, 전달체계를 하나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는 2안은 통합 방법에 따라 둘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현 주무 부처 중 하나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2-1안은 생애 주기적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가 가장 큰 장점으로 인정되었고, 정책

간 상호 연계 강화와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서비스도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다만, 부처별로 분산된 청년정책의 고유한 특성상, 실질적 통합 가능성에는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새로운 주무 부처를 신설하여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2-2안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위상과 관심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통합된 정책 방향을 정립하고, 생애주기별 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점을 주요 장점으로 보았다. 한편, 새로운 부처 신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들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조직 설계에 대한 어려움, 업무 조정의 어려움 등이 예상되었다.

끝으로,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전달체계를 통합하되,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고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3안은 아동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는 3-1안과 아동과 청소년 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고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는 3-2안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아동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되,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3-1안에 대해 청소년·청년 통합부처에서 유관 부처의 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용이하고, 아동정책의 전문성은 유지하면서 청소년·청년정책의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부각되었다. 반면,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 간 상이한 전달체계와 법제도, 관점 및 영역의 차이로 인한 정책 편향 및 소외 등이 문제점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아동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고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3-2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청년의 발달적 특성 및 사회적 요구를 고려한 청년정책의 전문성과 특성화를 유지하는 한편, 생애전반기 아동,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적·연속적인 정책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현 청년정책의 체계는 정책들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판단되었다.

표 V-24.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안의 장점 및 문제점에 대한 주요결과

구분	긍정적인 점(장점)	문제점
1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달체계의 변화로 인한 부처 간 갈등 및 혼선 최소화(M=4.13) 부처 통합으로 소요되는 행정비용·시간 절약(M=3.93) 전달체계 개편을 최소화함으로써 현 정책의 안정성, 지속성 확보(M=3.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단절 및 서비스 중단(M=3.87) 부처별 규모 및 예산의 차이로 인한 정책 편향 및 소외(M=3.87)
2-1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M=4.20)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상호 연계 강화(M=4.00)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서비스 가능(M=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정책의 부처별 분산된 현 체계와 규모를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실질적 통합이 어려움(M=4.07)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의 범주와 특성이 달라서 어느 부처로 통합하든지 조직 내 간막이 우려(M=3.80)
2-2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위상 및 관심 제고(M=4.00)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통합된 방향 정립(M=3.93)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M=3.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 신설에 대한 이해관계자(현장 실무자, 정책 수요자 등)의 반발(M=3.67) 새 부처의 조직 설계에 대한 어려움(정책 범주 및 기능 조정 등)(M=3.53) 새 부처의 소관 업무를 둘러싼 유관 부처와의 조정 어려움(M=3.53)
3-1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청년 통합부처에서 유관 부처의 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용이(M=3.60) 아동의 보호, 복지정책 등의 전문성은 유지하되, 청소년·청년의 진로, 자립정책 등의 연속성 강화(M=3.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상이한 전달체계, 부처 간 이해관계와 우선순위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M=3.60) 청소년과 청년의 이질적인 법제도로 인한 통합(종합) 정책의 어려움(M=3.60)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관점 및 영역의 차이로 인한 정책 편향 및 소외(M=3.60)
3-2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 청소년과 다른 청년의 발달적 특성 및 사회적 요구(주거, 일자리, 소득·자산 등)를 고려한 청년정책의 전문성 및 특성화 유지(M=3.73) 생애전반기 아동,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종합)적·연속적인 정책 지원(M=3.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처별 분산된 청년정책의 현 체계로는 아동·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확보하기 어려움(M=3.47)

- * 주: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매우 동의한다(5점)
 2) (1안) 현행대로 보건복지부(아동), 성평등가족부(청소년), 국무조정실(청년)이 중심이 되어 각각의 전달체계는 유지하되,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3) (2안)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하나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
 (2-1안)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중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2-2안)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새로운 주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하는 방안
 4) (3안)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통합하되,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고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3-1안) 아동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되(청소년·청년정책),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3-2안) 아동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고(아동·청소년정책),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안 중에서 1안과 3안의 경우,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인 연결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전달체계 간 상호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에도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으며, 이에 대한 주요 결과를 <표 V-25>에 정리하였다. 전문가들의 주요 의견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먼저는 생애주기별 정책대상과 목표를 명확화하고,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법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달체계 간 연계를 위한 기반 마련이 강조되었다. 다음은 총괄·조정 체계 구축과 관련된 의견이 중요하게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총괄·조정 기구(컨트롤 타워)의 설치, 중앙부처 차원의 정기적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부처별 분산된 청년정책의 연계·협력을 위한 청년정책 주무 부처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정보 및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기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전달체계를 일원화 하고, 온오프라인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고려되었다.

표 V-25. 1안, 3안의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주요결과

구분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전달체계 간 연계를 위한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정책 대상과 목표의 명확화(M=4.40) • 관계 부처 합동의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M=4.13) • 관련 법령에 연계·협력 의무 조항 신설 등 법제도 개선(M=4.20)
총괄·조정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총괄·조정 기구(컨트롤 타워) 설치(M=4.07) • 중앙부처 차원의 정기적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협의체 구성·운영(M=4.00) • 부처별 분산된 청년정책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청년정책 주무 부처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M=4.20) • 정보 및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구축(M=4.73)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전달체계 일원화(M=4.27) • 수요자 중심의 온오프라인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M=4.00)

* 주: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매우 동의한다(5점)
 2) 위 표의 '구분'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진이 요약 제시한 것임.
 3) (1안) 현행대로 보건복지부(아동), 성평등가족부(청소년), 국무조정실(청년)이 중심이 되어 각각의 전달체계는 유지하되,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4) (3안)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통합하되,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고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3-1안) 아동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되(청소년·청년정책),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3-2안) 아동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고(아동·청소년정책),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한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안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개선안과 실현 가능한 개선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그림 V-1]과 같이 확인되었다. 즉, 전문가들은 이상적인 전달체계로 새로운 주무 부처를 신설하여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통합하는 2-2안을 가장 많이 꼽았다(6명, 40.0%). 이에 반해, 실현 가능한 개선안은 아동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되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3-1안에 대한 응답(6명, 40.0%)과, 현 주무 부처를 유지하되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1안에 대한 응답(5명, 33.3%)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이상적인 전달체계와 다소 다르게 평가되었다.



* 주: 1) (1안) 현행대로 보건복지부(아동), 성평등가족부(청소년), 국무조정실(청년)이 중심이 되어 각각의 전달체계는 유지하되,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2) (2안)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하나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
 (2-1안)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중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2-2안)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새로운 주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하는 방안
 3) (3안)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통합하되,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고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3-1안) 아동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되(청소년·청년정책),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3-2안) 아동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고(아동·청소년정책),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그림 V-1. 이상적인·실현 가능한 전달체계 개선안

3) No Wrong Door의 국내 실현 방안

공적 전달체계 안에서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정책수요자가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를 의미하는 No Wrong Door의 국내 실현 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요 의견은 <표 V-26>과 같이 4가지로 종합되었다. 우선,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총괄·조정 기구(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고, 정보 및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등 총괄·조정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 연계·협력 의무 조항을 신설하고, 부처 간 공동 예산 사업을 확대하는 등의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방안과 함께, 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AI, 온라인 플랫폼 구축 등 서비스 제공 방법을 다양화하여 정책수요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강조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관계 기관 간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네트워크 중심의 통합사례관리를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안이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표 V-26. No Wrong Door의 국내 실현 방안에 대한 주요결과

구분	No Wrong Door의 국내 실현 방안
총괄·조정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총괄·조정 기구(컨트롤 타워) 설치(M=4.27) • 부처, 지자체 등의 정보 및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구축(M=4.80)
연계·협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에 연계·협력 의무 및 정보공유 조항 신설 등 법제도 개선(M=4.33) • 부처 간 공동 예산 사업 확대(M=3.93)
서비스 접근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수요자의 서비스 접근성 확대(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AI 서비스 등)(M=4.67) •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M=4.47)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관련 기관 간 협의회 구성·운영(M=3.93) •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강화(M=4.27)

* 주: 1)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1점)~매우 동의한다(5점)
 2) 위 표의 '구분'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진이 요약 제시한 것임.

○ — 제6장 아동·청소년· 청년정책의 생애주기적 통합 전달체계 구축

- 1.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통합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고려사항
- 2.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통합 전달체계
구축 법률 정비 방안
- 3. 소결

1.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통합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고려사항

1)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 정의 및 명칭 사용

아동·청소년·청년의 생애주기적 통합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일차적 고려사항은 연령 정의 및 명칭 사용의 문제이다. 먼저 연령 정의에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은 객관적으로 통일된 연령 정의의 확보이다. 먼저 현재 아동·청소년·청년 연령 관련 법령을 보면 다음 표 VI-1과 같다.

표 VI-1. 아동·청소년·청년 연령 관련 법령

법령명	연령
영유아보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 19., 2011. 6. 7., 2023. 8. 8., 2024. 2. 6.〉 1. “영유아”란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 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9. 1. 15., 2021. 12. 14.〉 ② 삭제 〈2019. 1. 15.〉 ③ 삭제 〈2019. 1. 15.〉 ④ 삭제 〈2019. 1. 15.〉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 12. 14., 2023. 6. 13.〉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아동”이란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협약의 적용을 받는 16세 미만 인 사람을 말한다.

* 이 장은 성윤숙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법령명	연령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이란 18세 미만 인 사람을 말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 <개정 2016. 1. 6., 2016. 5. 29., 2021. 3. 16., 2023. 12. 26.> 1. “아동”이란 「 아동복지법 ,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 <개정 2011. 8. 4.> 1. “아동”이란 「 아동복지법 ,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개정 2011. 8. 4., 2013. 6. 4.> 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 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2.> 1.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 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9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청소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 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23.> 1. “청소년”이란 「 청소년기본법 ,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1. “청소년”이란 「 청소년기본법 ,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2024. 3. 26., 2024. 10. 16.> 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 의 사람을 말한다.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정의) ... <개정 ... 2018. 12. 11.>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 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법령명	연령
소년법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 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教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1.]
민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 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전문개정 2011. 3. 7.]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 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청년의 나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나이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15세 이상 29세 이하 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 경우 15세 이상 34세 이하 인 사람을 말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2025년 3월 17일 각 법령 검색 및 인출.

법령들을 비교하여 보면 아동복지법 등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마찬가지로 “아동”을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반해, 영유아보육법과 아동수당법은 7세 이하로 규정한다. 청소년기본법에선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는데 반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 보호법은 19세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청년의 경우 청년기본법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그림 VI-1을 보면 법령 간 연령 정의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법령명	연령																																				
	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영유아보육법																																					
아동수당법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 보호법																																					
소년법																																					
민법																																					
형법																																					
청년기본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2025년 3월 17일 각 법령 검색 및 인출.

* 주: — 진한 선은 해당 연령 포함(이하, 이상)을 뜻하며, ... 점선은 해당 연령 불포함(미만, 초과)을 뜻함.

그림 VI-1. 아동·청소년·청년 연령 관련 법령

일관되고 통일되지 않은 연령 정의는 다양한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다. 일례로 현재의 법적 연령기준을 따르면, 9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은 아동이자 청소년이며, 19세 이상 24세 이하인 경우 청소년이자 청년으로 간주된다. 또 청년기본법(19세 이상 34세 이하)과 달리,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은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정의하며, 더 나아가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는 경우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 상식적 관점에도 부합하지 않지만, 정책 대상 설정이나 정책 적용에서의 혼란, 혼선 및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또 생애주기적 정책 연계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통합 아동·청소년, 청년 전달 체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정책 단절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연령의 명확한 경계 설정이나 정책 목적에 따른 연령 구분 기준의 확립이 요구된다.

2) 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한 정책영역 설정

실효적인 생애주기적 통합 아동·청소년·청년 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해 필요한 또 다른 사안은 정책 영역 설정의 문제이다.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은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하에 아동의 권리와 행복 보장이라는 2대 목표 하에 <권리, 발달 그리고 보호>의 3대 정책 영역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약 21개 소과제 및 35개 세과제의 구체적인 정책 영역을 세분화하였다.



그림 VI-2.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

그리고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은 「청소년기본법」의 '기본이념'에 준하여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과 '청소년 성장기회 제공'이라는 2대 목표를 설정하고, '5개 대과제 아래에 중과제 14개, 소과제 39개 그리고 108개의 세과제'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핵심은 '플랫폼 기반 청소년활동 활성화(활동)',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복지)',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보호)', '청소년 참여, 권리 보장 강화(참여, 권리)'의 4대 영역이다. 나아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은 '주거, 일자리, 교육, 참여 권리, 복지 문화'의 5대 중점 방향에 따라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먼저 아동과 청소년 관련 정책 영역을 생애주기적 연계성 측면에서 비교하고자 한다. 일단 비교 편의성을 위해 아동의 3대 영역인 <권리>, <발달>, <보호>의 관점하에 아동과 청소년 관련 정책 영역을 비교, 정리하였다. 청소년의 <활동> 및 <복지> 두 영역은 아동의 <발달> 영역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그림 VI-3.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3~'27)

표 VI-2. 아동·청소년정책 영역 비교

	아동 정책 영역		청소년정책 영역		
	소과제	세과제	소과제	세과제	
권리	아동 중심 정책 반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1-1-1-1. (가칭) 아동기본법 제정	법·재원 등 청소년정책기반 체계화	5-1-①-1. 「청소년기본법」 개정	
	아동정책 영향 평가 전면 실시	1-1-2-2. 지역 아동정책으로 영향평가 확대	지자체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내실화	5-2-①-2. 지자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개선	
	지역 아동복지 사업 품질 제고	1-1-3-1. 아동복지사업 지역적 불균형 개선	1-1-3-2. 시도 단위 아동정책 조정 지원체계 마련	지역 단위 청소년정책 협력 강화	5-2-②-1.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전국 확대 5-2-②-2. 청소년정책-지자체-교육청 간 협력 강화
		행정·사법절차상 아동 의견표명권 보장		1-2-1-1. 정책 결정시 아동참여 제도화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기회 활성화
	아동이 중심에 있는 아동권리 보호	1-2-2-2. 우범소년 제도 개선 추진	청소년 권리 보장 및 대표성 제고	4-2-①-2.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대표성 강화	
	아동권리 시각지대 해소	1-2-3-1. 일하는 아동의 권리보호	근로유형별 청소년 보호 강화	3-3-①-1. 근로형태 모니터링 및 관리 강화 3-3-①-2.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권리 보호 3-3-①-3. 예·체능 분야 청소년 보호	
	아동에게 친숙한 놀이·여가 환경 조성	2-1-1-2. 아동친화도시 제도와 확산 조성	청소년 친화형 생활 환경 구축	3-1-④-2. 지역 내 청소년 친화 디자인 조성	
발달	지역, 연령 등 감안한 맞춤형 놀이·여가 지원	2-1-2-1. 지역사회 놀이 지원체계 구축	지역사회 연계 학교안팎 청소년활동 강화	1-4-②-1. 지역 내 소규모 청소년활동 공간 설치·운영	
		2-1-2-2. 영유아-초등학교 놀이 시간과 공간 확충	학교 연계 청소년활동 지원	1-4-①-1.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과 학교 협력 강화 1-4-①-2. 학교시설 활용 청소년활동 확대	
		2-1-2-3. 아동 특성을 고려한 문화·여가 활동 지원	테마별 활동기회 제공	1-3-①-2. 문화예술 분야 활동·교육 지원 1-3-①-3. 생활체육 및 스포츠 체험 기회 확대	
		2-1-2-4. 놀이·여가 활동과 사회적 경제 활성화 연계	지역 단위 청소년정책 협력 강화	5-2-②-3.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공헌사업 연계	
	지나친 학습 경쟁 완화,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	2-1-3-1. 초·중·고교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자기주도적 활동 프로그램 확대	1-3-②-1. 프로젝트 기반 학습 활동 강화 1-3-②-2. 청소년자기주도전포상제 운영 활성화	

	아동 정책 영역		청소년정책 영역	
	소과제	세과제	소과제	세과제
		2-1-3-2. 진로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 강화	진로체험 및 교육 지원	1-2-②-1. 전문 분야별 진로탐색 활동 지원 1-2-②-2. 진로체험기관 간 협업 통한 체험기회 확대 1-2-②-3. 청소년 진로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
	아동의 신체건강 관리 강화	2-2-1-1. 각종 질병예방을 위한 생활위생 관리 강화 2-2-1-2. 효과적 건강관리를 위한 3대 시범사업 실시	청소년 건강 및 생활 지원	4-2-②-1. 청소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
	아동의 마음건강 관리 강화	2-2-2-1. 공공 마음건강 돌봄 인프라 확충		4-2-②-2. 건강한 생활습관 지원 및 급식 사각지대 완화
보호	새로운 건강 위협요인 대응 강화	2-2-3-1. 스마트폰·인터넷 등 바른 사용 역량 강화	정보시스템 기반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운영	2-1-③-1.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2-1-③-2. 청소년상담1388 시스템 고도화
		2-2-3-3.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의 사용 억제	디지털 활동 및 교육 지원	1-1-①-4. 디지털·미디어 문해력(Literacy) 함양 1-1-①-5. 디지털 윤리규범 확산·실천
			디지털 역기능 예방	3-1-①-2.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지원
	아동 성범죄 예방 및 '유아 성행동 문제' 관리 강화	2-3-1-1. 아동 대상 신종 성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추진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3-1-③-2. 유해약물 유통 차단 및 오·남용 예방 강화
		2-3-1-2. '유아 성행동 문제' 발생시 아동관점 대응체계 강화	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응 강화	3-2-①-1.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 파악 3-2-①-3.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체계 강화
			청소년 선도보호 및 회복지원	3-2-③-2. 소년범죄 통계관리 및 인프라 확충
	교통, 학교, 식품·공산품 등 생활 속 안전관리 강화	2-3-2-3. 어린이 주요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 기준 강화	청소년 성범죄 피해 지원 및 예방교육 확대	3-2-②-1. 성범죄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3-2-②-2. 대상별 맞춤형 성범죄 예방 교육 확대
		2-3-2-4. 어린이 먹거리 안전·위생 관리 강화	안전한 청소년활동 기반 마련	1-3-③-3. 청소년활동 안전인식 확산
		2-3-2-6.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청소년 건강 및 생활 지원	4-2-②-2. 건강한 생활습관 지원 및 급식 사각지대 완화
		2-3-2-7.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강화	사이버 및 학교 폭력 예방 강화	3-1-②-2. 학교폭력 방지 및 대응체계 활성화 3-1-②-3. 사이버 및 학교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 3-1-②-1.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및 인식 확산

아동 정책 영역		청소년정책 영역	
소과제	세과제	소과제	세과제
정보연계-협력 등을 통한 아동학대 근절	2-3-3-1. 정보공유-연계협력 강화	지역 중심 위기 청소년 지원 확대	2-1-②-1.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활성화 2-1-②-3. 전문기관-학교 간 청소년 위기 공동대응 협력
	2-3-3-2. 인프라의 과감한 개선		2-1-②-2.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확대 운영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인프라 구축	3-1-1-1. 공공 인력확충 및 기관별 업무 전문화	지자체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내실화	5-2-①-1.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 확대 및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활성화
	3-1-1-2. 전담인력 전문성 등 역량 강화	청소년지도자 지원 및 전문성 제고	5-1-②-1.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아동 돌봄 확충 및 운영 내실화	3-1-5-2.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및 돌봄 서비스 질 제고	지역사회 연계 학교안팎 청소년 활동 강화	1-4-②-2. 지역 내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및 돌봄 활성화
취약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연속성 확보	3-2-1-1. 아동주거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강화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	2-2-②-2. 가정 밖 청소년 경제 및 주거 지원 확대
다양한 배경의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3-2-2-1. (한부모) 자녀양육 및 일-가정 양립 지원 확대	청소년(한)부모 생활 양육 지원	2-3-②-1. 청소년(한)부모 사례관리 및 학업 지원 2-3-②-2. 청소년(한)부모 양육비 지원 강화
	3-2-2-2. (이주배경 아동) 서비스 다양화 및 의료 등 필수 서비스 지원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	2-3-①-1. 다문화가족 청소년 학습 및 사회 적응 지원 2-3-①-2. 이주배경청소년 종합 통계 구축 및 지원
	3-2-2-3. (장애아동) 장애아 가족양육 및 방과후 활동 서비스 확대 추진	장애 및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	2-3-④-1. 장애청소년 부모 지원 및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방안 마련
취약계층 교육 등 지원 강화	3-2-3-3.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	2-2-①-1.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협력 강화 2-2-①-2.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진로지원 확대 2-2-①-3. 학교 밖 청소년 활동 지원 강화 2-2-①-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프라 확대

다음, 청소년과 청년정책 영역 역시 일단 편이 상 청년정책의 5개 대과제인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참여권리’를 기준으로 비교 정리하였다.

표 VI-3. 청소년·청년정책 영역 비교

청소년정책 영역		청년정책 영역	
소과제	세과제	소과제	세과제
			[일자리 분야]
후기청소년 (19~24세) 안정적 삶 지원	2-2-③-2. 후기청소년 창업시장 진입 지원 2-2-③-3. 후기청소년 취업 지원	청년 노동권의 보장	3-2-1.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 강화 3-2-2. 직장내 성희롱 근절 강화 3-2-3.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3-2-4. 청년 직장 성폭력 근절 3-2-5. 근로감독 강화
근로청소년 부당처우 예방 및 보호	3-3-②-2. 근로환경 모니터링 및 감독 내실화		
			[주거 분야]
후기청소년 (19~24세) 안정적 삶 지원	2-2-③-4. 후기청소년 건강 및 주거 지원	청년친화 도심융합특구 (일자리+주거+교육) 조성	4-4-1. 도심융합특구 지정
청소년 친화형 생활 환경 구축	3-1-④-2. 지역 내 청소년 친화 디자인 조성		
			[교육분야]
후기청소년 (19~24세) 안정적 삶 지원	2-2-③-1. 후기청소년 진로·직업교육 실시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1-1-12.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 지원	5-2-③-2. 인구감소 지역 청소년정책지원 확대		
근로유형별 청소년 보호 강화	3-3-①-2. 직업계고 현장실습생 권리 보호	고졸청년 취업 및 사회 안착 지원	3-1-1.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내실화
진로체험 및 교육 지원	1-2-②-1. 전문 분야별 진로탐색 활동 지원 1-2-②-3. 청소년 진로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 지원 강화	3-2-2.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대학생 진로탐색 강화 3-2-3. 대학생 진로탐색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	2-2-①-1.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 협력 강화 2-2-①-2. 학교 밖 청소년 학업 진로지원 확대 2-2-①-3. 학교 밖 청소년 활동 지원 강화 2-2-①-4.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인프라 확대	온라인 지식공유체계 강화	4-1-2. 학교밖 청(소)년 온라인 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영역		청년정책 영역	
소과제	세과제	소과제	세과제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디지털 기반 개선	1-1-②-2. 청소년활동 디지털 플랫폼 구축 1-1-②-3. 디지털 청소년활동 공간 구축	온택트 평생 배움터 개설 추진	4-2-1. 평생 배움터 구축 4-3-1. 대학 원격교육 지원센터 지정 운영
[복지 문화 분야]			
후기청소년 (19~24세) 안정적 삶 지원	2-2-③-4. 후기청소년 건강 및 주거 지원		
청소년 건강 및 생활 지원	4-2-②-1. 청소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2-2-1. 청년 국민건강 검진 무료 실시
위기청소년 발굴 및 치유지원 강화	2-1-①-1. 위기청소년 조기 발굴 및 상담 지원 확대 2-1-①-2. 고위기 청소년 조기 발굴·특화서비스 제공 2-1-①-3.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치유 인프라 확대 및 지원		3-2-1. 위기 청년 자립 지원
청소년(한)부모 생활 양육 지원	2-3-②-1. 청소년(한)부모 사례관리 및 학업 지원 2-3-②-2. 청소년(한)부모 양육비 지원 강화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3-2-2. 청년한부모 자립 지원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	2-3-①-1. 다문화가족 청소년 학습 및 사회 적응 지원 2-3-①-2. 이주배경청소년 종합 통계 구축 및 지원		3-2-3. 이주배경 청년 지원
지역사회 연계 학교안팎 청소년활동 강화	1-4-②-1. 지역 내 소규모 청소년활동 공간 설치·운영	청년 문화활동 기반 강화	4-2-4. 생활속 문화시설 (공공도서관·생활문화센터·소규모창작공간 등) 확대
[참여·권리 분야]			
청소년의 다양한 참여기회 활성화	4-1-①-1. 청소년 자치활동 참여 확대 4-1-①-2.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확대 4-1-①-3. 청소년정책 참여활동 지원		1-1-1. 청년참여 20-30
청소년 참여 역량 제고 및 소통 강화	4-1-②-1. 청소년 참여역량 강화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	1-1-2. 대학내 주요 의사결정 기구 청년참여 강화
청소년 권리 보장 및 대표성 제고	4-2-①-2.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대표성 강화		1-1-3. 주거정책 결정기구 청년참여 확대

청소년정책 영역		청년정책 영역	
소과제	세과제	소과제	세과제
지자체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내실화	5-2-①-2. 지자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개선	청년 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법령 정비	2-1-2.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분석·평가
법·재원 등 청소년정책 기반 체계화	5-1-①-1. 「청소년기본법」 개정		2-1-3. 청년 관련 법령 체계화
지역 단위 청소년정책 협력 강화	5-2-②-2. 청소년정책-지자체-교육청 간 협력 강화	지역 청년정책 균형발전	2-2-2. 청년정책 지역협력 체계 마련
근로청소년 부당처우 예방 및 보호	3-3-②-1. 근로청소년 부당처우 구제 지원 3-3-②-2.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 3-3-②-3.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운영	노동·금융·주거 청년권익 보호	4-1-1. 청소년 근로권익센터 운영 4-1-2. 청소년 근로보호센터 운영
청소년과 사용자의 근로보호 인식 확산	3-3-③-1. 청소년 대상 근로보호 및 직업윤리 교육 지원 3-3-③-2. 청소년 고용사업자 근로보호 교육 실시		
테마별 활동 기회 제공	1-3-①-1. 청소년 국제교류 활성화	청년 주도형 교류 지원	4-2-6. 대학생 대상 해외연수 기회 확대

○ 세부 내용이 일부 상이하더라도 세과제의 목적과 취지가 맥을 같이 한다고 판단되는 과제를 비교하였음.
○ 청년의 경우, 세부과제 분류 단위(대과제-중과제-소과제)가 다르므로 중과제-소과제를 비교하였음.

이상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영역 전체를 포괄적 측면에서 비교, 정리하면, 결국 이들이 헌법에 적시된, 국민의 사회권이 보장하는 교육, 복지, 고용의 세 기본 영역에 속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I-4. 통합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영역

세계 인권 선언문은¹⁰⁷⁾ 존엄한 인간의 사회권으로 제22조 사회보장의 권리(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실현권), 제23조 노동의 권리, 제24조 휴식과 여가의 권리, 제25조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복지의 권리, 제26조 교육받을 권리, 제27조 문화생활 참여 및 향유의 권리, 이상 6개의 권리를 사회권의 기본 구성 요소로 본다. 대한민국헌법 역시 제10조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토대로 주어지는 교육권(제31조), 근로권(제32조) 그리고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와 제35조 환경권과 주거권, 그리고 제36조 제2항 모성보호, 제36조 제3항 보건권 등을 사회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둘을 포괄적으로 정리, 분류하면 결국 사회권은 행복한 삶의 설계와 미래 국가성장 동력으로서의 기여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교육, 안정된 복지, 그리고 생산적 고용의 세 가지 영역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복지 영역의 경우, 보호, 경제, 문화, 의료, 활동, 참여 등 사회생활을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제반 영역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중 보호, 경제, 의료는 안정된 기초적 삶을 위해 최소한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따라서 이를 소극적 복지(보호 복지)로 볼 수 있고, 문화, 활동, 참여는 최소한의 생존과 건강을 넘어 자아실현과 삶의 향유를 위해 보장받아야 할 권리이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 복지, 또는 넓은 의미에서 '문화 복지(가치)'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영역을 포괄적인 차원의 교육, 복지, 고용, 세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중 복지를 보호 복지(세 영역)와 문화 복지(세 영역)의 여섯 영역으로 체계화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토대로 아동, 청소년, 청년의 생애주기에 부합하고, 아동, 청소년, 청년의 안정된 상황이든 취약 상황이든 적절히 적용되는 통일된 통합 정책 영역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VI-5. 아동·청소년·청년 조정 및 통합 정책 영역

107)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48.

2.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통합 전달체계 구축 법률 정비 방안¹⁰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기능 재조정과 통합 필요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된 사안이다. 아동·청소년정책 기능을 기존 부처인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거나, 새로운 통합 부처(예: '아동가족청')를 신설, 또는 청소년정책 및 청년정책 기능을 통합하는 등 다양한 개편 방안이 제시되어 왔다. 최근 국회에서의 전달체계 개편 공개 토론회에선, '아동가족청' 설립 등 다양한 대안이 제안된 바 있다. 이러한 일련의 시도는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통합적 추진이 생애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필수 과제로 인식함에 기인한다.

미래세대 정책의 통합 거버넌스 재설계가 국가적 전략 과제라는 관점에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편의 성공 여부는 행정적 조정과 함께 법·제도의 정합성 확보에 달려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5가지 개선 방안 각각에 대해, 필요한 법령 개정 사항(관련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등)과 중앙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요구되는 조직 개편 사항을 논의하고자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의 5가지 방안과 연계된 관련 법률 개정과 폐지 및 관련 법 개정 조항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논의의 대상인 다섯 가지 개편 방안의 기본 구조와 주요 법·제도적 특징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표 VI-4.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편안 5가지

대안	중앙 정부 주관 부처 체계
① 현행 유지+연계보완	현 체계 유지: 보건복지부(아동), 성평등가족부(청소년), 국무조정실 등(청년) 각각 담당
②-1 기존 부처로 통합	하나의 기존 부처로 일원화: 예) 보건복지부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일괄 통합 (또는 성평등가족부로 통합하는 경우 등 시나리오별 변형)
②-2 신규 부처 통합	신설 부처(혹은 독립 행정청) 설립: 예) '아동청년부' 또는 총리 직속 '아동청소년청' 신설, 산하에 아동·청소년·청년 통합 조직 구성
③-1 청소년+청년 통합	청소년 및 청년정책 기능을 통합: 예)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국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 조직을 묶어, '청년위원회' 또는 통합 전담조직으로 개편. 아동정책은 종전대로 보건복지부 담당
③-2 아동+청소년 통합	아동 및 청소년정책 기능을 통합: 예)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정책을 통합하여 '아동청소년국'을 보건복지부 내 설치 (또는 성평등가족부로 통합하는 시나리오 가능). 청년정책은 종전대로 국무조정실 등에서 조정

108) 이 절은 김신영 교수(한양사이버대학교)가 집필하였고, 성윤숙 선임연구위원이 수정하였음.

표에서, ②번 계열과 ③번 계열 대안은 통합범위의 차이가 있다. ②-1과 ②-2는 아동부터 청년에 이르는 전 연령대를 하나의 부처로 아우르는 완전 통합안으로, ②-1은 기존 부처 활용, ②-2는 새로운 부처(또는 청) 설립이라는 실행 방식의 차이가 있다. 반면 ③-1과 ③-2는 부분 통합안으로서, 전자를 통해 청소년과 청년을 통합하고 아동은 별도로 두는 반면, 후자는 아동과 청소년을 통합하고 청년은 별도로 유지한다. ①번 안은 현행 분산 구조를 유지하면서 보완적 조치만을 취하는 최소 개편안이다. 이러한 차이점을 염두에 두고, 각 대안별로 법체계 변화와 그에 수반되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 제 ①안

제 ①안의 핵심은 현재의 다원화된 전달체계의 유지에 있다. 물론 현재의 전달체계가 갖는 분절성과 중첩성의 극복을 위한 부처 간 협력과 연계 방안 보강 및 정책 중복 및 누락 문제의 완화 전략이 여기에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굳이 명명하자면 제 ①안은 ‘현 체제 유지 및 협력 강화’ 방안으로 부를 수 있다. 기존 체제를 유지하며, 교차 또는 중복되는 정책 영역에 대해서는 보완적 수준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예를 들자면, 보호대상 아동이 18세가 되어 청소년정책 지원 체계로의 편입 시, 일관되고 매끄러운 지원을 연계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성인 연령으로 성장한 이후에는 고용 또는 주거지원 등의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부처 간 연계 및 협력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그간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어 왔던 아동·청소년 연령 기준의 불일치(또는 중복)로 인한 행정 공백 예방 조치를 위한 연령 기준 재정립과 이에 근거한 관계부처 협의체 신설 등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 있다.

제1안의 경우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은 불필요할 것이다. 필요한 것은 부처 간 협력 강화를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이다. 구체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주 업무를 ‘아동의 복지와 보호로 규정한 「정부조직법」 제34조,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업무를 ‘청소년의 육성과 복지증진’으로 규정한 제35조(개정) 그리고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 등 범정부적 조정 업무’를 부여하고 있는 제19조 등 현재의 법적 체계하에서, 부처 간 유기적 정책 연결과 협력의 거버넌스의 생산적 작동을 위해 명확한 법령 규정이 필요하다. 또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현행 「아동복지법」 제4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추가하여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력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아동에서 청소년으로의 이행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서비스가 단절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부처별 계획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아동복지법」 제9조(아동복지종합계획)를 보완하여 '계획의 공동 수립 및 정보 공유' 조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본법」의 경우, 우선 제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및 「청년기본법」에 따른 정책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 규정을 제10조(기본계획의 수립)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

「청년기본법」의 경우는 아동·청소년정책 연계의 제도화를 위해 위원회 구성(시행령 제11조)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포함하고, 정책 협력의 근거 확립을 위해, 제13조 제3항에 '아동·청소년정책 관련 협의체의 설치·운영' 관련 문구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세대 간 정책 연속성을 보장하고, 사업 및 예산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¹⁰⁹⁾

다음으로 살펴볼 부분은 사회보장 관련 법제 정비 영역이다. 「사회보장기본법」 제20조는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복지정책을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여전히 아동·청소년·청년 분야 정책 연계 기능은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제20조 제2항에 '사회보장위원회는 아동·청소년·청년 복지정책 간의 연계와 조정을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 명시하여 범정부 차원의 상시 협의 구조를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다¹¹⁰⁾. 또한 「사회보장급여법」 제16조(수급권자 발굴)에는 '아동·청소년의 복합 위기 발굴 시 청년정책조정기구와 정보 연계를 추진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청소년도 연령 전환 후에도 연속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데이터 기반 정보공유체계 구축은 부처 간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는 토대 작업에 해당한다.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와 제18조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과 목적 외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라는 법적 의도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나, 부처 간 연계 시스템 구축에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공공복지서비스 연계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을 위한 정보 이용의 예외' 조항의 신설을 추진해 볼 수 있다. 물론 개인정보공유시 정보주체의 동의와 가명

109)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아닌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의 사무에 아동·청소년, 청년정책 관련 협의의 근거를 명시하고 시행하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자문 의견이 존재한다.

110) 앞서 언급한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 관련 조항과의 중복 여부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처리의 의무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 정보 공동이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 범위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국무조정실이 공유할 정보 항목들을 대통령령 등을 통해 구체화하는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아동보호, 청소년 상담, 청년 자립 관련 데이터 등 간의 연계가 가능해지고 궁극적으로는 전달체계 간 협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의 역할 측면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정부는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현장에서의 최일선 집행 단위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과 그 시행령에 아동·청소년·청년 전담부서 설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0조(행정기구 설치기준)에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을 총괄할 부서를 두어야 한다’는 조항 신설을 검토해 볼 수 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17조(국고보조금 교부)에 ‘중앙-지방 연계형 복지사업에 대한 인센티브성 보조금 지원 제도’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 역시 필요하다. 지자체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을 분절적이지 않고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은 「사회보장급여법」 제20조(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에 ‘지자체 간 정보공유 및 공동 사례관리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가능해질 것이다.

요약하면, 제 ①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등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관련 법률에 상호 연계 협력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사회보장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보완·수정하여 행정적 협력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 현재의 정책 전달체계를 유지하며, 정부 조직의 구조적 개편이 없는 상태에서 부처 간 유기적 협력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①안은 조직 개편이 초래할 비용과 정치적 부담은 최소화하되, 상호 연계 협업 체계를 확보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연속성을 강화하는 ‘안정적’ 모델로 평가할 수 있다.

2) 제 ②-1안

②-1안은 아동·청소년·청년정책 기능을 현재의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중 한 부처로 모두 이관하여 전달체계를 일원화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특정 부처를 선호하지 않으며, 따라서 원칙적이고 이론적으로 세 부처 중 어느 부처로의 통합이든 가능하다. 다만 세 가지 가능성을 차례로 모두 분석, 검토하는 경우 내용이 방대해질 것을

우려하여, 본 보고서에는, 단지 방법론적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건복지부로의 통합 사례를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보건복지부는 전통적으로 영유아 보육과 아동복지를 관장해 왔으며, 2008년 정부조직 개편 시에는 가족·청소년 업무를 흡수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 확대되었다가 2010년 분리된 전례가 있다.¹¹¹⁾ 따라서 아동·청소년·청년 업무를 보건복지부에 이관한 과거의 행정경험을 활용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로 통합될 경우,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정책 기능과 국무총리실 산하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 조정기능이 보건복지부로 옮겨가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내에 아동·청소년·청년을 아우르는 전담 기구(국 또는 실 단위)를 신설하여 통합 조직을 구성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청년정책실'과 그 아래에 아동정책국·청소년정책국·청년정책국(혹은 청소년청년통합국 등)을 두어 생애주기별로 유기적으로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구상이 가능하다.

먼저 법령 정비 방향을 검토하면,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에 '청소년육성' 및 '청년 지원' 등 신설 업무를 명시하고, 성평등가족부 사무 담당 조항에서는 청소년 관련 사무를 삭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청년정책조정회의 등 국무총리실의 청년정책 조정 기능도 법률상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므로, 「정부조직법」 제38조(보건복지부)와 제42조(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정부조직법 제39조(보건복지부)에는 청소년·청년 분야 사무 추가하고, 제42조(성평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업무 부분을 삭제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동시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배치할 차관 정원 등 인력규정(예: 제26조)을 유지·검토하면서, 추가된 청소년·청년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 조직 규모를 확대한다.

하위 직제령도 연동하여 개편되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복지부 내부에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담 실·국 등 고위기구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아동·청소년·청년정책부서를 편성한다. 반대로 「성평등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는 현재 청소년정책국 등으로 존재하는 청소년 업무 조직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도록 한다. 또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제」를 개정하여 국무조정실 내 청년정책조정실(국 단위)을 폐지하고, 해당 인력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참고할 만한 사례로 2008년 개편 당시에도 보건복지부가 성평등가족부

111) 이민희(2009). 정부 「청소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소견. 2008년 당시 정부조직 개편의 경우, 5개월 만에 모든 청소년 관계법령에서 '청소년'을 '아동청소년'으로 전환하는 등, 흡수 통합법이라는 반론이 있었고, 실제 2009년 02. 17일 통합 반대 입법청원이 국회에 제출되어 통합이 무산된 바 있다.

로부터 약 100명 규모의 가족·청소년 인력을 인수하여 청소년가족정책실을 운영한 바 있다. 만약 보건복지부로나 성평등가족부 등 어느 한 부처로의 개편이 현실화된다면, 마찬가지로 법률 개정과 직제령 정비로 중앙부처 조직을 재구성한 뒤, 후속적으로 인력·예산을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개별 법률상의 소관부처 규정도 모두 정비해야 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아동복지법」은 현재 주관부처가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으므로 부처 이관은 필요 없으나, 아동(18세 미만) 규정과 청소년·청년정책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정의 및 지원 연령 기준에 추가 연계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동법 제3조 ‘아동’ 정의 뒤에 “다른 법령의 청소년·청년 정의에 연계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식이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중앙·지방의 아동정책 조정위원회가 도입된다면, 향후 이를 “아동·청소년 통합정책조정위원회”로 확대하는 개정방안 역시 검토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정의(제3조: 9~24세) 범위의 변경은 없지만, 제4~6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와 제7조 계획 수립 주체 등을 수정해야 한다.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정책의 기본계획 수립·조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한다. 예를 들자면, 제13조(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바꾼다. 이와 함께 법에 명시된 지방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제9조) 등 지방조정체계 지원기관도 성평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육성·보호 사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표현은 주관 부처명을 모두 보건복지부로 수정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도 마찬가지다. 이 법에서는 청소년 복지사업의 주관자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5조(국가책무)·제6조(지자체책무) 등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언급된 곳을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한다. 예컨대 제10조(관계기관 협력)에서 기술하는 여러 부처 협력체제에서도 성평등가족부 장관 명칭을 제거하고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한다. 이로써 청소년쉼터·상담 등 각종 청소년 복지 사업의 지도·감독 권한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도록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역시 동일한 원칙하에 개정한다. 이 법에 규정된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임무(제3조)와 청소년육성정책위원회 구성(제7조) 등을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해당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청소년활동진흥기관의 감독기관

도 복지부로 이관하므로, 관련 법인의 감독부처 변경을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 「청소년보호법」도 주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전한다. 현재 동법 제4조 등에 따라 청소년보호정책의 수립·조정 주체를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두고 있는데,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한다. 만약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국무총리나 성평등가족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으면, 이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이관하거나 필요시 폐지한다. 예컨대 과거 국무총리 소속이던 위원회가 현재 성평등가족부 산하로 운영된다면, 개정 후에는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로 두는 식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소년 유해환경 감독 기능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된다.

「청년기본법」은 대규모 변화가 불가피하다. 보건복지부로의 통합을 전제로 현행 심의 및 조정 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현 국무총리 소속)의 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 현재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범정부 청년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나, 청년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 직위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격하하거나,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5년 단위로 수립되어온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주체 역시 현재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자연스럽게 「청소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에 나타나있는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계 규정도 마련되어야 하며 이 기본계획의 일관성과 연속성에 대한 책임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갖게 된다.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정책 기능과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조정 기능이 모두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결과적으로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단일 주무 부처가 된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는 여성·가족 분야에 집중하는 구조로 기능이 재편된다. 이 과정에서 다른 부처의 역할 역시 중요해지는데,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실은 이와 같은 부처 간 기능 재배분을 조정·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가령,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같은 지원 조직을 복지부로 이관한 뒤, 관계 부처 간 이견 조율 등 남은 협의 과제를 관리하고, 정부조직법 개정 및 직제 개편의 총괄 부처로서 행정안전부는 관련 법령의 변화에 따른 심의 및 국무회의 상정 등 법적 절차를 책임져야 할 것이다.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보건복지부로 일원화 작업은 예산 관련 측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야기한다. 먼저 청소년 및 청년정책 사업 관련 예산은 기관 일원화에 맞추어 모두 보건복지부로 이체되어야 하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승인과 함께 국회에 예산 이체 승인이 진행되어야 한다. 당해 연도의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예산 집행 기관 변경

절차를 거쳐 여성가족부와 국무조정실 소관의 각각 청소년, 청년 사업 예산을 복지부로 이전하고 한다. 만약 법 개편이 회계연도 중에 완료되면, 예산의 총액은 유지한 채로 소관 부처만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연도부터는 청소년·청년 예산을 모두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편성하여 예산안을 제출해야 한다.

중앙 차원의 보건복지부로의 부처 일원화 작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업무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현재 각 광역단위 시도 및 기초단위 시군구 대부분에는 성평등가족부 사업 영역의 청소년 담당 부서가 있으며 일부 지역에는 청년 담당 부서 따로 설치되어 분리된 상태에서 업무가 진행되어오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로 기능이 통합되게 되면 지방에도 아동에서 청년까지 업무를 가급적 한 부서에서 수행하도록 권장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가 마련되게 된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행정명령 등의 강제적 수단이 아니라 지자체 단위의 업무통합을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다양한 행정수단,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 평가나 공모사업 선정 기준에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연계성을 포함시키는 작업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법령 개정 측면에서 가능한 작업은 「청소년기본법」 제9조(지방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의 개정을 통해, 지방청년정책위원회의 사업대상 집단을 청소년과 청년으로 이행 중인 생애 집단까지를 포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정책 효율성과 효과 제고 측면에서 볼 때,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을 보건복지부나 성평등 가족부 등 한 부처로 통합하여 일원화하는 개편은 과감한 방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단일부처가 생애 초기부터 청년기까지의 정책 수행을 책임질 경우, 아동에서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에서 청년으로의 전환기 연계 가능한 서비스가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음은 논리적으로 분명 타당하다. 일례로 위탁보호 종료 아동의 자립 준비 청년으로의 전환 사례의 경우 동일 부처 내의 지원은 단절 없는 연속적 보호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통합부처에서는 예산 운용의 융통성과 효율성 역시 높아져 과거 부처별 중복 투자와 칸막이 행정이 가져왔던 비효율성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인력 운용의 탄력성 및 행정 수행 능력이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 안의 강점은 단일 조직이 일관된 철학 아래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세대 간 정책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단일부처로의 통합에 대한 구현 가능성과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의 경우, 이미 보건, 복지, 의료 부분의 수많은

업무를 담당하는 상황에서, 청소년과 청년 업무까지 맡아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조정업
 무까지 담당할 경우, 조직의 비대화 및 권한 집중 위험 및 실효성 및 생산성에 대한 우려는
 당연히 제기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보건복지부의 핵심 영역인 보건·복지 현안으로
 인해 가족·청소년정책 분야가 소외되고 전문성이 담보되지 못할 가능성 역시 존재한다.
 이와 관련하여 2008년 개편 사례에 대한 성찰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성평등가족부로
 통합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이론적으로 조직이나 구성원의 이동은 현실적으로 가능하
 다. 하지만 여성과 가족정책에 이어 여차별 문제까지 포괄적인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야심 찬 전환을 이룬 상황에서 아동, 청소년,
 청년으로 이어지는 보건 업무는 물론 국무조정실의 역할까지 이관될 경우, 역시 다양한
 현실적 문제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일단 '청소년 관련 업무의 소외'를 방지하기
 위해, 무엇보다 부처 명칭을 '성평등청소년가족부'로 개편하고 청소년 업무 담당 조직
 체계를 세워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아동, 청소년, 청년의 소극적 복지와 적극적 복지의
 생애 주기적 구현을 위한 대대적인 조직 개편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의 문제점들을 고려한
 다면, 오히려 국무조정실로의 통합은 상대적으로 무리가 없어 보인다. 어차피 조정부처인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두 주무 부처의 역할을 조정하는 역할만 담당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만약 국무조정실이 생애주기적 정책 전달체계의 통합 주무
 부처로 기능하길 원한다면 마찬가지로 조직의 비대함이나 미효율성 등 다양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한 부처로 통합할 경우, 기존 부처들의 조직적, 정치적 저항이
 있을수 있으며, 이해관계 조율의 문제 역시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조직문화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단기적 혼란과 재정적·행정적 비용 역시 만만치 않을 것이다. 거대 부처로의
 통합이 결국 정책 환경 변화 대응의 측면에서 오히려 유연성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지적도
 존재한다. 종합하자면, ②-1안은 장기적으로는 정책 일관성, 연속성, 그리고 행정자원
 활용 등 종합적인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는 있으나, 이에 수반되는 단기
 및 중기적 비용과 정치적 저항 가능성이 큰 구조 개편안으로 평가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필요한 법령 개정 내용과 행정조직 변화 역시 하나의 보고서에 모두 다룰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방대하여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추후 연구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제 ②-2안

②-2안은 기존 부처 간의 기능 조정이나 통합이 아닌,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을 총괄할 새로운 중앙부처를 신설하는 시나리오이다. ②-2안의 핵심은 현재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그리고 국무조정실에 분산된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기능을 모두 흡수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정부 조직 기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통합 대상과 범위는 ②-1안과 동일하다. 다만 독립 부처를 신설한다는 점에서 ②-1안과 차별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아동·청소년·청년부(가칭)’ 신설이나 국무총리 산하의 ‘아동·청소년·청년청(가칭)’과 같은 새로운 기구의 설치가 검토 가능한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부처 신설을 통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통합 논의는 이미 학계에서 ‘아동가족청’ 설립 제안이 논의된 바 있다. 이 안의 강점은 기존 관행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생애주기별·기능별로 맞추어 조직 구성을 혁신적으로 재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 개정 측면에서 보자면, 중앙행정부처를 신설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정부조직법」에 신설 부처의 설치와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조항이 새로 만드는 작업이 일차적이다. 예를 들어 「정부조직법」에 “아동·청소년·청년부 장관은 아동·청소년 및 청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0세부터 30대까지의 젊은 세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임을 법제화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청년부(가칭)’ 형태가 아닌 국무총리 소속의 ‘아동·청소년·청년청(가칭)’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청소년·청년청을 둔다”는 문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두 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어떤 방식을 택하든 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새 조직의 법적 지위와 관할 업무 전반이 명시될 것이다.

또한 개정된 「정부조직법」은 신설 부처로 이전될 기존 기능들의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로 기능하게 된다. 먼저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청년정책조정실) 등의 기능도 신설 부처로 이관하는 만큼, 국무조정실 직제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역할을 축소하도록 「정부조직법」과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계속해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소관의 청소년육성·보호 업무 조항을 삭제하여, 그간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해 온 모든 청소년정책 기능을 신설 부처로 이관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 중 아동 복지·영유아 보육 관련 조항 역시 삭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해당 기능과 사무들이 더 이상 성평등가족부 또는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님을 법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조직 신설과 이에 따른 권한 승계와 업무 인수인계 절차 등은

신설 부처로의 원활한 업무 이관을 통해 필수적인 작업들이며 이는 개정 법률의 부처에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분산된 법체계에 대한 정비 작업도 뒤따라야 한다.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을 통합하는 신설 부처의 탄생이 자동적으로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을 아우르는 통합법 제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정책 대상별로 흩어져 있는 기존 기본법들을 하나로 묶거나 상위에서 조정할 근거를 마련하는 작업은 법·제도적 적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만약 통합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아동·청소년·청년 세대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지원 체계를 종합 규정하는 상위 기본법으로서 가칭 「아동·청소년·청년 통합지원법 또는 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가칭)」 등이 검토될 수 있다. 이 법에 담겨야 할 내용으로는 첫째, 기본 틀로서 법의 목적 및 정의 조항에서 아동·청소년·청년의 연령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둘째, 이들의 권리 증진과 성장 지원을 법의 목적으로 명시한다. 가령, 「청소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에 흩어져 있는 정책 대상 정의 조항들을 통합하여, 0세부터 18세까지를 아동·청소년으로, 19세부터 34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할 수 있다¹¹²⁾. 셋째,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규정에서는 국가와 지자체의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책임을 총괄 규정하고, 신설 부처 장관에게 이를 조정할 종합계획 수립 권한이 부여될 것이다. 이를 통해 기존의 정책 대상별 기본계획 들(예: 아동정책기본계획,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청년정책기본계획 등)을 통합하는 중장기 계획 수립의 근거가 마련될 것이다.

통합법 제정 시에는 법체계의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기존 개별 법률과의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때 법체계 적합성 확보를 위해서는 통합기본법을 상위법으로 두고 세부 내용은 분야별 개별법에서 다루도록 법률 간의 위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거나 또는 필요시 기존 법령을 통합법으로 폐합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정책 대상 전체를 포괄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면, 부처 신설이 야기할 수 있는 법률 간 불일치 또는 모순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입법 작업의 규모가 크고 각 정책 대상별 기본법 통폐합에 따른 현장 및 학계의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한

112) 다음과 같은 자문위원 의견이 있었다. “통합 기본법 제정에서 ‘0세~18세는 아동·청소년으로, 19세~34세는 청년으로 정의하는 방식’은 매우 신중한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청소년 분야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청소년 부문의 존재에 대한 우려도 낳을 수 있는 첨예한 갈등의 소지도 없지 않다. 아동, 청소년, 청년의 연령 범위를 현행대로 두고, 정책이나 사업의 성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것도 검토할 수 있다.”

만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정책적 판단과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기존의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법률의 소관 부처 변경 역시 뒤따라야 한다. 하나씩 살펴 보면, 현행 보건복지부 소관인 「아동복지법」과 「영유아보육법」, 성평등가족부 소관인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보호법」, 그리고 국무총리 및 기획재정부 소관인 「청년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주관 부처가 모두 신설 부처로 일괄 변경해야 한다.

병합·폐지 대상 법률은 통합 기본법 제정 여부와 전체 법체계 정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등을 당분간 그대로 유지하되 담당 부처만 변경하여 운영하는 방안이 있다. 이는 각 법률의 소관 변경에 주력하고 현행 법체계를 유지하는 방안이다. 장기적으로는 법률 통합을 통한 체계의 단순화까지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보다 과감한 방안으로는 「아동복지법」까지 포함해 아동·청소년·청년을 모두 아우르는 단일 법률로 병합하는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아동 분야는 보호체계 등 고유한 내용이 많아 다른 영역과 성격이 다르므로, 아동 관련 법률(「아동복지법」, 「입양특례법」 등)을 별도 운영하면서 우선 청소년·청년 분야 법률부터 단계적으로 통합 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 또한 존재한다.

중앙에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담 통합 부처가 신설되면 지방자치단체 역시 이에 연계하여 행정조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에는 사회복지국 또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아동·청소년·청년정책과’를 기초자치단체에는 ‘아동·청소년·청년과’를 두어 아동복지, 청소년육성, 청년지원을 통합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하나의 시나리오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완전히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는 일은 우리 행정 역사에서도 드문 사례이므로 국회의 입법 동의와 국민적 공감대 확보가 필수적이며, 이로 인한 정치적 부담도 막대할 것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시작될 수십 건에 이르는 관계 법령의 개·폐정에서 새로운 통합법 제정까지 요구되는 등 입법 작업의 규모 역시 방대하다.

4) 제 ③-1안

방안 ③-1은 청소년정책(대략 중학생부터 24세까지)과 청년정책(19세부터 34세까지)을 단일 체계로 통합하는 한편, 18세 미만 아동정책은 현행과 같이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

통합 방안이다. 가능한 모델로, 성평등가족부 산하의 청소년국과 국무조정실의 청년정책 조정 기능을 결합하여 하나의 조직 체계로 운영하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이 경우 두 가지 모델이 고려된다. 첫째, 국무총리 산하에 ‘청소년청년위원회’ 등의 통합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 둘째, 성평등가족부 내에 ‘청소년청년통합본부’ 등을 만들어 기존 청소년국과 청년정책조정관실을 통합하는 방안이다. 첫 번째 방안은 장관급 위원회의 설치를 수반하여 ②-2안의 축소판에 해당하며, 두 번째 방안은 성평등가족부를 청소년·청년 전담 부처로 재편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②-1안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 18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아동 대상 정책(보건복지부 소관)은 현행 체계대로 유지한다.

첫 번째 시나리오의 경우, 「정부조직법」에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청년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본법」 제16조의2와 유사한 규정으로 “청소년·청년 관련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소년청년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이 필요하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급(정무직)으로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구성·임명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하고 있는 청소년·청년 관련 사무(예: 법령 관리, 정책위원회 운영, 전달체계 구축·운영 등)를 신설되는 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평등가족부 업무 안내에 따르면 여기에는 “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전달체계 구축·평가”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성평등가족부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해당 업무들이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청년위원회로 이전되도록 명시해야 한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내 기존의 청년정책 조정 기능(예: ‘청년정책조정실’ 업무)도 해당 위원회로 이관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의 운영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위원장·위원의 자격 요건, 임기, 회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과 그 시행령을 함께 개정하여 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고, 예산 및 인력 운영 권한에 대한 근거도 대통령령에 포함해야 한다.

「청소년기본법」 등 현행 법령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주무 기관으로 지정한 조항들은 모두 청소년청년위원회 또는 그 위원장으로 명칭으로 변경한다. 예컨대 현행법은 청소년육성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 업무를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소년청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개정해야 한다. 또 「청소년기본법」 제10조(청소년정책협의회 설치 규정)도 청소년청년위원회 산하 기구로 변경한다. 계속해서,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지도사·상담사 자격관리 등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수행해오던 업무 역시 청소년청년위원회가 주관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 또한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르면 현행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청소년위원회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합할 경우 해당 조항을 ‘청소년청년위원회’로 개정하거나, 양쪽 기본법에 공통된 명칭을 부여하여 기능과 소관을 일원화해야 한다.

통합된 청소년청년위원회는 청소년(예: 9~24세)과 청년(예: 19~34세)을 포괄하는 정책 전반을 관장한다. 현행 청소년위원회는 기본방침 설정, 관련 법령의 제·개정,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유해매체물 심의 등을 심의 의결하고 있는바, 신설 위원회는 이러한 역할을 청년정책 영역까지 확대하여 주요 정책과 예산을 종합적으로 조정하도록 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청소년·청년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 법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사무 역시 신규 위원회의 핵심 역할에 들어가야 한다. 계속해서 청소년·청년 분야의 기초연구, 사업 예산 조정, 정책 협력 방안 마련 등 다수의 관련 부처가 조정 및 협력해야 하는 과제 역시 신규 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아동정책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전담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으나, 이 경우 역시 청소년·청년정책과의 연계, 조정, 협력을 위한 법제도적 협업 체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가장 우선적으로 보호 아동의 청소년기 전환, 위기 청소년 돌봄 등 아동과 청소년이 중첩되는 정책 영역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간 정보공유체계를 법제화 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법」과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보호아동·청소년 관련 정보는 청소년청년위원회와 아동정책조정위원회 간에 공유한다’는 조항을 새로 추가 삽입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는 아동정책과에서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청소년·청년정책 담당자를 포함시키거나, 반대로 청소년청년위원회에 아동 분야 전문가를 위촉하여 교차 업무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역시 고려해 볼 직하다. 아동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청소년청년위원회와의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거나, 관련 법령(예: 「아동복지법」, 「사회보장기본법」)에 청소년청년위원회와의 공동조정회의 구성 등을 강제하는 규정 역시 가능한 방안이다. 각종 조사·연구결과에 대한 공유 또는 공동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역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 방안을 적용해 보자면, 현재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광역차원의 시도 및 기초 차원의 시군구에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가 규정되어 있으며 개편안을 통해 이를 '지방청소년청년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관련 조례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이 안의 경우 역시 법제도적 정합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이슈로 제기된다. 이를 위해 「청소년복지지원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년기본법」, 「일자리기본법」 등 다양한 청소년·청년정책 관련 법률을 종합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모든 법률을 검토할 수는 없겠으나, 최소한 기존 법령 간 청소년 및 청년 개념과 연령 구분을 통일하고, 서로 다른 법률의 연령대 충돌의 방지는 필요해 보인다.

동시에 여러 위원회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도록 '컨트롤 타워' 역할에 대한 구체적 설정이 필요하다. 청소년·청년정책의 우선순위 및 책임 소재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작업이다.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조정 기구를 통합함으로써 위원회 간의 논의 사항과 정책 의제를 통합하고, 아동·고용 등을 다루고 있는 여타 위원회들과의 협력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타 부처에서 진행 중인 청소년·청년 관련 프로그램 간의 조정을 통해 부처 간의 혼선을 막을 필요가 있다.

제안된 개편안은 국무총리 산하의 장관급 위원회 신설로 권한이 통합되고, 두 부처의 기능이 이관되어 의사결정 구조가 간소화되는 체계다. 법 제도적 측면에서 「청년기본법」과 「청소년기본법」의 정책 조정 기능이 합쳐짐에 따라 정책 수립 및 집행 단계에서의 중복과 비효율이 최소화되고, 예산 집행 주체가 명확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정책 일관성이 강화되고,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광범위한 법령 정비가 이행된다는 전제하에, 관련 사안 추진이 실제화된다면 정책 기초의 연속성, 일관성, 집행 신속성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5) 제 ③-2안

③-2안은 아동과 청소년정책을 통합하고 청년정책은 별도로 유지하는 시나리오이다. 이 정부 조직 개편 측면에서 ③-2안은 과거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진행된 정부 직제개편을 통해 아동정책 담당 주체인 보건복지부가 청소년정책 담당 주체인 국가

청소년위원회를 흡수하여 ‘보건복지가족부’로 재편과 사례와 유사하다. 이는 사실상 아동과 청소년정책의 통합을 의미한 것이었다. 당시에는 청년정책의 개념이 뚜렷하지 않았으므로 인해 청년정책 주관 부서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후 2010년에 여성가족부가 재설치되면서 청소년 관련 기능이 다시 지금의 성평등가족부인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었던 경험이다. 따라서 ③-2안은 이러한 과거 사례를 현대적 맥락에서 재현하려는 방안으로 이해할 수 있다.¹¹³⁾

법령 개정의 관점에서 ③-2 방안을 살펴보자면 크게 두 가지 경로를 도출할 수 있다. 첫 번째 경로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 경로는 가칭 「아동·청소년통합지원법 또는 아동·청소년지원법」이라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하는 방법이다. 먼저, 「아동복지법」 중심의 개정 방안을 고려해 보면, 현행 「아동복지법」을 전부 개정하여 법명을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변경하고, 별도 법률인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조항을 통합·폐지하는 방향이다. 개정안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조항(예를 들어, 아동은 18세 미만 그리고 청소년은 9~25세 미만 등)을 명시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 이념을 총칙에 규정할 수 있다. 또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청소년 자립 지원 확대, 아동발달지원계좌 신설 등 아동과 청소년을 아우르는 지원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통합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 근거,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조항, 아동·청소년 옹호관(ombudsperson)과 같은 구체적인 권리 구제 수단도 함께 마련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현행 법령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지점은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기준 중복의 문제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 법률에서 새로운 ‘아동·청소년’ 개념(예: 0~24세 이하)을 도입하여 연령 단계별로 지원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¹¹⁴⁾. 다음으로 중요한 지점은 아동·청소년 전환기 대상 지원이다. 아동에서 청소년 전환기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18~19세 전후의 과도기 연령층에 대해서는 아동 지원에서 청소년 지원으로 이행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법제화하고, 복지관·학교·청소년 활동 기관 간 사례관리 체계를 강화를 도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졸업 시점(대략 18세)부터 대학

113) 정부 조직 개편의 측면에 한정하여 볼 때 2008년 사례와 유사하다는 의미이며 ③-2안의 의의와 목적 등의 제반 측면에서 2008년 사례와 유사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114) 새로운 ‘아동·청소년’ 개념 및 연령 정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자문진의 의견이 있었다. 본 연구는 현재 상황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가상의 시나리오와 이에 따른 법률적 변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따라서 본 연구에 등장하는 개념들 역시 현실이 아닌 가상의 안에 해당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진학 전(19~20세)까지의 기간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조항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법령 간 모순을 사전에 차단하는 문제 역시 중요하다. 반복적으로 등장하지만, 우선적으로 연령 및 대상이 중복되는 조항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 이 문제는 사실 모든 시나리오들에서 일차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다. 다시 한번 서술하자면, 「아동복지법」은 18세 미만을 보호 대상으로 규정하지만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의 범위를 9~24세로 설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두 법령 사이의 경계에 해당하는 연령대의 문제, 그리고 중복의 문제 등은 법률 적용 대상의 문제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아동학대나 성범죄 대응 관련 조항의 경우는 두 개의 법이 동일 사례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사례에 해당한다. 이 경우 반드시 한쪽 법에 위임 조항을 두어 중복적용이나 적용시 모순의 문제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부처 간 역할 충돌 가능성 예방을 위해서 시행령이나 부칙 수준에서 업무 분장 가이드라인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만약 실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확대된 아동·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 등의 분쟁 조정 기구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통합법 개정의 핵심은 기존 법률 간의 불일치 요소 검토와 일관된 법체계를 구축이 되어야 한다.

다음은 새로운 법률(가칭 「아동·청소년통합지원법」 또는 「아동·청소년지원법」)의 제정 경로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칭 「아동·청소년통합지원법」 아동과 청소년정책을 포괄하는 통합 법률로 기능하며 핵심 조항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정의(예: 생년월일에 따른 연령 구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통합서비스 제공 원칙,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의 수립·평가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보호 서비스, 복지·상담·자립 지원, 예방적 지원 등을 망라하는 통합 지원 체계 구축 조항과, 이를 위해 관계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범정부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기존 법률과 병행 운용하게 될 경우에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보호 중심의 서비스를, 신법은 생활 지원과 복지 수요 발굴까지를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통합지원법」 제정 시에는 핵심 소관 부처를 명시하고 업무 분장을 조정해야 한다. 신설 법률에서는 보건복지부를 시행 기관으로 지정하고, 법 제정 시 보건복지부 산하에 아동·청소년전담센터 등 전담 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 조직 개편 단계에서는 아동·청소년정책 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지원

의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임을 명시하고, 성평등가족부나 국무조정실에서 이관될 청소년 관련 업무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전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한편 청년정책은 종전과 같이 국무조정실 소관으로 유지하면서, 지자체 조직 정비와 연계하여 지방정부 인력과 기능 재구조화를 지원해야 한다. 신법에서도 아동·청소년의 연령 구분 명확화는 필요하다. 예를 들어 새 법에서는 아동을 0~17세 이하, 청소년을 18~24세로 정의하거나, 아동·청소년 구분 없이 아동기(0~12세)·청소년기(13~18세)·청년기(19~24세)로 나누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신법과 기존 법률간의 법적 모순을 예방하는 작업 역시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신법이 「청소년기본법」과 「아동복지법」 등과 동시에 존재하게 되는 경우 각 법의 적용 대상과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존 법률에는 위임 규정을 두어 동일 조항이 이중 적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정책 조정기구를 신설하거나 현행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아동·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확대하여 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아동·청소년통합지원법」 기존 법률을 유지하면서도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 근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 절차의 신속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다만 두 법이 병존할 경우 현 상태에서 연령 및 기능이 중복으로 인한 법 제도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 전면 개정에 준하는 철저한 조율과 위임 조항의 재정비가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신법 제정은 법체계의 외연을 새로 설정함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에게 통합적이고 일관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3. 소결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전달체계 개편은 단순한 행정기구의 재편을 넘는 사안이다. 이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통합적 정책 기반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가를 다루는 핵심적인 국가 차원 의제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시나리오는 각각 상이한 법제도적 접근을 담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현재의 분절된 구조—즉, 부처 간 칸막이, 연령 구간별 중복 및 누락,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기능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비효율성과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 각각의 안에 대해 요약 및 총평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안의 경우, 「정부조직법」 개정 없이도 실행이 가능하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등의 연계를 위한 조항 추가와 「사회보장기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일부 수정 정도일 것이다. 다만, 부처 간 칸막이의 잔존, 정책 혼선 또는 책임 소재 불명확성 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②-1안은 구조 개편의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전달체계의 실질적 일원화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아동기부터 청년기까지 단일부처가 연속적으로 정책을 담당함으로써 인해 정책 수립에서 집행까지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일례로 보호 종료 청소년, 청년기 자립 지원 과정 등 전환기의 정책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 다만 한 부처로의 과도한 역할 집중이 초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 및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②-2안은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독립 부처(또는 청(廳))를 신설함으로써 조직 내 기능 중복을 해소하고,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며, 전달체계를 명확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을 지닌다. 많은 연구자들은 전담 부처 신설 시나리오를 정책 통합의 이상적인 형태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독립 부처 신설은 조직 내 기능 중복 해소, 정책 간 연계 강화, 전달체계의 일원화 등에서 다른 시나리오에 비해 상대적 강점을 갖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구체적으로 「정부조직법」 개정과 기존의 관련 기본법(예: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들의 재정비 또는 통합을 법제도적 일원화가 가능하다.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이

방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부처 간 권한 조정, 예산 및 인력 재배치 등에서 고도의 정치적 타협과 행정적 준비가 필요하며, 시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③-1안은 이행기 문제의 해결에 주목하여 아동기를 별도의 정책 축으로 유지하면서 후기청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의 정책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이 방안은 연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지원, 청소년 고용 연계, 청년 주거 정책 등에서 이 정책 간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강점을 갖는다. 그러나 이 방안 역시 문제는 존재한다. 주요하게, 청소년과 청년정책의 통합 과정에서 여전히 아동기 정책과의 연결이 약화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복수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청년정책의 현실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청소년·청년정책의 통합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존재한다.

③-2안은 아동과 청소년 대상 정책을 통합함으로써 정책 대상 정의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전달체계의 구조적 연속성을 높이려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우선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간 기능 조정이 법제도 개편을 통해 진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간 연계 강화 및 부처 조직의 통합을 통해 복지 행정의 일관성을 강화될 수 있으며 보호·상담·자립지원 등 서비스 간 연계가 효율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청년정책과의 연계가 단절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게 된다.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통합은 단순한 정부 부처 기능의 재배분을 넘어 국가 생애주기 기반 정책 운영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면적인 거버넌스 혁신이어야 한다. 현 체제가 갖는 부처 간 단절, 이행기 지원의 어려움, 연령대 중복으로 인한 정책 혼선 등의 문제는 이미 현장과 학계 그리고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바, 이제 남은 작업은 아동, 청소년, 청년 등 모든 정책 수요자에게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로 귀결되고 있다.

○———— 제7장 아동·청소년·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 1. 연구결과
- 2. 정책 과제
- 3. 정책 제언

1. 연구결과

본 연구의 목적은 제1장 서론에서 밝혔듯이 AI와 로봇의 4차 산업 혁명 등 급변하는 시대와 사회환경 속에서, 아동·청소년·청년이 인간 존엄과 자아에 기초한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 아동·청소년·청년 전달체계의 다양한 통합 가능 모델을 발굴 및 제안하는 것, 즉 합목적성과 효율성, 안정성과 지속성 그리고 유연성과 개방성 등을 갖춘 지속 가능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제2장 이론적 논의를 통해 현재의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을 파악하고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 고찰하였으며, 제3장에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일반적 문제점 및 아동에서 청소년, 청소년에서 청년의 전환기 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그리고 개선의 선결 과제를 구체적으로 도출하였다. 다음 제4장에서 국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을 파악 및 분석한 후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제5장에서 아동·청소년·청년 분야의 학계 전문가 의견조사를 시행하여 현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진단한 후, 이론적으로 가능한 5가지 조정 및 통합 전달체계 방안을 장점 및 단점과 이상적, 현실적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나아가 관련 의견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주무 부처로부터 수렴하기 위한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각 안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을 취합하기 위한 전문가 워킹그룹 및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 제시된 5가지 방안이 현실화할 경우를 대비하여 각각에 대한 법률적 고찰을 시행하였다.

이상 제2장~제6장까지의 전체 내용과 그로부터 도출한 시사점을 도표로 요약해 보았

* 이 장은 성윤숙 선임연구위원이 집필하였음.

다. 표 VII-1~VII-5는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표 VII-1.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근거(2장)

		장별 주요 연구결과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도출
2장 이론적 배경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전달체계 현황 파악	- 아동·청소년 컨트를 타워인 아정위와 청정책위의 활동이 실질적이지 못하고 생산적이지 않음 - 청정책위의 경우 국무총리실이 아닌 성평등가족부 소속이고 위원장이 성평등가족부 장관임으로 다른 두 위원회와의 정합을 이루지 못하고 있음. - 청년정책 주무 부처인 국무조정실은 보건복지부나 성평등가족부와 달리 정책 시행 주체가 아닌 조정 주체임. 주거, 고용, 노동 등의 실질적 주무 부처는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음	- 아정위와 청정책위의 경우 실효성 있는 정책조정 기능 주체로의 변화 필요 - 아정위와 청정책위 그리고 청정위 세 위원회의 정합을 위한 구조조정 필요 - 청년정책의 경우 국무조정실은 조정 주무 부처이고 실질적 주무 부처, 즉 정책 시행주체는 분산되어 있음. 통일된 주무 부처의 필요성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보건복지부는 청소년(아동·청소년 정서 발달 및 심리지원 서비스 등)과 청년(자립준비청년, 청년미래센터 등) 사업을 포함하고 있음	- 연령의 통일된 분류에 따른 정책 대상 분류의 체계화에 대한 논의 필요
		-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동일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명칭이 다르고 복잡하여, 수요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음	- 수요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조정 필요
		-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우 아동은 아동권리보장원이 직접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 그리고 드림스타트를 지원함 - 청소년은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과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있음. 전자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거쳐 기초자치단체의 청소년센터로 연계되고, 후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이어져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음 - 청년은 중앙청년지원센터로부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전국 230개소의 청년센터로 직접 서비스 연계됨. 다만 아동서비스 전달체계에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전달체계가 없고, 청년서비스 전달체계가 분산되어 있음	- 아동서비스 전달체계에 아동권리보장센터 같은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전달체계 고려 필요 - 청소년 서비스 전달체계의 형식적인 틀은 중앙-광역지자체-기초자치단체로 비교적 선명하나, 아동에서 청소년으로의 이행 과정 시 연령의 중복 문제와 공급자 중심 정책 구성으로 인한 서비스 분절 현상의 해소를 위해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하고 심도 있는 논의 필요 - 청년 서비스 전달체계의 정책 영역과 내용의 방대함을 고려하며 실효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논의 필요

	장별 주요 연구결과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간과할 수 없는 영역으로 '민관협의회'를 확인함. '민관협의회'는 개별 지자체의 행정전달체계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연결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지원하는 교량과 같은 역할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관협의회'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행정 전달체계에서 서비스 전달체계로의 유기적 연계에 있어 상시적 실효성 유지 필요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문제점 및 개선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및 청소년정책의 부처 간 분산과 산발적인 추진은 정책의 분절성으로 인해 서비스 중복 및 누락을 야기함 - 지방행정조직에 의한 사업 수행 구조상 체계성, 전문성 부족 - 민간 위탁 중심의 운영으로 공공성 미흡 - 아동과 청소년,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연속성 부재, 이로 인한 정책 사각지대 발생과 서비스 형평성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및 청소년정책서비스의 중복 및 누락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처 간 분산과 산발적 추진으로 인한 정책 분절성 개선 필요 - 지방행정조직 사업 수행 구조의 체계성, 전문성 개선 필요 - 서비스 효율성 저하의 원인인 총괄 중심축 없는 분야별 병렬적 구조의 개선 필요 - 민간 위탁 중심 운영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공성 미흡의 문제 해소 필요 - 아동과 청소년,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사각지대 발생과 서비스 형평성 문제 등의 원인인 전달체계 연속성 부재의 문제 해소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요자 관점에서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분절적이고 일관성이 없는 전달체계의 개선에 대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살펴봄. 특히, 통합정책 실현을 위한 전달체계의 전반적 체질 변화를 위해, 새로운 역할과 기능의 변화 및 조정 방안을 모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과 시도 및 시군구, 읍면동 전달체계의 전반적인 체질 변화를 통한 새로운 역할과 기능의 변화 및 조정 방안 모색을 통해 수요자 관점에서의 통합서비스 제공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로 위기 청년에 대한 지원 및 보호 정책과 관련, 다양한 위기 상황 또는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체계 구축이 쟁점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 청년의 안정적 지속적 자립 지원을 위한 통합체계 구축 필요
청년정책 전달체계 문제 및 개선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의 핵심으로 여겨지는 취약 청년 대상 지원 정책은 보호 및 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에 비해 지역사회 지원체계가 부족하고 제한적임 - 정책과 지원사업 등에 대한 공식적인 온라인정보 획득 경로 역시 소관 부처별로 다원화되어 대상별·분야별 분절적 운영의 문제점 발생 - 보호 대상 아동·청소년과 시설 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정책 추진 방안 필요 - 부처별 다원화로 발생하는 대상별·분야 별 분절적 운영의 문제 해소를 위해, 정책과 지원사업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온·오프라인 경로의 개선이 필요하고, 정보시스템의 부처별 운영이 초래하는 문제 해소 필요. 즉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장별 주요 연구결과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도출
		<p>청년에 관한 정보와 이력 관리 정보시스템의 부처별 운영으로 대상자 발굴 및 생애주기에 따른 지원이 어려움</p> <p>- 중앙부처별 청년정책 추진에 대한 적절성 검토 필요</p>	<p>위한 통합정책에서의 정보공유 필요</p> <p>- 중앙부처별 청년정책 추진에 대한 적절성 검토와 함께 생애 전반기 정책 관장 행정부처 설치 검토 필요</p>
<p>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통합 개선 필요성</p>	<p>서비스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한 통합</p>	<p>- 예산 및 조직 축소로의 아동·청소년정책 부처 일원화 지양</p> <p>- 서비스 중복 문제보다 서비스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한 개선 필요</p>	<p>- 효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기계적 아동·청소년정책 부처 일원화 지양</p> <p>- 아동·청소년 서비스 중복만이 아니라 서비스 확대와 질적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의 통합 필요</p>
	<p>단계적 통합</p>	<p>- 외부 압력이 아닌, 단계적 발전 과정을 거친 통합과 다년간 시범 사업을 통한 체계화 필요</p>	<p>- 단계적 체계적인 통합 고려 필요</p>
	<p>대상 및 서비스 중심의 통합</p>	<p>- 아동·청소년정책대상과 서비스 기능 중심의 전달체계 통합을 위한 세가지 모델 제시: 첫째, 일원화 전달체계, 둘째, 기능별 이원화 전달체계, 셋째, 기능별 부분 이원화 전달체계</p> <p>- 아동·청소년·청년의 보호 및 자립정책 전달 기관과 전달 요원을 통한 지역단위 전달체계 일원화</p>	<p>- 아동·청소년정책 대상과 서비스 기능 중심의 다양한 모델 분석 및 고려 필요: 첫째, 일원화 전달체계-중앙과 시도, 시군구 단위에서 아동·청소년 대상과 동·복지서비스 기능의 완전한 통합, 둘째, 기능별 이원화 전달체계-아동·청소년 대상은 일원화하고 활동과 복지서비스는 이원화, 셋째, 기능별 부분 이원화 전달체계-중앙 및 시도 단위는 아동·청소년의 활동과 복지서비스를 이원화하고, 시군구 단위는 일원화</p>
		<p>- 아동·청소년·청년 보호 및 자립 지원 중앙부처 일원화 및 보편적 서비스 제공</p> <p>- 지자체 청년정책 부서의 조직과 권한 확대로 자립 준비 청년의 총괄 지원</p>	<p>- 지역단위 전달체계 일원화 논의 필요</p> <p>- 생애주기적 관점의 중앙부처 일원화 및 보편적 서비스 제공 가능성에 대한 논의 필요</p> <p>- 지자체 단위에서의 정책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 대상 중심의 전달체계 개편 논의 필요</p>
	<p>대상자 정보 통합</p>	<p>- 새로운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아동·청소년·청년 보호·지원 대상자의 분산된 정보 관리 필요</p>	<p>- 아동·청소년·청년 보호·지원 대상자의 분산된 정보 관리를 위한 새로운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필요</p>
<p>전달체계 조정 (부처 및</p>	<p>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p>	<p>- 아동·청소년의 교육, 복지, 문화, 근로 등 중앙 및 지방정부 행정·집행 체계,</p>	<p>- 중앙 및 지방정부 행정·집행 체계, 공공·민간 체계의 협력 및 공조 체계 강화 등 능동적 네트워크</p>

		장별 주요 연구결과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도출
서비스 간 연계· 협력)		<p>공공-민간체계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 거점기관 설치로 협력 및 공조 체계 강화 등 능동적 네트워크 구축 	구축을 위한 논의 필요
	대상자 정보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법에 따라 아동·청소년·청년 보호·지원 대상자 정보를 독립적으로 관리·운영하는 현행 시스템 유지 및 부처 및 기관별 보유 정보의 연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시스템을 유지할 경우 부처 및 기관별 보유 정보의 연계 강화를 위한 방안 등에 대한 논의 필요
	전달체계 통합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정책 부처 일원화 및 관계 부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협력, 다기관 간 네트워크를 포함하는 전달체계 개선 - 중앙-시도-시군구 아동·청소년정책 주무 부처 및 부서는 일원화, 지역단위 전달체계는 연계·협력 강화, 또는 시군구 단위 전달체계는 유지 및 전환하여 재조정하거나, 부처는 통합하되, 기존 전달체계는 유지하며 상호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정책 부처 일원화와 그에 따른 전달체계 개선 가능성에 대한 다양한 제언에 대한 평가 및 논의 필요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선결 과제	법적 연령 중복 문제 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연령의 중복 - 중첩되지 않는 연령 분리 - 민법상 미성년 연령 조정, 법적 연령과 개념 일원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적 연령의 중복과 유사 중복 서비스 문제에 대해 명확한 분석에 기초한 해결점 모색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합 정책 추진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 - 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관계 법률 및 하위법령 정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통합정책에 따른 법령 정비 필요성 파악
	예산 확보	<p>국가의 책무성 및 정책의 공공성 강화, 질 높은 맞춤형 통합서비스, 서비스 질 제고, 보편적 서비스 체계 구축, 서비스 대상 확대를 위해 예산 확보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책무성 및 정책의 공공성 강화 등 다양한 이유로 예산 확보 필요

표 Ⅶ-2.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근거(3장)

		장별 주요 연구결과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도출
3장 아동· 청소년· 청년 정책 전달 체계 문제점	아동에서 청소년 전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정 연령 기준의 겹침과 제도적 분리 - 이행기에 대한 공동의 행정적 조정이나 협력적 정책 수행 메커니즘 필요 - 17세~18세의 대상자 지원 단절 현상 초래. 18세에 아동복지에서 청소년복지로의 연계 시 행정절차 미비, 예산 편성 주기, 사업 승인 과정 시 시차 발생으로 약 6개월~1년의 '정책 공백' 상존 -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의 서비스 성격과 방식 차이로 서비스 간 연계 및 지원의 연속성 문제(이용자의 정보 이관 및 관리 문제, 데이터 누락과 손실 가능성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행기에 공동의 행정적 조정이나 협력적 정책 수행 메커니즘 마련 필요 - 아동복지 서비스에서 청소년복지 사업으로의 연계 절차 개선 필요 - 이행기 서비스 간 연계 또는 연속적 지원 보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운영 주체의 이원화 - 아동 및 청소년 보호시설 운영 주체의 법령과 소관 부처에 따른 이원화로 서비스 연속성의 문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및 청소년 서비스 연속성 문제 해소를 위해 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 단일화나 공통 프로토콜 및 정보 관리 체계 구축 등 심층적이고 연속적인 사례관리 방안 강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성과 평가의 분절성 - 예산 편성 및 집행의 기준과 성과 관리 체계의 분리 운영으로 사업의 이중 집행과 비효율적 자원 활용 및 정책 성과 평가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예산과 청소년 예산의 단순 통합이 아닌, 아동·청소년정책의 생애 주기적 접근에 따른 합리적 예산 체계와 성과 관리 시스템의 재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별·사업별 파편화 - 복지서비스의 실효성 저해 - 기관 간 형식적 일회성 소통과 연계로 중복지원이나 지원 ○ 사례관리의 비효율성 - 사례관리의 비효율성으로 행정비용 증가 - 개인 맞춤형, 장기적 지원의 어려움으로 서비스 효과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 간 소통과 연계 활성화 사례관리의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별 통합 DB 부재 - 여러 부처의 다양한 정보시스템이 연계 및 통합되지 못하고 부처별, 사업별로 분산 관리되어 정책 실효성 저해 - 통합 DB의 부재로 국가 차원의 정확한 현황 파악과 통계 어려움 - 서비스 대상의 종합적, 연속적 실태 파악이 어려워 통합적 정책 및 서비스 설계에 문제, 서비스 누락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간 협력과 지역 내 서비스 통합을 위한 명확한 법적 제도적 근거와 통합된 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 개인정보 보호 등 법적 윤리적 문제에서 자유로운 정보 관리 시스템 필요
	지역별·주체별 역할 중복 및 사각지대		
	정보 시스템과 통계 관리의 불일치		

		장별 주요 연구결과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도출
	전문인력 양성과 거버넌스 부재	○ 예방적 개입 타이밍 상실 - 고위험 대상자 조기 발견과 예측의 어려움, 선제적, 예방적 개입의 문제	
		○ 분리된 자격·교육 체계 - 전문가 분리 양성 체계는 전문성의 장점이 있으나 전환기의 통합적·연속적 서비스 제공에 문제점이 있음 ○ 거버넌스 메커니즘 미비 - 전문 인력의 체계적 교류, 연계, 협력·협업을 위한 제도적 기반 부족	- 전문가 양성 체계에 있어 통합적 관점 고려 필요 - 복합적 취약 상황의 서비스 수요자를 위해 다양한 전문 분야(교육, 복지, 상담 등)가 연계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필요
청소년에서 청년 전환기	청소년과 청년정책 경계의 불확실성	- 19~24세 초기 청년층은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 간 역할과 책임이 모호함 - 개별적 지원 서비스를 받을 때 정책적 공백(zone of no policy) 경험 - 정책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효과성 저하	- 초기 청년층(19~24세)을 위한 통합적 정책 지원 전담 조직 설치 또는 청소년·청년정책 관할 부처 간 상시 협력체계의 법적 제도화 필요 - 통합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장기적 연속적 성과 평가 체계 필요
		○ 책임 주체 모호 - 부처 간 명확한 역할 분담과 협력체계 부재로 정책 회피·중복 발생 - 행정적 혼란 초래 - 정책 대상자의 실질적 혜택 접근성 저하 - 예산 책정과 집행 단계의 혼선, 비효율성 - 현장 실무자들의 업무 부담, 혼란 가중	- 예산 집행과 정책 평가를 공동 수행하는 다부처 협의체의 법적 구성 필요 -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행정 시스템 구축 필요 - 후기청소년 연령층(19~24세)의 법령 중첩 해소를 위해, 특별법 또는 세부 시행령 마련으로 명확한 정책 지원 절차와 기준의 법적 확립 필요 - 후기청소년 지원 부처(성평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간 명확한 협력체계의 제도화 필요
		○ 보호종료 아동의 청년 지원 미연계 - 25세 이상 자립준비청년의 급격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 단절 - 취약성과 빈곤 위험 증가 - 지원 연계 부족, 자립준비청년은 25세 이후, 청년정책의 지원대상 조건(소득, 학력 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정책적 사각지대에 방치	-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 제도의 연령 제한과 기간, 지원 기준과 우선 배정 시스템 등 지원 조건의 현실적 재설정 및 청년 대상 지원 체계와의 명확한 연결고리 구축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장별 주요 연구결과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정밖청소년 지원 공백 - 청소년쉼터 퇴소 이후 주거 지원의 부족 - 범죄, 폭력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노출 	- 주거, 소득, 정서 안정의 동시 지원을 위한 통합적 자립 지원 프로그램 구축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전달체계와 청년 전달체계 간 예산 및 인력 격차 	- 발달단계 및 전환기 특성을 반영하는 포괄적 지원 설계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지방 플랫폼의 중복 경쟁 - 중앙과 지방의 정책서비스 중첩, 행정 자원 분산 및 실효성 저하 - 정보 과부하 등으로 이용 포기 등 '경로 피로' 현상 초래 	-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로 개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별 데이터 사일로 현상, 특히 고용(일자리)과 자립 지원 분야 정책 관련 데이터와 정보의 기관과 부처, 정책별 분산 관리로 타 기관, 부처와의 공유와 연계 부족으로 통합적 정책 추진과 서비스 연계가 어려운 데이터 사일로 현상으로, '경로 피로' 현상 초래 	- 연계·협력 및 통합의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재편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취업지원제도와 고용보험제도의 비호환성으로 고용·자립을 위한 연속적, 통합적 서비스 제한 	- 연계·협력 및 통합의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재편 필요	

표 VII-3.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근거(4장)

	장별 주요 연구결과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도출
4장 아동 청소년 청년 정책 전달 체계 해외 사례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지원법」이 아동, 청소년, 청년, 젊은이라는 개념으로 연령을 명확히 정의하여 구분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에서의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 중복문제 해소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의 「아동·청소년지원법」은 우리의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청년기본법」이 하나로 통합된 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미 100여 년 전 하나의 통합된 법으로 출발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 1961년 「아동복지법」, 1987년 「청소년육성법」 제정으로 처음부터 별개의 법임. 통합법으로의 전환은 신중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교육·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 주무 부처임 - 지방정부의 전달체계는 청소년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정부의 실질적 공적 아동·청소년정책 업무를 수행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방교육·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는 아동·청소년정책의 통합 주무 부처로 기능함. 이는 100여 년 전부터 하나의 통합된 법 하에 청소년청에서 시행해왔기 때문임. 반면 한국은 서로 다른 법에 기초하여 분리 수행되어 왔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사례를 한국에도 적용 가능할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책은 연방 노동사회부와 연방 교육연구부가 주도함. 이원적 직업교육 시스템과 같은 청년고용 정책을 주도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책의 이원성은 청년정책의 주무 부처를 일원화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여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청소년 그리고 청년정책이 추구해야 할 공통의 정책목표를 저출산 고령화 극복으로 설정하고, 아동, 청소년 그리고 청년정책의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청소년 그리고 청년정책이 추구해야 할 공통의 정책목표를 저출산에 두는 것은 타당하나, 단순한 출산률에 국한하기보다 개개인의 행복 추구하고 자아실현의 원칙이 전제되어야 할 것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3년 4월에 시행된 「아동기본법」을 바탕으로 아동가정청이 설치되어 아동정책의 전달체계가 통합되었고, 2025년 청소년국제교류활동 등을 제외한 청소년 사업이 내각부로부터 모두 이관됨. 따라서 아동가정청이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주무 부처임. 구체적으로 내각부,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등이 소관하던 업무, 즉 아동복지, 모자보건, 교육 그리고 저출산 대책, 아동, 청소년·청년 육성 등을 총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과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통합 주무 부처가 있다는 사실로부터, 그러한 통합이 우리에게도 가능할지 고려해 볼 필요 있음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정책 대상의 발달적 특성의 연속성을 반영하여 아동가정청이 작성한 「아동미래전략 로드맵」을 따른 경제성장과 저출산대책을 통해 청년 및 육아세대의 소득증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함. 이 로드맵은 임신, 출산, 취학 전 단계, 초등학교 단계, 중·고등학교단계, 대학 입학별로 생애주기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의 로드맵은 임신, 출산, 취학 전 단계, 초등학교 단계, 중·고등학교단계, 대학 입학별로 생애주기별 특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음. 우리도 각 정책 대상의 발달적 특성의 연속성을 반영한 정책 수행 로드맵을 수립, 시행할 필요가 있음

	장별 주요 연구결과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책 주무 부처는 내각부이고 종합적으로 청년정책을 관장함. 그 외 각 현장 부처인 후생노동성(고용·복지 중심), 문부과학성(교육), 소비자청, 농림수산성 등 여러 부처와 협력하며 정책을 추진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주무 부처와 청년정책 주무 부처가 분리되어 있음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가 주무 부처로 관련부처와 협업함. 영유아보육과 교육을 담당하고, 일반아동, 가정 외 보호아동, 일반청소년은 내각부에서 담당함. 특이점은 학교밖청소년은 문화, 미디어 및 스포츠부에서 담당함 - 일반청년의 경우는 고용 및 연금부(DWP),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취약 청년정책은 문화, 미디어 및 스포츠부(DCMS), 시민사회부에서 담당함. 내각부는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부처를 조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는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부처를 조정함. 영국은 아동·청소년은 교육부가 중심이고 청년은 다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체계임. 최근에는 다양한 부처와 시민 사회가 협력하는 형태로 대상이 아닌 기능 중심임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가 담당하는 교육을 제외한 아동·청소년 전달체계의 통합 주무 부처는 보건복지부이고 산하의 '아동가족관리청'이 실질적 주무 부처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도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가 하나의 주무 부처로 통합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책의 중심 부처는 보건복지부라고 할 수 있으며 청년 건강, 복지, 정신건강, 가족 등 정책을 총괄하고 있음. 그 외 교육(교육부), 고용(노동부), 주거(주택도시개발부) 등이 있음. 따라서 하나가 아니라 분산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은 주무 부처가 분산되어 있음
EU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수의 OECD 국가는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가 하나의 주무 부처로 통합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은 주무 부처가 분산되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분절화된 전달체계와 소통 부족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총괄·조정 기능(컨트롤 타워) 부재 - 부처 간 소통·협력 부족 - 지자체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혼재·혼란 - 전달체계의 분절로 인한 정책의 효율성 저하(행정, 인력, 예산 등) - 정보 및 데이터 공유·연계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달체계 통합 혹은 조정을 위한 기반 마련 - 생애주기를 고려한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통합된 방향 정립 - 아동·청소년·청년 법체계 정비 및 정책 범주 재정립 - 전달체계 주체별(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역할 재정비 - 관련 전달체계 간 연계·협력 강화(중앙-지방, 공공-민간 등) - 청년정책 주무 부처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대상) 중복 및 단절 - 법령상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의 중복으로 인한 정책대상 중복 - 정책의 유사·중복 및 누락(사각지대) -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단절 및 서비스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중복 정책에 대한 조정 - 부처, 지자체 등에 분산된 정보 및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예산 및 이해관계자 요구 반영 불충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예산 확보 - 이해관계자(현장 실무자, 정책 수요자 등) 의견수렴을 통한 현장의 요구 반영

표 VII-4.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근거(5장)

		장별 주요 연구결과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도출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주요 결과	1안 현행 유지 연계 보완	<p>장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달체계의 변화로 인한 부처 간 갈등 및 혼선 최소화 - 부처 통폐합으로 소요되는 행정비용·시간 절약 - 전달체계 개편을 최소화함으로써 현 정책의 안정성, 지속성 확보 <p>단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단절 및 서비스 중단 - 부처별 규모 및 예산의 차이로 인한 정책 편향 및 소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대로 보건복지부(아동), 성평등가족부(청소년), 국무조정실(청년)이 중심이 되어 각각의 전달체계는 유지하되,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단절 및 서비스 중단 문제와 부처별 규모 및 예산의 차이로 인한 정책 편향 및 소외 문제의 해소 방안 강구 필요
		2-1안 현 주무 부처 중 하나로 통합	<p>장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 -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상호 연계 강화 - 수요자 중심 통합지원서비스 가능 <p>단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정책의 규모와 부처별 분산을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실질적 통합이 어려움 -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범주와 특성이 달라서 어느 부처로 통합하든지 조직 내 칸막이 우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중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실질적 통합에 장애가 되는 청년정책의 부처별 분산된 현 체계와 규모의 문제 해소 방안 강구 필요 - 통합시,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범주와 특성 차이에서 오는 조직 내 칸막 발생 가능성의 문제 해소 방안 강구 필요
5장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안 평가		2-2안 새 주무 부처 신설	<p>장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위상 및 관심 제고 -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통합된 방향 정립 -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 <p>단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 신설에 대한 이해관계자(현장 실무자, 정책 수요자 등)의 반발 - 새 부처의 조직 설계에 대한 어려움(정책 범주 및 기능 조정 등) - 새 부처의 소관 업무를 둘러싼 유관 부처와의 조정 어려움

		장별 주요 연구결과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도출
	3-1안 청소년 통합	<p>장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청년 통합부처에서 유관 부처의 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용이 - 아동의 보호, 복지정책 등의 전문성은 유지하되, 청소년·청년의 진로, 자립정책 등의 연속성 강화 <p>단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상이한 전달체계, 부처 간 이해관계와 우선순위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 - 청소년과 청년의 이질적인 법제도로 인한 통합(종합) 정책의 어려움 -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관점 및 영역의 차이로 인한 정책 편향 및 소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통합하되(청소년·청년정책),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상이한 전달체계, 부처 간 이해관계와 우선순위 차이, 나아가 청소년과 청년의 이질적인 법·제도는 물론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관점 및 영역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정책 편향, 소외 등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 강구 필요
	3-2안 아동· 청소년 통합	<p>장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 청소년과 다른 청년의 발달적 특성 및 사회적 요구(주거, 일자리, 소득·자산 등)를 고려한 청년정책의 전문성 및 특성화 유지 - 생애 전반기 아동,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종합)적·연속적인 정책 지원 <p>단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별 분산된 청년정책의 현 체계로는 아동·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고(아동·청소년정책),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부처별로 분산된 청년정책의 현 체계를 아동·청소년정책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안 강구 필요

표 VII-5.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통합 전달체계 구축 법률 정비(6장)

	장별 주요 연구결과	정책적 시사점 및 과제 도출
6장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조정·통합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고려사항	법령들을 비교하면, 아동복지법 등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마찬가지로 “아동”을 18세 미만으로, 영유아보육법과 아동수당법은 7세 이하로 규정함.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청소년 보호법은 19세 미만으로 규정함. 그리고 청년기본법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청년”으로 규정함	정책 대상 설정이나 정책 적용에서의 혼란, 혼선 및 중복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생애 주기적 정책 연계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연령의 명확한 경계 설정이나 정책 목적에 따른 연령 구분 기준의 확립이 요구됨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에서 각기 설정한 아동·청소년·청년을 위한 정책영역을 비교함	아동과 청소년 관련 정책 영역을 생애주기적 연계성 측면에서 <권리>, <발달>, <보호>의 관점에서 비교하고,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영역을 포괄적인 차원에서 교육, 복지, 고용의 세 영역으로 구분한 후, 이중 복지를 보호 복지 셋과 문화 복지 셋의 여섯 영역으로 체계화할 것을 제안함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조정·통합 전달체계 구축 법률 정비	제 ①안은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년기본법」 등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각각의 핵심 법률에 상호 연계 협력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정책 연속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동시에 「사회보장기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보완 수정을 행정 차원의 협력을 위한 법률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제 ②-1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에 ‘청소년육성’ 및 ‘청년 지원’ 등 신설 업무를 명시하고, 성평등가족부 사무 담당 조항에서는 청소년 관련 사무를 법률상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므로, 「정부조직법」 제38조(보건복지부와 제42조(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제 ②-2안은 「정부조직법」에 신설 부처의 설치와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작업이 필요함	
	제 ③-1안은 국무총리 산하에 ‘청소년청년위원회’ 등의 통합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과, 성평등가족부 내에 ‘청소년청년통합본부’ 등을 만들어 기존 청소년국과 청년정책조정관실을 통합하는 방안에 따라 각기 「정부조직법」 개정이 요구됨	
	제 ③-2안은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거나, 가칭 「아동·청소년통합지원법 또는 아동·청소년지원법」이라는 새로운 법률 제정이 요구됨	

2. 정책 과제

〈장별 주요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청년 통합 전달체계 구축’의 연구 목적에 부합할 정책과제를 정리했다. 그 결과 8개 정책 과제 분야 28개 정책과제(총괄조정위 관련 정책과제 2개, 주무 부처 관련 정책과제 2개, 주무 부처통합 관련 정책과제 1개, 법 관련 정책과제 4개, 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정책과제 13개, 정보 통합 관련 3개, 예산 관련 2개, 전문 인력 양성 관련 정책과제 1개)가 도출되었다. 표 VII-6은 〈정책적 시사점〉으로부터 도출된 정책과제를 정리한 것이다.

표 VII-6.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과제

정책 과제 분야	정책과제		
1) 총괄 조정위원회	1.1) 아동정책조정위원회와 청소년정책위원회 실질적 정책 조정 기능 주체로의 전환 1.2) 전달체계 세 위원회의 정합을 위한 구조조정		
2) 주무 부처	2.1) 주무 부처의 효율적 통합 및 일원화된 행정 시스템 구축 2.2)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범주 재정립		
3) 주무 부처 통합 및 개선	3) 주무 부처 통합 및 개선	1안 현행 유지 연계 보완	- 보건복지부(아동), 성평등가족부(청소년), 국무조정실(청년) 각각의 전달체계 유지 및 유기적 연계 문제 해소
		2-1안 현 주무 부처 중 하나로 통합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중 하나로 통합을 위한 체계 개편
		2-2안 새 주무 부처 신설	- 새로운 주무 부처의 신설을 통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통합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가장 이상적인 안>
		3-1안 청소년·청년 통합	- 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고, 아동 분리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가장 실현 가능한 안>
		3-2안 아동·청소년 통합	- 아동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고, 청년정책 분리
4) 법	4.1) 아동, 청소년, 청년 법체계 정비를 통한 실효성 있는 법적 연령 구분 4.2) 주무 부처 통합 및 개선에 따른 법령 정비 4.3) 부처 간, 지역 내 서비스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4.4) 정보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		

정책 과제 분야	정책과제	
5) 서비스 전달체계	5.1) 유사·중복·누락 정책에 대한 조정 5.2) 전체성에 입각한 실효적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5.3) 전달체계의 생애주기 연속성 확보 5.4) 정보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NWD 구현 5.5) 지방행정조직 사업 수행 구조의 체계성, 전문성 개선 5.6) 민간 위탁 중심 운영의 공공성 미흡 문제 해소 5.7) 취약(위기) 상황 아동, 청소년, 청년의 포괄적 파악 및 안정적 지속적 지원을 위한 통합체계 구축	
	중앙→광역→시군구	5.8) 전달체계 역할 재정비 및 연계·협력 강화(중앙-지방, 공공-민간 등) 5.9) 공공-민간 전달체계 협력 및 공조 네트워크 구축 5.10) '민관협업체'의 역할 정립
	전환기	5.11) 아동에서 청소년 전환기 정책 수행 메커니즘 연계 개선 5.12) 청소년에서 청년 전환기 정책 수행 메커니즘 연계 개선 5.13) 자립 준비 청년 대상 지원 제도의 현실적 재설계
6) 정보 통합	6.1) 정보 및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부처 및 기관별 보유 정보의 연계 강화 6.2) 아동·청소년·청년 보호·지원 대상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6.3) 전국 지자체 전달체계 성과지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7) 예산	7.1)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예산 확보 7.2) 예산 집행과 정책 평가를 위한 다부처 협의체의 법적 구성	
8) 전문 인력 양성	8) 실효적 통합적 전문가 양성 체계 구축	

3. 정책 제언

28개 정책과제의 중심은 정책과제 3) ‘주무 부처통합’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 및 통합 전달체계 구축’의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구축된 전달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 구현을 위해서 준수되어야 할 12원칙이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 및 통합 전달체계의 기초가 되어야 할 12원칙을 먼저 정립 및 제시하고자 한다.

1)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 및 통합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12원칙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 및 통합 전달체계가 추구하는 종국적 지향점은 아동·청소년·청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를 통해, 국가 구성원 누구나 능력과 인성을 겸비한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여, 개인의 행복 추구는 물론 국가성장 동력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양성하

는 일이다. 바로 그런 이유로 정부는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보호법」 그리고 「청년기본법」에 따라 아동정책 기본계획,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세우고, 컨트롤 타워인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청소년정책위원회 및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그리고 국무조정실은 물론 지자체와 시군구 그리고 민관협력체를 통해 행복한 인재 양성을 위해 힘써왔다. 다만 아동·청소년·청년을 거치며 성장하는 개인의 잠재력을 현실로 구현해 주기 위해선 마치 계주 달리기에서 baton을 넘겨주고 넘겨받듯, 정책 대상의 생애주기에서 각자가 담당할 구간의 역할을 완결하고, 다음 구간으로 넘겨줄 수 있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실제 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이 필연인 이유이다. 마치 스포츠 경기 시작 전 함께 모여 작전을 세우고 각자의 역할을 숙지하며, 실제 자신의 역할을 성공리에 마치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과 같다. 하나의 서비스 실현에는 첫째, 서비스 공급자, 둘째, 서비스 자체 그리고 제일 중요한 셋째, 서비스 수요자가 있다.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 및 통합 전달체계의 토대가 되는 원칙 역시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서비스 공급 주체에 적용되어야 할 원칙은 ‘전문성과 책임성’ 두 가지이다.

- ① 서비스 제공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전문 역량이다.
- ② 서비스와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분명한 책임 의식이다.

둘째, 서비스 자체에 적용되어야 할 원칙은 ‘접근용이성, 평등성, 적절성, 전체성, 지속성, 통합성, 유연성’의 일곱 가지이다.

③ 접근용이성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통합 플랫폼 구축으로 서비스 접근이 편하고 쉬운 편의성의 원칙이다.

④ 평등성은 정책서비스에 있어 성별, 소득 등 어떤 조건도 차별이나 선별의 원인이 될 수 없는 보편과 공정의 원칙이다.

⑤ 적절성은 특정 사안에 정확히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적합성의 원칙이다.

⑥ 유연성은 특정 사안에 대하여 개인이 처한 환경의 차이에 대응하는 원칙이다. 동일한 사안이라도 개인이 처한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책서비스는 그러한 차이 역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⑦ 지속성은 서비스의 일회성이 아닌 연속성의 원칙이다.

⑧ 통합성은 전달체계 상 다양한 서비스 간의 상호 유기적 연계성 및 정합성의 원칙이다.

⑨ 전체성은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셋째, 정책 대상인 서비스 수요자의 차원에서 적용해야 할 원칙은 ‘개별성과 완결성, 그리고 포괄성’의 세 가지 원칙이다.

⑩ 개별성은 개인이 지니는 고유성과 차이를 발견하여 그 존재만의 정책서비스 플랜을 세우고, 또 그대로 제공해 주는 차별 또는 분별의 원칙이다. 다른 존재와 구별되는, 각자가 지니는 고유성의 차이를 인정하고 그에 부합하게 정책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⑪ 완결성은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실질적 변화가 일어나야 서비스가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실효성의 원칙이다. 핵심은 정책 공급, 내지 서비스 제공 주체가 아니라 정책 대상 또는 서비스 수혜자가 만족할 때까지 정책 공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아동→청소년→청년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존엄성과 고유성의 개별성을 지닌 인격적 주체로 대우받았고, 받고 있는지, 그래서 일반 상황이든 취약 상황이든 언제나 정부나 지자체 시군구, 관련 기관이 제공하는 정책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는지?’ 이 질문에 대한 답변 주체는 정책 제공자가 아닌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수요자다.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는, 정책 수요자 하나하나가 만족하는 지점을 종국적 목표로 설정하고, 그러한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전달체계를 설계하고 실제 구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⑫ 포괄성은 정책서비스에서 누구도 배제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일반적 상황만이 아니라 취약 상황에 놓인 모든 아동·청소년·청년도 포괄하는 정책서비스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상 제시한 12가지 원칙이 준수될 때, 아동·청소년·청년 통합 전달체계는 비로소 실효적, 실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2가지 원칙을 그림으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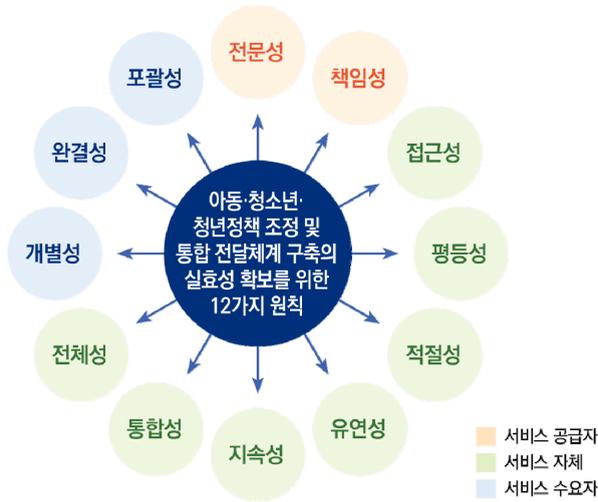


그림 Ⅶ-1.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 및 통합 전달체계 구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12가지 원칙

이상 12원칙을 토대로, 본 연구는 28개 정책과제 중 선별하여 최종 4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4개의 통합 정책제언 및 5개의 세부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최우선의 정책과제는 ‘주무 부처 통합 및 개선’이다. 이 과제는 기본적으로 12원칙을 모두 포괄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특히 ‘전문성, 적절성, 지속성, 통합성, 전체성, 완결성’이 중요하다. 둘째 과제 ‘NWD 구현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합 정보시스템’이다. 무엇보다 NWD의 실질적 구현을 위해 우선되는 원칙은 ‘접근성, 평등성, 유연성, 개별성, 완결성’이다. 셋째 정책과제는 ‘전체성과 연속성에 입각한 실효적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다. 이 과제의 근본 선택 이유는 12원칙 중 물론 ‘전체성의 원칙’이나, 관련하여 ‘평등성, 유연성, 완결성, 지속성’의 원칙 역시 내적으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정책대상에게 필요한 가능한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과제는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정책 대상의 포괄성에 입각한 지원’이다. 누구도 정책서비스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비배제성에 입각한 것으로 ‘접근성, 평등성, 완결성’의 원칙과 함께 한다. 다음은 도출한 정책과제와 그에 대한 정책제언이다.

표 VII-7.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주요 정책 과제

	정책과제	정책 제언
1	3) 주무 부처 통합 및 개선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주무 부처 통합 및 개선
2	5.4) 정보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NWD 구현 6.1) 정보 및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부처 및 기관별 보유 정보의 연계 강화 6.2) 아동·청소년·청년 보호·지원 대상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6.3) 전국 지자체 전달체계 성과지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아동·청소년·청년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 AI 기반 생애주기 맞춤형 통합 정책 플랫폼 구축 - 전달체계 성과지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3	5.2) 전체성에 입각한 실효적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5.3) 전달체계의 생애주기 연속성 확보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서비스 및 정책 범주의 전체성 확보 - 수요자 참여형 정책 설계 시스템 도입 - 전환기 연계 매니저(Transition Manager) 제도 도입 - 민간 스타트업·사회적 기업과의 전달체계 협력 모델 도입
4	5.8) 취약(위기) 상황 아동·청소년, 청년의 포괄적 파악 및 안정적 지속적 지원을 위한 통합체계 구축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정책 대상의 포괄성 확보

실질적으로 구현할, 안정적, 실효적, 미래지향적 정책 전달체계는 하나의 과일나무에 비유할 수 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 및 통합 전달체계 구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는 3) ‘주무 부처 통합 및 개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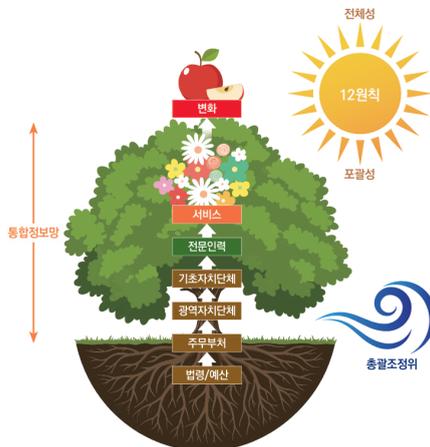


그림 VII-2.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정책과제 3) '주무부처 통합 및 개선'은 '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뿌리'가 나무의 줄기와 가지, 꽃과 열매까지 결정하듯, 주무 부처의 효율적 조정 및 통합이 이루어져 일원화된 행정 시스템이 구축되면(정책과제 2.1), 그에 부합하는 법령 조정을 통해(정책과제 4.1~4.4) 정책 범주가 정립되며(정책과제 2.2), 예산이 책정된다(정책과제 7.1, 7.2). 동시에 총괄조정위가 설립된다(정책과제 1.1, 1.2). 나무의 성장에 필요한 토양과 바람처럼, '법령과 예산'은 전달체계 나무에 양분을 주고, '총괄조정위원회'는 늘 바람처럼 불며 전달체계가 바르게 자라도록 지원한다. 이들은 생산적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해 필요한 기반 시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적합한 환경 인프라를 바탕으로 주무 부처에선 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가 확립되고(정책과제 5.1~5.7), 줄기와 가지로 자라며 이어진다. 전달체계는 중앙에서 광역자치단체를 거쳐 기초자치단체로 이어진다(정책과제 5.8~5.10). 그러면, 전달체계 나무 전체에 무성한 나뭇잎이 자란다. 전문 인력이 양성되어 필요한 모든 위치에 배치된다(정책과제 8). 잎이 나무에 에너지를 제공하고 꽃이 피도록 도와주는 것처럼, 배치된 인력은 모두 자신의 위치에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므로, 전달체계 전체에 건강한 작동을 위한 에너지를 공급한다. 결국 꽃이 핀다. 시군구의 실무담당자들이 현장의 수요자에게 정책서비스를 전달한다. 전달되는 수많은 서비스는 꽃과 같다. 좋은 나무는 잎이 무성하고 꽃도 만발한다. 꽃이 나무 전체에 피면 좋다. 것처럼 모든 가능한 서비스 전체가 전달체계 곳곳에서 제공되어야 한다. 하지만 열매를 맺기 위해 꽃은 죽어야 한다. 정책 전달체계라는 과일나무의 중국적 목적은 '서비스 제공'이 아니다. '서비스 수요자의 실질적 변화'다. 정책서비스 수요자에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생산적 변화가 열매다. 그러려면 꽃은 중심에서 사라져야 한다. 본질은, '어떤 정책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느냐'가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가 얼마나 생산적인 변화로 이어지는가'이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오랜 성장이 필요하다. 아동·청소년·청년에게는 전환기가 있고, 그때마다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청소년·청년 각각의 시기에도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전환기에도,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정책과제 5.11~13).

뿌리가 나무를, 꽃과 열매를 결정하는 것처럼, 기능 및 조정 주무 부처가 결국 전달체계 전체를 결정하고 수요자의 변화를 결정한다. 따라서 실질적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해,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주무 부처 통합 및 개선'을 일차적으로 정책 제언하고자 한다.

두 번째 정책 제언은 정책과제 5.4) '정보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NWD 구현'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이다. 세부 정책 제언은 'AI 기반 생애주기 맞춤형 통합 정책 플랫폼 구축'과 '전달체계 성과지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의 두 가지다. 마치 나무의 신경망이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 영양분과 정보를 교환하는 것처럼, 어디에서나 가능한 제반 서비스를 확인하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NWD 실현을 위해,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은 필연이다.

세 번째 정책 제언은 정책과제 5.2) '전체성에 입각한 실효적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서비스 및 정책 범주의 전체성 확보'다. 세부 정책제언은 '수요자 참여형 정책 설계 시스템 도입', '전환기 연계 매니저(Transition Manager) 제도 도입' 그리고 '민간 스타트업·사회적 기업과의 전달체계 협력 모델 도입'의 세 가지다. 전체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책 수요자에게 필요한 모든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나무엔 꽃이 만발해야 아름답다. 그런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가능한 모든 서비스를 알아야 하고, 이를 위해선 먼저 가능한 모든 서비스 영역의 체계적 확보가 필요하다. 앞에서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과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그리고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토대로 아동과 청소년, 청소년과 청년의 정책 영역을 비교 정리한 바 있다. 본 정책 제언에서는 이를 재편하여 아동·청소년·청년의 연속성 하에서 전체성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 영역을 체계적으로 확립하여 정책 집행을 위한 실질적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마지막 네 번째 정책 제언은 포괄성의 원칙에 기초한, 정책과제 5.8) '취약(위기) 상황 아동, 청소년, 청년의 포괄적 파악 및 안정적 지속적 지원을 위한 통합체계 구축'의 실현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정책 대상의 포괄성 확보'다. 실제적 제반 능력을 갖춘 서비스 제공자가(정책제언 1),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정책제언 2), 가능한 모든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정책제언 3)은 중요하다. 하지만 마지막 조건이 하나 더 있다. 가능한 모든 수요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정책제언 4). 성공적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4가지 조건이라 할 수 있다.

2)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 및 통합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

1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주무 부처 통합 및 개선

▶ 정책 기본방향

- 현재 아동(보건복지부), 청소년(성평등가족부), 청년(국무조정실)으로 나뉘어 있는 정책 전달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12원칙에 부합하는 실효성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그 '장점과 단점'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써, 향후 미래지향적 정부 조직 개편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정책제안 유형	기존정책 확대 () 기존정책 개선 () 신규정책 (V)	관련 부처	국무조정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주 정책과제	2.1) 주무 부처의 효율적 통합 및 일원화된 행정 시스템 구축		
연관 정책과제	1.2) 전달체계 세 위원회의 정합을 위한 구조조정 4.1) 아동, 청소년, 청년 법체계 정비를 통한 실효성 있는 법적 연령 구분 4.2) 주무 부처 통합 및 개선에 따른 법령 정비 5.2) 실효적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5.3) 전달체계의 연속성 확보 5.5) 생애주기 연계 전달체계 구축		
우선 원칙	전문성, 적절성, 지속성, 통합성, 전체성, 완결성		

1-1

보건복지부(아동), 성평등가족부(청소년), 국무조정실(청년) 각각의 현 전달체계는 유지하되,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1안)

생산적 연계를 위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 및 통합 전달체계 구축'은 크게 3가지, 세부적으로 5가지 방안으로 접근할 수 있다. 목적은 '선택'이 아닌 '이해'이다. 모든 현상에 양면성이 있듯 5가지 방안 역시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다. <전문가 의견조사>를 진행한 이유도 이들 방안 각각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그에 기초한 정확한 이해에 있다. 이제 이를 중심으로, 동시에 '선행연구'와 '외국 사례' 등을 함께 고려하며 각각의 방안을 분석하고자 한다. 부처통합 없이 현 아동(보건복지부), 청소년(성평등가족부), 청년(국무조정실) 정책 전달체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은 앞에서 확인한 대로 전달체계 개편의 최소화로 현 정책의 안정성, 지속성 확보, 신속한 정책 추진, 부처 간 갈등 및 혼선 최소화, 정책의 전문성 및 특성화 유지, 정책의 책임 소재 명확화 그리고 부처 통폐합으로 소요될 행정비용·시간 절약 등의 장점이 있다.

표 VII-8.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달체계 개선안 1안의 장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순위
긍정적인 점 (장점)	전달체계 개편을 최소화함으로써 현 정책의 안정성, 지속성 확보	3.93	1.03	2
	전달체계의 변화로 인한 부처 간 갈등 및 혼선 최소화	4.13	0.74	1
	정책의 책임 소재 명확화	3.87	1.06	4
	부처 통폐합으로 소요되는 행정비용·시간 절약	3.93	0.96	2

동시에 이 방안은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단절 및 서비스 중단, 부처별 규모 및 예산의 차이로 인한 정책 편향 및 소외, 정책의 유사·중복 및 누락(사각지대)과 이로 인한 정책의 효율성 저하(인프라, 예산 등) 등의 단점으로 아래와 같이 지적된 바 있다.

표 VII-9.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달체계 개선안 1안의 단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순위
단점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단절 및 서비스 중단	3.87	1.25	1
	정책의 유사·중복 및 누락(사각지대)과 이로 인한 정책의 효율성 저하(인프라, 예산 등)	3.80	0.94	3
	부처별 규모 및 예산의 차이로 인한 정책 편향 및 소외	3.87	0.92	1
	전달체계의 분산으로 위기사태 등에 대한 통합(종합) 대응의 어려움	3.60	1.12	4
	부처별 분산된 청년정책의 현 체계로는 아동·청소년·청년정책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3.60	1.24	4

나아가 '상호 유기적 연결성의 보완'의 실제적 구현이 필요하다. 앞장 표 V-20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호 유기적 연결성 보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1. 정보 및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구축, 2. 생애주기별 정책 대상과 목표의 명확화, 3.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전달체계 일원화 그리고 4. 관련 법령에 연계·협력 의무 조항 신설 등 법제도 개선 등이 우선 필요조건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 세 주무 부처 중심의 전달체계가 정착된 이후 실제적, 실효적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많은 유사한

의견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실제적 구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문제의 파악과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조정은 본래 정책과 서비스 전달체계의 컨트롤 타워인 위원회의 업무라 할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10조, 청소년기본법 제10조, 청년기본법 제13조 모두 각 위원회의 업무를 적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앞에서 지적한 대로 아동정책조정위원회는 2004년 위원회 설립부터 2025년 현재까지 1년에 1회도 개최되지 않는, 실제적,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 청소년정책위원회는 국무총리실이 아닌 성평등가족부에 속하고,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어, 다른 위원회와의 정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역시 불규칙한 위원회 개최 등 정책 조정 기능 주체로서의 실제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청년정책조정 위원회도 청년정책에 대한 조정 기능을 수행하기보다, 단순히 정책 수립의 기능에만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은, 먼저 컨트롤 타워의 실질적 조정 기능 회복이다. 일단 위원회의 개최를 정례화 하고, 당연직 부처 장관들을 제외하곤, 전문가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회 개최 시 현 정책 전달체계에 대한 진단과 평가 및 개선 권고 사항을 관련 부처에 전달, 조정하도록 함은 물론, 타 위원회와 공유하여 전달체계의 연속성 확보 측면에서 연계할 필요가 있다. 범부처 TF를 구성하고, 협업 매뉴얼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다음,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의 실질적 확보를 위해서는 그러나, 표면적인 교정이 아니라, 보다 문제의 뿌리, 근원을 보는 본질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생애주기적 연속성과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의외로 복잡하지 않을 수 있다. 부처 통합이라는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부처 간 역할 조정을 통해 '정책 대상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의 통합을 이루면 가능할 수 있다.

정부조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으로 분류되는 부, 처, 청 가운데 19부는 모두 기능과 목적 중심의 부처이다. 그리고 각 부의 설립 목적과 주요 업무는 주로 국민 개인 모두와 생애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일례로 아동-청소년-청년의 생애주기에 맞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부처는 교육부이다. 교육부는 평생교육을 지향하며 아동-청소년-청년 그리고 이후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생애주기적 기능 통합부처이다. 보건복지부도 정부조직법 제42조에 따라 (영유아 보육을 제외한) 국민 개개인의 복지를 책임지는 기능 통합부처이다. 또 정부조직법 제44조에 따라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고용노동부의 경우도, 청년을 대상으로 하니 일견 대상 중심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고용과 노동의 문제는 초기 청년기로부터 발생하니 기능 중심 통합부처가 맞다. 다만,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기능 통합부처들을 조정하는 국무조정실은 기능 통합부처라기보다는 기능 조정부처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정부조직법 제45조를 보면 성평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 향상, 청소년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성평등 정책의 기획·종합'을 담당하는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교육부의 '교육'이나 복지부의 '복지'와 같이 기능 수행 부처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성평등가족부의 기관 소개 중 '주요 업무'를 보면 '청소년 활동, 복지 지원 및 보호' 등 '청소년정책의 총괄 조정'이 제시되고 있다. 정부조직법대로라면 청소년정책 주무 부처는 성평등가족부이다. 그리고 청소년정책만 보면 정책 대상 중심 주무 부처이다. '기능 중심'과 '대상 중심'이 혼재하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도 청소년특별지원, 자립지원, 꿈드림 지원사업 등 생활, 건강, 학업 지원, 자립 지원, 유해 환경 보호, 권리 보장 강화 등 적지 않은 청소년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그 결과 두 부처의 역할 구분을 위한 아동과 청소년 연령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책의 유사, 중복, 누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혼선은 광역자치단체에서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까지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경우는 복지 정책 실현에 있어 아동에서 청소년을 건너뛰고 초기 청년으로도 이어지게 되어, 아동-청소년-청년의 생애주기 연속성에서의 정책 분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0년 다수의 청소년보호 업무가 당시 여성가족부로 이관되며 벌어진 현상이다. 따라서 성평등가족부가 '정책 대상'이 아닌 '정책 기능' 주무 부처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와 의 기능 조정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동(보건복지부), 청소년(성평등가족부), 청년(국무조정실) 정책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세 부처의 정체성 내지 역할 구분의 명확성이 필요하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먼저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영역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림 VIII-16은 넓은 의미에서의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 및 통합정책 영역'을 보여 준다.



그림 Ⅷ-3. 아동·청소년·청년 통합 정책 영역

아동-청소년-청년의 생애주기 연속성 측면에서 현재 교육이라는 정책 기능은 교육부가 담당하고 있다. 교육부는 청소년이나 여성과 같은 특정 정책 대상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교육이라는 기능을 위해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고용노동부는 고용을, 국토교통부는 주거를 위해 기능하는 주무 부처로, 다만 국무조정실의 조정을 받는 기능적 연합체로 존재하고 있다. 이 외 정부 조직의 나머지 부처도 기능 중심이나, 복지의 영역, 특히 청소년복지의 경우,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로 기능이 분산되어 있다. 따라서 복지를 포함한 청소년 정책 업무를 모두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거나, 복지 관련 업무만 모두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거나, 또는 현실을 고려하여, 복지의 기능을 둘로 분리하고, 각 부처가 복지의 특정 영역에 대한 기능 주무 부처가 되는 방안이 있다. 하지만 처음 방안은 쉽지 않아 보인다.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나 보건복지부 등 다양한 부처와의 유기적 연계를 효율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방안에 대해서는 뒤의 3-2안에서 다루도록 하겠다. 다만 셋째의 경우, 현재로서 가능한 대안은 보호, 경제, 의료를 '소극적 복지' 또는 '보호 복지'로 묶고, 활동, 참여, 문화는 '적극적 복지' 또는 '문화 복지(가칭)'로 결합하여, 전자는 보건복지부가, 후자는 성평등가족부가 각각 생애주기적으로 담당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자립지원과',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청소년보호환경과' 등의 제반 부서가 보건복지부로, 청소년 보호복지 서비스 전달체계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청소년 지원 정보통합 포털인 '청소년 1388'과 함께 보건복지부 산하로 옮겨야 할 것이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의2 개정 필요). 그리고 아동-청소년-청년의 활동, 참여, 문화 등의 '적극적 복지'와 관련한 제반 부처는 성평등

가족부로 이관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직 개편이 현실화한다면, 학교 밖 청소년과 가정 밖 청소년 등에 대한 다양한 사업이 혼선 없이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가족 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 위기 청년 지원 사업을 포함하여 아동·청소년·청년 생애주기의 보호 복지서비스를 실효적으로 제공하는 기능 통합체로, 성평등가족부는 아동·청소년·청년 생애주기에 적절한 문화, 활동, 참여 등의 문화 복지 서비스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그림은 이러한 기능 조정과 통합이 이루어진 경우의 부처별 통합정책 영역을 보여준다.



그림 VII-4. 부처별 기능 중심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 및 통합 영역

실제 기능 통합이 이루어지면, 기존 <선행연구>와 <외국사례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등을 통해 도출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문제점의 상당 부분이 해소될 수 있다. 무엇보다, 연령 구분에 대한 논쟁이 불필요하다. 기능 통합을 이룬 각각의 정책 전달체계로부터 실질적 생애주기적 정책서비스가 제공될 것이기 때문이다. 보호복지서비스가 보건복지부로, 문화복지서비스(가칭)가 성평등가족부로 이관되면 각각 ‘아동’ 또는 ‘청소년’이라는 호칭과 관계없이 생애주기적으로 일관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 각 부처의 역할 구분이 분명함으로 정책의 유사, 중복, 누락 등의 문제가 실효적으로 감소하고, 책임소재가 명확해질 것이다. 그리고 하나의 기능에 집중하게 됨으로 전문화와 업무 효율성 증가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나아가 하나의 기능을 위한 부처 집중화는, 실효성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의 체계화와 함께 중앙·광역지자체-시군구 간 연계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 모든 변화는 결국 수요자 중심 정책서비스의 제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안을 적용한 구체적 행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는 다음 그림을 통해 간략히 도식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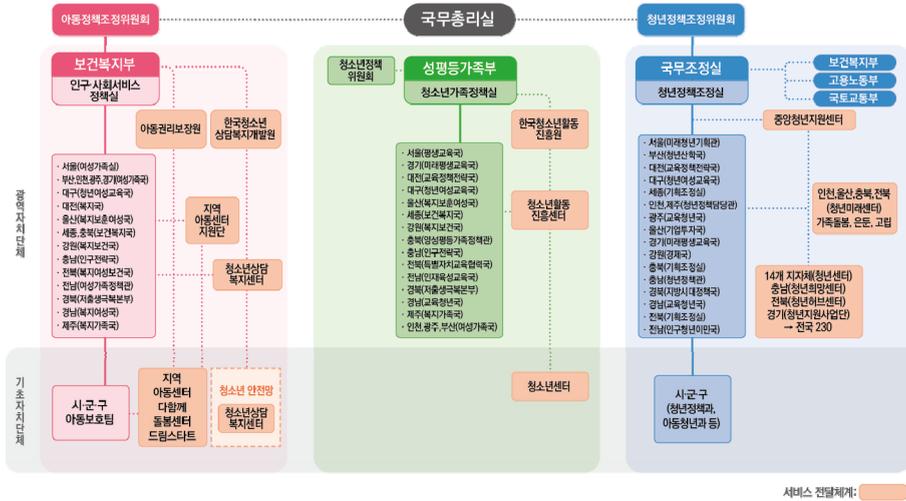


그림 VII-5. 1안 기능 및 조정 통합 모델 - 아동·청소년·청년 행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

한편, 기능 통합부처로 정비하는 방안에는 제3의 대안도 있다. 아동·청소년의 ‘문화복지 서비스 기능’을 성평등가족부가 아니라, 본래 문화예술활동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로 이전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가족정책실’은 ‘가족정책실’로 남고, 청소년정책과, 청소년활동진흥과, 청소년활동안전과를 비롯한 제반 부서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이관하여, ‘문화예술정책실’과 ‘체육국’ 등 관련 부서들이 연계하여 업무를 담당하면 될 것이고, 활동 서비스 전달체계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귀속되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기존 성평등가족부는 기획조정실과 성평등정책실, 가족정책실로 조직이 개편되어 부처 본연의 업무인 ‘양성평등과 가족 행복’에 더욱 미래지향적, 실효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 경우, 정부조직법 제45조 성평등가족부에 관한 조항을 ‘성평등 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 증진 등 지위 향상 및 가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청소년” 삭제)’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문화복지’ 업무가 어느 부처 담당이든, 청소년정책에 대한 실질적 관심이 필요

해 보인다. 특히 ‘청소년육성 기금’ 등 청소년 관련 예산 확보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청년의 경우는 이미 성인인 자율적 주체로서, 고용(취업), 주거, 자녀 양육 및 교육, 출산과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복합적 기능이 필요하므로, 국무조정실이 분산된 기능 통합 주무 부처들에 대한 조정 부처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다만 조정 주무 부처로서 역할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청년서비스 전달체계의 중심에 중앙청년지원센터가 있고, 4개 광역시도(인천, 울산, 충북, 전북) 청년미래센터에서 가족돌봄, 고립·은둔청년 등 특정 위기 청년 전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머지 총괄적인 청년 서비스는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청년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방대하게 증첩된 청년정책 업무와 관련 부처들을 고려하면, 중앙청년지원센터와 청년센터 사이에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지역청년지원센터가 필요해 보이며, 청년정책조정실 역시 청년정책기획관과 청년정책협력관에 ‘청년정책관’ 등을 신설, 3관 이상으로의 조직 재구성과 함께,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태에서의 연계 강화를 위해 고려할 법적 측면을 생각해 보면, 각 부처 정책 영역의 유기적 연결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를 법령상 규정할 수 있다. 먼저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간의 연계를 강화한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4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관련 행정기관과의 협력 사항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청소년으로 이행할 때 「청소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에 따른 정책과 연계하여 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연령대별 이행과 이에 따른 정부 지원의 법적 토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동시에 「아동복지법」 제9조(아동복지종합계획)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공동 수립 및 정보공유 절차’를 명시하여, 부처별 계획 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청소년기본법」 측면을 살펴보면, 제7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법」 및 「청년기본법」에 따른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고, 제10조(기본계획의 수립)에는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 보건복지부와 국무조정실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절차 규정에 관한 문구를 추가 삽입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이를 통해 법률에 명시된 협의 절차로 부처 간 공동 기획 및 예산 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다.

「청년기본법」은 현재 국무총리 소속 청년정책조정위원회(제13조)를 통해 청년정책 관련법정부 조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에 아동·청소년 정책 연계를 제도화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시행령 제11조)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포함하도록 하고, 동법 제13조 제3항에 ‘위원회는 아동·청소년 정책 관련 협의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1-2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하나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

부처 통합 (2안)은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하나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이는 다시 (2-1) 세 부처 중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과 (2-2)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새로운 주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하는 방안으로 구분된다. 순서대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1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중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2-1안)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무조정실 중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은 표 VII-10에 제시된 것처럼 양면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를 주요 순위들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VII-10.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달체계 개선안 2-1안의 장점 및 단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순위
장점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상호 연계 강화	4.00	1.07	2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	4.20	1.15	1
	유사·중복 정책 조정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 증가(행정, 인력, 예산 등)	3.73	1.10	4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서비스 가능	4.00	1.13	2
단점	다 부처의 유관 정책을 통합하지 않는 한 여전히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이 분산되어 있어 통합의 실효성 저해	3.73	0.96	3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순위
청년정책의 부처별 분산된 현 체계와 규모를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실질적 통합이 어려움	4.07	1.03	1
부처 간 권한 및 업무 조정, 통폐합 부처에 대한 합의 등 부처 간 갈등 및 혼선 야기	3.73	1.10	3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의 범주와 특성이 달라서 어느 부처로 통합하든지 조직 내 칸막이 우려	3.80	1.15	2
기존 부처별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차이로 인한 통합·조정 어려움	3.27	1.03	5

긍정적 측면으로는 첫째,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가 있다. 이 경우 상위 위원회도 하나로 통합될 것이기에, 생애주기적 로드맵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수 있고, 로드맵에 따른 일관된 정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주무 부처의 일원화는 정책의 유사, 중복, 누락을 예방할 수 있게 되어 정책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셋째, 실제적인 전달체계 간 연계나 정책 집행에 있어 현실적 차이가 있겠지만, 원리적으로는 정책의 통합지원 서비스가 가능하다. 하지만 문제점도 만만치 않다. 기본적으로 국무조정실과 두 부처의 성격이 다르므로 통합 자체가 쉽지 않다. 두 부처는 통합부처이지만 국무조정실은 다수 부처에 분산된 청년정책 조정부처로서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등 다양한 주무 부처와 연계되어 있고, 또 부처별 연령·정책 특성 차이가 크다. 그러므로 통합 단일 부처는 광범위한 규모의 통합 부처가 될 것인지, 아니면 조정부처로의 정체성 변화를 받아들일지 선택해야 한다. 전자의 경우, 통합 부처는 실질적으로 4개 부처 이상의 상위부처가 되어야 하므로 질적 통합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물리적인 통합이 곧 화학적 통합을 의미하지 않으므로, 조직 사이의 칸막이나 업무 조정상의 갈등 등 문제가 잔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행 전 청년·청소년 정책의 조직·예산 구조를 정비하고, 통합 시 직면할 수 있는 부처 간 이견과 조직·운영상의 분리 장벽 해소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반면, 후자를 선택할 경우, 통합이라기보다는 현 국무조정실과 같이, 정책 시행 주체인 여러 주무 부처의 조정부처가 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전면 조직 개편은 불필요하다. 실제 교육부가 아동·청소년·청년 관련 부처를 조정하는 영국 등 일부 OECD 국가는 이러한 정부 조직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의 통합이든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 있다. 복지면 복지, 교육이면 교육, 국민 삶의 어떤 분야든, 특정 분야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청년의 생애주기

적 정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단일 기능 통합 주무 부처 내지 주무 부서로서의 기능은 필요하다. 그래야 각 부서 고유의 전문적, 실효적 서비스를 안정적,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례로, 만약 3부처 중 국무조정실로 통합하는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간략히 도식화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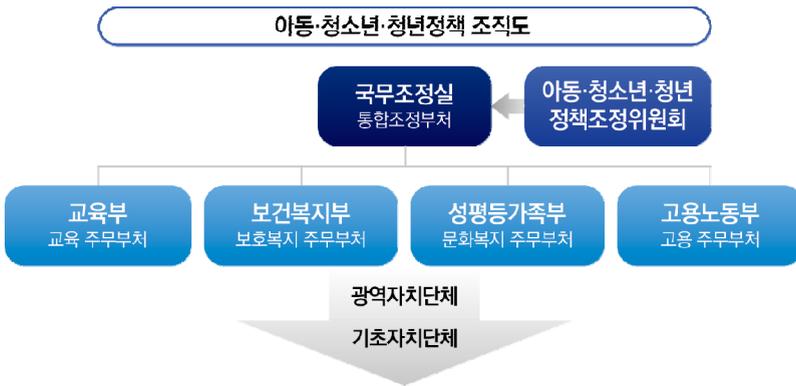


그림 Ⅶ-6. 2-1안 국무조정실 통합 모델 - 아동·청소년·청년 행정 전달체계

이 경우 주무 부처로부터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연계될 구체적인 행정 전달체계는 앞의 1안) 과 동일한 구조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법령 정비도 필요하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통합 부처 사무에 ‘아동보호’, ‘청소년 육성’, ‘청년 지원’ 등 통합 업무를 명시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조직법」 제20조(국무조정실), 제38조(보건복지부)와 제42조(성평등가족부) 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 일례로, 국무조정실이 아니라, 만약 보건복지부로의 통합을 상정한다면, 필요한 법령 정비는 다음과 같다.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에 ‘청소년육성’ 및 ‘청년 지원’ 등 신설 업무를 명시하고, 성평등가족부 사무 담당 조항에서는 청소년 관련 사무를 삭제한다. 아울러 청년정책조정회의 등 국무총리실의 청년정책 조정 기능도 법률상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므로, 「정부조직법」 제38조(보건복지부)와 제42조(성평등가족부) 등을 수정한다. 예를 들면, 정부조직법 제39조(보건복지부)에는 청소년·청년 분야 사무 추가하고, 제42조(성평등가족부)에서는 청소년 업무 부분을 삭제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동시

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배치할 차관 정원 등 인력 규정(예: 제26조)을 유지·검토하면서, 추가된 청소년·청년 기능을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 조직 규모를 확대한다.

하위 직제령도 연동하여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복지부 내부에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담 실·국 등 고위기구를 신설하고, 그 산하에 아동·청소년·청년정책부서를 편성한다. 반대로 「성평등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는 현재 청소년정책국 등으로 존재하는 청소년 업무 조직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도록 한다. 또한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제」를 개정하여 국무조정실 내 청년정책조정실(국 단위)을 폐지하고, 해당 인력을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전환시킬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사례로, 2008년 개편 당시에도 보건복지부가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약 100명 규모의 가족·청소년 인력을 인수하여 청소년가족정책실을 운영한 바 있다.

개별 법률상의 소관부처 규정도 모두 정비한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아동복지법」은 현재 주관부처가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으므로 부처 이관은 필요 없으나, 아동(18세 미만) 규정과 청소년·청년정책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정의 및 지원 연령 기준에 추가 연계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한다. 예를 들어 동법 제3조 ‘아동’ 정의 뒤에 “다른 법령의 청소년·청년 정의에 연계한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식이다. 또한 「아동복지법」에 중앙·지방의 아동정책 조정위원회가 도입된다면, 향후 이를 “아동·청소년 통합정책조정위원회”로 확대하는 개정 방안 역시 검토할 수 있다.

「청소년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의 정의(제3조: 9~24세) 범위의 변경은 없지만, 제4~6조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책무와 제7조 계획 수립 주체 등을 수정한다. 현행법은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청소년정책의 기본계획 수립·조정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한다. 예를 들자면, 제13조(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 부분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바꾼다. 이와 함께 법에 명시된 지방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제9조) 등 지방 조정 체계 지원기관도 성평등가족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한다. 또한 “청소년육성·보호 사무를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의 표현은 주관 부처명을 모두 보건복지부로 수정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도 마찬가지다. 이 법에서는 청소년 복지사업의 주관자로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제5조(국가책무)·제6조(지자체책무) 등에서 ‘주무부처 장관’으로 언급된 곳을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한다. 예컨대 제10조(관계기관 협력)에서 기술하는 여러 부처 협력체제에서도 성평등가족부 장관 명칭을 제거하고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한다. 이로써 청소년쉼터·상담 등 각종 청소년 복지 사업의 지도·감독 권한이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도록 법률에 반영한다.

「청소년활동진흥법」역시 동일한 원칙하에 개정한다. 이 법에 규정된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임무(제3조)와 청소년육성정책위원회 구성(제7조) 등을 모두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하고 해당 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등 청소년활동진흥기관의 감독기관도 복지부로 이관하므로, 관련 법인의 감독부처 변경을 법령에 명시한다. 「청소년보호법」도 주관 부처를 보건복지부로 이전한다. 현재 동법 제4조 등에 따라 청소년보호정책의 수립·조정 주체를 성평등가족부 장관으로 두고 있는데,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한다. 만약 청소년보호위원회 등이 국무총리나 여성가족부 산하에 설치되어 있으면, 이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이관하거나 필요시 폐지한다. 예컨대 과거 국무총리 소속이던 위원회가 현재 여성가족부 산하로 운영된다면, 개정 후에는 이를 보건복지부 장관 산하로 두는 식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청소년 유해환경 감독 기능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된다.

「청년기본법」은 대규모 변화가 불가피하다. 보건복지부로의 통합을 전제로 현행 심의 및 조정 기구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현 국무총리 소속)의 구조가 개편되어야 한다. 현재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 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범정부 청년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나, 청년 업무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되면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 직위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격하하거나, 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5년 단위로 수립되어 온 청년정책기본계획의 수립 주체 역시 현재 국무총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변경한다. 이렇게 될 경우, 자연스럽게 「청소년기본법」과 「청년기본법」에 나타나있는 기본계획 수립 관련 연계 규정도 마련되고, 이 기본계획의 일관성과 연속성에 대한 책임 역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갖게 된다.

결론적으로, 통합을 시도할 때 무엇보다 고려해야 할 문제는, 수요자 중심의 생애주기적 통합지원 서비스의 측면에서, 그러한 형태의 통합방안이 현재의 전달체계와 비교할 때, 어떤 실효적 차이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새로운 주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하는 방안(2-2안)

이론적인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새로운 주무 부처의 신설은 일견 중립적, 객관적 컨트롤 타워 설치를 통한 장기적, 미래지향적 정책 로드맵의 설계와 통일된 통합 전달체계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인다. 실제 앞 장의 <표 V-11.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도 2-2안이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위상 및 관심 제고를 불러올, 가장 '이상적인 방안(40%)'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이러니한 것은, 해외 OECD 주요국들의 경우, 2-2의 방안대로 별도의 상위 주무 부처를 설치한 국가는 발견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 이처럼 이상적으로 평가되에도 현실에선 수용되지 않는 이유는 표 VII-11. 전문가 의견조사결과에서 드러난 단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VII-11.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달체계 개선안 2-2안의 단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순위
단점	새 부처의 조직 설계에 대한 어려움(정책 범주 및 기능 조정 등)	3.53	1.13	2
	부처 신설 및 안정화까지 긴 시간 소요, 업무 지장 초래	3.47	1.06	4
	새 부처의 소관 업무를 둘러싼 유관 부처와의 조정 어려움	3.53	1.19	2
	부처 신설에 대한 이해관계자(현장 실무자, 정책 수요자 등)의 반발	3.67	1.11	1
	중앙정부 전달체계가 통합되더라도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의 특성과 집행 체계가 상이하여 지역의 관련 공공기관, 전문인력 등의 통합 어려움	3.47	1.25	4

사실 '이해관계자(현장 실무자, 정책 수요자 등)의 반발(1순위)'은 의견 수렴과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단계적 이관 및 시범 사업 등을 통해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병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심각한 문제는 '새 부처의 소관 업무를 둘러싼 유관 부처와의 조정 어려움(2순위)'이다. 실제 새 부처의 조직 설계는(정책 범주 및 기능 조정 등) 근본적인 문제를 내재하고 있다. 언급하였듯, 새 부처의 상위 주무 부처는 광범위한 통합 주무 부처가 되든지, 아니면 통합 조정부처가 되어야 한다. 전자의 경우 기존 주무 부처들이 주무 부서로 귀속되면 된다. 하지만 주무 부처가 아닌 실질적 조정부처인 국무조정실과의

관계 정립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후자의 경우, 이미 있는 조정부처 위에 새로운 조정부처를 신설하게 됨으로 기존 국무조정실의 정체성을 재정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만약 새로운 부처를 통합 조정부처로 결정한다면, 효율성 측면에서 2-1안을 선택하되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모든 방안이 양면성이 있기에 마찬가지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법적 측면에서 보면, 중앙행정부처의 신설을 위해 먼저 「정부조직법」에 신설 부처의 설치와 업무 범위를 명시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 일례로 「정부조직법」에 “아동·청소년부장관은 아동·청소년 및 청년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젊은 세대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법제화할 수 있다. 또 새 조직의 법적 지위와 관할 업무 전반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개정된 「정부조직법」은 신설 부처로 이전될 기존 기능들의 정비를 위한 법적 근거로 기능하게 된다. 먼저 현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청년정책조정실) 등의 기능도 신설 부처로 이관하는 만큼, 국무조정실 직제에서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역할을 축소하도록 「정부조직법」과 관계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계속해서, 성평등가족부 장관 소관의 청소년육성·보호 업무 조항을 삭제하여, 그간 성평등가족부가 담당해 온 모든 청소년정책 기능을 신설 부처로 이관한다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하며, 보건복지부 소관 사무 중 아동 복지·영유아 보육 관련 조항 역시 삭제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해당 기능과 사무들이 더 이상 성평등가족부 또는 보건복지부 소관이 아님을 법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다. 조직 신설과 이에 따른 권한 승계와 업무 인수인계 절차 등은 개정 법률의 부칙에서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통합법이 제정될 경우,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지원체계를 종합 규정하는 상위 기본법이 필요하다. 이 안에는 연령에 대한 명확한 규정,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 규정 및 신설 부처 장관에의 종합계획 수립 권한 부여가 명시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 개별 법과의 명확한 관계 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통합기본법을 상위법으로 두는 등 법률 간 위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한 다양한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들을 기초로, 정책 대상 전체를 포괄하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면, 부처 신설로 인한 법률 간 불일치 또는 모순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다. 다만 입법 작업은 물론 기본법 통폐합에 따른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므로, 충분한 논의 과정과 사회적 공감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1-3

생애주기적 함목적성 측면에서 통합하되,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고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3안은 '1+2 또는 2+1'의 방식이다. 3-1안은 '아동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되(청소년·청년정책),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이고 3-2안은 '아동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고(아동·청소년정책),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이다. 두 방안의 공통점, 즉 '상호 유기적 연결성 보완 방안'에 대해선 1안을 다루며 자세히 언급했다. 따라서 이제 이 두 방안의 장·단점을 주로 통합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현실적 도입 가능성 여부에 대해 진단해 보고자 한다.

1-3-1

아동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되(청소년·청년정책),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 하는 방안(3-1안)

표 VII-12에서 확인한 대로 3-1안은 <전문가 의견조사>에선 가장 실현 가능한 방안(40%)으로 나타난 바 있다.

표 VII-12. 1차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실현 가능한 전달체계 개선안

구분	전달체계 개선안					전체
	1안	2-1안	2-2안	3-1안	3-2안	
실현 가능한 전달체계 개선안	5명 (33.3%)	1명 (6.7%)	1명 (6.7%)	6명 (40.0%)	2명 (13.3%)	15명 (100.0)

그리고 그 이유 역시 3-1안의 청소년·청년 통합부처에서 유관 부처의 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용이하고, 아동의 보호, 복지정책 등의 전문성은 유지하되, 청소년·청년의 진로, 자립 정책 등 연속성을 강화할 수 있다는 등 다양한 장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VII-13.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달체계 개선안 3-1안의 장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순위
장점	청소년, 청년정책의 경우, 연령 중복에 따른 정책의 비효율성 감소	3.07	1.33	4
	아동의 보호, 복지정책 등의 전문성은 유지하되, 청소년·청년의 진로, 자립정책 등의 연속성 강화	3.53	1.30	2
	청소년·청년 통합부처에서 유관 부처의 관련 정책을 통합 조정하기 용이	3.60	1.24	1
	세 개의 부처 통합에 비해 부처 간 갈등과 행정비용 감소	3.20	1.15	3

다만 이 방안은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상이한 전달체계, 부처 간 이해관계와 우선순위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 청소년과 청년의 이질적인 법제도로 인한 통합(종합) 정책의 어려움,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관점 및 영역의 차이로 인한 정책 편향 및 소외 등의 문제점도 지적되었다. 따라서 통합 추진 시 청소년·청년정책 간 교집합 영역(예: 취업·주거 지원)을 중심으로 연계 전략을 마련하고, 법적 연령 조정 등을 통해 이질적 제도 충돌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표 VII-14.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전달체계 개선안 3-1안의 단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순위
단점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상이한 전달체계, 부처 간 이해관계와 우선순위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	3.60	1.12	1
	청소년과 청년의 이질적인 법제도로 인한 통합(종합) 정책의 어려움	3.60	1.24	1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관점 및 영역의 차이로 인한 정책 편향 및 소외	3.60	1.30	1
	지자체에서도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상이한 전달체계로 인해 실질적 통합이 어려움	3.33	1.11	5
	부처별로 분산된 현 청년정책으로 인한 통합 조정의 어려움	3.40	1.24	4
	아동정책과 청소년·청년정책의 유사 중복 및 단절	3.33	0.72	5

하지만 그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조정부처로서의 국무조정실과 주무 부처인 성평등 가족부가 어떤 형태로 통합할 것인지’의 문제는 남는다. 만약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통합된

다면, 고용노동부나 국토교통부처럼 성평등가족부도 조정을 받는 주무 부처로 남으면 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통합 없이 남아 있을 보건복지부와와 정책 유사, 중복, 누락 문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고, 따라서 성평등가족부의 정책 대상이 아닌 기능 통합부처로의 전환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1안에서 언급한 것처럼, 적극적 복지 주무 부처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이란 의미이다. 역으로 성평등가족부로의 통합일 경우, 다시 국무조정실과 융합 방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게다가 청년 관련 다양한 주무 부처들이 성평등가족부 산하 부서로 귀속되어야 한다. 주요 외국 사례의 경우 대부분 국가는 청소년·청년 통합을 선호하고 있지 않았다.

법적인 측면에서, 국무총리 산하에 ‘청소년청년위원회’ 등의 통합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정부조직법」에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청년위원회 설치 조항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청소년기본법」 제16조의2와 유사한 규정으로 “청소년·청년 관련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청소년청년위원회를 둔다”는 조항을 둘 수 있을 것이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관급(정무직)으로 임명하고, 비상임위원을 포함한 구성·임명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구체화한다. 또한 청소년·청년 관련 사무(예: 법령 관리, 정책위원회 운영, 전달체계 구축·운영 등)를 신설되는 위원회로 이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성평등가족부엔 “청소년정책 관련 법령의 관리·운영, 청소년정책위원회 운영, 전달체계 구축·평가” 등의 업무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성평등가족부 관련 조항을 수정하여 해당 업무들을 청소년청년위원회로 이전되도록 명시한다.

아울러 국무조정실 내 기존의 청년정책 조정 기능(예: ‘청년정책조정실’ 업무)도 해당 위원회로 이관한다. 이 과정에서 위원회의 운영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위원장·위원의 자격 요건, 임기, 회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부조직법」과 그 시행령을 함께 개정하여 위원회 설치 근거를 명문화하고, 예산 및 인력 운영 권한에 대한 근거도 대통령령에 포함한다.

「청소년기본법」 등 현행 법령에서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주무 기관으로 지정한 조항들은 모두 청소년청년위원회 또는 그 위원장으로 명칭으로 변경한다. 예컨대 현행법은 청소년육성 정책의 총괄 및 조정 기능 업무를 성평등가족부 장관에게 위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소년청년위원회가 담당하도록 개정한다. 또 「청소년기본법」 제10조(청소년정책협의회 설치 규정)도 청소년청년위원회 산하 기구로 변경한다. 계속해서, 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청소년지도사·상담사 자격관리 등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수행해 오던 업무 역시

청소년청년위원회가 주관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 또한 「청년기본법」 제13조에 따르면 현행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청소년위원회와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합할 경우 해당 조항을 ‘청소년청년위원회’로 개정하거나, 양쪽 기본법에 공통된 명칭을 부여하여 기능과 소관을 일원화한다.

통합된 청소년청년위원회는 청소년(예: 9~24세)과 청년(예: 19~34세)을 포괄하는 정책 전반을 관장한다. 현행 청소년위원회는 기본 방침 수립, 관련 법령의 제·개정,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지원, 유해매체물 심의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심의 의결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신설 위원회는 이러한 역할을 청년정책까지 확대하여 주요 정책 및 예산의 통합적 조정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가 차원의 청소년·청년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점검 및 평가, 법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등의 사무 역시 신규 위원회의 핵심 역할 기능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나아가, 청소년·청년 분야의 기초연구, 사업 예산 조정 및 관리, 정책 협력 방안 마련 등 다수의 관련 부처가 조정 및 협력해야 하는 과제 역시 신규 위원회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3-2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아동과 청소년정책 전달 체계는 통합하되(아동·청소년정책),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 하는 방안(3-2안)

3-2안은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현실적으로 특별히 주목받지 못한 방안(13.3%)이다. 다만 외국 사례의 주요 국가 다수가 이 방안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가족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ACF)이 아동·청소년 단일 통합 주무 부처이고, 청년은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등 분산형 체제를 이루고 있다. 독일도 연방교육·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가 아동·청소년정책의 단일 주무 부처이고, 청년 정책은 역시 분산되어 있다. 이는 총리 직속 아동가족청이 단일 주무 부처인 일본도 마찬가지다. 주요 국가 다수가 이 방안을 채택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통합의 실효성이 높기 때문이고, 또 <외국 사례 소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독일을 제외하곤, 아동, 청소년, 청년의 법적 연령 구분이나 정책 대상으로서의 분리에 엄격함보다 유연성이 강조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반면 한국의 경우는 과거의 유사 사례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 의견은 다소 낮게 나왔지만, 외국의 경험에 비춰볼 때 실현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고려해 볼 가치는 충분히 있을 것이다.

통합이 현실화한다면,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본질은 ‘어느 쪽으로 통합하는 편이 더 생애주기와 정책 대상의 관점에서 실효적일 것인가’ 하는 것이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본래 복지 기능 담당 주무 부처라는 사실에서 통합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 성평등가족부는 기존 성차별과 성평등 업무에 더해, ‘성평등기회확’ 등 1실 1국 3과의 신설이라는 조직 개편으로, 특히 역차별의 동시적 해소를 위한 실질적 ‘양성평등’ 업무 주무 부처로 거듭난 상황이다. 역차별과 양성평등 관련 영역은 단순히 고용의 문제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영역이다. 가족 관련 영역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성평등가족부의 기능을 양성평등과 가족에 집중하고, 청소년 보호 복지 업무는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미국의 경우처럼 보건복지부로 통합된 이 방안을 선택한다면, 성평등가족부의 청소년정책과 등 6개 과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게 될 것이고, 보건복지부에선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산하에 청소년정책과를 신설함으로 아동-청소년-청년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 정책 설계와 정책서비스 제공을 하게 될 것이다. 물론 그에 상응하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조직 개편도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 도식은 그러한 통합 모델의 전달체계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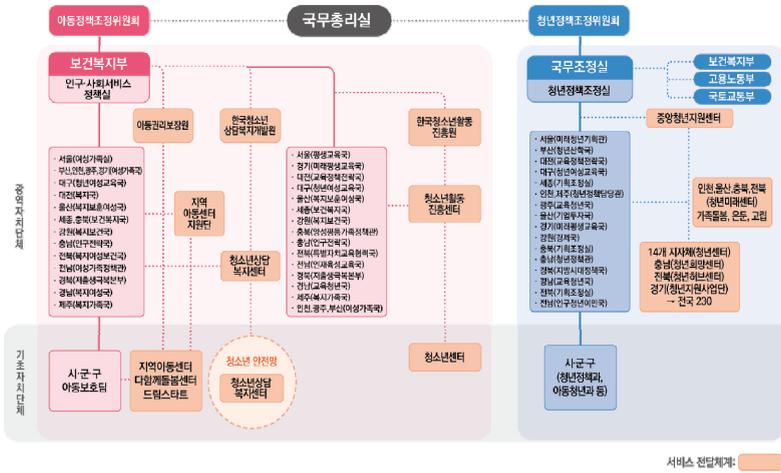


그림 Ⅷ-7. 3-2(안(2+1)) 중 보건복지부 통합 모델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행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

하지만 역으로, 성평등가족부 중심으로 통합하는 방안도 있다. 아동·청소년·청년 업무가 모두 보건복지부로 통합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가족정책을 성평등가족부가 담당

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복지의 생애주기적 주무 부처로 성평등가족부가 기능하고, 보건복지부는 아동·청소년 복지의 조정부처로 남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의 인구사회서비스 정책실에서 담당하던 아동복지 업무를 성평등가족부로 이관하고, 성평등가족부는 청년가족정책실 산하에 아동복지과를 신설하고 아동의 소극적 복지 업무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물론 양자의 경우 모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해당과에 대한 업무 재편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 도식은 그러한 통합 모델의 전달체계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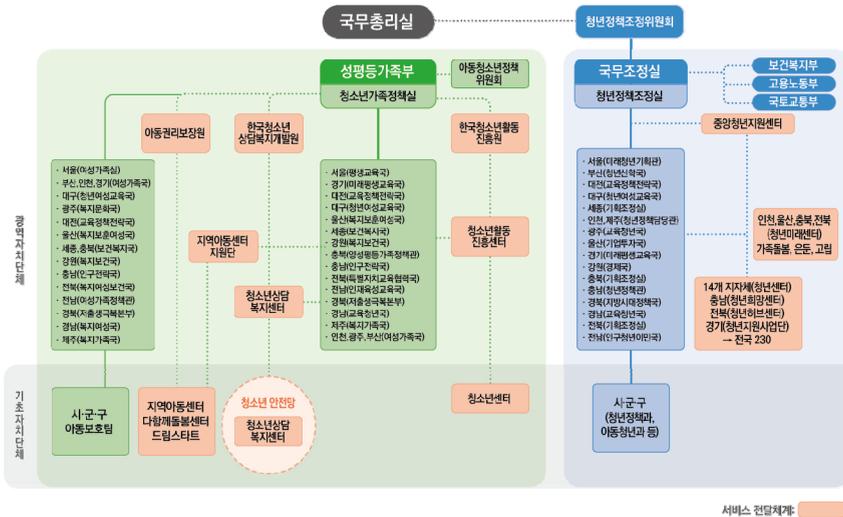


그림 VII-8. 3-2안(2+1) 중 성평등가족부 통합 모델 - 아동·청소년·청년 행정 및 서비스 전달체계

마지막으로 법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는 「아동복지법」을 중심으로 개정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가치 「아동·청소년통합지원법 또는 아동·청소년지원법」이라는 새로운 법률 제정을 통하는 방법이다. 먼저, 「아동복지법」 중심의 개정 방안을 고려해 보면, 현행 「아동복지법」을 「아동·청소년복지법」으로 변경하고, 별도 법률인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조항을 통합·폐지하는 방향이다. 개정안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조항(예를 들어, 아동은 18세 미만 그리고 청소년은 9~25세 미만 등)을 명시하고,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이념을 총칙에 규정할 수 있다. 또한 통합법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 정비 근거,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조항, 아동·청소년 옹호관(ombudsperson)과 같은 구체적인 권리 구제 수단도 함께 마련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의 연령기준 중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법률에 새로운 ‘아동·청소년’ 개념(예: 0~24세 이하)을 도입하여 연령 단계별로 지원 조항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다만 새로운 ‘아동·청소년’ 개념 및 연령 정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다음, 아동에서 청소년 전환기 지원 제도와 관련하여 18~19세 전후의 과도기 연령 층에 대해 이행기 맞춤형 서비스를 법제화하고, 복지관·학교·청소년 활동 기관 간 사례관리 체계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고등학교 졸업 시점(대략 18세)부터 대학 진학 전(19~20세)까지의 기간에 대한 효과적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근거 조항 설치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연령 및 대상이 중복되는 조항에 대한 정비 등 개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존 법령 간 모순을 사전에 차단하는 문제 역시 중요하다. 일례로 아동학대나 성범죄 대응 관련 조항은 두 개의 법이 동일 사례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구체적 사례에 해당한다. 이 경우 반드시 한쪽 법에 위임 조항을 두어 중복적용이나 적용시 모순의 문제를 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합법 개정의 핵심은 기존 법률 간의 불일치 요소 검토와 일관된 법체계 구축이다.

다음은 새로운 법률(가칭 「아동·청소년통합지원법」 또는 「아동·청소년지원법」)의 제정 경로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가칭 「아동·청소년통합지원법」 아동과 청소년 정책을 포괄하는 통합 법률로 기능하며 핵심 조항으로는 아동·청소년의 정의(예: 생년월일에 따른 연령 구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 통합서비스 제공 원칙, 아동·청소년 지원 정책의 수립·평가 절차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보호 서비스, 복지·상담·자립 지원, 예방적 지원 등을 망라하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 조항과, 이를 위해 관계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범정부 협력 체계를 마련하는 규정을 둘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기존 법률과 병행 운용하게 될 경우는 「아동복지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은 보호 중심의 서비스를, 신법은 생활 지원과 복지 수요 발굴까지를 담당하도록 역할을 분담시키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아동·청소년통합지원법」 제정 시에는 핵심 소관 부처를 명시하고 업무 분장을 조정해야 한다. 신설 법률에서는 소관 부처를 시행 기관으로 지정하고, 법 제정 시 해당 부처 산하에 아동·청소년전담센터 등 전담 조직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조직 개편 단계에서는 아동·청소년 정책 전담 부서 설치가 필요하다. 한편 청년정책은 현행과 동일하게 국무조

정실 소관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역시 명확한 연령 구분이 필요하고, 「청소년기본법」과 「아동복지법」 등이 함께 존재할 경우, 각 법의 적용 대상과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정책 조정기구를 신설하거나 현행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아동·청소년정책조정위원회로 확대하여 조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제시된 5가지 안은 모두 양면성이 있다. 하지만 어떤 방안을 택하든 기본적으로 “연령 중복 조정을 통한 법체계 정비”나 “유사·중복 정책 조정” 등 법적, 제도적 정합성 확보를 위해 ‘법적 연령 구분의 명확화,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지원 통합법(가칭) 제정 등’ 제도적 틀의 재정비가 요구된다. 특히 “후기청소년(19~24세) 연령층 법령 중복 해소를 위한 특별법 또는 세부 시행령 마련”과 같은 세부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아청위, 청정책위 그리고 청정위의 컨트롤 타워 통합체계를 위한 법령 정비 및 관련 위원회·조정실 설치 근거와 권한의 명확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지원 부처를 신설할 경우 그 설립 근거 및 업무 범위를 법률로 마련하고, 통합조직의 기능 조정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법·지방행정조직법등 관련 법령에서 시군구의 아동·청소년·청년 담당 부서를 통일하고, 중앙-지방 연계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관 협의체’의 제도화도 검토해야 한다. 지방정부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설치 근거를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중앙-시도·기초 간 협력 프로세스를 제도화함으로써 전달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부 조직 개편에 대한 실제적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본 제언을 기초자료로 활용하되, 모든 가능성에 개방된 심도 있는 논의 및 의견 수렴을 통해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다. 통합체계로의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및 전문가 제안 그리고 해외사례를 반영한 단계적 통합 로드맵과 실행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급박한 법체계 정비는 관련 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전달기구 신설 등 제도 설계를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책의 합목적성과 실효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일관된 지원체계를 위한 필요조건들이다.

그런데 구축된 전달체계의 실질적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 있다. 핵심 정책과제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선결조건, 즉 정책과제 ‘5.4) 정보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NWD 구현’이다. ‘정보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이야말로 NWD 구현의 토대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정책 기본방향

- 포괄성, 전체성 등 12원칙에 입각한 정책 대상 중심 전달체계의 구현은 결국 아동·청소년·청년 교육, 복지, 고용의 NWD(No Wrong Door) 실제적 실현이다. 데이터 중심 근거 기반 정책 수립에 기초하여, 부처 칸막이로 인한 지원 공백을 해소하고, 복잡한 행정 절차 없는 원스톱 맞춤형 정보 제공과 신청 서비스를 통해 정책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 전달체계의 모델과 상관없이 빅데이터를 통한 정보 및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음.

정책 제안 유형	기존정책 확대 (V) 기존정책 개선 (V) 신규정책 ()	관련 부처	국무조정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주 정책과제	5.4) 정보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NWD 구현 6.1) 정보 및 데이터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및 부처 및 기관별 보유 정보의 연계 강화 6.2) 아동·청소년·청년 보호·지원 대상자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6.3) 전국 지자체 전달체계 성과지표정보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연관 정책과제	4.4) 정보 통합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정비 5.2) 실효적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5.6) 지방행정조직 사업 수행 구조의 체계성, 전문성 개선 5.10) 공공·민간 전달체계 협력 및 공조 네트워크 구축 7.1)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예산 확보 8) 실효적 통합적 전문가 양성 체계 구축		
우선 원칙	접근성, 평등성, 유연성, 개별성, 완결성		

1) 필요성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는 생애주기적 연속성과 함께 발달단계별 고유성을 함께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청년 각각의 시기에 필요한 니즈와 ‘아동 →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 → 청년’의 이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니즈, 즉 수평과 수직의 융합적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행정체계와 실행체계 내에 수평과 수직의 융합 연계 구조가 정착되어야 하고, 세 컨트롤 타워 간, 세 주무 부처 간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들 사이에 수평적 연계가 필요하다. 나아가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보편적 타당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의 실효성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거시적 차원에서는 전달체계의 생산적 결과와 함께 장기적 생산성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특히, 장기적 영향은 수혜자의 생애 소득과 취업 등 개인적 영역에만 국한

되지 않고 사회 전체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지속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달체계의 실제적 영향과 관련하여 빅데이터를 통한 포괄적 자료 수집과 분석, 그에 기초한 상시적 진단을 통해, 필요한 경우 전달체계를 보완,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 미시적 차원에서는 정책 대상자의 정보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원하는 제반 정보가 통합적으로 정리되어 제공되어야 하며, 시스템 내에서의 정책 신청은 물론 진행 상황의 가시적 확인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 중앙과 시도, 시군구가 연동되는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으로 사업 정보, 신청, 모니터링 등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실제적 구현에 있어 톱다운 방식, 즉 정부→지자체→시군구→읍면동→개인으로의 효율적 합리적 설계와 함께 개별 수요자 중심의 보텀업(bottom-up) 방식 역시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궁극적 목적은 결국 수요자 개개인의 만족과 행복 증진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앞에서 언급한 NWD 방식의 시스템 정착이 요구된다. 즉, 아동, 청소년, 청년 누구든 필요한 사안 및 문제가 있을 때, 공적 전달체계 안의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례관리자를 위해서도 정책 대상의 복잡한, 다층적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여러 부처의 자원에 대한 연계 통합 관리는 물론 대상의 서비스 요청 및 활용 이력 등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아동보호, 청소년 지원, 청년 자립지원 등 분야별 사례관리 정보의 연계 강화가 필요한 것이다. 전문가 조사에서도 NWD의 구현을 위해서는 ‘부처, 지자체 등에 분산된 정보 및 데이터 통합 관리정보 체계 구축’이 선결 조건으로 확인된 바 있다.

표 VII-15.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No Wrong Door의 국내 실현 방안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순위
관련 법령에 연계·협력 의무 및 정보공유 조항 신설 등 법제도 개선	4.33	1.23	4
부처, 지자체 등의 정보 및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구축	4.80	0.41	1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4.47	0.83	3
정책수요자의 서비스 접근성 확대(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AI 서비스 등)	4.67	0.49	2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총괄·조정 기구(컨트롤 타워) 설치	4.27	1.03	5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강화	4.27	0.80	5

결론적으로 NWD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지속적 실증적 검증 및 보완, 개선을 위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2) ‘경로 피로’와 ‘데이터 사일로’ 현상

본 연구는 3장 아동·청소년·청년 전환기 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히 청년 정책 대상자에게 ‘경로 피로’를 일으키는 중앙과 지방 간 중복 경쟁 문제, 그리고 타 부서·기관과의 정보공유와 통합을 제한하고 상호 연계성을 저해하는 ‘데이터 사일로’ 현상을 지적한 바 있다. 이 둘은 실효적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본적으로 해소되어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중앙·지방 플랫폼의 중복 경쟁 해소

먼저 중앙과 지방 간 플랫폼의 중복 경쟁은 19~24세의 후기청소년 또는 청년 대상 지원 정책 전달체계, 특히 청년정책 부문에서 주로 나타나며, 행정 및 재정의 비효율을 초래한다(변금선 외, 2023). 19~24세의 후기청소년을 포함한 청년 대상 지원 정책은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정부에서 먼저 추진되었다. 서울시는 2015년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하였고, 경기도 역시 2015년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 및 시행하여 각각 서울시와 경기도 청년의 주거 및 생활 안정, 고용 확대 및 일자리 질 향상 등 청년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는 여러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¹¹⁵⁾ 한편, 청년을 둘러싼 사회구조적 문제가 심화되고 청년 사회보장에 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중앙정부는 2020년 「청년기본법」 제정을 시작으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구축,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발 빠르게 청년정책 확대 및 다변화를 추진하였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에서 청년정책 추진이 활발한 결과, 최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정책 및 플랫폼의 중복 경쟁에 대한 우려 또한 적지 않다(김기현, 2022; 변금선 외, 2023). 예를 들어 중앙정부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의 5대 정책영역에서 다양한 정책사업을 설계하였고(관계부처 합동, 2023a), 이에 관한 통합적 정보

115) 경기청년포털(<https://youth.gg.go.kr>), 청년몽땅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제공 및 상담 등을 위해 온라인 청년정책 플랫폼인 ‘온통청년’을 운영하고 있다.¹¹⁶⁾ 지방정부 또한 지역 청년에게 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소통과 참여를 촉진하고자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 중으로, 현재 ‘온통 청년’ 플랫폼에서 서울특별시(청년몽땅정보통),¹¹⁷⁾ 부산광역시(부산청년플랫폼 청년G대),¹¹⁸⁾ 대구광역시(대구광역시 청년정책),¹¹⁹⁾ 인천광역시(인천유스톡톡),¹²⁰⁾ 경기도(경기청년포털),¹²¹⁾ 충청남도(충남청년포털)¹²²⁾ 등 17개 시도 플랫폼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움직임은 한편으론 지원사업과 서비스 다각화,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quality) 제고, 정책 대상자의 선택권 확대 등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지원정책과 서비스 중첩, 행정 자원의 분산과 효율성 저하를 가져올 수 있어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 재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김기현, 2022; 이재경, 원석현, 박배민, 2024;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 2024; 황정운, 이병현, 2024). 실제로 오수연, 김성엽, 박성민(2021)의 연구에서 청년 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중복 경쟁으로 말미암은 ‘정보의 중복과 혼란’, ‘프로그램 비교·신청 과정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전달체계의 연계·협력 및 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런데 중앙과 지방 간 중복 경쟁 문제는 정책 집행의 비효율에 그치지 않고, 정책 대상자인 청년에게 ‘경로 피로’를 일으킬 수 있다. ‘경로 피로’는 ‘정책 대상 집단이 여러 정책서비스 창구와 플랫폼에서 유사한 정보를 반복적으로 접할 때 나타나는 정보 과부하, 동일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 여러 방식, 여러 채널에서 접근해야 할 때 느끼는 행정적 피로, 정책 참여 동기 저하와 이용 포기 등의 현상’(오수연, 김성엽, 박성민, 2021; 이재경, 원석현, 박배민, 2024)이다.

정책의 중앙과 지방간 중복 경쟁 문제 해소 방안은 중앙과 지방의 역할 조정에 있다. 다시 말해 지자체의 독립성을 강화해 각 지자체는 정책적 필요성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고 중앙정부는 예산 지원과 정책 조율 및 조정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초광역 단위 협력과 지역 공동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중복 경쟁을 줄이고 정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각 지자체의 지역 수요 맞춤형 정책 시행은 수요자 중심이고, 또 정보 및 정책 접근성을

116) 온통청년. 온통청년 소개. <https://www.youthcenter.go.kr/youthIntro/introduce/introAbout>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117) 서울청년플랫폼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118) 부산청년플랫폼 청년G대. <https://young.busan.go.kr/>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119)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https://www.daegu.go.kr/YouthPolicy>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120)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 <https://youth.incheon.go.kr/>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121) 경기청년포털. <https://youth.gg.go.kr/>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122) 충남청년포털. <https://youth.chungnam.go.kr/>에서 2025년 10월 20일 인출.

높이며 '경로 피로'를 줄이는 효과를 유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중앙정부는 정책과 예산 조율 중심, 지방정부는 지역 특성과 지역 수요자인 아동·청소년·청년의 요구에 상응하는 맞춤형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상호협력해 나갈수록,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중앙 지방 간 경쟁과 비효율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2) 플랫폼별 데이터 사일로 현상 해소

'데이터 사일로' 현상은 '조직 또는 부서가 데이터와 정보자원을 독립적으로 저장·관리함으로써 타 부서·기관과의 정보공유와 통합이 제한되고 상호 연계성이 저해되는 구조적 현상'을 의미한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25). 본래 '사일로(silo) 현상'은 경영학에서 '타 조직 또는 부서와 소통, 공유하지 않아 업무 효율성과 구성원 간 시너지를 떨어뜨리는, 부서 간 장벽이나 부서 이기주의 등 커뮤니케이션 문제'를 의미하는데, '사일로'가 '곡식이나 작물 등을 모아놓는 굴뚝 모양의 저장고'를 뜻하는 데서 유래했다(매일경제용어사전, 2025).

이러한 데이터 사일로 현상은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영역에서도 발견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대전세종연구원 등이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에 관해 협동 연구한 바에 따르면, 청년정책 관련 데이터와 정보 또한 '기관과 부처, 정책별로 분산 관리되어 다른 기관 또는 부처에 공유되거나 연계되지 못해 통합적 정책 추진과 서비스 연계를 어렵게 한다'(장근영 외, 2023). 중앙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 정보 공개 및 공유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인 것이다.

현재 청소년 대상 자립 지원 전달체계와 서비스를 보면, '아동양육시설'은 '보호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아동보호치료시설'은 '아동,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 등에게 보호, 치료 등을 제공', '아동공동생활가정'은 '보호대상 아동에게 보호와 양육, 주거 여건과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제4호). 다음으로 후기청소년 또는 청년 대상의 자립 및 고용 지원 전달체계를 살펴보면,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은 이들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 등)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취업준비 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위기청소년 대상의 또 다른

자립지원 전달체계인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여성가족부 산하 시설로 ‘일정 기간 청소년쉼터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해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이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제2호). 이들 시설은 각각 위기청소년, 보호·퇴소 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 등에게 주거 환경과 함께 진로·진학 지원, 취업교육과 직업체험, 금융·경제교육, 자립역량 훈련, 심리·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청년정책의 핵심 전달체계인 ‘청년센터’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 2에 의거, ‘청년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로, 주로 진로·취업 상담, 취업역량 훈련 및 일자리 연계 등 구직활동과 사회활동 지원, 심리상담 지원, 청년정책 정보 제공 및 참여 지원 등에 초점을 두고(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2025), 고용보험법에 근거한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의 실무기관으로서 구직 희망 청년에게 ‘직업·진로지도, 직업교육과 직업능력개발, 취업지원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고용센터 및 고용관련 부서 운영 규정」). 그런데 이들 전달체계 간 데이터와 정보, 서비스 이력 등이 분리되어 상호 교류, 이관 등 연계되지 않아 자립준비청년을 비롯한 취약·위기 청년에 대하여 연속적이고 통합적인 고용지원과 자립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백혜정, 김지연, 김승경, 노혜진, 2023). 예를 들어 아동양육시설을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시설 퇴소 전, 즉 청소년기의 상담, 진로, 자립 지원 정보가 자립지원시설(자립생활관) 또는 청년센터, 고용센터 등 청년 대상 전달체계로 연계되지 못해 서비스 이용을 위해 동일 정보를 재입력하거나 이러한 과정 속 정책 이용을 포기하기 쉽다(백혜정 외, 2023).”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데이터 사일로 현상을 지적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청소년 대상 전달체계와 청년 대상 전달체계 간, 자립 지원 전달체계와 고용지원 전달체계 간 또는 주관 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간에도 발생한다(장근영 외, 2023). 문제는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 단순히 행정적, 관리적 차원에서의 데이터 불연속, 비효율적 행정 등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정책 대상자에게 연속적, 통합적인 서비스, 생애주기 변화에 따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여 정책 대상자가 반복해서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는 ‘경로 피로’가 가중되어 서비스 이용의 포기, 중단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백혜정 외, 2023).

데이터 사일로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 먼저 기술적 방식으로는, 데이터 통합 플랫폼의 도입이 있다. 데이터의 중앙관리를 통한 데이터 분리의 방지 시스템이다. 또 데이터 관리 정책과 절차의 명확성을 전제로 데이터 검색, 활용, 공유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열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부서 간 소통과 협업,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데이터 사일로 해소는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술적 대처와 조직문화 개선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이유는 세 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실효적 결과와 함께 장기적 생산성에 대한 실증적 지속적 검증, 둘째, 정책 대상자의 차원에서, 정보 접근 가능성 제고, 원하는 제반 사업 정보 제공, 신청, 모니터링 등 통합적 원스톱 서비스 제공 그리고 셋째, 정책서비스 제공자의 차원에서, 정책 대상의 복잡한, 다층적 문제의 적절한 지원을 위한, 여러 부처의 자원에 대한 연계 통합 관리 및 서비스 요청 및 활용 이력 등을 포함한 데이터베이스 접근성 제고다. 첫째의 요구, 즉 전달체계의 실효성 및 장기적 생산성에 대한 실증적 지속적 검증은 매년 다양한 연구와 감사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의 현실적 실제적 필요성은 둘째와 셋째 이유, 즉 수요자와 사례관리자의 요구로부터 발생한다. 다시 말해 아동·청소년·청년정책 대상은 누구나 교육, 복지, 고용의 영역에서 필요한 원스톱 통합 정보 및 실제 서비스 제공을 원한다. 또 서비스 제공자는 가장 적절한 지원을 위해 정책 대상은 물론, 가능한 모든 사업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싶어 것이다. 그런데 본 보고서의 이론적 배경을 통해 제시한 것처럼 정부 각 부처는 필요에 따른 정보공유 포털을 보유하고 있다.

표 VII-16. 아동·청소년·청년정책 관련 정보공유 포털

번호	포털명	설명	운영주체
1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법정부)	법정부 차원의 복지 관련 통합 포털로, '행복이음'으로 연계되어 복지 업무 담당자가 효율적 복지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복지로'로 연계되어, 복지 대상자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	복지로	각 부처의 복지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검색에서 신청까지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일반 국민을 위한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행복이음	서비스 지원 대상자 정보 및 사회복지 급여의 통합 관리, 그리고 지자체 복지 업무 지원을 위해, 개인별 가구별 DB로 구축한 중앙 통합 정보시스템(공무원 등 전용)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번호	포털명	설명	운영주체
4	아이사랑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보 및 전문가 상담, 시간제보육 예약, 입소대기신청, 보육료 결제, 어린이집이용 불편신고 등 어린이집 이용 관련 어린이집 이용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유아양육 부모를 위한 대표 포털	보건복지부, 한국사회보장정보원
5	e청소년	대한민국 청소년을 위해 청소년활동진흥법 제8조에 따른 활동, 복지, 보호의 통합 정보서비스 시스템	성평등가족부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6	청소년 1388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2조의2에 따라 청소년의 고민상담, 상담·복지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정서·행동장애 청소년지원,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청소년 지원 종합 포털	성평등가족부 한국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
7	온통청년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 일자리, 교육, 문화에 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종합 플랫폼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 한국고용정보원

* 출처: 1)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법정부). 소개. <https://www.ssis.or.kr/lay1/S1T750C767/contents.do>에서 2025년 9월 8일 인출.
2) 복지로. 복지로 소개. <https://www.bokjiro.go.kr/ssid-tbu/twatwa/wfareNw/selectWfareNwSubMain.do>에서 2025년 9월 8일 인출.
3)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https://www.ssis.or.kr/lay1/S1T749C765/contents.do>에서 2025년 9월 20일 인출.
4) 아이사랑. 소개. <https://www.ssis.or.kr/lay1/S1T1793C1794/contents.do>에서 2025년 9월 8일 인출.
5) e청소년. e청소년 소개. <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eYouthIntroForm.yt?curMenuSn=395>에서 2025년 9월 8일 인출.
6) 청소년 1388. 청소년 1388이란?. https://www.1388.go.kr/OCC/YTOSP_SC_OYY_01에서 2025년 9월 8일 인출.
7) 온통청년. 온통청년 소개. <https://www.youthcenter.go.kr/youthIntro/introduce/introAbout>에서 2025년 9월 8일 인출.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법정부)은 법정부 차원의 복지 관련 통합 포털이다. 홈페이지를 보면, 법정부 각 부처 및 정보 보유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7개 부처, 170개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정보와 지원 대상자의 자격 정보, 수급 이력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복지 업무 담당자가 관리정보를 기반으로 민원 대응, 업무처리, 사업 설계 등 효율적 복지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대상자에게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소개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행복이음’을 통해 각 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을 지원하고, 또 ‘복지로’에도 연계되어, 일반 국민이 직접 서비스를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행복이음’의 도움으로 사회복지급여 대상자를 통합 관리하고, 개인별 가구별 DB로 중앙에 통합 구축된 복지 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대국민 서비스 ‘복지로’로 제공된 통합 DB를 활용하여 정책 대상

수요자는 서비스를 검색 신청, 열람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서비스>를 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적어도 보호 복지에 관한 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통합정보시스템이 중앙 정부 → 광역 → 기초로의 다층 전달체계 모델로 구축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스템 구성도>를 보아도 ‘복지사업 운영기관’과 ‘이용 기관’과의 연계를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VII-9.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시스템 구성도123)

다만 통합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서 ‘행복이음’과 ‘복지로’뿐만이 아니라 ‘청소년 1388’과의 연계도 필요할 것이다. 또한 ‘e청소년’의 경우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8조에 근거한 것인 만큼, 활동 등 문화복지 통합정보서비스 포털로 전문화한 상태에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과 연동 통합되고, 정보서비스 가운데 ‘복지’ 관련 제반 정보는 사회보장정보

123) 한국사회보장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소개. <https://www.ssis.or.kr/lay1/S1T750C767/contents.do>에서 2025년 9월 8일 인출.

시스템(범정부)으로의 이전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무엇보다, <운영 효과>로 제시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각 부처 복지 행정업무의 효율화 및 정확한 복지 대상자 선정 및 복지 재정 누수 방지’를 볼 때, 복지의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는 NWD 시스템에 근접한 것처럼 보이고, 본 연구가 제시한 12가지 원칙에도 상당 부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술한 대로, 내용적 측면에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 현장에서선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간 업무 정보 공개나 공유가 부처이기주의나 칸막이 현상 등으로 방해받는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 온전히 해소되고 있지 않고, 그에 따라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영역에서의 통합적 정책 추진과 서비스 연계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기술적 및 조직적 개선책의 적극적인 추진이 요구된다. 동시에, 통합정보시스템의 제반 업무를 미래지향적으로 이끌 리더십, 시스템의 정책 기여도 여부의 지속적 조사, 분석, 평가, 그리고 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 등의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관련 직무 종사자 대상 데이터 처리 지식 및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직무, 보수교육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생산적 정보 통합과 실효적 NWD 확립을 위한 세부 정책을 추가로 제안하고자 한다.

① AI 기반 생애주기 맞춤형 통합 정책 플랫폼 설계 및 구축

AI 기반 통합 정책 플랫폼 구축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과 서비스의 추천이 가능하도록 연계할 것을 제안한다. 이 경우 해당 플랫폼을 통해, 주거·취업 등 자립 준비 청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정책 수요자 누구에게나 생애 전 단계에 걸쳐 원스톱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지원되는 NWD의 기반이 구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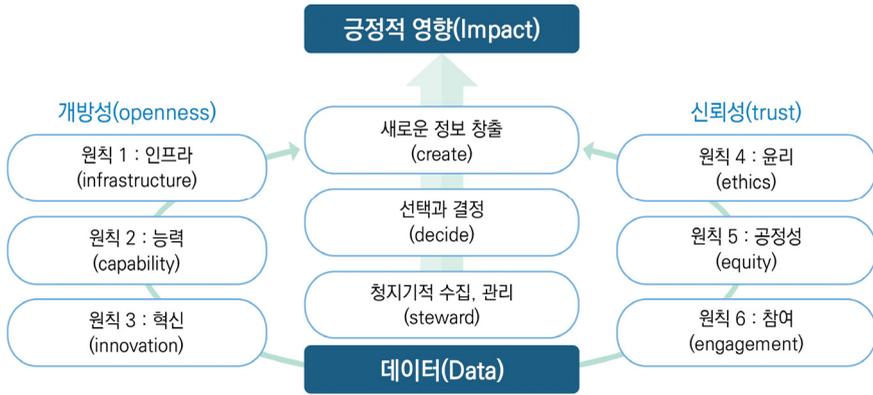
② 전달체계 성과지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아동·청소년·청년 통합 전달체계’의 안정적 실효성은 앞에서 제시된 12원칙의 준수 여부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증되어야 한다. 지역별 전달체계의 편차 문제를 해소하고, 서비스의 실효성과 보완 및 개선점을 12원칙에 근거하여 파악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의 전달체계 성과지표 공개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운영

상 문제점으로 지방자치단체별 높은 편차, 기능의 과도한 분절로 인한 효율성 저하 등이 있다. 이로 인해 거주 지역에 따른 정책서비스 접근성과 품질의 불균형이 야기되고, 어떤 효과성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더욱이 전달체계의 안정성과 실효성의 지속적 검증과 개선을 위한 평가지표 체계도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성과 측정 및 공개를 위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제안한다. 정책 전달체계의 성과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들(서비스 만족도, 취약계층 지원 실적 등)을 표준화하여 수집·분석하고, 지자체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는 우수 사례 확산, 정책의 안정성·실효성·지속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나아가 성과지표의 공개로 인한 건전한 경쟁 유도는 서비스 수준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정보공유절차는 법적 영역 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책 대상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데이터 보호가 필요하다. 앞의 해외 사례에서 영국의 엄격한 법적 정보공유절차 준수 사례처럼, 우리도 절차상 정보 요청 기관의 구체적인 필요성, 활용 목적, 요청 데이터 범위의 명확히 한계 및 법적 근거와 긴급성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데이터 제공기관의 즉각적 정보 제공 및 중복 제공 또는 미 존재 데이터의 즉시 통지가 요구된다. 나아가 익명화 및 데이터의 최소화 원칙과 공동 관리 및 감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영국의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및 'Data Protection Act 2018'처럼 데이터 보호 조치 및 법적 기반 마련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유지하는, 다기관 협력체계 내의 법적, 기술적 관리하에서 안전한 정보공유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다만 이미 언급하였듯,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와 제18조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의 엄격한 제한이 부처 간 연계 시스템 구축의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공공복지서비스 연계 및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동 활용을 위한 정보 이용의 예외' 조항의 신설을 추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 공동이용)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 범위 역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국무조정실이 공유할 정보 항목들을 대통령령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통합정보시스템의 지속적인 기술과 정보 업데이트, 정보공유와 데이터 보호의 생산적 수행을 통해, 영국 오픈 데이터 연구소(Open Data Institute) 변화 이론(Theory of Change)의 실제적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서정아, 성윤숙, 송태민, 2021).



* 출처: ODI. <http://theodi.org>에서 2022년 10월 15일 인출.

그림 Ⅷ-10. ODI의 변화 이론

통합정보시스템이 완비된 '아동·청소년·청년 통합 전달체계'의 실질적 생산성이 보장받기 위해서는, 제시된 12원칙의 준수가 요구된다. 그중에서도 '전체성'과 '포괄성'의 원칙은 가장 우선되는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모든 정책서비스를 모든 아동·청소년·청년에게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통합 전달체계의 궁극적 목적이다. 따라서 '전체성'과 '포괄성'의 원칙 준수를 위한 정책과제 5.2) '전체성에 입각한 실효적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과 정책과제 5.8) '취약(위기) 상황 아동, 청소년, 청년의 포괄적 파악 및 안정적 지속적 지원을 위한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제언을 순서대로 제시하고자 한다.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서비스 및 정책 범주의 전체성 확보

▶ 정책 기본방향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제시된 12원칙 중 전체성의 원칙은 아동·청소년·청년이 인간 존엄과 자유훈에 기초한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즉 어떤 서비스도 간과되거나 누락될 수 없다는 서비스 비배제성의 원칙임. 따라서 아동·청소년·청년에게 행복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삶의 제반 영역에서의 모든 정책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정책제안 유형	기존정책 확대 () 기존정책 개선 (V) 신규정책 ()	관련 부처	국무조정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주 정책과제	5.2) 전체성에 입각한 실효적 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5.3) 전달체계의 생애주기 연속성 확보		
연관 정책과제	2.1) 주무 부처의 효율적 통합 및 일원화된 행정 시스템 구축 4.3) 부처 간, 지역 내 서비스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5.6) 지방행정조직 사업 수행 구조의 체계성, 전문성 개선 5.9) 전달체계 역할 재정비 및 연계·협력 강화(중앙-지방, 공공-민간 등) 5.10) 공공-민간 전달체계 협력 및 공조 네트워크 구축 5.11) '민관협의체'의 역할 정립		
우선 원칙	전체성, 평등성, 유연성, 완결성, 지속성		

청소년기본법 제2조(기본이념)를 보면 청소년의 '정당한 대우와 권익 보장', '자유로운 활동', '보다 나은 삶' 그리고 '유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를 통한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그 이념으로 삼고 있다. 그리고 '참여 보장', '능동적 삶의 실현', '성장 여건과 사회환경 개선' 그리고 '통일 대비 자질 향상'의 4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한다. 나아가 제3조에서 이러한 이념과 방향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의 세 가지 청소년정책 영역을 제시하고, 5조에서 이를 압축하여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으로 적시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기본법」 제2장, 제9조(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에서 '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 청소년정책 대상을 '청소년육성의 모든 영역'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육성'을 청소년정책과 동일시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일단 교육 영역이 간과되고 있다. '청소년육성'에 대한 정의에서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라고 적시하고 있으나, 교육을 단순히 청소년육성의 보완 요소 정도로만 규정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또 ‘근로 청소년 보호’는 언급하면서도 ‘진로 교육 및 활동’ 등에 대한 규정은 발견할 수 없다. 문제는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정책 영역이 청소년 삶과 행복 전체라기보다는, ‘청소년육성’에 국한된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에 반해 아동복지법 제2조 ‘기본이념’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 발달’, ‘행복’ 그리고 ‘아동의 이익 최우선 고려’를 명시하고, 아동의 행복한 삶 전체가 아동정책의 영역임을 밝히고 있다. 다만 현재 보건복지부의 현실도 ‘아동정책 전체’가 아니라 ‘복지 영역’에 주로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전체성의 이념은 있으나 전체성의 실현이 부족한 것이다. 아동복지법을 ‘아동기본법’으로 보완, 수정, 확장하고자 하는 노력은 아마도 아동정책의 전체성을 확보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실질적으로, 전체성의 원칙에 가장 근접한 경우는 청년정책으로 보인다. 청년기본법 제2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기본이념으로, 청년정책은 제3조에 적시된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신장,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 고용 촉진, 능력 개발, 복지 향상 등을 통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 즉 청년의 실질적 삶과 연계된 제반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

아마도 성평등가족부의 경우 국무총리실 산하가 아니라,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관련 위원회의 장으로 있는 독립 정책 주무 부처인 때문일 수 있다. 또 과거 청소년육성법(1987년 제정)을 폐지하고 1991년 청소년기본법을 제정하면서 청소년육성의 범위를 청소년(수련)활동, 복지, 보호로 제한한 이유도 있을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국무총리실 산하인가 아닌가’는 문제의 본질은 아닐 것이다. 만약 현재의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별개의 주무 부처를 정책 대상별로 공고히 정립하고, 각각의 부처가 정책 대상 관련 정책 전체를 담당하도록 한다면, 일례로 보건복지부가 ‘교육, 복지, 고용’ 영역 모두를 포함한 아동정책 전체를 담당하고, 성평등가족부와 국무조정실도 각각의 정책 대상에 대해 그렇게 하도록 한다면, 그러한 구조하에서 지속성에 기초한 안정적, 실효적 정책 전달체계의 구축은 쉽지 않을 것이다. 교육의 통합적 기능을 교육부가 담당하고, 고용은 고용노동부, 주거는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 등의 기능 중심 부처 전문화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아동·청소년·청년정책서비스를 전체성의 원칙에 부합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애 주기적 연속성을 지닌 정책 영역의 체계적 확보가 필요하다. 앞의 그림 VII-11에서 확인한 것처럼, 교육, 복지, 고용의 기본 정책 영역에 복지의 여섯 정책 영역이 포함된

아동, 청소년, 청년 생애주기 정책 영역은 방대하고 복잡하며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표 VI-2. '아동·청소년정책 영역 비교'와 표 VI-3 '청소년·청년정책 영역 비교'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 및 통합정책 영역'을 정리한 바 있다.



그림 VII-11.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 및 통합 영역

이를 '전체성의 원칙과 연속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세부적으로 체계화하여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편의상 세과제 번호는 생략함).

표 VII-17.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영역 체계화

영역	대상	아동 정책 영역		청소년정책 영역		청년정책 영역	
		소과제	세과제	소과제	세과제	소과제	세과제
법령 정비	아동 중심 정책 반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가칭) 아동기본법 제정	법·재원 등 청소년정책기반 체계화	- 「청소년기본법」 개정	청년 관련 연구기반 조성 및 법령 정비	-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분석·평가
	아동정책 영향평가 전면 실시		- 지역 아동 정책으로 영향평가 확대	지자체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내실화	- 지자체 청소년정책 분석·평가 개선		- 청년 관련 법령 체계화
교육	학습 경쟁 완화, 학생 중심 맞춤형 교육		- 학생 중심 교육과정 운영 - 진로·적성 맞춤형 교육 강화	진로체험 및 교육 지원	- 진로 탐색 활동 지원 - 진로 체험 기회 확대 - 청소년 진로 정보 제공 및 교육 강화 - 청소년 진로교육 - 학교 밖 청소년 온라인 지원 강화	온라인 지식공유체계 강화	
				자기주도적 활동 프로그램 확대	- 청소년 자기도전포상제 운영 활성화 - 프로젝트 기반 학습 활동 강화		
복지	지역, 연령 등 감안한 맞춤형 놀이·여가 지원		- 지역사회 놀이 지원 체계 구축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활동 강화	- 지역 내 청소년활동 공간 설치		
			- 영유아- 초등학교 놀이 시간과 공간 확충	학교 연계 청소년활동 지원	- 청소년활동 프로그램과 강화 - 학교시설 활용 청소년활동 확대		
	지역, 연령 등 감안한 맞춤형 놀이·여가 지원 (계속)		- 아동 특성을 고려한 문화 활동 지원	테마별 활동 기회 제공	- 문화예술 분야 활동 지원 - 생활체육 및 스포츠 체험 확대	청년 문화활동 기반 강화	- 생활속 문화시설 (공공도서관· 문화센터·창작 공간 등) 확대
			- 여가 활동의 사회적 경제 연계	지역 단위 청소년정책 협력 강화	- 지역사회 청소년 사회공헌사업 연계	대학생 교육비 부담 완화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역 아동복지사업 개선		- 지역 불균형 개선	지역 청소년 정책 협력 강화	- 청소년 성장지원 네트워크 전국 확대	청년 주도형 교류 지원	- 대학생 대상 해외연수 기회 확대	
		- 시도 단위 아동정책 조정 지원 체계 마련		- 청소년정책- 지자체-교육청 간 협력강화	지역 청년정책 균형발전	- 청년정책 지역협력 체계 마련	

영역	대상	아동 정책 영역		청소년정책 영역		청년정책 영역	
		소과제	세과제	소과제	세과제	소과제	세과제
	행정·사법 절차상 아동 의견표명권 보장	- 정책 결정시 아동참여 제도화	청소년 참여기회 활성화	- 청소년 자치활동 참여 확대 -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확대 - 청소년정책 참여활동 지원	- 청년이 참여하는 정부 위원회	- 청년참여20-30	
			청소년 권리 보장 및 대표성 제고	-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대표성 강화		- 대학 내 의사결정 기구 청년 참여 강화	
	아동이 중심에 있는 아동권리 보호	- 우범소년 제도 개선 추진	청소년 선도보호 및 회복지원	- 소년범죄 통계관리 및 인프라 확충		- 주거정책 결정 기구 청년 참여 확대	
	아동 권리 사각지대 해소	- 일하는 아동 권리 보호	근로유형별 청소년 보호 강화	- 근로 관리 강화 - 현장실습생 권리 보호			
	아동 친화형 여가 환경 조성	- 아동친화 도시 제도화 확산	부담처우 예방 보호 및 근로 보호 인식 확산	- 근로청소년 부당 처우 구제 지원 - 근로보호 및 직업윤리 교육 지원 - 사업자 근로 보호 교육 실시			
			청소년 친화형 생활 환경 구축	- 지역 내 청소년 친화 디자인 조성			
아동의 건강 관리 강화	- 질병예방을 위한 생활위생 관리 강화	청소년 건강 및 생활 지원		- 청소년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지원 - 건강 생활 습관 지원			
	- 효과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3대 시범사업 실시						
아동의 마음 건강관리 강화	- 공공 마음건강 돌봄 인프라 확충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청소년상담 1388 시스템 고도화			

영역	대상	아동 정책 영역		청소년정책 영역		청년정책 영역	
		소과제	세과제	소과제	세과제	소과제	세과제
생활 속 안전관리 강화		- 어린이 주요 활동 환경 안전관리 강화	안전한 청소년활동 기반 마련	- 청소년활동 안전인식 확산			
		- 어린이 먹거리 안전-위생 관리 강화	청소년 건강 및 생활 지원	- 건강한 생활습관 지원 및 급식 사각지대 완화	청년 신체건강 인프라 확대	- 청년 국민건강 검진 무료 실시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	학교폭력 예방 강화	- 학교폭력 방지 및 대응체계 활성화 - 학교폭력 피해자 회복 지원			
		- 사이버폭력 예방 및 대응강화		- 사이버폭력 예방교육 및 인식 확산			
정보연계-협력 등을 통한 아동학대 근절		- 정보공유-협력 연계협력 강화	지역 중심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 활성화 - 전문기관-학교 간 청소년 위기 공동대응 협력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 위기 청년 자립 지원	
		- 인프라의 과감한 개선		-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 확대 운영		- 청년한부모 자립 지원	
공공 중심 아동보호체계 인프라 구축		- 공공 인력 확충 및 기관별 업무 전문화	지자체 청소년정책 전달체계 내실화	- 청소년정책 전담공무원 확대 및 청소년육성 위원회 운영 활성화		- 이주배경 청년 지원	
		- 전담인력 전문성 등 역량 강화	청소년지도자 지원 및 전문성 제고	-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			
아동 돌봄 확충 및 운영 내실화		-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및 돌봄 서비스 질 제고	지역사회 연계 학교 안팎 청소년활동 강화	- 지역 내 청소년 방과후 활동 및 돌봄 활성화			
취약아동에 대한 국가책임의 연속성 확보		- 아동주거 빈곤 문제 해소를 위한 지원강화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 확대	- 가정 밖 청소년 경제 및 주거 지원 확대			

영역	대상	아동 정책 영역		청소년정책 영역		청년정책 영역							
		소과제	세과제	소과제	세과제	소과제	세과제						
다양한 배경의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다양한 배경의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	- (한부모) 자녀양육 및 - 가정 양립 지원 확대	청소년(한)부모 생활 양육 지원	- 청소년(한)부모 사례관리 및 학업 지원 - 청소년(한)부모 양육비 지원 강화									
								새로운 건강 위험요인 대응 강화	스마트폰 등 바른 사용 역량 강화	정보시스템 기반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운영	-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청소년상담 1388 시스템 고도화		
										디지털 활동 및 교육 지원	- 디지털·미디어 문해력 (Literacy) 함양 - 디지털 윤리규범 확산·실천		
										디지털 역기능 예방	- 청소년의 미디어 과의존 예방 및 치유지원		
전자담배 등 신종 담배의 사용 억제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 유해약물 유통 차단 및 오·남용 예방 강화											
아동 성범죄 예방 및 '유아 성행동 문제' 관리 강화	아동 대상 신종 성범죄 예방 및 처벌 강화 추진	청소년 대상 성범죄 대응 강화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 파악 -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검거체계 강화										
		- '유아 성행동 문제' 대응체계 강화	청소년 성범죄 피해 지원 및 예방교육 확대					- 성범죄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 성범죄 예방 교육 확대					
다양한 배경의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계속)	다양한 배경의 아동에 대한 지원 강화(계속)	- (이주배경 아동) 서비스 다양화 및 의료 등 필수 서비스 지원	다문화 청소년 지원 강화	- 다문화가족 청소년 학습 및 사회적응 지원 - 이주배경청소년 종합 통계 구축 및 지원	대학생 및 청년의 진로 지원 강화	- 대학일자리센터 운영 대학생 진로탐색 강화 - 대학생 진로탐색 지원							
		- (장애아동) 장애아 가족양육 및 방과후 활동 서비스 확대 추진	장애 및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	- 장애청소년 부모 지원 및 경계선지능 청소년 지원방안 마련									

대상 영역	아동 정책 영역		청소년정책 영역		청년정책 영역	
	소과제	세과제	소과제	세과제	소과제	세과제
고용	취약계층 교육 등 지원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강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각지대 해소	- 학교 밖 청소년 발굴·연계 협력 강화		
				- 학교 밖 청소년 학업·진로지원 확대		
				- 학교 밖 청소년 활동 지원 강화		
				-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인프라 확대		
			고졸청년 취업 및 사회 정착 지원	- 직업계고 학생 현장실습 내실화	취업준비	- 청년성장 프로젝트 - 구직자 도약보장패키지 - 직업심리검사 - 잡케어 - 청년도전지원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근로청소년 부당처우 예방 및 보호	- 청소년청년 근로권익센터 운영 - 청소년근로 보호센터 운영	일자리 찾기	- 구직자 취업 지원 서비스 - 미래내일 일 경험 - 청년해외취업 지원 - 국민취업지원 제도 - 여성취업지원 및 경력 단절 예방
					노동·금융· 주거 청년권익 보호	-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 청소년·청년 근로 권익센터 운영

* 출처: 관계부처 합동 (2020).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관계부처 합동 (2023).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관계부처 합동 (2023a).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21~'25)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아동·청소년·청년 통합 정책 영역’의 규모와 구조를 고려할 때, 기존의 사안 중심적 정책 영역 설정을 유지할 경우, 2장의 ‘이론적 배경’과 3장의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문제점’ 및 ‘전문가 의견조사’ 등에서 확인한 것처럼, 담당 주무 부처 간 정책 영역의 통일된 틀이 부재하여, 전체성의 측면에서 누락 된 정책 영역이 있거나, 생애주기적 연속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않고 분절되는 문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부처 통합과 관련하여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든, 아동·청소년·청년 통합정책 영역에서 기능별 역할 분장은 필요해 보인다. 다시 말해, 아동, 청소년, 청년의 생애주기적 행복을 위해 ‘정책 대상 중심이 아닌 기능 중심 주무 부처 내지 부서 조정’, 즉 어떤 부처 또는 어떤 부서가 ‘어떤 정책 영역을 담당하는 기능 주체’가 될지에 대한 역할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역할 조정은 사실 특정 목적의 실효적 구현을 원하는, 기업이나 병원 등 조직 공동체의 기본 전략이고, 따라서 아동·청소년·청년의 행복 실현과 국가 공동체의 안정 및 발전을 원하는 정부의 전략이기도 할 것이다. 기능 중심 정부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각 부처 및 부서는 생애주기적 정책 영역을 구체적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해당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정책 대상은 전체성의 원칙에 부합하는 생애주기적 정책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체성 확보’의 원칙 구현을 위한 3개의 세부 정책 제언을 보완, 첨가하고자 한다.

① 정책 수요자 참여형 정책 설계 시스템 도입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책 대상자가 직접 정책 설계에 참여할 수 있는 상시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온라인 정책 제안 플랫폼 운영이나 지역별 공청회, 또는 청년 패널 제도 등을 마련할 수 있다. 나아가 수렴된 의견의 실제화를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수요자 중심 정책과 정책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정책 현장의 체감 효과를 높이고, 정책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 만족도와 신뢰도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이다.

② 정책 간 전환기 연계 매니저(Transition Manager) 제도 도입

생애주기의 전환기, 지원 공백 및 단절 문제의 해소를 대상자 밀착 지원을 위한 '전환기 연계 매니저(Transition Manager)'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 이 경우, 당사자 1:1 지정을 통한 정책과 서비스 안내 및 관련 행정 절차의 생산적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정책 수요자에게 대한 지속적 상담과 멘토링 제공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전환기 연계매니저'의 양성 문제 등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③ 민간 협력형 전달체계 실험 모델 도입

공공 부문 위주의 현행 전달체계에서는 민간의 혁신적 자원과 아이디어를 활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민간 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의 창의적 서비스 모델의 제도적 연결이 원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정부 지원의 공백은 물론 불충분한 서비스 제공의 문제가 잔존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 스타트업과 사회적 기업의 역량을 전달체계에 접목하는 협력 모델의 시범 도입을 제안한다. 일례로 지역의 공유주택 플랫폼과 연계한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지원 서비스 강화, 멘토링 앱이나 온라인 정신건강 상담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통한 공공 서비스 보완 등이 있다. 물론 시범 사업 운영을 통한 효과성 평가 후,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단계적 추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의 관리·지원 장치를 병행함으로써, 민간의 혁신성과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 정책 기본방향

- 아동·청소년·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제시된 12원칙 중 포괄성의 원칙은 모든 정책 대상의 비배제성을 의미함. NWD(No Wrong Door)의 실제적 실현이 중요하지만 NWD의 보편적 수혜성은 우리 사회의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임. 따라서 일반 아동·청소년·청년 외에, 취약상황에 놓인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정책 대상으로서의 포괄적 파악이 필요함.

정책제안 유형	기존정책 확대 () 기존정책 개선 (V) 신규정책 ()	관련 부처	국무조정실, 교육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정책과제	5.8) 취약(위기) 상황 아동, 청소년, 청년의 포괄적 파악 및 안정적 지속적 지원을 위한 통합체계 구축		
연관 정책과제	2.2)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범주 재정립 4.3) 부처 간, 지역 내 서비스 통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5.9) 전달체계 역할 재정비 및 연계·협력 강화(중앙-지방, 공공-민간 등) 5.10) 공공·민간 전달체계 협력 및 공조 네트워크 구축 5.11) '민관협업체'의 역할 정립		
우선 원칙	포괄성, 접근성, 평등성, 완결성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목록 페이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서비스 신청자에 대한 체크 목록이 나온다.

생애주기	가구상황	관심주제	
<input type="checkbox"/> 임신·출산	<input type="checkbox"/> 저소득	<input type="checkbox"/> 신체건강	<input type="checkbox"/> 정신건강
<input type="checkbox"/> 영유아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input type="checkbox"/> 생활지원	<input type="checkbox"/> 주거
<input type="checkbox"/> 아동	<input type="checkbox"/> 한부모·조손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input type="checkbox"/> 문화·여가
<input type="checkbox"/> 청소년	<input type="checkbox"/> 다자녀	<input type="checkbox"/> 안전·위기	<input type="checkbox"/> 임신·출산
<input type="checkbox"/> 청년	<input type="checkbox"/> 다문화·탈북민	<input type="checkbox"/> 보육	<input type="checkbox"/> 교육
<input type="checkbox"/> 중장년	<input type="checkbox"/> 보호대상자	<input type="checkbox"/> 입양·위탁	<input type="checkbox"/> 보호·돌봄
<input type="checkbox"/> 노인		<input type="checkbox"/> 서민금융	<input type="checkbox"/> 법률
		<input type="checkbox"/> 에너지	

* 출처: 복지로. 서비스 목록에서 2025년 10월 10일 인출.

그림 VII-1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목록 페이지

두 번째 가구 상황 목록을 보면 보훈대상자를 제외하면 모두 취약 상황의 대상자들이다. 그런데 목록이 포괄적이지 않고 선별적이다. 우리 사회엔 다양한 종류의 취약 상황 대상자들이 있다. 그중 우선 현재 성평등가족부의 위기청소년은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정책 대상자의 방문을 전제하여 해당 시스템으로의 연계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가구상황'이 아니라 '취약상황'으로 포괄성 있는 대상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12원칙에 따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 및 통합 전달체계 구축의 논의에서 비배제성에 입각한 정책대상의 포괄성 확립을 위해 취약상황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체계적 파악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포괄성의 원칙이 준수되기 어려웠던 이유는 취약 정책 대상 전체에 대한 파악 없이, 주로 특정한 취약 상황 발생에 대한 대응이나 위기 청소년 등 특정 그룹별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정책서비스가 집행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괄성의 원칙에 부합할 이상적인 접근방식으로 취약 상황 자체가 아니라 취약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영역을 파악하여 분류하는 체계적 접근을 제언한다. 실제 가능한 영역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6영역이다. 이 여섯 발생영역은 취약상황 아동·청소년·청년을 모두 포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출처: 성윤숙 외(2022).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 |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그림 Ⅶ-13. 발생영역별 아동·청(소)년 취약 상황 분류

이 분류에 따른 각 영역의 구체적인 취약 대상은 다음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VII-18. 발생영역별 아동·청소년 취약 상황 분류 세부 내용

영역	내용	대상
경제	- 사회경제적 상태로 일상이나 교육환경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 - 고용과 주거가 불안정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등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저소득가정의 아동·청소년 등 자립준비 청년 등
문화	- 문화적 차이로 문화적 동화, 일상의 삶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 북한 이탈 가족이나 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 등
가정	- 가정의 문제(부모의 사망, 이혼, 가출 등), 부모의 신체적 결함(질병이나 장애, 사고 등), 보호자의 학대 또는 방임 등으로 일상의 돌봄과 교육환경을 제공받기 어렵거나, 역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돌봐야 하는 경우 등	- 입양아나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가정 학대 및 가정폭력 아동·청소년, 가정 밖 청소년, 장애인 부모 아동·청소년, 나홀로(돌봄)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등 가족돌봄 청년
학교	- 불건전한 또래문화, 학교생활의 부적응, 학교생활로 인한 피해 등으로 안정적인 교육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 의무교육단계 미취학 청소년, 학교폭력 피·가해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학교 부적응 청소년, 비행·범죄 소년, 학업중단 위기 청소년 등
지리	- 도시와 지리적으로 분리된 문제로 인해 안정적인 교육환경 또는 일상의 돌봄을 제공받기 어려운 경우, 또는 스스로 농촌에서의 삶을 원하나 영위하기 어려운 경우	- 농산어촌이나 도시내후지역에 사는 아동, 청소년, (귀농)청년 등
개인	- 당사자의 교육적 학습능력이 낮거나, 사회성 결여, 장애 또는 지적능력 등으로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 - 경계선 지능지수(IQ 71~84점)로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또는 사회적 관계망 부족 및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없는 경우	- 장애(장애, 발달장애, 특수교육 대상자 등), 중독, 정신건강 위험자(자살, 자해, 우울 등), 성매매자, 기초학력 미달,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등 - 경계선지능 청년, 고립은둔 청년 등

* 출처: 성윤숙 외 (2022).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 보완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

아동·청소년·청년정책 통합 전달체계가 포괄성 등 12원칙에 준하여 구축될 수 있다면, 제시된 5 모델 중 어느 모델을 선택하더라도, 정책 구현의 지속성과 전체성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통합정보시스템을 토대로 관련기관 간 유기적 연계·협력을 통한 정책 구현이 가능할 것이며, “개별 수요자” 중심의 점진적이고 발전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생산적 변화, 개인의 일상과 융화되는 정책 설계가 가능할 것이고, 무엇보다,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청년 누구나 개인의 자율과 행복 추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정책 전달 체계의 성공적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 **참고문헌**

참고문헌

[국내·외 문헌]

- 강지원, 이상정, 정희선, 강현미, 최민지, 임지영 (2023). 지역에 기반을 둔 아동돌봄안전망과 다주체 협력 방안 (연구보고서 2023-08).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지원, 이세미 (2015). 아동·청소년 돌봄 정책 현황 분석. **보건복지포럼**, 225, 60-70.
- 강현아 (2025). 가정위탁과 시설보호를 종료한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자립지원서비스 이용과 물질적 결핍의 매개효과. **한국아동복지학**, 74(1), 1-28.
- 관계부처 합동 (2020). 제2차 아동정책 기본계획(20~24). 관계부처 합동.
- 관계부처 합동 (2023a).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정(안)(21~25). 관계부처 합동.
- 관계부처 합동 (2023b).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 관계부처 합동.
- 권지성, 김선숙, 정선욱, 조소연, 이정애, 안재진 (2021). 보호종료성인 자립지원사업에 대한 질적 평가연구: A재단 대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70(1), 105-145.
- 길은배 (2009). 아동·청소년통합정책의 지역운영 방안 모색. **청소년행동연구**, 14, 51-69.
- 김교성, 박미희, 송민, 김윤민, 김혜진, 정유경, 이창숙 (2017). **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년, 사회적 영향력 및 성과분석**.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 김규리, 김용희, 한창근 (2021). 아동양육시설 보호종료아동이 경험한 디딤씨앗통장의 의미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한국아동복지학**, 70(3), 91-125.
- 김기현 (2022). 청년정책 전달체계 및 참여 거버넌스의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305), 44-58.
- 김기현 (2024). 중앙정부 청년정책의 추진현황과 과제. **열린충남**, 107, 8-12.
- 김기현, 오병돈, 이경숙 (2013). **청소년 자살예방 정책 연구** (연구보고 13-R04).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유민상, 김창환, 정지운 (2019). **청년 핵심정책 대상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II: 학교 졸업예정자**.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남호 (2024). 청소년예산 축소가 청소년활동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전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31(9), 309-331.
- 김동일, 현은정, 우예영, 박준영 (2020). 청소년 고위기 상황 및 효과적 개입에 대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기청소년 담당자의 인식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8(2), 281-303.
- 김문정 (2018). 청년 일자리 사업 예산의 현황과 쟁점. **보건복지포럼**, 256, 22-36.
- 김미숙, 김성천, 정익중, 이해원, 오승환, 이주연, 신어진 (2009). **아동청소년복지 수요에 기반한 복지공급체계 재편방안 연구 II: 지역유형별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선숙, 조소연, 이태인, 최세나, 황혜신 (2022). 한국의 아동정책은 아동권리보장에 적합한가?: 중앙행정기관의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71(4), 133-159.
- 김성미 (2025).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교육 통계 현황과 개선 방안**. 이민정책연구원 통계브리프 (2025-1). 과천: 이민정책연구원.
- 김세원, 강현아, 정익중 (2022).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아동학대 일반사례 대응 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4(3), 1-32.
- 김세현, 김기현 (2025). 청년정책 참여에 대한 언론 기사(1990-2022년) 토픽모델링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22(1), 1-31.
- 김승경, 김지연, 백혜정, 전현정 (2024a). **2024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승경, 김지연, 백혜정, 전현정, 김성아 (2024b). **청년종합연구 III: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영덕 (2022). 가출청소년 쉼터 거주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상담학회지**, 3(1), 45-61.
- 김영종 (2007). **사회복지행정**. 서울: 학지사.
- 김예린 (2018).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서비스 네트워크의 효과성 영향요인 분석: 통합서비스의 관점에서. **한국조직학회보**, 15(1), 101-135.
- 김용득 (2015). 지역사회 사례관리체계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 이대로 괜찮은가? 경직된 실천과 파편적 제도.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7(1), 241-266.

- 김지경, 이윤주 (2018). **20대 청년 심리·정서 문제 및 대응방안 연구** (연구보고 18-R0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경, 정연순 (2015). **20대 청년, 후기청소년정책 등장기 발전전략 연구** (연구보고 15-R0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연, 김승경, 임세희, 최은영 (2020). **청소년의 주거권 실태와 보장방안 연구: 사회배제 관점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20-R0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연, 윤철경 (2021). **보호종료아동 및 자립준비청소년 자립지원 현안과 과제**.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연, 좌동훈, 박세경, 한미경 (2015). **아동·청소년·가족 보호체계 개선 방안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현, 조숙인, 김영민 (2023). **아동의 사회·정서 발달지원 서비스 현황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보고 2023-12). 서울: 육아정책연구소.
- 김지혜, 정익중, 윤은영 (2022). 저소득 청소년 대상 장기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과정과 결과에 대한 질적 평가연구. **학교사회복지**, 58, 81-114.
- 김채연, 김혜원, 조혜영 (2024). 드림스타트 아동통합사례관리사의 현장 경험 의미와 개선 방안 탐색. **청소년시설환경**, 22(3), 26-37.
- 김현철, 오승근, 김태종, 하형석 (2020). **청소년정책 성과와 정책추진 방향** (청소년정책리포트 2020 Vol.05). 세종: 성평등가족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 김형모 (2022).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증진을 위한 법률 및 제도 개선 방안.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22(2), 457-474.
- 김형주, 연보라, 배정희 (2020).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V** (연구보고 20-R0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형주, 임지연, 유설희 (2018).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I**.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혜미, 정은희, 허선영 (2025).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사회통합 지원사업 모형 제안 연구** (연구보고 2025-2). 서울: 초록우산 아동복지연구소.
- 김훈 (2025). 아동 및 청소년복지의 지원체계와 법적 문제에 관한 소고. **토지공법연구**, 110, 217-240.

- 김희진 (2024). 가정 밖 청소년 탈시설의 쟁점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331, 49-65.
- 김희진, 백혜정, 김은정 (2018). 가정 밖 청소년의 실태와 자립지원 방안 연구 (연구보고 18-R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희진, 서고운, 조혜영 (2022). **학교 밖 청소년 지역사회 지원방안 연구V** (연구보고 22-일반0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나원희 (2025). 2025년 청년정책 예산 분석. **보건복지포럼**, 341, 48-59.
- 남기철, 유조안, 유재윤, 최창용, 허청아 (2016). **복권기금사업 성과분석 연구: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 남미자 (2025). 10대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와 삶에 관한 질적 연구: 시설 비거주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32(6), 223-247.
- 남미자, 김시연, 마한얼, 정찬송, 정용림, 황혜신 (2024). 가정 밖 청소년의 시설 거주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교육인류학연구**, 27(1), 117-148.
- 노혜진 (2024). 시설퇴소 청년의 자립과정. **사회와복지**, 6(2), 1-30.
- 류정희, 이상정, 박선영, 전민경 (2020).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II: 위기청소년-국내-의 주요 법령 및 건강정책 분석** (연구보고 20-R16-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류정희, 이상정, 주하나, 김지연, 정익중, 정소희 (2022).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방안 연구** (정책보고서 2022-56). 세종: 교육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정희, 함영진, 이상정, 김지연, 김가희, 김지민, 권영지 (2018). **사회보장제도 「아동의 안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전달체계 심층분석」 핵심평가** (정책보고서 2018-95). 세종: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성호, 박지원 (2018). 시설퇴소청소년의 자립지원정책 분석. **청소년학연구**, 25(12), 257-279.
- 문성호, 임영식 (2009). **아동·청소년 역량개발을 위한 능동적 복지정책 추진방안: 저소득 가정 아동·청소년의 역량개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박선영 (2025). 우범소년에 대한 복지적 접근: 청소년복지지원법 상의 위기 청소년으로 지원. **교정담론**, 19(1), 173-207.
- 박성준, 강형민 (2024). 기초자치단체의 아동·청소년 자체사업 예산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동태적 패널모형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41(3), 397-425.

- 박성희 (2023). 한·독간 비교분석을 통한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체계에 대한 제언. **교육연구**, 37(2), 45-65.
- 박은하 (2018). 취약 청소년·청년의 진로·직업역량 현황과 자립지원정책 방안 연구. **청소년학연구**, 25(10), 299-319.
- 박혜연, 이수정 (2023). 다차원 정책분석모형을 활용한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정책 분석. **교육행정학연구**, 41(5), 245-278.
- 배유진, 김지선, 최기정, 문성윤, 김진실 (2021).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 활용실태와 데이터 관리방안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박선희, 임정기, 유재윤, 임유경, 손가현 (2017). **복권기금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성과 지표 개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 백혜정, 김지연, 김승경, 노혜진 (2023). **2023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 개발** (협동연구총서 23-88-02, 연구보고 23-일반05-0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변금선, 이영주, 김기현, 장익현 (2023).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위한 서울시 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 방안** (서울연 2022-PR-27). 서울: 서울연구원.
- 보건복지가족부 (2008). **아동청소년통합법률안 제정경과 설명자료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서울: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4). **2024년도 보건복지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수정)**. 세종: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 (2025). **2025 아동분야 사업안내 I, II**. 세종: 보건복지부.
- 서보람, 김윤나 (2018). 가출청소년의 사회복지 경험 연구: 단기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6(4), 39-52.
- 선미정 (2024). 가족돌봄청년 및 청소년을 위한 지원방안 탐색: 텔파이 및 IPA 기법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실천과연구**, 21(3), 57-87.
-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2024). **비극을 넘어 대안으로 - 자녀 살해 후 자살 대응 정책제안서**. 서울: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
- 손병덕, 성문주, 백은령, 이은미, 최인화, 정정호, 송현아 (2022).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제3판)**. 서울: 학지사.
- 신민호, 변상해, 오수생 (2012). 쉼터 청소년의 자립생활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 체계적 변인연구. **한국벤처창업학회 학술대회**, 217-220.

- 안윤숙 (2012). 보호소년 위탁 아동복지시설 활성화를 위한 지역연계 통합서비스 제공방안. **학교사회복지**, 23, 123-151.
- 안태구, 길건혁, 김충현, 조한나, 주해란 (2022). 취업하는 과정에서의 경험: 보호종료아동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9(4), 293-325.
- 양경은, 박송이, 고윤정 (2020). 이주민 밀집지역 아동의 발달권 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연계 모델에 관한 연구. **아동복지연구소 보고서**, 14, 1-152.
- 양계민, 권오영, 이영신, 장윤선, 장인숙 (2023). **사회통합을 위한 후기청소년기 이주배경 청소년정책방안연구 I** (연구보고23-일반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오미애 (2020). 아동통계 행정패널 구축 방안. **보건복지포럼**, 286, 19-29.
- 오민지, 탁현우 (2022). 저출산 고령사회 재정사업의 유형화를 통한 메타평가: 1차~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성과평가의 통시적 접근. **한국사회와행정연구**, 33(3), 189-215.
- 오선정, 이상현, 정병석, 임무송, 장신철, 이재갑, 김동규 (2022). **한국 고용서비스의 발전 과정, 최신 전달체계 및 발전방향** (정책자료 2022-06).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 오수연, 김성엽, 박שמ민 (2021). 청년정책 거버넌스 체계 현안 분석과 개선 방안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31(4), 141-178.
- 우경연 (2013). 아동관련법과 아동복지법 변천사 연구. **아동복지연구소 보고서**, 2013(5), 1-101.
- 우명순, 김현실 (2025).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경험에 관한 연구: 법 개정 이후 현장 실무 중심으로. **한국케어매니지먼트연구**, (54), 169-207.
- 우충충, 박지영, 이재원 (2024). 아동복지분야 국고보조사업의 성과관리체계 특성과 개선 과제.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17(4), 75-112.
-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 (202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II: 성인 이행기 청년의 자립** (연구보고 22-일반0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민상, 최정원, 이수정, 장혜림 (2020). **청소년·청년 디지털 플랫폼노동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 (연구보고 20-R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유은주 (2024). 쉼터 퇴소 청소년의 사회복지 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31(2), 103-125.
- 유정원, 이혁수 (2020). **보호종료아동 지원현황과 대안** (FOCUS 2020-07). 경기: 경기복지재단.

- 윤진, 김윤희 (2019). **데이터기반행정 강화 방안 연구: 공공데이터 융합(integration)을 중심으로** (KIPA 연구보고서 2019-03). 서울: 한국행정연구원.
- 윤철경, 박영균, 성운숙, 문경숙 (2010). **통합 아동·청소년정책 추진전략연구**.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강이, 성미영, 이순형 (2002). 동작성 가족화 검사(KFD)에 나타난 시설보호 아동의 가족 지각 특성. **한국아동복지학**, 13, 7-26.
- 이상정 (2024). **위기 아동·청소년 자립지원의 사각지대와 정책 과제** (보건복지 ISSUE & FOCUS 제444호).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정, 김지민,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2020). **아동·청소년보호체계의 자립지원 격차 해소를 위한 자립지원 정책 연구** (연구보고서 2020-38).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정, 김지민, 류정희, 조정우, 홍문기, 안은미 (2021).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를 위한 보호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정, 류정희, 김지연, 김무현, 김지민 (2019). **가정 외 보호 아동의 자립 준비 실태와 자립 지원 체계 개선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9-22).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정, 이주연, 주보혜, 김무현, 백혜정, 주하나 (2024).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통합적 자립지원방안 연구**.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성남 (2021). [주제발표4]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을 위한 정책과 실천 방향. **한국아동가족복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6(2), 1-30.
- 이승윤, 이정아, 백승호 (2016). 한국의 불안정 청년노동시장과 청년 기본소득 정책안. **비판사회정책**, 52, 365-405.
- 이유진, 김영한, 윤옥경 (2018). **인구절벽 현상과 청소년정책의 과제** (연구보고 17-R2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은영 (2025). 청소년쉼터 거주 여성 청소년의 정서적 경험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한국융합과학회지**, 14(4), 251-271.
- 이재경, 원석현, 박배민 (2024). **2024 서울시 청년정책 개선을 위한 탐색적 연구** (2024년 서울광역청년센터 연구보고서). 서울: 서울광역청년센터.
- 이정봉 (2021). **이행기 관점 청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KLSI ISSUE PAPER, 2021-08). 서울: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이정희 (2020). 아동예산 사례의 비교분석 및 시사점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31(3), 127-162.
- 이지연 (2021). **정책동향분석: 청소년정책연구의 흐름과 최신 동향**.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태인, 박경현, 최세나 (2020).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직무현황. **학교사회복지**, (52), 73-97.
- 이혜원, 김성천, 오승환, 이태수, 정익중 (2009). 아동청소년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한국아동복지학**, 28, 73-100.
- 임성은, 이은주, 박현숙, 이주민, 민구홍 (2025). **가정의보호 경계선지능아동 지원체계 진단 및 내실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5-11).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임윤진 (2022). 수정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2015 개정 실과(기술·가정) 교육과정의 개선방향 탐색. **대한공업교육학회지**, 47(2), 67-96.
- 임은진, 최한, 최윤영, 이명주, 이호정 (2024). **다문화학생 정신건강 조사 및 심리정서 지원 연구**. 수원: 경기도교육청.
- 임희진, 황여정 (2021). **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Ⅲ: 후기청소년 - 기초분석보고서** (연구보고 21-R16-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장근영, 김기현, 이상준, 황성수, 이규용, 윤석천, 최성은 (2023). **지방소멸시대 지방정부의 청년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 충청권을 중심으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3-63-01). 세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장근영, 성은모, 최홍일, 진성희, 김균희 (2015). **청소년 역량지수 측정 및 국제비교 연구 II: IEA ICCS 2016** (연구보고 15-R18-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민선, 최환용, 김기현, 하형석, 유민상, 조성호 (2017). **입법상 연령기준과 정책 연계성 확보를 위한 연구** (현안분석 2017-14). 세종: 한국법제연구원.
- 전미진 (2025). 한국 교육복지정책사업의 사회교육복지적 양상과 특성. **교육문화연구**, 31(2), 111-145.
- 정선미, 오영림 (2018).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사회복지사 보수교육과정을 위한 기초연구. **임상사회사업연구**, 15(1), 23-46.
- 정소연, 서흥관, 김아래미, 전지승, 류나니, 김승환 (2024). **가족돌봄 아동·청소년의 특성과 돌봄현실에 기반한 지원방안 모색** (연구보고 2024-6). 서울: 초록우산 아동복지연구소.

- 정영철 (2015). 우리나라 아동보호 정보관리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230, 45-61.
- 정익중 (2009). 아동청소년정책 전달체계의 통합방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사회복지연구**, 40(1), 297-322.
- 정정호 (2025). 자립준비청년 사례관리 수행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27(1), 67-90.
- 정현주 (2018). 아동 정보 사각지대 규모 추정과 정보 연계의 법적 쟁점 연구. **사회복지법제연구**, 9(2), 195-211.
- 정현주, 송사리 (2019). 시설보호아동의 자립지원 서비스 이용에 관한 연구: 강원지역 자립지원단 서비스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7(4), 25-40.
- 조소연, 손선옥 (2024). 자립준비청년 지원의 사각지대: 우리나라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8(6), 145-185.
- 조순오, 김혜원, 조혜영 (2022). 후기청소년 대상 온라인 학습코칭 적용 사례 연구: 자기주도학습능력·시간관리행동·자기효능감 변화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20(2), 57-70.
- 조영숙, 정호윤 (2024). 다차원 정책분석 모델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 지원 사업에 관한 연구: 다특다특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사회**, 8(6), 47-84.
- 조은별, 이선영, 신종호, 홍윤정 (2015). 융합교육 핵심요인과 기대효과에 대한 델파이 분석. **영재교육연구**, 25(1), 37-58.
- 조혜정, 박진부, 손민정, 박재성, 이정환 (2022). **전환기, 중기정책 패러다임 이동을 통한 혁신성장 촉진 방안 제1권: 연구의 배경 및 요약** (정책연구 22-01). 서울: 중소벤처기업연구원.
- 주해란, 길건혁, 안태구, 이예진 (2022). 아동양육시설과 가정위탁 성장 환경에 따른 정서적 경험과 지원정책 비교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9(10), 141-175.
-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 (2024). **2024년 청년센터 운영 실태 및 종사자 직무 현황조사 보고서**. 서울: 청년재단 중앙청년지원센터.
- 최경덕, 오신휘, 조성호, 김명중, 김원경, 황남희 (2024). **일본의 인구정책 사례연구** (연구보고서 2024-13).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기성, 안준기, 이혁무 (2024).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서비스의 취업효과 분석. **한국경제연구**, 42(1), 55-85.

- 최용환, 성운숙, 박상현 (2018). **증거기반정책 수립을 위한 아동·청소년·청년 통계관리 체계화 방안 연구** (연구보고 18-R1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은희 (2022). 사회복지와 정보시스템. **복지동향**, (285), 51-52.
- 한은희, 최윤희 (2020). 해외동향: 아동보호분야의 위험예측모형 활용 현황 및 시사점. **사회보장정보 이슈리포트**, (22). 서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홍문기 (2024). 독일 아동보호 및 자립지원서비스 정책 현황 및 쟁점. **국제사회보장리뷰**, 31, 15-31.
- 홍현정 (2024). 죽음에서 배울 의무 적용을 위한 현장의 제언.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아동사망검토제도 입법토론회**(12월 9일, 켄싱턴호텔 여의도 그랜드스테이션), 55-60.
- 황정윤, 이병헌 (2024). **후기청소년정책을 통해 바라본 서울시 초기 청년정책 개선 방향** (2024년 서울광역청년센터 이슈레포트). 서울: 서울광역청년센터.
- 황주희, 김성희, 노승현, 강민희, 정희경, 이주연, 이민경 (2014). **장애노인 대상의 통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 방안** (연구보고서 2014-13).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Anderson, E. T. (1997). *Important Distance Education Practices: A Delphi Study of Administrators and Coordinators of Distance Education Program in Higher Educ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daho.
- Arnett, J. J. (2000). Emerging adulthood: A theory of development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American Psychologist*, 55(5), 469-480.
- Bendit, R. (2006). Youth Sociology and Comparative Analysis in the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Papers* 79, 49-76.
- DTV (1994). *Jugendrecht*. München: C.H. Beck Verlag.
- Mackie, A. (2013). Poverty and Youth Transition. Concept: The journal of Contemporary Community Education Practice Theory. *Special Issue*, 1-11.
- Martino, J. P. (1972). *Technological Forecasting for Decision Making*. New York, NY: Elsevier Publishing.
- Morris, R. & Lescohier, I. (1978). *Solutions to welfare dilemmas*. In Sarri, R. & Hasenfeld, Y. (eds.), *The Management of human servic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Mundy, L.K., Canterford, L., Moreno-Betancur, M., Hoq, M., Viner, R.M., Bayer, J.K., Lietz, P., Redmond, G., & Patton, G.C. (2023). Learning outcomes in primary school children with emotional problems: a prospective cohort study. *Child and Adolescent Mental Health, 28*(3), 377-384.
- Murray, A.L., Hall, H.A., Speyer, L.G., Carter, L., Mirman, D., Caye, A., & Rohde, L. (2022).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ADHD symptoms in a large population-representative longitudinal study. *Psychological Medicine, 52*(15), 3590-3596.
- Robson, E.M., Husin, H.M., Dashti, S.G., Vijayakumar, N., Moreno-Betancur, M., Moran, P., Patton, G.C., & Sawyer, S.M. (2025). *Tracking the course of depressive and anxiety symptoms across adolescence* (the CATS study): A population-based cohort study in Australia. *Lancet Psychiatry, 12*(1), 44-53.

[홈페이지]

- 강원특별자치도 누리집. 조직도. <https://state.gwd.go.kr/portal/introduce/guidance/organization>에서 2025년 2월 11일 인출.
- 경기도 누리집. 경기도 조직도. <https://www.gg.go.kr/org/orgChart.do?menuId=1808>에서 2025년 2월 11일 인출.
- 경기청년포털. <https://youth.gg.go.kr>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 경기청년포털. 경기도 청년정책. <https://youth.gg.go.kr/gg/intro/youth-policy-job-test.do>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 경상남도 누리집. 조직도. https://www.gyeongnam.go.kr/index.gyeong?menuCd=DOM_000000137001001000에서 2025년 2월 11일 인출.
- 경상북도 누리집. 본청 조직도. https://www.gb.go.kr/Main/page.do?mnu_uid=6851&LARGE_CODE=720&MEDIUM_CODE=60&SMALL_CODE=40&SMALL_CODE2=20에서 2025년 2월 11일 인출.
- 고용24. 고용보험제도.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tId=SI00000419&systCId=SC00000285>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 고용24.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work24.go.kr/cm/c/f/1100/selecSystInfo>.

do?currentPageNo=1&recordCountPerPage=10&sysId=SI00000316&sysCId=SC00000206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광주광역시 누리집. 행정조직도. <https://www.gwangju.go.kr/contentsView.do?pageId=www147>에서 2025년 2월 11일 인출.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에서 2025년 3월 17일 각 법령 검색 및 인출.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보도자료 (2024.06.28.) 2023년도 청년정책 우수기관 발표. <https://www.opm.go.kr/opm/news/press-release.do?mode=view&articleNo=157214&srSearchVal=2023%EB%85%84%EB%8F%84+%EC%B2%AD%EB%85%84%EC%A0%95%EC%B1%85+%EC%9A%B0%EC%88%98%EA%B8%B0%EA%B4%80+%EB%B0%9C%ED%91%9C&article.offset=0&articleLimit=10>에서 2025년 5월 20일 인출.

국무조정실 누리집. 조직도·직원검색. <https://www.opm.go.kr/opm/office/group01.do>에서 2025년 2월 12일 인출.

김아래미 (2024.11.01.). 2025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아동·청소년복지 분야.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979493>에서 2025년 5월 20일 인출.

대구광역시 누리집. 행정조직도. https://www.daegu.go.kr/index.do?menu_id=00000248에서 2025년 2월 11일 인출.

대구광역시 청년정책. <https://www.daegu.go.kr/YouthPolicy>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대전광역시 누리집. 대전시 조직도. <https://www.daejeon.go.kr/drh/drhOrganization.do?menuSeq=6376>에서 2025년 2월 11일 인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4.09.11.). 여가부 “내년 청소년정책 예산 57억 원 증액 편성”.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3792&pWise=sub&pWiseSub=C1>에서 2025년 5월 20일 인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5.02.21.). 고용보험 없는 구직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9807>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매일경제용어사전. 사일로효과(Silo effect). <https://terms.naver.com/entry.naver?docId=14791&cid=43659&categoryId=43659>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방배유스센터. 방배유스센터 2025년도 예산 및 사용료 고시/조직현황/청소년활동. <https://bbhillyouth.or.kr>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법무부 (2025). 출입국자 및 체류외국인 통계.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index/index.do>.

보건복지부 누리집. 조직도. <https://www.mohw.go.kr/menu.es?mid=a10604010000>에서 2025년 2월 12일 인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08.19.).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 및 회복지원까지 촘촘히 보완한다.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366913&tag=&nPage=199에서 2025년 5월 20일 인출.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3.07.18.). 출생미신고 아동 2,123명 전수조사 결과 1,025명 생존 확인, 249명 사망, 814명 수사 중.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200&bid=0027&act=view&list_no=377321&tag=&nPage=45에서 2025년 9월 1일 인출.

복지로. 복지로 소개.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wa/wlfareNw/selectWlfareNwSubMain.do>에서 2025년 9월 8일 인출.

복지로. 서비스 목록.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05M.do>에서 2025년 10월 10일 인출.

부산광역시 누리집. 조직도. <https://www.busan.go.kr/bhorganization01>에서 2025년 2월 11일 인출.

부산청년플랫폼 청년G대. <https://young.busan.go.kr>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서울주거포털. 보호종료아동 및 쉼터퇴소 청소년 대상 임대주택 지원. https://housing.seoul.go.kr/site/main/content/sh01_061027에서 5월 20일 인출.

서울청년플랫폼 청년몽땅정보통. <https://youth.seoul.go.kr>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서울특별시 누리집. 조직도. <https://org.seoul.go.kr/org/orgChart.do>에서 2025년 2월 11일 인출.

서초유스센터. 조직도/프로그램 안내/2025년도 서초유스센터 예산 및 사용료 고시. <https://www.scy.or.kr>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서초청년센터. 프로그램/서초청년센터 2024년도 결산/2025년도 예산 공시. <https://www.seochoyc.org>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성평등가족부 누리집. 조직 및 기능. https://www.mogef.go.kr/mi/osg/mi_osg_s001.do에서 2025년 2월 12일 인출.

세종특별자치시 누리집. 본청 조직도. https://www.sejong.go.kr/kor/sub01_010101.do#sub01_010101에서 2025년 2월 11일 인출.

스쿨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안내. http://schoolaw.lawinfo.or.kr/sub.asp?maincode=464&sub_sequence=528&sub_sub_sequence=538에서 2025년 5월 20일 인출.

아이사랑. 소개. <https://www.ssis.or.kr/lay1/S1T1793C1794/contents.do>에서 2025년 9월 8일 인출.

온통청년. 온통청년 소개. <https://www.youthcenter.go.kr/youthIntro/introduce/introAbout>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울산광역시 누리집. 울산광역시 조직도. <https://www.ulsan.go.kr/u/rep/contents.ulsan?mId=001005007001001000>에서 2025년 2월 11일 인출.

인천광역시 누리집. 시(市) 조직도. <https://www.incheon.go.kr/IC040221>에서 2025년 2월 11일 인출.

인천청년포털 인천유스톡톡. <https://youth.incheon.go.kr>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전라남도 누리집. 조직도. <https://www.jeonnam.go.kr/contentsView.do?menuId=jeonnam0601010000>에서 2025년 2월 11일 인출.

전북특별자치도. 본청 조직도. https://www.jeonbuk.go.kr/index.jeonbuk?menuCd=DOM_000000101003001000에서 2025년 2월 11일 인출.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 조직도. <https://www.jeju.go.kr/jeju/jeju/org/organization.htm>에서 2025년 2월 11일 인출.

청년몽땅정보통. 청년정책개요. <https://youth.seoul.go.kr/content.do?key=231010006>에서 2025년 9월 10일 인출.

청소년 1388. 청소년 1388이란?. https://www.1388.go.kr/OCC/YTOSP_SC_OYY_01에서 2025년 9월 8일 인출.

충남청년포털. <https://youth.chungnam.go.kr>에서 2025년 10월 20일 인출.

충청남도 누리집. 조직도. <https://www.chungnam.go.kr/cnportal/main/contents.do?menuNo=500984>에서 2025년 2월 11일 인출.

충청북도 누리집. 조직도. <https://www.chungbuk.go.kr/www/contents.do?key=478>에서 2025년 2월 11일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유·초·중등 교육통계.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5년 9월 1일 인출.

한국사회보장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범정부) 소개. <https://www.ssis.or.kr/lay1/S1T750C767/contents.do>에서 2025년 9월 8일 인출.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https://www.ssis.or.kr/lay1/S1T749C765/contents.do>에서 2025년 9월 20일 인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안전망 운영사업 안내. https://www.kyci.or.kr/userSite/sub02_1.asp에서 2025년 5월 20일 인출.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국가통계포털(KOSIS), <https://kosis.kr/index/index.do>에서 2025년 9월 1일 인출.

ADMINISTRATION FOR CHILDREN & FAMILIES. ACF Organization Chart 2025. <https://acf.gov/media/37887>에서 2025년 10월 17일 인출.

BMBFSFJ. Ausführliches Organigramm. <https://www.bmfsfj.de/resource/blob/189904/ef9d36dcfd0b215ad1494510ee83586f/organigramm-pdf-data.pdf>에서 2025년 5월 20일 인출.

BMBFSFJ. Ministerin und Hausleitung. <https://www.bmfsfj.de/bmfsfj/ministerium/ministerin-hausleitung>에서 2025년 5월 20일 인출.

BMFSFJ (2024). 17. Kinder- und Jugendbericht. Berlin: BMFSFJ. <https://www.bmfsfj.bund.de/bmfsfj/service/publikationen/17-kinder-und-jugendbericht-244628>에서 2025년 5월 20일 인출.

Bundesamt für Justiz. Kinder- und Jugendhilfe. https://www.gesetze-im-internet.de/sgb_8/BJNR111630990.html?utm_source=chatgpt.com에서 2025년 5월 20일 인출.

Bundesamt für Justiz. Sozialgesetzbuch (SGB) Achtes Buch (VIII) - Kinder- und Jugendhilfe. https://www.gesetze-im-internet.de/sgb_8/BJNR111630990.html에서 2025년 5월 20일 인출.

Bundesregierung. <https://www.bundesregierung.de/breg-de/bundesregierung/bundesministerien>에서 2025년 5월 7일 인출.

e-gov.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 <https://laws.e-gov.go.jp/law/421AC0000000071>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e청소년. e청소년 소개. <https://www.youth.go.kr/youth/youth/contents/eYouthIntroForm.yt?curMenuSn=395>에서 2025년 9월 8일 인출.

Find open data. Organogram of Staff Roles & Salaries. <https://www.data.gov.uk/dataset/5a1f3831-86d6-4979-9164-99e982361ca4/organogram-department-for-education>에서 2025년 10월 17일 인출.

FRA. Mapping Child Protection Systems in the EU. <https://fra.europa.eu/en/publication/2024/mapping-child-protection-systems-eu-update-2023?page=3&pid=06de90c1-c9fb-408b-a576-84188dec2244#read-online>에서 2025년 5월 20일 인출.

freee. バックオフィスのトレンド情報をまとめて解説!. <https://www.freee.co.jp/kb/kb-trend/children-future-strategy/>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IJAB. Infosystem Kinder- und Jugendhilfe in Deutschland. https://www.kinder-jugendhilfe.info/fileadmin/PDF/DE_Infosystem_KJH_Deutschland_2024_PDF.pdf에서 2025년 8월 14일 인출.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Jugend und Familie. Organigramm der Senatsverwaltung für Bildung, Jugend & Familie. <https://www.berlin.de/sen/bjf/ueberuns/leitung/organigramm/>에서 2025년 8월 13일 인출.

TRT GLOBAL. 2024년 인구 기록적인 감소세, 일본의 저출산 현상 지속. <https://trt.global/korean/article/c379636f2b86>에서 2025년 8월 19일 인출.

Wikipedia. Jugendamt. <https://de.wikipedia.org/wiki/Jugendamt>에서 2025년 8월 14일 인출.

こども家庭庁. EBPM関係資料.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2b375f6a-6455-477f-ba89-7f920a70f47d/a5cb138c/20250206_policies_budget_r7ebpmsiryu_02.pdf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こども家庭庁. こども家庭庁 2025 採用パンフレット.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71340708-c07c-4efa-9e9e-ef803a523db7/5c5ff97e/20250403_recruitment_sougou_04.pdf에서 2025년 8월 8일 인출.

こども家庭庁. こども家庭庁組織図概要.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7e61aa5c-b18a-4711-85c4-c28d6822c7eb/e86f6aac/20250328_about_31.pdf에서 2025년 8월 8일 인출.

こども家庭庁. 幼児教育・保育の無償化. <https://www.cfa.go.jp/policies/kokoseido/mushouka>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こども家庭庁. 子ども・若者育成支援推進法に基づく子ども・若者支援地域協議会設置状況及び子ども・若者総合相談センター機能確保状況.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235d0217-bb92-4d07-838f-74897643b3a0/2b6b2a6b/20240827_policies_youth_kyougikai-soudancenter_05.pdf에서 2025년 5월 21일 인출.

こども家庭庁. 子ども・若者支援地域協議会、子ども・若者総合相談センター. <https://www.cfa.go.jp/policies/youth/kyougikai-soudancenter>에서 2025년 5월 21일 인출.

こども家庭庁. 子どもの貧困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の改正について.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752df913-0c4c-48b1-8b40-62a7cb4b5e67/c9d1e6da/20240705_policies_kodomonohinkon_02.pdf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こども家庭庁. 子供・若者育成支援推進大綱.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09b95185-2d55-4783-a955-983b5283ccd2/3c0b681e/20231228_policies_kodomo-taikou_junbishitsu_06.pdf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こども家庭庁. 自治体こども計画策定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 https://www.cfa.go.jp/assets/contents/node/basic_page/field_ref_resources/5f358887-4ab1-4c56-85ae-5f417e903dbb/356fb35b/20240524_policies_kodomo-keikaku_02.pdf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こども家庭庁. 政策. <https://www.cfa.go.jp/policies>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公益社団法人 ふるさと回帰・移住交流推進機構. About 地域おこし協力隊とは. <https://www.iju-join.jp/chiikiokoshi/about.html>에서 2025년 3월 8일 인출.

内閣官房. とも家庭庁設置法(令和4年法律第75号)の概要. <https://www.cas.go.jp/jp/houan/220622/75gaiyou.pdf>에서 2025년 8월 19일 인출.

内閣官房. とも未来戦略「加速化プラン」施策のポイント. https://www.cas.go.jp/jp/seisaku/zensedai_hosyo/dai17/sankou1.pdf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内閣官房. とも政策の推進. https://www.cas.go.jp/jp/seisaku/kodomo_seisaku_suishin/index.html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内閣府. 令和4年版 子供・若者白書(全体版).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927443/www8.cao.go.jp/youth/whitepaper/r04honpen/pdf/s7_4.pdf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内閣府. 令和4年版 子供・若者白書(全体版). https://warp.da.ndl.go.jp/info:ndljp/pid/12927443/www8.cao.go.jp/youth/whitepaper/r04honpen/pdf_index.html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大阪府庁. とも未来戦略. https://www.pref.osaka.lg.jp/documents/63899/s04_miraisenryaku.pdf에서 2025년 8월 7일 인출.

大阪市社会福祉協議会. トップページ. <https://www.osaka-sishakyo.jp/project/child-network/>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文部科学省. 文部科学省. <https://www.mext.go.jp/>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平和政策研究所. 「とも家庭庁」を将来的に「とも家庭省」へと格上げする. https://ippjapan.org/seisaku_bank/archives/875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厚生労働省. 令和2年度家庭福祉対策関係予算概算要求の概要. <https://www.mhlw.go.jp/content/11907000/000546710.pdf>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厚生労働省. 若者雇用促進法.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600000-Shokugyouanteikyoku/0000134614.pdf>에서 2025년 8월 18일 인출.

厚生労働省. 地域と学校の連携・協働について. <https://www.mhlw.go.jp/content/11907000/000907015.pdf>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厚生労働省. 厚生労働省. <https://www.mhlw.go.jp/index.html>에서 2025년 8월 17일 인출.

○ — 부 록

부록

1. 1차 전문가 의견조사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델파이조사(1차)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본 전문가 델파이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청년이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다양한 통합 모델을 발굴 및 제안함으로써, 합목적성과 효율성, 안정성과 지속성 그리고 유연성과 개방성 등을 갖춘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전문가 여러분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귀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조사는 2차례 이상 진행될 예정이며, 1차 조사에서 보내주신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2차 조사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1차 조사지에 대한 회신은 6월 16일(월)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지의 답변 내용은 오직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6월

<문의>

성윤숙 선임연구위원	044-415-0000	000@nypi.re.kr
문호영 선임연구위원	044-415-0000	000@nypi.re.kr
문세진 연구원	044-415-0000	000@nypi.re.kr

[참고] 연구(조사) 개요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급변하는 시대와 사회 환경 속에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및 청년기본법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인간 존엄과 자율에 기초한 자아실현과 행복 추구의 이념에 실질적으로 부합할 **다양한 통합 가능 모델을 발굴 및 제안**함으로써, 합목적성과 효율성, 안정성과 지속성 그리고 유연성과 개방성 등을 갖춘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연구 범위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전달체계, 특히 공공전달체계를 개선한 통합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공공전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사 목적

-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개선 및 재구조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 설문 구성(1차)

구분	내용	형식	
전달체계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개방형	
진단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고려해야 할 사항) 및 이유	개방형	
전달체계 개선안 평가	·전달체계 개선안의 '공정적인 점(장점)', '문제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	개방형	
	① (1안) 현행대로 보건복지부(아동), 여성가족부(청소년), 국무조정실(청년)이 중심이 되어 각각의 전달체계는 유지하되,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② (2안)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하나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 ·(2-1안)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중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2-2안)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새로운 주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하는 방안 ③ (3안)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통합하되,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고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3-1안) 아동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되(청소년·청년정책),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3-2안) 아동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고(아동·청소년정책),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전달체계 개선안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전달체계 개선안 및 이유, 실현 가능한 전달체계 개선안 및 이유		선택형 개방형
	·'No Wrong Door'의 국내 실현 방안		개방형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안 이외에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	개방형	

I.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진단

1. 현 아동·청소년·청년 전달체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현 아동·청소년·청년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고려해야 할 사항)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 이상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 칸이 부족하면 추가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선결과제(고려해야 할 사항)	이유

II.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안 평가

[참고]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안

- ① (1안) **현행대로** 보건복지부(아동), 여성가족부(청소년), 국무조정실(청년)이 중심이 되어 **각각의 전달체계는 유지하되,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 ② (2안)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하나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
 - (2-1안)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중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 (2-2안)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새로운 주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하는 방안
- ③ (3안)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통합하되,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고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 (3-1안) 아동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되(청소년·청년정책),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 (3-2안) 아동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고(아동·청소년정책),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개선안을 크게 3가지로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개선안의 긍정적인 점(장점), 문제점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생각을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십시오.

3. 1안) **현행대로** 보건복지부(아동), 여성가족부(청소년), 국무조정실(청년)이 중심이 되어 **각각의 전달체계는 유지하되,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긍정적인 점 (장점)	
문제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4. (2안)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하나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

1) (2-1안)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중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긍정적인 점 (장점)	
문제점	

2) (2-2안)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새로운 주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하는 방안

긍정적인 점 (장점)	
문제점	

5. (3안)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통합하되,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고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1) (3-1안) 아동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되(청소년·청년정책),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긍정적인 점 (장점)	
문제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2) (3-2안) 아동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고(아동·청소년정책),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긍정적인 점 (장점)	
문제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6. 다음의 전달체계 개선안 중에서 현재의 전달체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개선안' 과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개선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고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안]

- (1안) 현행대로 보건복지부(아동), 여성가족부(청소년), 국무조정실(청년)이 중심이 되어 각각의 전달체계는 유지하되,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 (2안)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하나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
 ·(2-1안)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중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2-2안)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새로운 주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하는 방안
- (3안)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통합하되,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고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3-1안) 아동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되(청소년·청년정책),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3-2안) 아동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고(아동·청소년정책),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시고,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를 기술해 주십시오.

이상적인 전달체계 개선안	이유
① 1안 ② 2-1안 ③ 2-2안 ④ 3-1안 ⑤ 3-2안	
실현 가능한 전달체계 개선안	이유
① 1안 ② 2-1안 ③ 2-2안 ④ 3-1안 ⑤ 3-2안	

7. 서구의 'No Wrong Door'라는 이상적인 복지체계의 이념을 국내에도 실현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참고] 'No Wrong Door' 시스템은 아동, 청소년, 청년 누구든 필요한 시안 및 문제가 있을 때, 공적 전달체계 안의 어디를 방문하더라도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의미함.

8.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안(1안~3안) 이외에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으시면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개선 방안의 내용	
긍정적인 점 (장점)	
문제점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2차 전문가 의견조사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델파이조사(2차)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본 전문가 델파이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청년이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다양한 통합 모델을 발굴 및 제안함으로써, 합목적성과 효율성, 안정성과 지속성 그리고 유연성과 개방성 등을 갖춘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1차 조사에서 보내주신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바탕으로 2차 델파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2차 조사는 각 항목에 대한 동의 정도를 표시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다른 의견이나 추가적인 의견이 있으신 경우는 해당 의견란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2차 조사지에 대한 회신은 **8월 5일(화)**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질문지의 답변 내용은 오직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7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의〉

성윤숙 선임연구위원	044-415-0000	000@nypi.re.kr
문호영 선임연구위원	044-415-0000	000@nypi.re.kr
문세진 연구원	044-415-0000	000@nypi.re.kr

[참고] 연구(조사) 개요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급변하는 시대와 사회 환경 속에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및 청년기본법이 공동적으로 지향하는, 인간 존엄과 자원에 기초한 자아실현과 행복 추구의 이념에 실질적으로 부합할 **다양한 통합 가능 모델을 발굴 및 제안**함으로써, 합목적성과 효율성, 안정성과 지속성 그리고 유연성과 개방성 등을 갖춘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 연구 범위

-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전달체계, 특히 **공공전달체계**를 개선한 통합 전달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 공공전달체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 조사 목적

-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개선 및 재구조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 설문 구성(2차)

구분	내용	문항	비고	
I. 전달체계 진단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	1(1~14)	5점 척도 개방형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고려해야 할 사항)	2(1~11)		
II. 전달체계 개선안 평가	<p>※ [참고]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안</p> <p>① (1안) 현재대로 보건복지부(아동), 여성가족부(청소년), 국무조정실(청년)이 중심이 되어 각각의 전달체계는 유지하되,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p> <p>② (2안)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하나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 - (2-1안)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중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 (2-2안)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새로운 주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하는 방안</p> <p>③ (3안)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통합하되,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고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 (3-1안) 아동정책 전달체계는 현재대로 유지하고, 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되(청소년·청년정책),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 (3-2안) 아동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고(아동·청소년정책),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현재대로 유지하되,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p>	-		
	(1안)	긍정적인 점(장점) 문제점		3-1(1~6) 3-2(1~7)
	(2-1안)	긍정적인 점(장점) 문제점		4-1(1~4) 4-2(1~6)
	(2-2안)	긍정적인 점(장점) 문제점		5-1(1~9) 5-2(1~7)
	(3-1안)	긍정적인 점(장점) 문제점		6-1(1~4) 6-2(1~6)
	(3-2안)	긍정적인 점(장점) 문제점		7-1(1~4) 7-2(1~5)
	(1안), (3안)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8(1~11)
		'No Wrong Door'의 국내 실현 방안		9(1~11)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한 추가 의견	10	

1.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진단

1. 다음은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동의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만약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①)나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②)에 응답한 경우는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①이나 ②에 응답한 경우만) 동의하지 않는 이유
1 전달체계의 분절로 인한 정책의 효율성 저하(행정, 인력, 예산 등)	①	②	③	④	⑤	
2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단절 및 서비스 중단	①	②	③	④	⑤	
3 부처 간 소통·협력 부족	①	②	③	④	⑤	
4 정책의 유사·중복 및 누락(사각지대)	①	②	③	④	⑤	
5 부처별 유사·중복 서비스로 인한 정책수요자의 혼란 야기	①	②	③	④	⑤	
6 중앙정부의 총괄·조정 기능(컨트롤 타워) 부재	①	②	③	④	⑤	
7 지방정부의 총괄·조정 기능(컨트롤 타워) 부재	①	②	③	④	⑤	
8 정보 및 데이터 공유·연계 부족	①	②	③	④	⑤	
9 지자체별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 전달체계의 혼재·혼란	①	②	③	④	⑤	
10 중앙 및 지방정부 간 연계 부족	①	②	③	④	⑤	
11 중앙 및 지방정부 간 역할 모호	①	②	③	④	⑤	
12 민간 전달체계에 대한 높은 의존도	①	②	③	④	⑤	
13 공공 및 민간 전달체계 간 협력 부족	①	②	③	④	⑤	
14 법령상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의 중복으로 인한 정책대상 중복	①	②	③	④	⑤	

〈기타 의견〉

2. 다음은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선결과제(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동의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만약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①)나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②)에 응답한 경우는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①이나 ②에 응답한 경우만) 동의하지 않는 이유
1	①	②	③	④	⑤	
2	①	②	③	④	⑤	
3	①	②	③	④	⑤	
4	①	②	③	④	⑤	
5	①	②	③	④	⑤	
6	①	②	③	④	⑤	
7	①	②	③	④	⑤	
8	①	②	③	④	⑤	
9	①	②	③	④	⑤	
10	①	②	③	④	⑤	
11	①	②	③	④	⑤	

〈기타 의견〉

II.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안 평가

3. 다음은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안 가운데 (1안)의 '긍정적인 점(장점)',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동의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만약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①)나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②)에 응답한 경우는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참고 (1안) 현행대로 보건복지부(아동), 여성가족부(청소년), 국무조정실(청년)이 중심이 되어 각각의 전달체계는 유지하되,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3-1. (1안)의 긍정적인 점(장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①이나 ②에 응답한 경우만) 동의하지 않는 이유
1 전달체계 개편을 최소화함으로써 현 정책의 안정성, 지속성 확보	①	②	③	④	⑤	
2 조직 개편을 최소화하여 신속한 정책 추진	①	②	③	④	⑤	
3 전달체계의 변화로 인한 부처 간 갈등 및 혼선 최소화	①	②	③	④	⑤	
4 대상별(아동, 청소년, 청년) 정책의 전문성 및 특성화 유지	①	②	③	④	⑤	
5 정책의 책임 소재 명확화	①	②	③	④	⑤	
6 부처 통합으로 소요되는 행정비용·시간 절약	①	②	③	④	⑤	

〈기타 의견〉

3-2. (1인)의 문제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①이나 ②에 응답한 경우만) 동의하지 않는 이유
1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단절 및 서비스 중단	①	②	③	④	⑤	
2 정책의 유사·중복 및 누락(사각지대)과 이로 인한 정책의 효율성 저하(인프라, 예산 등)	①	②	③	④	⑤	
3 부처별 규모 및 예산의 차이로 인한 정책 편향 및 소외	①	②	③	④	⑤	
4 전달체계의 분산으로 위기사태 등에 대한 통합(종합) 대응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5 전달체계가 통합되지 않아 정책수요자의 혼란 야기	①	②	③	④	⑤	
6 부처별 분산된 청년정책의 현 체계로는 아동·청소년·청년정책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7 지방정부, 관련 공공기관 등은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기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기타 의견〉

4. 다음은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안 가운데 (2-1인)의 '긍정적인 점(장점)',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동의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만약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①)나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②)에 응답한 경우는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참고] (2인)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하나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 (2-1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국무조정실 중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

4-1. (2-1인)의 긍정적인 점(장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①이나 ②에 응답한 경우만) 동의하지 않는 이유
1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상호 연계 강화	①	②	③	④	⑤	
2 생애주기별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 유지	①	②	③	④	⑤	
3 유사·중복 정책 조정을 통한 정책의 효율성 증대(행정, 인력, 예산 등)	①	②	③	④	⑤	
4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서비스 가능	①	②	③	④	⑤	

<기타 의견>

4-2. (2-1인)의 문제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①이나 ②에 응답한 경우만) 동의하지 않는 이유
1	타 부처의 유관 정책을 통합하지 않는 한 여전히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이 분산되어 있어 통합의 실효성 저해	①	②	③	④	⑤	
2	청년정책의 부처별 분산된 현 체계와 규모를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실질적 통합이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3	부처 간 권한 및 업무 조정, 통폐합 부처에 대한 합의 등 부처 간 갈등 및 혼선 야기	①	②	③	④	⑤	
4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의 범주와 특성이 달라서 어느 부처로 통합하든지 조직 내 칸막이 우려	①	②	③	④	⑤	
5	특정 부처로 통합 시 일부 대상이나 분야의 전문성 저하	①	②	③	④	⑤	
6	기존 부처별 행정·서비스 전달체계의 차이로 인한 통합·조정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p>〈기타 의견〉</p> 							

5. 다음은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안 가운데 (2-2인)의 '긍정적인 점(장점)',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동의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만약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①)나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②)에 응답한 경우는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참고 (2인)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하나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는 방안 (2-2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를 새로운 주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하는 방안

5-1. (2-2인)의 긍정적인 점(장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①이나 ②에 응답한 경우만) 동의하지 않는 이유
1	①	②	③	④	⑤	
2	①	②	③	④	⑤	
3	①	②	③	④	⑤	
4	①	②	③	④	⑤	
5	①	②	③	④	⑤	
6	①	②	③	④	⑤	
7	①	②	③	④	⑤	
8	①	②	③	④	⑤	
9	①	②	③	④	⑤	

〈기타 의견〉

5-2. (2-2인)의 문제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1)이나 (2)에 응답한 경우만 동의하지 않는 이유
1 새 부처의 조직 설계에 대한 어려움(정책 범주 및 기능 조정 등)	①	②	③	④	⑤	
2 부처 신설에 따른 행정비용 증가	①	②	③	④	⑤	
3 부처 신설 및 안정화까지 긴 시간 소요, 업무 지장 초래	①	②	③	④	⑤	
4 새 부처의 소관 업무를 둘러싼 유관 부처와의 조정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5 부처 신설에 대한 이해관계자(현장 실무자, 정책 수요자 등)의 반발	①	②	③	④	⑤	
6 기존 부처의 정책에 대한 전문성 및 연속성 저하	①	②	③	④	⑤	
7 중앙정부 전달체계가 통합되더라도 아동, 청소년, 청년정책의 특성과 집행체계가 상이하여 지역의 관련 공공기관, 전문인력 등의 통합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기타 의견〉

6. 다음은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안 가운데 **(3-1인)의 '긍정적인 점(장점)',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동의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만약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①)나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②)에 응답한 경우는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참고 (3인)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통합하되,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고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3-1인) 아동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되(청소년·청년정책),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6-1. (3-1인)의 긍정적인 점(장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①이나 ②에 응답한 경우만) 동의하지 않는 이유
1. 청소년, 청년정책의 경우, 연령 증복에 따른 정책의 비효율성 감소	①	②	③	④	⑤	
2. 아동의 보호, 복지정책 등의 전문성은 유지하되, 청소년·청년의 진로, 자립정책 등의 연속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청년 통합부처에서 유관 부처의 관련 정책을 통합·조정하기 용이	①	②	③	④	⑤	
4. 세 개의 부처 통합에 비해 부처 간 갈등과 행정비용 감소	①	②	③	④	⑤	

〈기타 의견〉

6-2. (3-1인)의 문제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①이나 ②에 응답한 경우만) 동의하지 않는 이유
1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상이한 전달체계, 부처 간 이해관계와 우선순위 차이 등으로 인한 갈등	①	②	③	④	⑤	
2 청소년과 청년의 이질적인 법제도로 인한 통합(총합) 정책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3 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의 관점 및 영역의 차이로 인한 정책 편향 및 소외	①	②	③	④	⑤	
4 지자체에서도 청소년 정책과 청년정책의 상이한 전달체계로 인해 실질적 통합이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5 부처별로 분산된 현 청년정책으로 인한 통합·조정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6 아동정책과 청소년·청년정책의 유사·중복 및 단절	①	②	③	④	⑤	

〈기타 의견〉

7. 다음은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안 가운데 (3-2인)의 '긍정적인 점(장점)',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동의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만약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①)나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②)에 응답한 경우는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참고 (3인)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통합하되,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고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3-2인) 아동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고(아동·청소년정책),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7-1. (3-2인)의 긍정적인 점(장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①이나 ②에 응답한 경우만) 동의하지 않는 이유
1 생애전반기 아동,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통합(종합)적·연속적인 정책 지원	①	②	③	④	⑤	
2 아동, 청소년과 다른 청년의 발달적 특성 및 사회적 요구(주거, 일자리, 소득·자산 등)를 고려한 청년정책의 전문성 및 특성과 유지	①	②	③	④	⑤	
3 아동·청소년정책의 일원화된 통합창구를 통해 정책수요자의 혼란 감소	①	②	③	④	⑤	
4 아동·청소년정책의 유사·중복 및 누락(사각지대) 해소로 효율성 제고	①	②	③	④	⑤	

<기타 의견>

7-2. (3-2인)의 문제점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①이나 ②에 응답한 경우만) 동의하지 않는 이유
1	아동·청소년정책의 전달체계 개편으로 인한 부처 간 갈등 및 지지체 혼란	①	②	③	④	⑤	
2	아동정책과 청소년정책의 정체성 혼란과 이로 인한 정책의 전문성 및 특수성 저하	①	②	③	④	⑤	
3	부처별(아동·청소년) 규모 및 예산의 차이로 인한 정책 편향 및 소외	①	②	③	④	⑤	
4	아동과 청소년의 관련 법령 차이로 인한 법제도 정비의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5	부처별 분산된 청년정책의 현 체계로는 아동·청소년정책과 청년정책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①	②	③	④	⑤	
<p>〈기타 의견〉</p>							

8. 다음은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안 가운데 (1인), (3인)의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동의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만약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①)나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②)에 응답한 경우는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참고 (1인) 현행대로 보건복지부(아동), 여성가족부(청소년), 국무조정실(청년이 중심이 되어 각각의 전달체계는 유지하되,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3인) 생애주기적 합목적성 측면에서 통합하되, 하나가 아닌 두 개의 주무 부처로 통합하고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3-1인) 아동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청소년과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되 청소년·청년정책,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3-2인) 아동과 청소년정책 전달체계는 통합하고(아동·청소년정책), 청년정책 전달체계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두 전달체계 간 상호 유기적 연결성을 보완하는 방안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①이나 ②에 응답한 경우만) 동의하지 않는 이유
1 관계 부처 합동의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총합계획 수립·추진	①	②	③	④	⑤	
2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총괄·조정 기구(컨트론타워) 설치	①	②	③	④	⑤	
3 중앙부처 차원의 정기적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협의체 구성·운영	①	②	③	④	⑤	
4 지자체 차원의 정기적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협의체 구성·운영	①	②	③	④	⑤	
5 위기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전달체계 일원화	①	②	③	④	⑤	
6 수요자 중심의 온오프라인 통합지원체계 구축·운영	①	②	③	④	⑤	
7 정보 및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8 관련 법령에 연계·협력 의무 조항 신설 등 법제도 개선	①	②	③	④	⑤	
9 부처별 분산된 청년정책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청년정책 주무부처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①	②	③	④	⑤	
10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상호 영향평가 도입	①	②	③	④	⑤	
11 생애주기별 정책 대상과 목표의 명확화	①	②	③	④	⑤	

<기타 의견>

9. 다음은 **No Wrong Door**의 **국내 실현 방안**에 대한 전문가 여러분의 의견을 정리한 것입니다. 각 항목별로 동의 정도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만약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①)나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②)에 응답한 경우는 그 이유를 적어주십시오.

[참고] 'No Wrong Door' 시스템은 아동, 청소년, 청년 누구든 필요한 시간 및 문제가 있을 때, 공적 전달체계 안의 여리를 방문하더라도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를 의미함.

구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동의하는 편이다	매우 동의한다	(①이나 ②에 응답한 경우만) 동의하지 않는 이유
1 관련 법령에 연계·협력 의무 및 정보 공유 조항 신설 등 법제도 개선	①	②	③	④	⑤	
2 부처, 지자체 등의 정보 및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3 수요자 중심의 통합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①	②	③	④	⑤	
4 정책수요자의 서비스 접근성 확대(콜센터,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AI 서비스 등)	①	②	③	④	⑤	
5 상담, 정책 지원 등을 위한 표준 매뉴얼 개발	①	②	③	④	⑤	
6 아동·청소년·청년정책의 상호 영향 및 연계성 평가	①	②	③	④	⑤	
7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총괄·조정 기구(컨트론타워) 설치	①	②	③	④	⑤	
8 지역 내 관련 기관 간 협의체 구성·운영	①	②	③	④	⑤	
9 전담부서 및 인력 운영	①	②	③	④	⑤	
10 부처 간 공동 예산 사업 확대	①	②	③	④	⑤	
11 지역사회 네트워크 중심의 통합사례관리 강화	①	②	③	④	⑤	

(기타 의견)

10.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시면 적어주십시오.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문초록

본 연구는 AI와 로봇의 4차 산업 혁명 등 급변하는 시대와 사회환경 속에서, 아동복지법과 청소년기본법 및 청년기본법이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헌법 제10조의 이념, 즉 인간 존엄과 자율에 기초한 자아실현과 행복 추구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구축을 위해, 전달체계의 조정 및 통합과 연계된 다양한 모델을 발굴 및 제안함으로써, 합목적성과 효율성, 안정성과 지속성 등을 갖춘 정책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방법론적으로, 문헌연구 및 2차 자료 분석, 선행 연구 고찰, 국외 사례 조사, 전문가 워킹그룹 운영 및 정책토론회 개최, 정책연구실무 협의회 개최, 전문가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먼저 '전달체계의 분절로 인한 정책의 효율성 저하(행정, 인력, 예산 등)'와 '부처 간 소통·협력 부족', '생애주기에 따른 정책 단절 및 서비스 중단', '부처별 유사·중복 서비스로 인한 정책 수요자의 혼란 야기' 그리고 '법령상 아동, 청소년, 청년 연령의 중복으로 인한 정책 대상 중복' 등, 현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장별 주요 연구결과>로부터 도출된 <정책적 시사점>을 종합하여, '아동·청소년·청년 통합 전달체계 구축'의 연구 목적에 부합할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8개 정책 과제 분야 28개 정책과제(총괄조정위원회 관련 정책과제 2개, 주무 부처 관련 정책과제 2개, 주무 부처통합 관련 정책과제 1개, 법 관련 정책과제 4개, 서비스 전달체계 관련 정책과제 13개, 정보 통합 관련 3개, 예산 관련 2개, 전문 인력 양성 관련 정책과제 1개)가 도출되었다. 나아가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조정 및 통합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12원칙을 첫째, 서비스 제공자(2원칙), 둘째, 서비스 자체

(7원칙) 그리고 셋째, 서비스 수요자(3원칙)의 관점에서 도출하고, 이 원칙을 토대로, 28개 정책과제 중 선별하여 최종 4개의 정책과제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4개의 통합 정책제언 및 5개의 세부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핵심 정책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주무 부처통합 및 개선을 위한 5가지의 방안. 각각의 방안에 대해 장점 및 단점 측면에서 분석 제시하였다. 둘째, 아동·청소년·청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아동·청소년·청년 교육, 복지, 고용 NWD(No Wrong Door)의 실제적 실현을 위한 데이터 중심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위해, 빅데이터를 통한 정보 및 데이터 통합 관리 체계의 구축을 제언하였다. 이를 위해 2개의 세부 정책, 즉 “AI 기반 생애주기 맞춤형 통합정책 플랫폼 설계 및 구축” 그리고 “전달체계 성과지표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가로 제언하였다. 셋째,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에 있어 서비스 및 정책 범주의 전체성 확보. ‘전체성의 원칙’, 즉 서비스 비배제성의 원칙과 ‘연속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영역을 구체적이고, 상호 비교 가능하도록 체계화하여 제시하였다. 나아가 3개의 관련 세부 정책, 즉 “수요자 참여형 정책 설계 시스템 도입”, “정책 간 전환기 연계 매니저(Transition Manager)” 제도 도입 그리고 “민간 협력형 전달체계 실험 모델 도입”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정책 대상의 포괄성 확보. NWD의 보편적 수혜성을 위해, 일반 아동·청소년·청년 외에, 취약상황의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정책 대상으로서의 포괄적 파악을 시행하고 제시하였다.

주제어: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주무 부처통합, 서비스 비배제성, 교육, 복지, 고용, 정책 대상의 포괄성, NWD, 통합 정보시스템, 전환기 연계 매니저

Approaches to Improving Child, Adolescent, and Young Adult Policy Delivery Systems

This study seeks to be a practical, foundational resource in establishing policy delivery systems that can embody purposiveness, efficiency, safety, and sustainability in the current era and social environment that are in constant flux with the roll-out of AI, robotics, an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y identifying and presenting varied models of fine-tuning and integrating the policy delivery systems of child, adolescent, and young adult policies that make practicabl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found i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 i.e. self-actualization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based on the universal principles of human dignity and self-determination - that is also the common focal point of the nation's Child Welfare Act, the Framework Act on Youth (Adolescents), and the Framework Act on Youth (Young Adults).

The research methods employed for this purpose were literature review and secondary data analyses, review of previous studies, research of international cases, working-level expert groups and policy discussions, policy research working groups, and expert delphi

surveys. Through initial research outcomes issues in the current delivery systems for child, adolescent, and young adult policies were identified, namely, efficiency decreases (administrative, human resources related, budgetary) due to disjointed policy delivery segments, lack of interdepartmental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in the government, policy discontinuity and disruption of services at lifecycle junctures, policy-user confusion from similar and/or duplicative policies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and redundancy in policies from age range overlap in the legal definition of the child, adolescent, and young adult. Following a comprehensive synthesis of the “Policy Implications” formed from the findings catalogued in “Key Research Outcomes by Chapter”, policy tasks that align with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 building an integrated delivery system for child, adolescent, and young adult policies - are proposed. Specifically, 8 policy task areas containing 28 policy tasks were identified : steering committees (2 tasks), responsible departments (2 tasks), integration between responsible departments (1 task), legislation (4 tasks), service delivery system (13 tasks), information and data integration (3 tasks), budget (2 tasks), cultivating domain experts (1 tasks). Further, 12 principles that will guide the adjustments to and building of an integrated delivery system for the child, adolescent, and young adult policies were extracted from the 28 policy tasks, based firstly, on the service-providers (2 principles), and secondly, on the services themselves; with the presentation of the final four policy tasks along with their four integrated policy recommendations and five detailed policy recommendations thusly being determined by these 12 principles.

The key policy recommendations come in four parts with associated actions. Firstly, a presentation of five ways to integrate and improve the actions of responsible departments within the delivery system of child, adolescent, and young adult policies; with an analysis of the benefits and drawbacks of each approach. Secondly, the building of an integrated information structure for child, adolescent, and young adult policy beneficiaries as part of the policy recommendation for an integrated information management big data system for creating data-driven, evidence-based policies for the practical realization of a “No Wrong Door (NWD)” model for public programs in child, adolescent, and young adult education, welfare, and employment policies. In addition, the two detailed policy recommendations, “Designing and Building an AI-powered Integrated Policy Platform by Life Milestones” and “Building an Integrated Management Structure for Policy Delivery System KPIs”, provide additional guidance. Thirdly, ensuring the child, adolescent, and young adult policy services and programs are full and complete. In other words, the child, adolescent, and young adult policy sectors are systematically organized according to a principle of full and complete representation, or, to put it differently, following the principle of non-excludability and the principle of continuity, to enable more specific sector-to-sector comparison. These, in turn, are further fleshed out with more detailed recommendations for adopting a “User-informed Policy Design System”, “Transition Manager’Program for Policy Transitions”, and “Test Program for Public-Private Collaborative Policy Delivery Models”. Fourthly and finally, ensuring that inclusiveness is reflected in the beneficiaries of child, adolescent, and young adult policy delivery systems by

performing and presenting the results of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not only the typical child, adolescent, and young adult policy beneficiaries but also those in vulnerable situations so as to truly deliver on the promise of universality found in NWD principles.

Key terms: Child, adolescent, and young adult policy delivery system, integration of responsible departments, non-excludability in policy services, education, welfare, employment, inclusiveness in policy beneficiaries, NWD,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transition manager

2025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 연구보고25-기본01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지원을 위한 다체계 연계 지원방안 연구: 진로 위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 김성은·김희진·조혜영·김현수
- 연구보고25-기본02 20대 초반, 후기청소년은 왜 금융이해력이 낮은가?: 후기청소년 금융이해력 증진 방안 연구 / 김지경·송현주·송원일
- 연구보고25-기본0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청소년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2022 개정 교육과정 중심으로 / 강경균·오해섭·최홍일·성은모
- 연구보고25-기본04 수요자 중심 평가모형을 활용한 청년정책 진단 연구 / 김형주·장근영
- 연구보고25-기본05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연구 / 성윤숙·문호영·손병덕
- 연구보고25-기본06 가족돌봄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황여정·정은주
- 연구보고25-기본07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 김정숙·연보라·전현정·김나영
- 연구보고25-기본08 시설거주 청소년 교육기회 확대 방안 연구 / 김승경·백혜정
- 연구보고25-일반01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성렬·유설희
- 연구보고25-일반01-01 2025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
- 연구보고25-일반02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 총괄보고서 / 김기현·김윤희·이용해
- 연구보고25-일반02-01 청년의 성인기 이행경로 연구 I : 심층분석보고서 / 김기현·김윤희·권경만·오병돈·유현주
- 연구보고25-일반03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연구 I / 양계민·서정아·권오영·변수정·장윤선
- 연구보고25-일반06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황진구·최인재·한지형
- 연구보고25-일반06-01 2025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최인재·노언경·정송
- 연구보고25-일반07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신동훈·이지연·이정민·장한소리

- 연구보고25-일반07-01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1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 연구보고25-일반07-02 2025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기초분석보고서(2기 패널) / 신동훈·이지연·이정민

협동연구과제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6-01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II / (자체번호 연구보고25-일반04) 최용환·임지연·좌동훈·박윤수·이동성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5-37-01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I : (자체번호 연구보고25-일반05) 위기청소년의 마약류 사용 실태 / 배상률·김영지·모상현·김남희·조제성·김다은·홍서아

수 시 과 제

- 연구보고25-수시01 청소년상담사 자격제도 현황 및 체계화 방안 연구 / 좌동훈·남화성
- 연구보고25-수시02 이주배경청소년 역량강화방안연구: 청소년활동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양계민·권오영·안지현
- 연구보고25-수시03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을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 연구 / 권오영·남화성
- 연구보고25-수시04 청소년의 방과후활동수요 및 방과후아카데미 발전 방안 연구 / 장근영

연구개발적립금 과제

- 연구보고25-연적금0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 김승경·백혜정·김경준
- 연구보고25-연적금02 전 세계 청년정책 현황 분석 연구 / 김기현·유민상·신동훈·한지형
- 연구보고25-연적금03 지역 청년고용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전략수립 연구 / 최용환·임지연·좌동훈
- 연구보고25-연적금04 청소년 유해약물 사용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배상률·김영지·모상현

수탁과제

< 일반 >

연구보고25-수탁01	2024 인성교육프로그램 발굴·확산 사업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창호·임지영
연구보고25-수탁02	2025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지원 가이드라인 (2종) / 최정원
연구보고25-수탁03	학교폭력 피해학생 치유·회복 프로그램 (초등학생용 2종) / 최정원
연구보고25-수탁04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4-01	2024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5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5-01	2024년 2차 학교폭력 실태(표본)조사 통계자료집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6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사업 결과보고서 / 성윤숙·이창호
연구보고25-수탁07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심층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 성윤숙
연구보고25-수탁08	2025년 제2기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운영보고서 / 성윤숙
연구보고25-수탁09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청소년활동사업 성과관리 진단 / 임지연·김혁진·문지혜
연구보고25-수탁10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통계자료집/ 성윤숙·문호영
연구보고25-수탁11	2025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황진구·김영지·모상현·김경준·이용해·허효주·안지현·진인범·박지영
연구보고25-수탁12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서고운
연구보고25-수탁13	2026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전 연구 / 김지경·유준오·송현주·허효주
연구보고25-수탁14	역량기반 인증수련활동 효과 유의성 평가도구 개선 연구 / 송원일·김정숙·최수정
연구보고25-수탁15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6~'30) 수립 연구 / 하형석·김기현·유민상·신동훈·성재민·박미선·박병영·변금선·배정희·권향원·김문정·진인범
연구보고25-수탁16	2025년 1차 학교폭력 실태(전수)조사 분석보고서 / 성윤숙·문호영
연구보고25-수탁17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1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초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2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초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3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학생용 워크북(중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7-4	청소년 인문교실 프로그램 교사용 매뉴얼(중등) / 강경균
연구보고25-수탁18	2025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 김희진·황여정·김성은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 연구보고25-학폭01 시도별 학교폭력 예방교육 사업 주요 현안 및 정책 분석 / 안병훈·모상현·김용남·박선영·김영인
- 연구보고25-학폭02 2024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결과보고서 / 모상현·백승훈·박재욱
- 연구보고25-학폭03 2024년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운영 우수사례집 / 모상현·백승훈·김영인
- 연구보고25-학폭04-01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 (초등학교 3~4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연구보고25-학폭04-02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 (초등학교 5~6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연구보고25-학폭04-03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 (중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연구보고25-학폭04-04 학교에서 쉽게 활용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 (고등학교 2~3학년) / 모상현·장금연·최미애·최인재·김영인·박재욱·구찬동·김아라·심현아
- 연구보고25-학폭05 2024 학부모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소식지 모음집 / 모상현·박재욱·전원지
- 연구보고25-학폭06 2024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학교 효과성 분석 / 모상현·이경상·김현수·전원지·문은솔
- 연구보고25-학폭07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 모상현·김경년·김경애·김봉섭·김소아·김승혜·박주형·차성현
- 연구보고25-학폭08 학교폭력예방 학생 언어습관 자기 진단도구 개발 연구 / 박창균·조재윤·이정우·최태경
- 연구보고25-학폭09 2025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안내서 / 모상현·백승훈·김영인·최지윤
- 연구보고25-학폭10 2025 학교폭력 예방교육 컨설팅단 운영 매뉴얼 / 모상현·최지윤·박재욱·문은솔

<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

- 연구보고25-대안01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안정적 재정지원 방안 : 보통교부금 개선 가능성 검토 / 남수경
- 연구보고25-대안02 지속가능한 대안교육을 위한 재정지원방안 연구 / 함승수·이시호·박희정·김희정
- 연구보고25-대안03 2025 대안교육기관 청소년 패널조사 / 하형석·최인재·전현정·이지숙·신원규

〈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

- 연구보고25-위센터01 위(Wee) 뉴스레터 / 김영지·김소연·주예찬
- 연구보고25-위센터02 제14회 위(Wee) 희망대상 우수사례집 / 김영지·김승경·정춘현·김영인·주예찬
- 연구보고25-위센터03 문제행동별 개인상담 개입 지도서(중·고등) / 김영지·김승경·김영인
- 연구보고25-위센터04 2025 위(Wee) 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 / 김영지·양하나·정춘현
- 연구보고25-위센터05 2025년도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 김영지·김승경·서고운·전현정·이정민·최홍일·양하나·이수민·김소연·정춘현·김주영·문세진·김다인·김영인·주예찬·이유진

〈 학업중단예방지원센터 〉

- 연구보고25-학중0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꿈지락 활동집 / 김성은·이진아
- 연구보고25-학중02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 김희진·백해정·황여정·유성렬·전예빈·정유경
- 연구보고25-학중03 학업중단 위기학생 실태조사 사전연구: 기초분석보고서 / 김희진·백해정·황여정·전예빈

자 료 집

〈 세 미 나 〉

- 세미나25-01 2025년 17개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담당자 1차 협의회 (25.3.27.)
- 세미나25-02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발대식(1차 세미나) (25.6.13.)
- 세미나25-03 2025년 인성교육 우수교원 네트워크 중간보고회 (25.8.12.)

〈 워 크 숍 〉

- 워크숍25-01 2025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실 프로그램(꿈지락) 운영 워크숍 자료집 (25.7.31.-25.8.7.)
- 워크숍25-02 가정형 위(Wee)센터 워크숍 (25.8.11.)

〈 포 럼 〉

- 포럼25-01 고립 은둔 청소년 삶 실태 및 정책과제 (25.3.26.)
- 포럼25-02 이주배경청년 사회통합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포럼 (25.4.29.)

- 포럼25-03 청소년의 디지털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책과제 (25.4.29.)
- 포럼25-04 청년의 엇갈린 삶의 경로_한국과 일본의 성인기 이행 (25.7.28.)
- 포럼25-05 인구감소시대 이주배경청년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역량강화방안 모색 (25.8.26.)
- 포럼25-06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 청소년시설 추진방향 모색 (25.11.11.)
- 포럼25-07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보호 정책과제 개발 (25.11.19.)
- 포럼25-08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하는 청소년 시시대의 책임과 권리 (25.11.27.)
- 포럼25-09 인구감소지역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성과 및 향후과제 (25.12.4.)

< 콜로 키움 >

- 콜로키움25-01 선주민과 이민자간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 (25.4.17.)
- 콜로키움25-02 이주배경청소년 대상 한국어교육의 현황과 과제 (25.5.13.)
- 콜로키움25-03 청소년 유해약물 정책 관련 해외사례 (25.8.26.)

< 기타 자료 집 >

- 자료25-01 2024 대안교육기관 교육 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 자료25-02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제2판
- 자료25-03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3판
- 자료25-04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가이드북
- 자료25-05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1차 연수 강의자료
- 자료25-06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2차 연수 강의자료
- 자료25-07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제3차 연수 강의자료
- 자료25-08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 활동 가이드북
- 자료25-09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1차 설명회
- 자료25-10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2차 설명회
- 자료25-11 제14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 자료25-12 2025년 제12회 학업중단 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 자료25-13 2025년 대안교육기관 패널조사 제3차 설명회
- 자료25-14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가이드라인
- 자료25-15 2025년 대안교육기관 교육·활동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 자료25-16 청소년 부모·한부모 지원 매뉴얼 (2판)

학술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1호(통권 116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2호(통권 117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3호(통권 118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6권 4호(통권 119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154호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학교와 지역자원 연계: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을 중심으로

155호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의 정책방향

156호 OECD 국가의 청년정책 현황 및 시사점

157호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158호 청년 온라인 커뮤니티의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 NYPI Bluenote 통계 >

86호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 : 사이버도박

87호 청소년 근로 실태 및 권리 보장 현황

88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2024년) 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

89호 청소년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지원방안

90호 202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지표 결과

연구보고25-기본05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연구

인 쇄 2025년 12월 24일

발 행 2025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크리커뮤니케이션 (02)2273-17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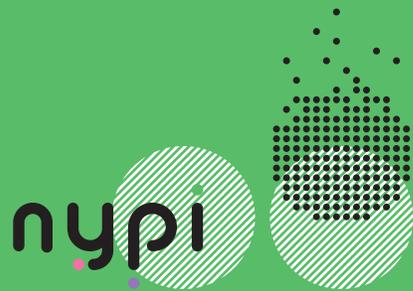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449-4 93330

연구보고25-기본05

아동·청소년·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 방안연구



NYP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
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ISBN 979-11-5654-449-4